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Comprehensive Analysis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총 괄 I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I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I 김윤성 이지선 이상아
남명진 유연제 신지현 이선화
이한성 황진솔 정금연 예산분석관
김효진 신헌태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지 원 I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김현실 행정실무원
이민영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3.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CONTENTS

Ⅰ. 개 관 / 1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1-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 3

1-2. 세입 · 세출예산안 ····· 6

1-3. 기금운용계획안 ····· 12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문서 및 첨부서류 ····· 16

Ⅱ. 2024년도 예산안 총평 / 33

1.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역할 제고를 위한 재원 재배분 방안 검토 ····· 35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39

3. R&D 예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안 심의 방향 모색 ····· 45

4.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 50

Ⅲ.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내용 / 59

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 61

1-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 내용 ····· 61

1-2. 2024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 64



CONTENTS

2.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 71

2-1. 세출 · 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 71

2-2. 세입 · 수입의 적정성 분석 ····· 77

Ⅳ. 재정총괄 분석 / 81

1. 2024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 83

2. 예산총칙안 분석 ····· 137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182

4.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 221

4-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 222

4-2.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 ····· 225

4-3. 분석의견 ····· 235

5. 유사·중복 사업 분석 ····· 277

6.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 321

7. 인건비 분석 ····· 335

8.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 · 집행 문제 분석 ····· 368

9.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 388

10.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 442

10-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 445

10-2.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 462

Ⅰ. 개 관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18.2조원 증가한 656.9조원 편성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1]은 612.1조원으로, 국세수입 367.4조원, 세외수입 27.9조원, 기금수입 216.8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1조원(△9.0%)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조원(10.4%) 증가하였다. 기금수입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5조원(7.6%)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

(단위: 조원, %)

구 분	2023예산(A)	2024예산안(B)	증감	
			B-A	(B-A)/A
총수입	625.7	612.1	△13.6	△2.2
- 회계(세입)	425.5	395.3	△30.2	△7.6
(국세수입)	400.5	367.4	△33.1	△9.0
(세외수입)	25.0	27.9	2.9	10.4
- 기금(수입)	200.3	216.8	16.5	7.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656.9조원으로, 회계 438.7조원, 기금 218.2조원으로 구성된다. 회계는 전년 대비 2.4조원(△0.5%)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전년 대비 20.5조원(10.4%) 증가하였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이다.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23예산(A)	2024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638.7	656.9	18.2	2.8
- 회계(세출)	441.1	438.7	△2.4	△0.5
- 기금(지출)	197.7	218.2	20.5	10.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44.8조원) 및 관리재정수지(△92.0조원)는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채무(1,196.2조원)는 전년 대비 61.8조원 증가하여 GDP 대비 51.0%로 전망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는 44.8조원 적자(GDP 대비 1.9%)로 전년 대비 31.7조원 악화되었고, 관리재정수지[2]는 92.0조원 적자(GDP 대비 3.9%)로 전년 대비 33.8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B-A)
통합재정수지	△13.1	△44.8	△31.7
(GDP 대비)	(△0.6)	(△1.9)	(△1.3)
관리재정수지	△58.2	△92.0	△33.8
(GDP 대비)	(△2.6)	(△3.9)	(△1.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가채무[3] 규모는 1,196.2조원으로 전년 대비 61.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도 국가채무의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는 중앙정부채무, 특히 국채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2024년 중앙정부채무는 2023년도 예산 대비 61.7조원 증가한 1,163.4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지방정부순채무는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한 32.8조

2)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3)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인 D1을 의미한다.

원으로 계획되었다.

[2024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B-A)
국가채무	1,134.4	1,196.2	61.8
(GDP 대비)	(50.4)	(51.0)	(0.6)
중앙정부채무	1,101.7	1,163.4	61.7
국채	1,100.3	1,162.1	61.8
차입금	1.2	1.2	0.0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0
지방정부순채무	32.6	32.8	0.2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2. 세입 · 세출예산안

202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534.0조원 대비 2.8% 증가한 548.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총계 기준)은 2023년 534.0조원에서 14.9조원(2.8%) 증가한 548.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446.2조원 대비 3.3조원(0.7%) 증가한 449.6조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6조원(13.2%) 증가한 99.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조원, %)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534.0	548.9	14.9	2.8
- 일반회계	446.2	449.6	3.3	0.7
- 특별회계	87.7	99.3	11.6	13.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2024년도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449.6조원)을 제외하고는 교통시설특별회계(16.3조원),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5.6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5.5조원) 순의 규모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는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5.9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1.5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0.9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0.7조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1,542.8%),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60.2%), 조달특별회계(40.1%), 우체국예금특별회계(34.5%), 양곡관리특별회계(18.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533,968,815	548,904,758	14,935,943	2.8
□ 일반회계	446,242,182	449,582,242	3,340,060	0.7
□ 특별회계	87,726,633	99,322,516	11,595,883	13.2
○ 기타 특별회계	73,711,144	83,198,020	9,486,876	12.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622,577	15,500,657	878,080	6.0
- 교통시설특별회계	15,612,657	16,300,827	688,170	4.4
- 등기특별회계	430,263	383,140	△47,123	△11.0
- 교도작업특별회계	121,479	120,529	△950	△0.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770,437	6,507,461	737,024	12.8
- 환경개선특별회계	6,734,231	7,030,511	296,280	4.4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346,194	2,111,102	△235,092	△10.0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40,784	1,074,090	33,306	3.2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79,936	642,621	△237,315	△27.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5,034	143,531	△81,503	△36.2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99,553	596,112	△3,441	△0.6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666	585,906	550,240	1,542.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52,286	113,000	△39,286	△25.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927,280	13,251,102	1,323,822	11.1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232,168	△237,869	△6.9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30	15,605,263	5,862,533	60.2
○ 기업특별회계	12,682,191	14,850,433	2,168,242	17.1
-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848	2,745,489	420,641	18.1
- 조달특별회계	517,227	724,500	207,273	40.1
- 우편사업특별회계	5,424,404	5,439,617	15,213	0.3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415,712	5,940,827	1,525,115	34.5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33,298	1,274,063	△59,235	△4.4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2024년도 부처별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453.4조원), 교육부(19.2조원), 농림축산식품부(17.3조원), 국토교통부(15.9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안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헌법재판소(1,54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6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862.2%), 대통령경호처(694.0%), 인사혁신처(604.7%)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부처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533,968,815	548,904,758	14,935,943	2.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97	297	-	-
대통령경호처	67	532	465	694.0
국회	4,196	4,345	149	3.6
대법원	1,168,554	993,640	△174,914	△15.0
헌법재판소	39	641	602	1,54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63	10,017	9,154	1,06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	5	-	-
감사원	639	745	106	16.6
국가정보원	9,785	7,176	△2,609	△26.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3	23	-	-
기획재정부	449,868,329	453,441,308	3,572,979	0.8
교육부	13,505,061	19,184,158	5,679,097	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95,426	12,921,576	1,626,150	14.4
외교부	267,335	277,323	9,988	3.7
통일부	2,006	1,448	△558	△27.8
법무부	1,467,313	1,473,521	6,208	0.4
국방부	1,698,713	1,480,630	△218,083	△12.8
행정안전부	68,671	306,811	238,140	346.8
국가보훈부	9,709	10,027	318	3.3
문화체육관광부	246,525	210,739	△35,786	△14.5
농림축산식품부	15,985,371	17,306,634	1,321,263	8.3
산업통상자원부	8,300,418	8,589,625	289,207	3.5
보건복지부	719,984	1,206,106	486,122	67.5
환경부	6,816,181	7,254,003	437,822	6.4
고용노동부	250,447	342,259	91,812	36.7
여성가족부	26,776	38,156	11,380	42.5
국토교통부	14,754,665	15,935,333	1,180,668	8.0
해양수산부	1,695,364	1,819,197	123,833	7.3
중소벤처기업부	210,210	213,471	3,261	1.6
인사혁신처	5,962	42,016	36,054	604.7
식품의약품안전처	38,707	37,582	△1,125	△2.9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가인권위원회	27	27	-	-
방송통신위원회	30,584	30,844	260	0.9
공정거래위원회	421,696	450,162	28,466	6.8
금융위원회	72,325	89,629	17,304	23.9
국민권익위원회	823	892	69	8.4
원자력안전위원회	1,771	1,840	69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244	40,834	36,590	862.2
국세청	428,539	361,526	△67,013	△15.6
관세청	94,624	118,873	24,249	25.6
조달청	517,227	724,500	207,273	40.1
통계청	4,400	3,610	△790	△18.0
재외동포청	-	9	9	순증
병무청	300	305	5	1.7
방위사업청	331,955	342,219	10,264	3.1
경찰청	1,208,657	1,368,881	160,224	13.3
소방청	4,246	4,349	103	2.4
문화재청	51,272	53,417	2,145	4.2
농촌진흥청	15,943	15,286	△657	△4.1
산림청	1,170,052	1,151,137	△18,915	△1.6
특허청	867,220	793,477	△73,743	△8.5
질병관리청	78,776	77,795	△981	△1.2
기상청	8,133	8,505	372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5,034	143,531	△81,503	△36.2
새만금개발청	7,938	8,132	194	2.4
해양경찰청	5,388	5,634	246	4.6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2024년도 부처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109.5조원), 보건복지부(74.7조원), 행정안전부(72.1조원), 국방부(43.0조원), 국토교통부(39.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안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4.7%), 조달청(40.1%), 외교부(27.1%), 병무청(26.9%), 금융위원회(21.3%)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부처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533,968,815	548,904,758	14,935,943	2.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8,523	103,203	4,680	4.8
대통령경호처	116,322	134,146	17,824	15.3
국회	730,563	751,653	21,090	2.9
대법원	2,206,061	2,239,302	33,241	1.5
헌법재판소	55,492	56,742	1,250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6,700	832,433	425,733	10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33	34,826	793	2.3
감사원	137,381	146,717	9,336	6.8
국가정보원	852,631	894,560	41,929	4.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6,615	659,046	△17,569	△2.6
기획재정부	27,036,974	32,749,029	5,712,055	21.1
교육부	110,184,329	109,506,380	△677,949	△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70,353	22,048,040	877,687	4.1
외교부	3,249,526	4,128,720	879,194	27.1
통일부	323,340	334,534	11,194	3.5
법무부	4,297,481	4,410,386	112,906	2.6
국방부	41,576,899	43,028,644	1,451,745	3.5
행정안전부	80,487,829	72,094,541	△8,393,288	△10.4
국가보훈부	6,047,699	6,257,264	209,565	3.5
문화체육관광부	3,753,800	3,779,293	25,493	0.7
농림축산식품부	20,699,787	22,264,481	1,564,694	7.6
산업통상자원부	10,873,023	11,033,033	160,010	1.5
보건복지부	68,527,771	74,697,165	6,169,394	9.0
환경부	18,450,846	19,978,089	1,527,243	8.3
고용노동부	6,994,196	6,189,888	△804,308	△11.5
여성가족부	688,886	766,086	77,200	11.2
국토교통부	35,743,974	39,364,280	3,620,306	10.1
해양수산부	7,128,907	7,353,002	224,095	3.1
중소벤처기업부	5,766,873	5,960,663	193,790	3.4
인사혁신처	5,117,009	5,805,296	688,287	13.5
법제처	43,728	45,501	1,773	4.1
식품의약품안전처	676,510	711,135	34,625	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7,683	20,204	2,521	14.3
국가인권위원회	41,013	41,303	290	0.7
국가교육위원회	-	10,279	10,279	순증
방송통신위원회	49,323	43,382	△5,941	△12.0
공정거래위원회	159,603	158,479	△1,124	△0.7
금융위원회	3,763,619	4,564,032	800,413	21.3
국민권익위원회	94,958	111,592	16,634	17.5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원자력안전위원회	143,270	136,045	△7,225	△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8,924	64,457	5,533	9.4
국세청	1,924,078	1,971,497	47,419	2.5
관세청	640,249	657,623	17,374	2.7
조달청	517,227	724,500	207,273	40.1
통계청	393,704	424,174	30,470	7.7
재외동포청	-	105,477	105,477	순증
병무청	333,109	422,575	89,466	26.9
방위사업청	16,916,892	17,798,570	881,678	5.2
경찰청	12,489,438	13,005,941	516,503	4.1
소방청	308,781	336,022	27,241	8.8
문화재청	1,189,925	1,190,095	170	0.0
농촌진흥청	1,254,668	1,085,469	△169,199	△13.5
산림청	3,328,152	3,543,304	215,152	6.5
특허청	867,220	793,477	△73,743	△8.5
질병관리청	2,416,402	668,991	△1,747,411	△72.3
기상청	469,672	447,397	△22,275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45,249	275,555	△169,694	△38.1
새만금개발청	148,369	29,902	△118,467	△79.8
해양경찰청	1,810,881	1,892,701	81,820	4.5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3,268	6,888	△6,380	△48.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077	16,749	△2,328	△12.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1-3.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2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원(14.6%) 증가한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4년도 수입계획안 1,023.1조원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자체수입은 국민연금의 피고용자분담금,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융자원금회수 등의 증가로 2023년도 예산보다 9.0% 증가한 231.9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원금회수 증가 등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19.2% 증가한 287.1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외에 차입금은 199.3조원, 여유자금회수 등은 304.9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조원, %)

구 분		2023 계획[1] (A)	2024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총 계		893.1	1,023.1	130.0	14.6
	자체수입	212.6	231.9	19.2	9.0
	정부내부수입	240.8	287.1	46.2	19.2
	차입금	191.7	199.3	7.6	4.0
	여유자금회수 등	248.0	304.9	56.9	23.0

주: 1) 2023년 당초 계획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1,023.1조원으로, 사업비 198.9조원, 기금운영비 2.7조원, 정부내부지출 332.4조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75.4조원, 여유자금운용 313.8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18.2조원(10.1%) 증가한 198.9조원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이 연금급여지출 증가 등에 따라 9.2조원(9.5%) 증가하고, 사업성기금 중 대외경제협력 지원 증가 등에 따라 5.2조원(7.2%) 증가하며, 금융·계정성기금에서 3.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정부내부지출은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원금상환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29.0% 증가한 332.4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차입금원리금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원금상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9% 증가한 175.4

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유자금운용은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의 여유자금 운용규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8조원 증가한 313.8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조원, %)

구 분	2023 계획[1] (A)	2024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총 계	893.1	1,023.1	130.0	14.6
사업비	180.6	198.9	18.2	10.1
사회보험성	96.6	105.8	9.2	9.5
사업성	72.5	77.8	5.2	7.2
금융성·계정성	11.5	15.3	3.8	33.5
기금운영비	2.7	2.7	0.0	0.2
정부내부지출	257.7	332.4	74.7	29.0
차입금원리금상환	167.2	175.4	8.2	4.9
여유자금운용	285.0	313.8	28.8	10.1

주: 1) 2023년 당초 계획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322.8조원), 외국환평형기금(205.1조원), 국민연금기금(166.7조원), 주택도시기금(105.4조원), 공무원연금기금(31.4조원) 순으로 계획되었다. 2023년도 당초 계획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68.8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38.1조원), 국민연금기금(13.2조원), 공무원연금기금(2.4조원), 고용보험기금(1.7조원) 순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309.5%), 국제질병퇴치기금(113.0%), 외국환평형기금(50.5%), 석면피해구제기금(37.2%), 대외경제협력기금(36.2%) 순이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

기 금 명	2023 계획[1) (A)	2024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총 계	8,931,295	10,231,339	1,300,044	14.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3	1,371	237	20.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993	2,314	321	16.1
보훈기금	6,515	6,041	△474	△7.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388	1,487	100	7.2
공적자금상환기금	110,193	108,893	△1,301	△1.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957	20,162	△2,794	△1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2	641	100	18.4
신용보증기금	123,287	114,703	△8,585	△7.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4,630	46,410	11,780	34.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24	48,972	48	0.1
공공자금관리기금	2,846,946	3,228,161	381,214	13.4
국유재산관리기금	25,810	32,705	6,895	26.7
대외경제협력기금	16,211	22,087	5,876	36.2
복권기금	78,194	83,580	5,387	6.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01	8,133	431	5.6
외국환평형기금	1,362,875	2,051,201	688,327	50.5
기후대응기금	24,867	24,158	△709	△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2	131,467	△995	△0.8
사학진흥기금	3,588	3,093	△495	△13.8
과학기술진흥기금	1,702	1,888	186	10.9
방송통신발전기금	14,808	12,527	△2,281	△15.4
원자력기금	5,185	5,445	261	5.0
정보통신진흥기금	15,627	13,797	△1,830	△11.7
국제교류기금	1,518	1,566	48	3.1
국제질병퇴치기금	480	1,022	542	113.0
남북협력기금	18,004	15,841	△2,163	△12.0
군인복지기금	8,147	8,368	221	2.7
군인연금기금	39,193	42,592	3,399	8.7
공무원연금기금	289,508	313,790	24,281	8.4
관광진흥개발기금	17,293	16,222	△1,071	△6.2
국민체육진흥기금	32,205	34,051	1,846	5.7
문화예술진흥기금	5,396	5,798	402	7.4
언론진흥기금	452	480	28	6.1
영화발전기금	2,300	1,346	△954	△41.5
지역신문발전기금	98	89	△10	△9.8
문화재보호기금	1,690	1,700	10	0.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4	23,948	674	2.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5	3,704	2,799	309.5

(단위: 억원, %)

기 금 명	2023 계획[1] (A)	2024 계획안 (B)	증 감	
			B-A	(B-A)/A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8,576	30,194	1,618	5.7
농지관리기금	37,220	40,063	2,843	7.6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9	15,311	3,892	34.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	5,886	778	15.2
축산발전기금	10,628	9,621	△1,007	△9.5
수산발전기금	8,354	8,434	80	1.0
무역보험기금	60,477	56,010	△4,467	△7.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6,088	92,907	6,819	7.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850	2,024	174	9.4
전력산업기반기금	46,961	45,010	△1,950	△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4,225	72,758	8,533	13.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2,398	110,256	7,858	7.7
기술보증기금	31,743	31,543	△201	△0.6
국민건강증진기금	47,395	45,581	△1,813	△3.8
국민연금기금	1,535,270	1,667,459	132,189	8.6
응급의료기금	5,730	6,617	887	15.5
금강수계관리기금	1,816	1,888	71	3.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82	2,794	312	12.6
석면피해구제기금	439	602	163	37.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10	1,613	103	6.8
한강수계관리기금	6,825	6,651	△174	△2.6
고용보험기금	216,800	234,136	17,337	8.0
근로복지진흥기금	4,121	5,011	890	2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0,562	202,950	12,388	6.5
임금채권보장기금	9,169	9,728	559	6.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9,005	20,048	1,043	5.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626	2,654	28	1.1
주택도시기금	1,055,355	1,053,952	△1,403	△0.1
양성평등기금	7,372	8,184	812	11.0
청소년육성기금	1,773	1,704	△69	△3.9

주: 1) 2023년 당초 계획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문서 및 첨부서류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회가 예산안 심의 시 함께 논의하여야 하거나 부수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안건들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으며, 재정총량, 예산안이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한 서류도 첨부하여 제출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4조는 다음 표와 같이 총 19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독립기관·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해당 기관장 의견」 등 7개 문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현황]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4조)	첨부서류명	제출형식
제1호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예산안 첨부서류」
제2호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별도 책자(5권)
제2호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3호	계속비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3호의2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현황	「예산안 첨부서류」
제4호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5호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5호의2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명시 대상 사업	「예산안 첨부서류」
제6호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예산안 첨부서류」
제7호	국유재산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8호	성과계획서	별도 책자
제9호	성인지 예산서	별도 책자
제9호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별도 책자
제10호	조세지출예산서	별도 책자
제11호	독립기관·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해당 기관장 의견	별도 책자
제13호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14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별도 책자
제15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예산안 첨부서류」
제16호	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제71조는 다음 표와 같이 총 8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성과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 3개 문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책자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현황]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71조)	첨부서류명	제출형식
제1호	기금조성계획	「기금안 첨부서류」
제2호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기금안 첨부서류」
제3호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기금안 첨부서류」
제4호	성과계획서	별도 책자
제5호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기금안 첨부서류」
제6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별도 책자
제6호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별도 책자
제7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기금안 첨부서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국가재정법」 등은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별개로 각종 재정 관련 의안·문서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관련 의안으로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동의안[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이 있다.

다음 관련 문서로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조세특

4) 2024년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동의안으로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다.

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등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문서 현황]

구분	법적 근거	관련 의안·문서명	
의안	「국가재정법」 제92조	국가보증채무 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무역보험법」 제8조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문서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등)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관련자료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제9조의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및 관련 의안·문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이 중 주요 의안 및 서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은 기존에 국가재정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철도·항만 및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종류로,[5]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면,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주무관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준공된 후 운영이 개시된 때로부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BTL 사업의 특성상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6]

BTL 한도액은 BTL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7,826억원(69.5%) 감소한 7,82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3,044억원(33.1%)이 감소한 6,157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3,932억원(91.5%) 감소한 1,297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7]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

5)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투자비 회수방법에 따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이 대표적이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한도액 합계의 20% 이내 범위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한도액 감소에 따라 2024년 예비한도액도 전년 대비 849억원(69.5%) 감소한 37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단위: 억원, %)

구분	2023(A)	2024(B)	증감(B-A)	(B-A)/A
총한도액	25,652	7,826	△17,826	△69.5
국가사업	9,201	6,157	△3,044	△33.1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15,229	1,297	△13,932	△91.5
예비한도액	1,222	373	△849	△69.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대해서는 이 책자의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은「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① 경제·재정운용 여건, ② 재정운용 방향 및 ③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④ 재정혁신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의무지출·재량지출의 증가율 등,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8] 한편 첨부서류로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장기(40회계연도) 재정전망 결과 등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대해서는「2024년도 재정총량분석 Ⅰ」보고서 중 "2.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8)「국가재정법」제7조제2항

다. 성과계획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9]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통해 부처별·사업별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그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99년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3년 22개 부처 대상 우선 시행을 거쳐 2006년 모든 부처(48개)에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문서인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서 2009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의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이러한 성과계획서는 2021년까지는 각 중앙관서별 임무·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11] 및 프로그램목표[12]를 설정한 후 그 하위에 단위사업을 배치하는 체계로 구성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조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부터는 1프로그램 1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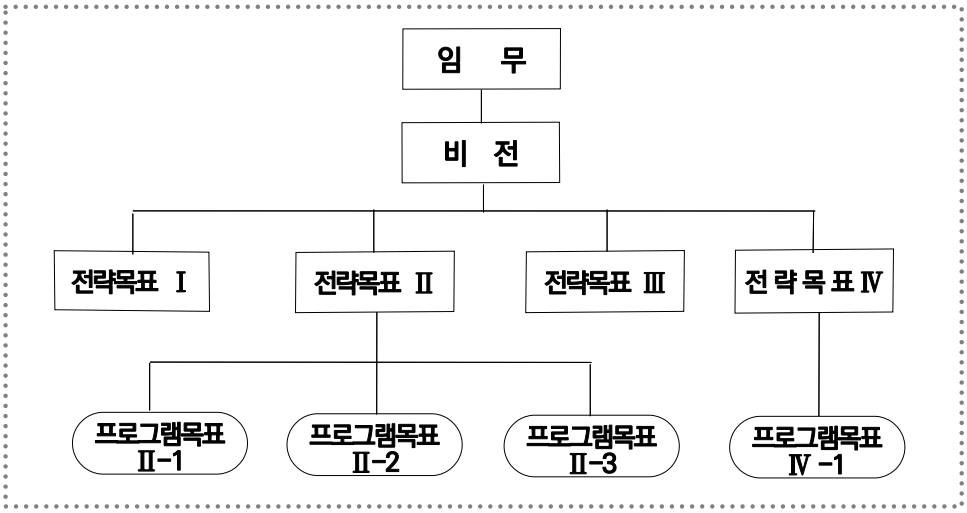
9)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이다.

12)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 당 1개의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한다.

[2024년도 예산안의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과계획서의 작성대상은 60개 중앙관서로, 전략목표 187개 및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었다. 2023년도 대비 중앙관서가 2개(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가 추가되었으며, 전략목표는 전년 대비 6개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개수이다.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3 (A)	58	181	475
2024 (B)	60	187	475
증감(B-A)	2	6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부처별 전략목표 현황을 보면,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 및 재외동포청의 전략목표가 1개씩 추가 되었으며, 산림청(+2) 경찰청(+1), 질병관리청(+1)에서도 추가되었다. 부처별 프로그램목표는 신설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1), 재외동포청(+2)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2), 개인정보보호위원회(+1)에서 증가하였으며, 국토교통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외교부(△1), 금융위원회(△1) 및 문화재청(△1)에서 감소하였다.

[2024년도 부처별 성과목표 현황]

번호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3	2024	2023	2024
합 계		181	187	475	47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1	1
3	국회	2	2	5	5
4	대법원	2	2	2	2
5	헌법재판소	1	1	1	1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2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2	2
8	감사원	1	1	1	1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1	1
10	기획재정부	4	4	15	15
11	교육부	4	4	20	2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6	34	33
13	외교부	6	6	13	12
14	통일부	2	2	8	8
15	법무부	5	5	8	8
16	국방부	5	5	10	10
17	행정안전부	6	6	16	16
18	국가보훈부	5	5	9	9
19	문화체육관광부	6	6	33	33
20	농림축산식품부	5	5	16	16
21	산업통상자원부	6	6	23	25
22	보건복지부	4	4	25	25
23	환경부	6	6	16	16
24	고용노동부	4	4	9	9
25	여성가족부	4	4	5	5
26	국토교통부	6	6	34	32
27	해양수산부	3	3	13	13
28	중소벤처기업부	5	5	11	11
29	인사혁신처	5	5	7	7
30	법제처	1	1	1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5	5	10	10

번호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3	2024	2023	2024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1	1
33	국가인권위원회	1	1	1	1
34	국가교육위원회	0	1	0	1
35	방송통신위원회	2	2	4	4
36	공정거래위원회	3	3	4	4
37	금융위원회	4	4	12	11
38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3	3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	2
41	국세청	5	5	6	6
42	관세청	4	4	6	6
43	조달청	1	1	2	2
44	통계청	3	3	5	5
45	재외동포청	0	1	0	2
46	병무청	4	4	4	4
47	방위사업청	3	3	7	7
48	경찰청	3	4	10	10
49	소방청	1	1	1	1
50	문화재청	3	3	8	7
51	농촌진흥청	2	2	7	7
52	산림청	3	5	7	7
53	특허청	2	2	5	5
54	질병관리청	3	4	9	9
55	기상청	4	4	7	7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2	2
57	새만금개발청	3	3	3	3
58	해양경찰청	5	5	5	5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1	1	1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라.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성인지 사업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성인지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시 부속서류로 제출된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40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82개로, 규모는 24조 1,966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이 206개 사업, 9조 5,854억원이며, 기금사업이 76개 사업, 14조 6,112억원이다.

2023년 성인지예산과 비교해 보면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3조 1,818억원에서 24조 1,96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 중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4.1% 증가하였고, 기금사업은 39.0% 감소하였다. 한편, 사업 수는 302개에서 282개로 20개(△6.6%) 감소하였는데,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가 214개에서 206개로 8개 감소하였으며, 기금사업 수가 88개에서 76개로 12개 감소하였다.

[2024년 성인지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중앙관서 수		38	40	2	5.3
회계	예산	92,122	95,854	3,732	4.1
	사업수	214	206	△8	△3.7
기금	예산	239,696	146,112	△93,584	△39.0
	사업수	88	76	△12	△13.6
합계	예산	331,818	241,966	△89,852	△27.1
	사업수	302	282	△20	△6.6

주: 2023년도 현황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관해서는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13]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은 이러한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국가재정법」제27조 및 제68조의3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이 포함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되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서 포함)의 대상사업은 16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94개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2억원 감소하였다. 다만, 감축사업 예산[14] 기준으로는 2024년도 예산안이 10조 887억원으로 2023년도 9조 9,130억원 대비 1,757억원 증액되었다.

13)「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 중에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회 계	예 산	59,465	66,371	6,906	11.6
	(감축예산)	(57,005)	(60,360)	(3,355)	(5.9)
	사업 수	95	122	27	28.4
기 금[1)]	예 산	59,363	42,405	△16,958	△28.6
	(감축예산)	(42,125)	(40,527)	(△1,598)	(△3.8)
	사업 수	193	172	△21	△10.9
합 계	예 산	118,828	108,776	△10,052	△8.5
	(감축예산)	(99,130)	(100,887)	(1,757)	(1.8)
	사업 수	288	294	6	2.1

주: 1) 2023년도 기금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관해서는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마.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공표하는 것으로, 조세지출의 항목별로 예산 분류기준(분야-부문)의 직전연도 실적금액(신고기준) - 해당연도 전망금액 - 다음연도 전망금액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1999~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77.1조원(국세감면율 16.3%)으로, 2023년 전망(69.5조원, 국세감면율 13.9%) 대비 7.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4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635,484	100.0	694,988	100.0	771,144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338,432	53.3	365,066	52.5	425,471	55.2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292,353	46.0	325,689	46.9	341,055	44.2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699	0.7	4,233	0.6	4,618	0.6
국세수입총액[1] (B)	4,229,237		4,286,370		3,949,465	
국세감면율 [A/(A+B)]	13.0		13.9		16.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6		14.3		14.0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정부 작성 결산 기준(결산 작성 전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안 기준 국세 세입예산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의 주요 내용 및 분석은 「2024년도 재정총량분석 Ⅰ」 보고서 중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바.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국유재산특례지출[15]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하는 보고서이다.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16] 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16년도 예산안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재정법」[17]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 특례를 운용할 수 없다. 2023년 8월말 기준 182개 법률에서 216개 조항을 국유재산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이다.

[국유재산 특례규정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9	2020	2021	2023
법 률	170	172 (+2)	170 (+1,△3)	175 (+5)	176 (+1)	177 (+1)	184 (+8,△1)	182 (+8,△10)	182 (-)
조 항	195	198 (+3)	197 (+2,△3)	204 (+7)	206 (+2)	207 (+1)	218 (+12,△1)	216 (+9,△11)	216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4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024년 국유재산특례지출 규모는 1조 329억원으로, 2023년 전망치 1조 2,210억원 대비 154.% 감소하였다. 이는 양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의미한다.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여규모가 99.7%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세종시에의 지방공공시설 양여 규모가 1,205억원에서 2024년 0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2~2024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실적)	2023년(전망) (A)	2024년(계획) (B)	증 감	
				B-A	(B-A)/A
특례 총지출	761,062	1,220,973	1,032,887	△188,086	△15.4
사용료 감면	755,595	1,042,022	1,032,337	△9,685	△0.9
양 여	5,466	178,951	550	△178,401	△99.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Ⅱ. 2024년도 예산안 총평

1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역할 제고를 위한 재원 재배분 방안 검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도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대폭 축소된 R&D사업, 투자 활성화 및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을 통해 2023년과 2024년 GDP 성장률을 각각 1.1%, 2.0%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망(2023년 2.1%, 2024년 2.3%)에 비해 각각 1.0%p, 0.3%p 하향 조정된 것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글로벌 교역 둔화의 여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약해졌고,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겠으나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 등의 지출 축소 우려가 성장률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년의 경우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2.8%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되고 의무지출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기존 전망 대비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1%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23년은 1990년 이후 IMF 외환위기(1998년, △5.1%),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 코로나19 경제위기(2020년, △0.7%) 다음으로 가장 경제성장률이 낮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1] 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민간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고 경기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1998, 2009, 2020년 다음으로 성장률이 낮았던 해는 2019년으로 2.2%를 기록하였다.

[2022~2024년 국내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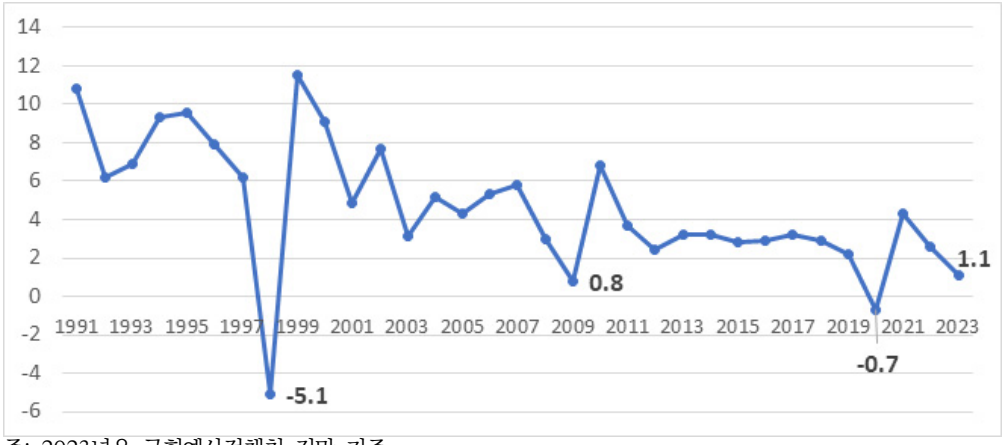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2022	2023	2024
국내총생산(전년대비)	2.6	1.1	2.0
경상수지(억달러)	298	280	360
취업자증감(만명)	81.6	32.9	23.7
실업률	2.9	2.7	3.0
소비자물가	5.1	3.4	2.4
GDP디플레이터	1.3	1.1	2.2
명목국내총생산	3.9	2.2	4.2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국고채금리는 연중 평균
2. 2023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991~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단위: %)



주: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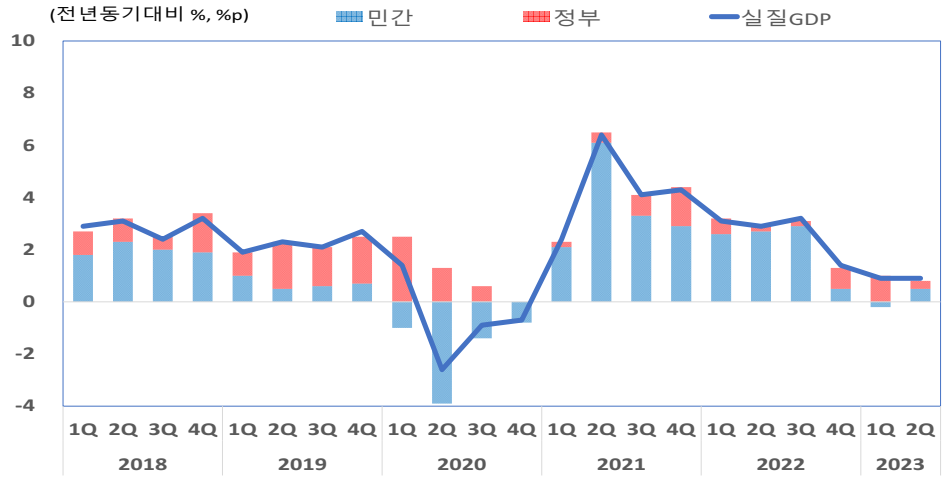
그런데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는 2019년 723.2조원(GDP 대비 37.6%)에서 2022년 말 1,067.4조원(GDP 대비 49.4%)로 급증하였다. IMF 등 국제기구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 축소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채무 증가폭을 축소하며,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 국가채무 GDP 대비 60% 한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하여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2)]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동력 확충 등 재정 본연의 역할에 비해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의 경우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6%로 억제하고 총지출을 2022년 결산(682.4조원) 대비 43.7조원 축소된 638.7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적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경제전망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실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쳤다.

[지출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 정부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예산 불용(약 23조원)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바, 재정이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따라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예산(△2.6%) 대비 1.3%p 하락한 △3.9%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올해의 경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저성장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재정 지출은 계획대비 오히려 축소되어 재정 본연의 경기침체 대응 및 경제 안정화 역할이 제약되고 있으며 재정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세수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에 이를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더욱이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 전망 대비 경상성장률 및 재정수입 전망 차이 등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폭이 △4.3%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산안 내용적으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된 반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투자유보액이 충분한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등 효과성이 저조한 사업,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재배분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D 분야의 경우 정상 추진 중임에도 면밀한 평가 없이 일괄 감액된 계속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국방첨단전력기술개발,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투자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가. 재정준칙의 이행가능성 및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024년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가 정부 재정준칙안에 따른 적자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향후에도 상당 기간 재정수지 적자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 준칙안의 이행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칙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올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도 적용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등 재정준칙안의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기업 영업실적 부진 및 부동산 거래규모 축소 등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024년의 경우도 정부는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400.5조원) 대비 33.1조원(9.0%) 감소한 367.4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총지출 증가 억제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3.9%에 이를 것으로 계획되어 정부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GDP 대비 △3%)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바,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하여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NABO 재정전망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행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증가 규모를 NABO 전망 대비 낮게 계획하고 있다. 일례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45.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의무지출 항목(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을 2024~2027년 중 동일한 금액으로 계획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재량지출도 NABO 재정전망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를 동결시켰으나 정부는 2025~2027년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2025년 0.8%, 2026년 1.9%, 2027년 2.0%)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13~2022년 7%, 2013~2019년 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둘째, 정부는 2025년 명확한 근거 없이 세외수입을 일시적으로 증액하였으며 NABO 재정전망 대비 높은 경상성장률을 적용하여 총수입도 NABO 전망에 비해 높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시켜 사실상 실질가치를 2024년 예산안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정부 계획과 달리 2026년까지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에 따른 재정총량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증가율)		(△2.2)	(8.1)	(4.6)	(4.4)
	- 국세수입	400.5	367.4	401.3	423.2	444.9
	총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증가율)	5.1	2.8	4.2	3.9	3.6
	-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증가율)		(2.3)	(7.2)	(5.5)	(4.9)
	-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증가율)		(3.5)	(0.8)	(1.9)	(2.0)
	관리재정수지	**△58.2**	**△92.0**	**△72.2**	**△69.5**	**△65.8**
	(GDP 대비)	**(△2.6)**	**(△3.9)**	**(△2.9)**	**(△2.7)**	**(△2.5)**
NABO 재정전망	총수입	571.2	604.5	649.4	683.4	716.8
	(증가율)		(5.8)	(7.4)	(5.2)	(4.9)
	- 국세수입	340.3	361.4	390.4	416.6	438.8
	총지출	607.6	655.2	689.3	724.2	756.6
	(증가율)		(7.8)	(5.2)	(5.1)	(4.5)
	- 의무지출	321.3	346.5	373.8	401.8	427.4
	(증가율)		(7.8)	(7.9)	(7.5)	(6.4)
	- 재량지출	286.2	308.7	315.5	322.4	329.2
	(증가율)		(7.9)	(2.2)	(2.2)	(2.1)
	관리재정수지	**△86.2**	**△99.9**	**△85.7**	**△83.3**	**△79.1**
	(GDP 대비)	**(△3.9)**	**(△4.3)**	**(△3.5)**	**(△3.3)**	**(△3.0)**

주: 경상성장률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경상GDP를 통해 산출

자료: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제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25년부터 관리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재정준칙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우려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의 경기 대응성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경제 여건 변화 및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준칙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올해와 같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수정·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

실제 IMF는 2023년 보고서[5)]에서 재정 위험을 고려하여 수립된,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① 경제 위기 등 경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② 투명한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IMF에서 제시한 유럽 재정준칙 개선안을 살펴보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른 국가채무(60%) 및 재정수지 적자 한도(△3%) 비율을 유지하되,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6)]을 통해 재정위험을 고려, 부채 수준에 따라 더 유연한 재정운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여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0월말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정준칙 운용과 함께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재정관리 로드맵이 공표될 경우 재정의 장기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조속히 수립·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4) IMF의 권고와 같이 재정준칙을 단년도가 아닌 중기 한도로 설정하고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IMF, Reforming Fiscal Rules post-Covid, 2023.5.

6) 일례로 EU는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기법을 통해 각 회원국의 부채 증가요인을 기초재정수지, 이자지출, 저량-유량 조정분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 요소 간 규모 및 비중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나. 대규모 초과세수 및 세수결손 발생 등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제도 도입 검토

올해와 같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라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초과세수 예상액을 활용한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세입 증액 경정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 여력 확충 및 재정지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 등에 최소의무비율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여 왔다. 실제 최근 10회계연도(2013~2022) 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최소의무비율만이 사용된 후 잔여재원을 대부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는바, 해당 기간 중 세계잉여금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 비중은 21.4%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된 해는 2014년과 2023년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사용내역			
		지방교부세등 정산	국가채무 상환[1)]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13(2014년 사용)	812	-	414	-	398
2014(2015년 사용)	964	-	491	472	-
2015(2016년 사용)	25,277	-	12,891	12,386	-
2016(2017년 사용)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2018년 사용)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2019년 사용)	106,575	105,292	654	629	-
2019(2020년 사용)	619	619	-	-	-
2020(2021년 사용)	57,193	22,653	17,615	16,924	-
2021(2022년 사용)	179,949	113,382	33,949	32,618	-
2022(2023년 사용)	60,248	4,103	28,633		27,511
계	592,979	343,902	127,027	94,138	27,909
(비 중)	100.0	58.0	21.4	15.9	4.7

주: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을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본예산 대비 각각 61.3조원, 52.6조원 규모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당 연도 중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증액 경정을 통해 대부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다.[7][8] 당시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악화가 수반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재정운용방향 하에 올해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고 이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이러한 재정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의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야기한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였다가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충격 발생 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 재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9]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규정

7) 세입 증액 경정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 규모는 2021년 제2회 31.5조원, 2022년 제2회 53.3조원 등이다.

8)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2023.8.)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초과세수가 1%p 증가할 때 추경예산 규모가 0.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9)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중 관련 내용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을 개정하여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상환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정산 →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잔여금액 30% 이상) → ③ 채무상환 (잔여금액 30% 이상) → ④ 추경편성 → ⑤ 다음연도 세입 이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아울러 세계잉여금과 유사하게 세입 증액경정을 통한 추경 편성 시 해당 증액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호조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이용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이 경기 동행적으로 운영되어 재정지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재정의 경제 안정화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3 R&D 예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안 심의 방향 모색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정 규모와, 신규 R&D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시급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R&D 예산의 실질적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R&D 분야를 중점 정비 분야의 하나로 정하여 2023년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감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한 반면 나눠먹기식 소규모 R&D사업이 난립하였고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보였다는 문제의식 하에 비효율적 R&D는 구조조정하고 이에 대규모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 등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R&D 투자방향 전환 및 그에 따른 예산 합리화 기조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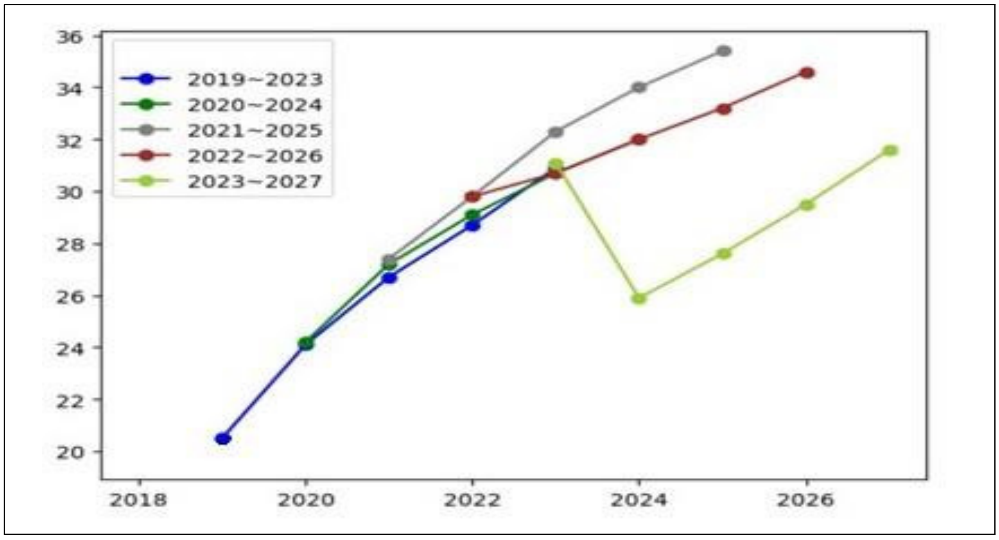
첫째, 2024년도 예산안에서 보여준 정부의 R&D 예산 합리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그간 정부가 수립하였던 중장기적 지출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2020년에 수립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R&D 지출계획을 32.0조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후 2021년 및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각각 34.0조원, 32.0조원으로 계획하였는바, R&D 분야에 대한 일관적인 투자방향 및 지출계획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3년에 수립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4년 지출계획을 23.9조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최근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여준 2024년 R&D 분야 지출계획과 일관성이 떨

어진다.

[2019~2023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R&D 분야 지출 계획 변화]

(단위: 조원)



주: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 따르면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어려운 재정여건과 그간의 투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2023~2027년 동안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간 R&D 지출을 총 145.7조원으로 하고 있어 R&D 정책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정부가 R&D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 R&D 투자 방향에 대한 합일된 목표 및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 내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목표나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R&D 분류기준 측면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전에 분류기준을 변경하

여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제되어 있고,[10], 기획재정부가 제공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은 연구목적이 명확한 경우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계수를 적용하여 R&D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 개정 및 지침 변경 없이 R&D 예산 범위에서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을 제외한 것은 R&D 분야에 대해 숙고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각 부처로부터 조사한 R&D 예산안 편성 내역에 따르면, 2023년 R&D 사업 중 2024년 종료되거나 통폐합된 세부사업은 총 267개 사업이며, 이 중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기종료된 사업 16개 중 R&D 정책방향 및 환경변화, 재정여건 등에 따른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종료된 사업은 13개 사업이다. 특히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소방청),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 기술개발(산림청) 사업은 2022년에,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2023년에 착수된 사업으로 사업 착수 1~2년만에 종료되는 사업이 나타났는바, 이는 R&D 사업의 기획이 미비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획 대비 조기 종료할 경우 이미 투입된 투자비용이 사업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매몰비용으로 전락하게 되어 재정 낭비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1,486개의 계속사업 중 54.7%인 813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하고,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 이르고 있다. 게다가 감액된 사업 중 완성도 높은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감액된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도 있는 등 감액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한 R&D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계속사업의 예산이 감소하게 되면 R&D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2024년도 각 R&D 사업간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기존 투자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그간 예산 지원을 통해 개발·구축된 장비나 연구 인프라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도 있다.

또한 사업의 중장기적 연속성을 고려하면 2024년 예산의 축소가 2025년 이후 부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감액된 사업 중 일부는 연구비 지급을 2025년 이후로 순연할 계획이므로 2025년 이후 R&D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는 또 추후 R&D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정부의 집중 투자 대상인 신규 R&D 예산안 편성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예산안 중 플래그십·도전형 R&D 사업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안에 편성된 상황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의 총사업비는 10년간 1조 9,314억원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이행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R&D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으나,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에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증액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 하에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R&D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동력으로서의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R&D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정규모와, 신규 R&D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시급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중복되거나 불급한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R&D 예산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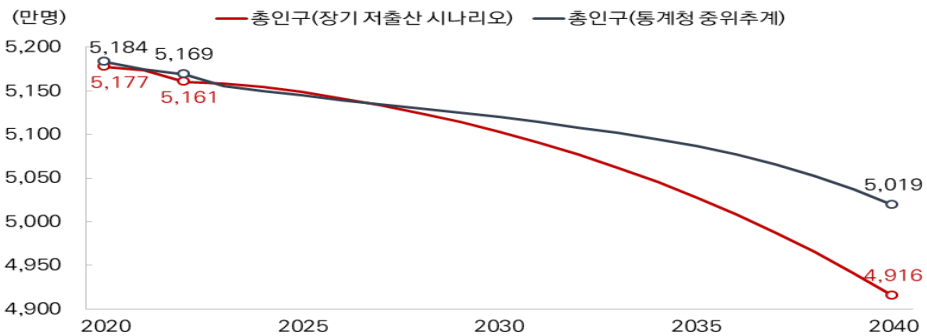
4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1)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

2070년 총인구수는 정점(2020년 5,184만명) 대비 1,418만명(27.4%) 감소한 3,766만명으로 전망되며, ①인구변화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부문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②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③장기 재정전망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 총인구수는 통계청(2021)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의 73% 수준인 3,766만명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정점이었으므로 50년만에 인구규모가 27.4%인 1,418만명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 출산율 하락 추세가 쉽게 반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2020~2040년)'를 통해 보완적인 인구 시나리오로 저출산의 중장기 영향을 검토하였다.[1] 2040년 총인구 추계를 비교하면, 통계청(2021)은 5,019만명을,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는 4,916만명을 전망하였다.

[총인구 추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1) 통계청 중위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에 저점(0.70명)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여 2046년 이후 1.21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을 가정하며,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는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0명에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의 4대 의무(교육, 국방, 근로, 납세)별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22년 21.1명에서 2040년 10.0명으로 11.1명(52.6%)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 국방의 경우 20세 남성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0년 18.6만명에서 2040년 10.1만명으로 8.5만명(4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3]

근로의 경우, 취업자수 감소 및 취업자 중 고령인구 비중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70년 취업자수는 2022년 대비 약 945.2만명 감소하여 2022년 66.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에는 고령층의 비중이 3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 경우 고령인구부양률 증가로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인구부양률[4]은 2022년 24.59%에서 2070년 100.61%로 증가될 전망이다.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구분	주요 내용
교육	• 학급당 학생수(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 (2022) 21.1명→ (2040) 10.0명 [52.6% 감소]
국방	• 신규 병력자원 규모(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 (2022) 18.6만명→ (2040) 10.1만명 [45.7% 감소]
근로	• 취업자수: (2022) 2,809만명 → (2070) 1,864만명 [33.6% 감소] • 취업자 중 고령인구 비중: (2022) 11.6% → (2070) 32.2% [2.78배]
납세	• 고령인구부양률: (2022) 24.59% → (2070) 100.61% [4.09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인구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GDP를 결정하는 생산함수를 인구

2)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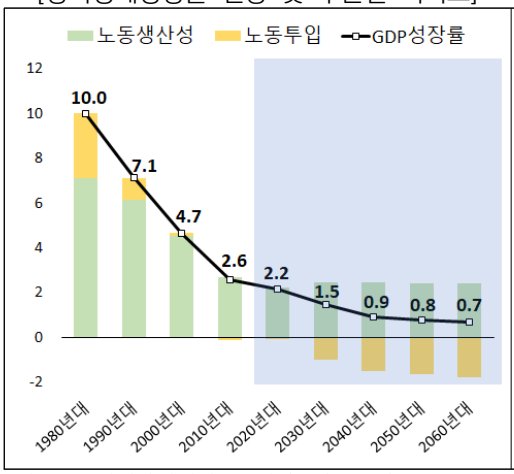
3)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 2030년 및 2040년의 남자 출생아 수가 20년 뒤인 2040년, 2050년 2060년의 20세 남자 인구수로 유지된다는 가정과 2021년의 20세 남자 인구 대비 징집병 및 모집영역 신규 입영자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것이다.

4)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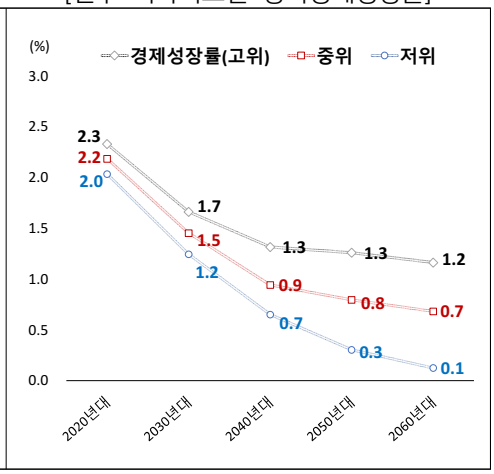
를 중심으로 설정하고[5], 향후 우리 경제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경제성장률을 도출해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 하락하여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인구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0.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 빠른 인구변화로 인한 장기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및 부문별 기여도]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경제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NABO 장기재정 전망과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0조원에서 2070년 458.7조원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중 4.0%에서 12.4%로 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5) GDP는 생산성,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인구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6) 장래 인구구조가 통계청의 중위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이에 근거한 경제전망의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전망한 결과이다.

[NABO 장기 재정전망(중위)]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2.4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총지출	689.9	739.6	905.8	1,073.0	1,215.8	1,341.9	1.4	3.1
(GDP 대비 비율)	(31.8)	(29.0)	(31.0)	(33.1)	(34.8)	(36.2)		
통합재정수지	-86.0	-50.8	-130.5	-267.4	-384.8	-458.7		
(GDP 대비 비율)	(-4.0)	(-2.0)	(-4.5)	(-8.2)	(-11.0)	(-12.4)		
관리재정수지	-127.0	-111.0	-147.3	-183.3	-217.2	-249.6		
(GDP 대비 비율)	(-5.8)	(-4.3)	(-5.0)	(-5.7)	(-6.2)	(-6.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한편, 인구추계 가정을 저위로 할 경우 거시경제변수가 중위와 다른 추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도 달라진다. 저위·중위·고위 인구 시나리오별로 재정전망을 수행해보면 인구가 재정의 주요 리스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저위 가정의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192.6%) 보다 10.4%p 높은 203.1%로, 인구변동요인의 가정이 저위 수준으로 실현될 경우 중위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인구 저위 기준	1,068.8	1,833.2	2,867.2	4,025.2	5,272.0	6,557.9	3.9	5.4
(GDP 대비 비율)	(49.3)	(72.8)	(101.3)	(131.8)	(165.9)	(203.1)		
인구 중위 기준	1,068.8	1,842.6	2,939.1	4,215.1	5,624.7	7,137.6	4.0	5.7
(GDP 대비 비율)	(49.2)	(72.1)	(100.7)	(130.0)	(161.0)	(192.6)		
인구 고위 기준	1,068.8	1,859.6	3,042.6	4,482.3	6,142.4	8,008.6	4.3	6.1
(GDP 대비 비율)	(49.1)	(71.8)	(99.8)	(127.3)	(155.8)	(183.9)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2) 주요 분야별 대응전략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22.12)」을 수립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인구구조정책 측면에서 ①저출산 대응 정책과 ②이민정책,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③첨단기술 육성 정책과 ④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저출산 대응 정책

첫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는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과 동시에 그 감소 추이가 가장 빠르며, 지속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 및 예산 확대(2006년 2.1조원→2023년 48.2조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23년 2/4분기 0.70명)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1999년 1.50명→2021년 1.67명)의 경우 전 국민 대상 부모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독일(1994년 1.24명→2020년 1.53명)의 경우 초등 전일제 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돌봄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1993년 1.65명→2021년 1.80명)의 경우 다양한 가족수당(현금지원)과 소득세 가족계수[7]를 도입하는 등 가족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가족수당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반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월 150만원) 조정 등을 통해 소득보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사각지대(고용보험 미가입자, 육아휴직 비대상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일제 초등돌봄 지원 서비스인 늘봄학교[8]는 방과 후의 통합적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안정

7) 소득세 부과 시 개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대신 가족계수(La Quatient Familial)를 바탕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8)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 및 돌봄(Educare)통합 서비스를 의미하며,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은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사교육비는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녀 수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세제지원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이민 정책

첫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조정기제가 없어 정책 간 칸막이,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력·다문화가족·사회통합 정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1.4만명 중 전문인력의 비중은 12.4%(6.4만명)이고 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보고서(GTCI)[9] 순위에서 OECD 38개국 중 한국은 25위로 중하위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민정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개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현행 비자체계의 소득·학력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 가족초청 불가 등의 권리침해 요소가 문제되고 있고 농가의 미등록 외국인 고용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단순기능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및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제도(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2년 유학생 수는 16.7만명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할 계획인데, 높은 불법체류자 비율(15.7%),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 파악 미흡, 한국 정주비율 저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학생 관리 강화 및 한국어 교육 강화,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유학생은 유치하고 불법체류자 비율은 감소시킬 필

9) 「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보고서(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GTCI)」는 유럽 경영대학원에서 국가별 인재 양성, 유치 및 유지 등 인적자원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측정·수록하여, 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평가하고 관련 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요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전후 다문화수용성 지수[10]가 낮아지고 있고(2018년 52.8점 → 2021년 52.3점),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배제 인식(2018년 5.7% → 2022년 10.0%[11])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민정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확장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해외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의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③ 첨단기술 육성 정책

첫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요국과의 첨단기술 경쟁환경, 기술수준·격차,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①인공지능, ②우주개발, ③로봇 분야의 집중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

둘째, 인공지능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최고국(미국) 대비 89.1%, 기술격차는 1.3년으로, 국내 초거대 AI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어 데이터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 투자와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우주개발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최고국(미국) 대비 60.0%, 기술격차는 18년으로, 우주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항우연의 발사체 개발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전 받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발사체 제작과 발사 비용을 낮춰 상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발사체 재사용, 3D 프린팅, 소형발사체 등의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로봇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최고국(EU) 대비 80%, 기술격차는 3.0년으로, 국내 로봇 산업은 부품 국산화율과 생산역량이 취약하므로[13] 정부는 로

10) 여성가족부는 사회통합 및 다문화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및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1)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 인공지능, 로봇은 모든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에서 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등 국가 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우주개발은 높은 성장잠재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낮은 기술수준 격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봇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기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성·범용성·가격경쟁력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협동로봇[14]과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로봇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첨단기술 지원 정책은 'Fast Follower'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First Mover' 관점에서 민간주도 민관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일부 첨단기술 분야는 대기업 주도형 기술개발로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15]

여섯째, 첨단기술 클러스터는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고급인력 등의 혁신주체가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 정주여건, 문화환경 등을 강화한 도심형 클러스터[16]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④ 인재양성 정책

첫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 이후 수립되지 않고 있고, 인재양성 관련 정책조정 및 투자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007년 이후 운영되고 있지 않는 등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갖춘 범부처 인재양성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인재의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와 예산도 교육부와 고용부 등 주관부처에 따라 다르게 집계되고[17] 있으므로, 인재 양성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인재양성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양질의

13) 국내 로봇 기업체 대부분(98.7%)이 중소기업이고 로봇 전체 국산화율은 43.2% 수준이다.

14) 협동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으로 안전성, 높은 범용성, 편리한 작동법 및 낮은 가격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제조업을 비롯해 식음료업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15) 다만, 민간주도의 민관협력 기술개발 체계, 대기업 주도의 산-산 기술개발 협력체계 방식이 일부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지원되어 불공정한 시장독점, 기술개발성과 배분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사업지원 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6) 도심형 클러스터는 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위치한 클러스터로 도시 외곽(유휴부지)에 조성한 기존 클러스터보다 정주여건, 문화환경이 잘 조성되어 젊은 전문인력 유입, 스타트업 창업에 유리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사례: 미국 실리콘밸리·보스톤, 영국 런던 테크시티, 국내 판교 테크노밸리 등)

17) 2022년 기준으로 교육부의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는 인재양성 사업 및 예산을 12개 부처 128개 사업 11.7조원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비해, 고용노동부의 「중앙부처 인력양성 사업 실태조사」에서는 29개 부처 354개 사업 4.7조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보고서(GTCI)에서 우리나라는 2018~2022년 OECD 국가 중 23~25위로 하위권이고, 세부항목 분석결과 고급 외국인력 유입, 직업-교육 간 일치도 등 인재유입을 위한 개방성 및 직업훈련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 미비점을 파악·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경우 고용부, 산업부 등 기관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기간, 대상 및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18], 첨단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도출·조율·공유하고 부처간 전주기별 역할분담 및 연계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안

인구위기는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현행 체제로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서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이민정책의 경우 외국인력·다문화가족·사회통합 정책 등을 아울러야 하는데, 출입국 규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법무부 내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양성의 경우, 교육부는 대학·학위 위주의 사업,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위주의 사업, 과기부와 산업부는 과학기술과 신산업 분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별 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전주기적 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고,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관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수급 전망의 경우 산업부에서는 2021~2030년 0.3만명의 과다공급을 전망하고 있는데 비해, 고용부에서는 2023~2027년 0.8만명의 과소공급을 전망하고 있다.

Ⅲ.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내용

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1-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보도자료」(2023. 8.)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에 두고 4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중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위해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을 세부 방향으로 설정하고 핵심과제는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이 선정되었다.

다음 중점 투자방향인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는 '창의·혁신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을 세부방향으로 추진하고,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을 핵심과제로 두고 있다.

다음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활성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지원,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를 과제로 설정하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였다.

마지막으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역할 수행'의 세부과제인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국격에 맞는 ODA 확대로 국익 창출,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및 주요 내용]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47.9→53.6조원)	◦ 생계급여 +13.2%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확대(+14.7만개), 수당 인상(2~4만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0.69→0.88조원)	◦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습·취업 지원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 재난적 의료비 산전방식 개편(질환별→인별)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12.8→15.6조원)	◦ NEET, 취업준비 청년, 빈일자리 등 대상별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 생활체감형 청년지원(K-Pass, 산리단길 프로젝트) ◦ 디딤씨앗통장 출생시부터 개설 및 소득기준 완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창의·혁신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화보 (6.3→7.0조원)	◦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 ◦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 강화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3.8→4.8조원)	◦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 중소·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지원 ◦ 자원 공급망 안전화, 원전 활성화, 신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안보 강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14.01→17.63조원)	◦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전세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분양·임대 지원 ◦ 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최대 12→18개월) ◦ 부모급여 확대(0세 70→100만원, 1세 35→50만원)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2.0 → 2.6조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적극 양성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해외인력 유치로 인력난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활성화 (5.1 → 6.5조원)	◦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1.8 → 2.4조원)	◦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기조 본격화 ◦ 국내기업 해외진출, 해외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글로벌 창업지원 강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8.5 → 10.5조원)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 전체계 구축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개막 및 청년농 맞춤형 지원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 (17.3 → 19.7조원)	◦ 장병 병영환경 전면 개선(녹물관사 개선, 얼음정수기 도입 등) ◦ 비대칭 전력 대응, 3축체계 구축 등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 ◦ 보훈보상금 연속 인상 등 일류보훈체계 구축
	공공질서 · 안전 시스템 강화 (9.25 → 12.0조원)	◦ 민생침해범죄(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대응 강화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디지털 기반 수해예방 인프라 고도화로 수해 안전지대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 역할 수행 (4.6 → 6.66조원)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4.5→6.5조원) ◦ 한국어 보급 인프라 강화, UN안보리 활동 등 글로벌 국제 협력 강화

자료: “2024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2024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가. 중점투자 ①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분석

(1)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정부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14.7만개)하고 수당도 6년 만에 2~4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보건복지부) 사업은 현재 동 사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등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아직 사업 인력 및 제공기관 선정기준 등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도 설정하지 않아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 제공기관 및 대상자 모집, 전담인력 배치 등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현행 12개월치 편성한 사업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보건복지부) 사업은 수요조사 대비 사업 물량을 9.4% 확대하였으므로 일자리 유형별 신청 추이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2020~2023년) 사업 중도 포기율이 평균 10.6%이고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1,40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일자리 유형별 중도포기 세부 사유를 파악하고 일자리 유형별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보완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석

(1)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정부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재편 과정에서 신규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보건복지부)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 9,3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보다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사항 및 결과가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6,161억원(국비 4,993.7억원, 지방비 1,165.8억원, 민자 1.5억원)으로 예상됨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2023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적정성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정부는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소·소상공인 에너지 효율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 공급망 안정화, 원전 활성화, 신 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효율향상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내역사업인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의 냉장고문달기 지원은 2023년 8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신규 추진한 이후 2023년 10월까지 목표 1만대 대비 70개 사업장에서 312대의 수요만이 발생하여 2024년 예산 대비 사업수요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수요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에너지사용 효율화 사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원전수출보증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기반 구축 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과다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인 **원전수출보증사업 · 원전기자재 선금보증보험지원 ·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낙관적 원전 수출 전망에 근거하여 편성되었거나 사고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증액편성된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2023년 10월 현재 건축설계 등을 위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건축심사 및 설계 과정에 따라 2024년 12월 센터 준공이 불투명하고,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사업 지연으로 예산의 실집행 이월이 있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석

(1)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해외 ·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 첨단서비스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 신규 사업 착수 전 추진 필요성 및 사업 효과

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은 1단계 기간 동안 77.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임상정보 데이터 및 검체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할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나 질환자의 임상정보·검체 수집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모집 전략 및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펀드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은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통해 10대 초격차 분야 중 하나로 모태펀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규로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결과 펀드 결성 적정 규모를 3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벤처캐피탈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부 출자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 구현(행정안전부)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원패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공공웹·앱에서 이미 다중 민간 ID와 디지털원패스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여 동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반해 보안성 약화,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확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발전체계 구축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하여 '지자체 + 민간 +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체계 구축, 직불금 시대 개막 및 청년농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면밀하지 못하여 사업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금융위원회) 사업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의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트랙"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투자대상에서 경기·인천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컬대학 지원(교육부) 사업은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식, 칸막이식 지원 방식 등 사업방식으로 인해 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글로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다.

공익기능증진직불(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할 수 있도록 조기에 농지를 이양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 신규 신청 농지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의 목표 면적규모(3,000ha)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목표 면적 및 예산 규모를 달성 가능한 정도로 조정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라.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분석

(1) 사기높은 군대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를 위하여 녹물관사 개선 등 장병 병영환경 전면 개선,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 보훈보상금 2년 연속 5% 인상 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사 및 간부숙소, 병인건비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으로 예산운용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효과성도 저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사 및 간부숙소(국방부) 사업의 경우 2023년 사업물량 및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동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으므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 그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병 인건비(국방부) 사업의 경우 병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방분야 예산 중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방위력개선비 확보 등 국방분야 예산 운용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분야 재원 배분의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군 초급간부, 사회복무요원, 공보의 등 국방 분야 인력운용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 분야의 안정적 인력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2) 공공질서·안전시스템 강화

정부는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며, 디지털 수해예방 인프라 고도화로 수해 안전지대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보건복지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이나, 지원 사업의 계획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집행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중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위험분석·발굴체계 운영(행정안전부) 사업은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범정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새로운 위험발굴 분석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위험발굴 주체를 변경하여 조사함으로써 기존 전담기관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조치하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굴·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시위험 발굴과 이를 통한 위험이슈분석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연구원, 기타 국책연구원들의 재난안전관련 연구센터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1-2개 자치단체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한 후 향후 해당 결과를 환류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다.

2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2-1. 세출·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1)]

가.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필요

SaaS 혁신펀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내 '성장지원펀드'의 일부 주요 투자 분야에 SaaS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aaS 분야에 투자 재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SaaS 혁신펀드의 신규 조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보안펀드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부터 지원 중인 '초격차 펀드', 2024년 예산안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초격차 분야와 지원대상 및 투자분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로 사이버보안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는 전년 대비 67% 증액된 76억원이 편성되고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두 사업은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통합하거나 차별화하여 연계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 업무와 재외동포청 업무 간 대상 및 사업 수행방식이 유사하여 중복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국토교통부) 사업은 공영차고지 등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및 부대시설을 갖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지원하는 것인데, 환경부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공영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별화를 통해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 예산에 관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참조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통일부) 사업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확산을 추진하는 것인데,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나. 집행가능성 미흡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기획재정부-환경부)의 내역사업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중 일부 사업대상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 진행 필요, 사업 재추진방향 검토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024년도 3차사업비가 반영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의 장비구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는 2025년에 착공 후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센터 건축 일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장비구축비는 센터 건축 일정에 맞추어 2025년 이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협력기반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내역사업의 2024년 계속과제 예산안에 편성된 과제 중 상대국 협의가 지연되어 2023년 불용이 예상되는 한-남아공, 한-스페인 협력과제의 2024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소방청) 사업은 VR훈련시스템을 소방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VR훈련시스템 설치대상 중 인천소방학교의 경우 이전 신축이 202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고용노동부)의 내역사업인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해당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6개월 이상 근속 시 각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2024년 9월까지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함

으로써 2025년도 지출분까지 계상하여 예산안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도 내 원인행위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환경부)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대수가 전년 대비 상향되고 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보급실적이 36%대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수소버스 실집행 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2024년도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2배 이상 상향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수소버스 보급 지원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사업은 매월 15만명이 신규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점인 2024년 3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의 78%인 14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기여금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업의 내용·대상·일정 등 사업계획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고용노동부) 내내역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내 니트 청년을 발굴하여 자조모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니트 예방 및 발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 제공,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 케어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데, 수혜 대상의 범위와 목표가 모호하고 사업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예산안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한 후 차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융합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고 2023년 내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공하고, 계획이 미흡할 경우 해당 재원을 감액 조정하여 재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불분명하거나 저조한 경우

수산물 비축사업(해양수산부)의 생산자가격 지지효과 및 소비자가격 안정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으므로 비축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교육부)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신규 도입한 유형인 '지자체 주도형'은 참여 지자체 및 대학 선정은 완료되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전략산업을 지원 분야로 선정하였으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협업하는 사업 특성상 컨소시엄 내 타 지역 혹은 수도권대학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취업 등의 측면에서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 주도형' 컨소시엄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 확인 이후에 신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산업기술국제협력(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므로 타당성 검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국방부) 중 2024년에 신규 편성된 간부숙소 사업 중 일부 사업은 국방중기계획[2]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등 당해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만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방예산의 편성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방중기계획에 이를 반영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타항만 재개발(해양수산부) 사업 중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의 필수 기반시설인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수준으로 증가(335억원→679억원)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한 협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보건복지부) 사업의 내역사업인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수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안에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분석되었다.

2)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3조(계획문서 종류)
1.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요구된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요구된 군 지휘구조, 부대의 창설·해체, 개편소요를 검토·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 복지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바. 사업 추진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상 해 수출지원,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므로 이외의 용도로 지원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므로, 동 목적에 부합하는 융자 대상을 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나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 및 범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2. 세입·수입의 적정성 분석

가. 세입·수입 추계의 부정확성

정부출자수입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정부출자기관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수입 예산안 규모를 적정하게 추산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 추계하였는바, 이와 같은 세입의 과다 계상은 세출의 확대 편성을 유발하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244.7조원으로, 전년(225.2조원) 대비 19.5조원(8.7%) 증가하였으며, 국세수입이 △8.3%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잇다. 주요 증가 항목은 사회보장기여금(+6.2조원) 외에 재산수입(+5.1조원), 경상이전수입(+4.7조원) 등이다.

[2024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세외수입(A+B+C)	221.5	225.2	244.7	19.5	8.7
- 사회보장기여금	83.4	86.1	92.3	6.2	7.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5	6.9	8.0	1.1	15.5
- 재산수입	47.2	36.6	41.6	5.1	13.8
- 경상이전수입	44.7	46.3	51.0	4.7	10.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3	12.3	13.2	0.9	7.6
- 수입대체경비수입	0.2	0.2	0.2	0.0	1.3
- 관유물매각대	3.0	3.9	3.8	△0.2	△3.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25.2	32.9	34.6	1.7	5.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 재산수입인 정부출자수입은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1조 9,508억원)과 유사 규모인 1조 9,753억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배당수입의 경우 정부출자기관 총 40개 중 배당여력이 있는 2024년도 정부배당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상하였다.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을 사례로 보면, 정부출자기업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한국토지주택공사 1조 4,414억원, 중소기업은행 2조 2,000억원 등으로 추정하여 3년간 평균 배당성향 및 6월말 출자비율로 추정 배당금을 산출하였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정부배당(안)]

(단위: 억원, %)

구분	기 관 명	추정 당기순이익	일반회계 배당금	배당성향	비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14,414	708	20.00	
2	중소기업은행	22,000	3,990	30.48	
3	한국산업은행	8,400	2,871	37.42	
4	한국주택금융공사	627	138	33.79	
5	한국수출입은행	5,330	1,407	36.58	
6	한국가스공사[1)]	3,352			
7	한국공항공사	△1,098			
8	부산항만공사	285	128	51.53	
9	한국자산관리공사	513	147	40.44	
10	울산항만공사	328	148	51.60	
11	인천항만공사	△425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0	14	35.48	
13	한국조폐공사	15	6	42.00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			
15	한국부동산원	78	15	39.72	
16	한국방송공사	0			
17	한국농어촌공사	181	59	32.76	
18	한국전력공사	△219,903			
19	한국관광공사	△197			
20	한국교육방송공사	△199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22	한국수자원공사	1,291	191	15.79	
23	한국석유공사	△2,646			
24	한국광해광업공단	2,299			이월결손금
25	한국철도공사	△4,354			
26	서울신문사	8			이월결손금
27	여수광양항만공사	31			이월결손금

(단위: 억원, %)

구분	기 관 명	추정 당기순이익	일반회계 배당금	배당성향	비고
28	한국해양진흥공사	662			지분법평가이익 제외 시 당기순이익 미발생
29	새만금개발공사	△13			
3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26			

주: 1) 내부유보(부채비율 완화 등 재무건전성 유지 필요)
* 추정 당기순이익은 기관 제출 연도말 전망치
** 배당성향은 3개년 평균 배당성향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국회에 재정관련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3년말 추정당기순이익을 1,039억원[3]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추정당기순이익을 △81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과소계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는 출자수입 산정이 면밀한 추계방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주요 정부출자기관의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억원)

기관명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산정근거(A)	중장기 재무관리계획(B)	B-A
한국토지주택공사	14,414	1,039	△13,375
한국주택금융공사	627	855	228
한국자산관리공사	513	△81	△594
한국농어촌공사	181	181	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즉, 세외세입 추계는 세출 규모와 연관되는 사안인바, 세입을 과다 계상할 경우 세출의 과다 편성을 유발하게 되며 세수 부족 상황을 심화시키므로, 정부배당수입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3. 1~6. 반기 순이익을 △1,2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세입·수입 누락 및 비목 오류 등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의 경우 2022회계연도부터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등이 수납되었음에도 2024년도 수입계획안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배출권 매각대금이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목으로 전환되었을 뿐, 보조금·융자금 및 각종 정산금액이 기타민간이자수입[4], 기타재산이자수입[5], 기타경상이전수입[6] 등의 수입목에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입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의 경우 전년도(2022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을 반영은 하였으나, 실제로 수납 처리하여야 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집행잔액 반납액)과 기타재산이자수입(집행잔액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아닌 전년도세계잉여금에 이를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해당 방식을 철회하고 종전과 같이 전전년도의 집행잔액만 전년도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는바, 2023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의 집행잔액 반납액을 적정 수준으로 추정하여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에 이를 계상할 필요가 있다.

다.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재검토 필요

무역보험기금(산업통상자원부)은 무역보험공급 확대 및 보험금 지급액 증가로 기금운용배수가 2023년 27.3배에서 2024년 28.5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23년 8월 기준 기금운용배수가 22.8배이므로 유효계약액 및 보험금지급액, 사고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통일부)은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사업비 신규 예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남북협력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연례적으로 4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자기금 이자상환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외 수입임

5)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세입·세출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이에 포함됨

6) 연체료 및 반환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회수, 급여환급금 등이 포함됨

Ⅳ. 재정총괄 분석

1 2024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1) 총수입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612.1조원으로 전년 예산(625.7조원) 대비 13.6조원(△2.2%) 감소하였다.

수입별로 보면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4조원으로 전년 예산(400.5조원) 대비 33.1조원(△8.3%) 감소하였으며,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44.7조원으로 전년 예산(225.2조원) 대비 19.5조원(8.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일반회계 356.2조원 및 특별회계 11.2조원으로 구성되며, 국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0조원, 특별회계 16.9조원 및 기금 216.8조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도 총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세수입(A)	395.9	400.5	367.4	△33.1	△8.3
- 예 산	395.9	400.5	367.4	△33.1	△8.3
일반회계	385.2	390.3	356.2	△34.1	△8.7
특별회계	10.8	10.2	11.2	1.0	9.7
국세외수입(B)	221.5	225.2	244.7	19.5	8.7
- 예 산	30.8	25.0	27.9	2.9	11.8
일반회계	16.3	9.7	11.0	1.3	13.6
특별회계	14.5	15.2	16.9	1.7	10.7
- 기 금	190.8	200.3	216.8	16.5	8.3
합 계(A+B)	617.4	625.7	612.1	△13.6	△2.2

주: 1.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여금
2.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효진 추계세제분석관(hjkim1991@assembly.go.kr, 6788-4654)
신헌태 추계세제분석관(heontshin@assembly.go.kr, 6788-4653)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2) 국세수입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4조원으로 전년 예산(400.5조원) 대비 33.1조원(△8.3%)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2023년도 본예산(390.3조원) 대비 34.1조원(△8.7%) 감소한 356.2조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1.2조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10.4조원) 대비 0.9조원(9.7%)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22 실적	2023		2024 예산안 (C)	예산 대비 (C-A)		정부전망 대비 (C-B)	
		예산 (A)	정부전망[1] (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95.9	400.5	341.4	367.4	△33.1	△8.3	26.0	7.6
- 일반회계	385.2	390.3	331.1	356.2	△34.1	△8.7	25.1	7.6
- 특별회계	10.8	10.2	10.3	11.2	1.0	9.7	0.9	8.9

주: 1) 2023년 9월 정부의 재추계 결과
1. 반올림에 따른 단수 조정 차이 존재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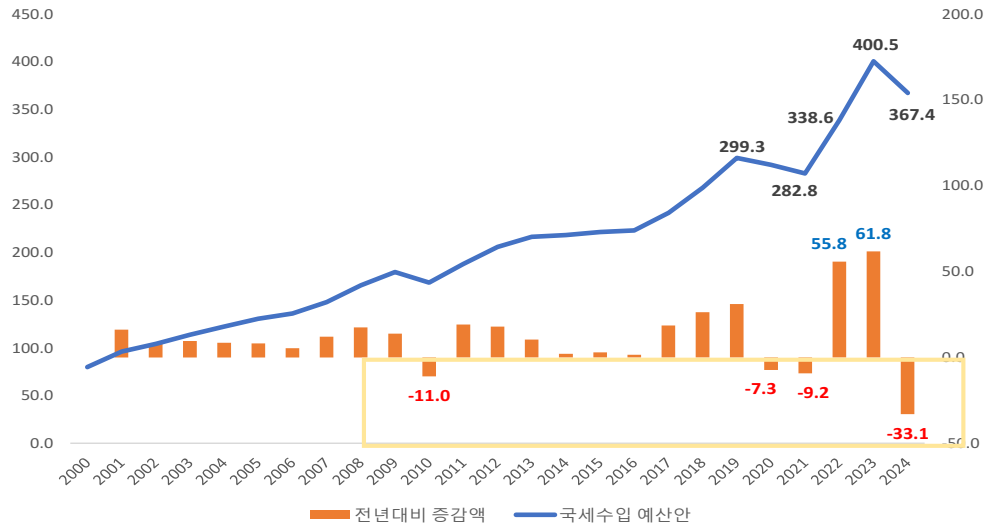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보다 33.1조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한 것은 금년 국세수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법인영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2022년 실적(395.9조원) 대비 54.6조원(△13.8%) 감소할 것으로 재추계[1]된 것에 기초한다.[2] 정부가 당해연도 국세수입 실적 부진 등으로 당해년도 본예산보다 다음연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낮게 편성한 사례는 2000년 이후 4번째로(2010년, 2021년, 2022년, 2024년), 그 중 2024년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1)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은 2022년 실적 대비 54.5조원(△13.8%) 감소하여, 본예산(400.5조원) 대비로는 59.1조원(△14.8%)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보도자료 참조, 2023.9.18.)

2)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와 세수오차 발생원인은 [BOX 1]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세수입 예산안 추이:2000~2024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하에서는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재추계) 대비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의 증감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367.4조원은 2023년 정부전망(341.4조원) 대비 26.0조원(7.6%)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세수가 증가하지만, 2023년 기업실적둔화 영향 등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2024년 소득세 예산안은 125.8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114.2조원) 대비 11.6조원(10.2%) 증액하였다. 이는 소득세 하위 세목 중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종합소득세 예산안은 23.1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21.1조원) 대비 1.9조원(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년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이연세수 기저효과[3] 해소로 2024년은 경상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자녀장려금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세수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021년 납부 예정이던 종합소득세액이 2022년으로 납부유예되었다.

근로소득세 예산안은 62.1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58.6조원) 대비 3.5조원(5.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용 및 임금의 안정적 증가 예상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전망이나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세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양도소득세 예산안은 22.4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17.5조원) 대비 4.9조원(28.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2023년 양도소득세가 2022년 실적(32.2조원) 대비 14.8조원(△45.8%) 감소한 후 주택시장의 완만한 가격조정 등으로 2024년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법인세 예산안은 77.7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79.6조원) 대비 2.0조원(△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 기업실적도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것에 기인하는데, 2022년 103.6조원 수준이던 법인세가 2024년 77.7조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부가가치세 예산안은 81.4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73.9조원) 대비 7.5조원(10.2%)을 증액하였다. 민간소비 회복과 함께 최근 급격히 인상됐던 지방소비세율 조정[4]이 종료됨에 따라 2024는 부가가치세는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타 세목 중 자산관련 세목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예산안은 14.7조원으로 2023년 정부전망(13.8조원) 대비 0.9조원(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개인 자산 축적에 따른 상속증여재산가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증권거래세 예산안은 2024년 증권거래세율 인하[5]로 인해 2023년 정부전망(6.5조원) 대비 1.1조원(△16.7%) 감소한 5.4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예산안은 4.1조원으로, 금년 부동산 가격 부진의 영향으로 2023년 정부전망(4.7조원) 대비 0.6조원(△1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타 세목 중 소비관련 세목을 살펴보면, 2023년 정부전망이 2022년 실적대비 감소했던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3년 정부전망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통관수입액 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소

4) 지방소비세율 추이(%): ('21) 21.0 ('22) 23.7 ('23) 25.3

5) 2024년 증권거래세율 조정: 코스피 0.05%→0.03%, 코스닥 0.2%→0.18%

비량 증가,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22 실적	2023		2024 예산안 (C)	예산 대비 (C-A)		정부전망 대비 (C-B)	
		예산 (A)	정부전망[1] (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395.9**	400.5	341.4	**367.4**	△33.1	△8.3	26.0	7.6
일반회계	**385.2**	390.3	331.1	**356.2**	△34.1	△8.7	25.1	7.6
내국세	**352.3**	358.0	303.1	**321.7**	△36.3	△10.1	18.6	6.1
1. 소득세	**128.7**	131.9	114.2	**125.8**	△6.0	△4.6	11.6	10.2
- 종합소득세	**23.9**	24.7	21.1	**23.1**	△1.7	△6.7	1.9	9.1
- 양도소득세	**32.2**	29.7	17.5	**22.4**	△7.3	△24.6	4.9	28.2
- 근로소득세	**57.4**	60.6	58.6	**62.1**	1.5	2.4	3.5	5.9
2. 법인세	**103.6**	105.0	79.6	**77.7**	△27.3	△26.0	△2.0	△2.5
3. 상속증여세	**14.6**	17.1	13.8	**14.7**	△2.5	△14.4	0.9	6.2
4. 부가가치세	**81.6**	83.2	73.9	**81.4**	△1.8	△2.2	7.5	10.2
5. 개별소비세	**9.3**	10.2	9.0	**10.2**	0.0	0.0	1.2	13.7
6. 증권거래세	**6.3**	5.0	6.5	**5.4**	0.4	8.2	△1.1	△16.7
7. 인 지 세	**0.8**	0.8	0.8	**0.9**	0.0	4.3	0.1	9.8
8. 과년도수입	**7.3**	4.8	5.4	**5.7**	0.9	18.9	0.3	5.5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15.3**	4.2	37.5	4.5	41.4
관세	**10.3**	10.7	7.3	**8.9**	△1.8	△16.9	1.6	22.7
교육세	**4.6**	4.7	5.2	**6.2**	1.5	31.1	0.9	17.9
종합부동산세	**6.8**	5.7	4.7	**4.1**	△1.6	△28.1	△0.6	△11.9
특별회계	**10.8**	10.2	10.3	**11.2**	1.0	9.7	0.9	8.9
주세	**3.8**	3.2	3.5	**3.6**	0.4	11.2	0.1	2.4
농어촌특별세	**7.0**	7.0	6.8	**7.6**	0.6	9.0	0.8	12.2

주: 1) 2023년 9월 정부의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정부는 금년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2023년 국세수입은 341.4조원으로 예상하였고,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1년에서 2022년 중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높은 초과세수(본예산 대비 2021년 61.3조원, 2022년 52.6조원)가 발생한 것과는 반대로 2023년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의 감소는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급감한 것과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주요 세목별 전망 결과와 전년 대비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11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5조원(△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소(△14.8조원)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법인세는 79.6조원으로, 전년 대비 24.0조원(△23.1%) 감소하여 국세수입 감소 원인에는 법인세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영업실적(상장사영업이익, 개별기준)이 2021년 119.7조원에서 2022년 81.7조원으로 감소(전년 대비 △31.8%)한 것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부가가치세는 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9.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민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관수입액 부진(8월기준 전년대비 12.1% 감소)과 함께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것의 영향이 컸다.

기타 세목 중에는 통관수입액의 감소 영향으로 관세의 감소(전년 대비 △3.1조원, △29.7%)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2.1조원(△3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22년 실적 대비		'23년 예산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95.9	400.5	341.4	△54.5	△13.8	△59.1	△14.8
[일반회계]	385.2	390.3	331.1	△54.0	△14.0	△59.1	△15.2
◇ 내 국 세	352.3	358.0	303.1	△49.2	△14.0	△54.8	△15.3
○ 소 득 세	128.7	131.9	114.2	△14.5	△11.3	△17.7	△13.4
■ 종 합 소 득 세	23.9	24.7	21.1	△2.8	△11.7	△3.6	△14.5
■ 양 도 소 득 세	32.2	29.7	17.5	△14.8	△45.8	△12.2	△41.2
■ 근 로 소 득 세	57.4	60.6	58.6	1.2	2.0	△2.0	△3.3
○ 법 인 세	103.6	105.0	79.6	△24.0	△23.1	△25.4	△24.2
○ 상 속 증 여 세	14.6	17.1	13.8	△0.8	△5.5	△3.3	△19.5
○ 부 가 가 치 세	81.6	83.2	73.9	△7.7	△9.5	△9.3	△11.2
○ 개 별 소 비 세	9.3	10.2	9.0	△0.3	△3.7	△1.2	△12.0
○ 증 권 거 래 세	6.3	5.0	6.5	0.2	2.5	1.5	29.9
○ 인 지 세	0.8	0.8	0.8	△0.0	△3.1	△0.0	△5.1
○ 과 년 도 수 입	7.3	4.8	5.4	△1.9	△26.2	0.6	12.7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3	△2.5	△0.3	△2.8
◇ 관 세	10.3	10.7	7.3	△3.1	△29.7	△3.5	△32.3
◇ 교 육 세	4.6	4.7	5.2	0.6	12.5	0.5	11.1
◇ 종합부동산세	6.8	5.7	4.7	△2.1	△31.4	△1.0	△18.3
[특별회계]	10.8	10.2	10.3	△0.5	△4.6	0.1	0.7
◇ 주 세	3.8	3.2	3.5	△0.3	△7.3	0.3	8.6
◇ 농어촌특별세	7.0	7.0	6.8	△0.2	△3.2	△0.2	△2.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3) 국세외수입

2024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44.7조원으로 전년 예산(225.2조원) 대비 19.5조원(8.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0조원으로 전년 예산(9.7조원) 대비 1.3조원(13.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9조원으로 전년 예산(15.2조원) 대비 1.7조원(10.7%)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216.8조원으로 전년 예산(200.3조원) 대비 16.5조원(8.3%) 증가하였다.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수입의 성질별로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은 92.3조원으로 전년 예산(86.1조원) 대비 6.2조원(7.2%) 증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8.0조원으로 전년 예산(6.9조원) 대비 1.1조원(15.5%) 증가, 재산수입은 41.6조원으로 전년 예산(36.6조원) 대비 5.1조원(13.8%) 증가, 경상이전수입은 51.0조원으로 전년 예산(46.3조원) 대비 4.7조원(10.1%)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13.2조원으로 전년 예산(12.3조원) 대비 0.9조원(7.6%) 증가, 관유물매각대는 3.8조원으로 전년 예산(3.9조원) 대비 0.2조원(△3.9%) 감소,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는 34.6조원으로 전년 예산(32.9조원) 대비 1.7조원(5.2%)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세외수입(A+B+C)	221.5	225.2	244.7	19.5	8.7
- 사회보장기여금	83.4	86.1	92.3	6.2	7.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5	6.9	8.0	1.1	15.5
- 재산수입	47.2	36.6	41.6	5.1	13.8
- 경상이전수입	44.7	46.3	51.0	4.7	10.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3	12.3	13.2	0.9	7.6
- 수입대체경비수입	0.2	0.2	0.2	0.0	1.3
- 관유물매각대	3.0	3.9	3.8	△0.2	△3.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25.2	32.9	34.6	1.7	5.2
일반회계(A)	16.3	9.7	11.0	1.3	13.6
- 재산수입	7.4	2.6	2.9	0.3	11.2
- 경상이전수입	7.8	5.7	6.7	1.1	18.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8	1.1	1.1	0.0	△3.0
- 수입대체경비수입	0.2	0.2	0.2	0.0	△1.6
- 관유물매각대	0.1	0.1	0.1	0.0	5.6
-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0.0	0.0	0.0	0.0	7.5
특별회계(B)	14.5	15.2	16.9	1.7	10.7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5	6.9	8.0	1.1	15.5
- 재산수입	0.3	0.3	0.9	0.6	206.4
- 경상이전수입	4.6	4.3	4.6	0.3	7.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	1.8	1.8	0.0	1.1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0.0	156.9
- 관유물매각대	0.6	1.1	0.8	△0.3	△28.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0.8	0.9	0.9	0.0	△5.2
기금(C)	190.8	200.3	216.8	16.5	8.3
- 사회보장기여금	83.4	86.1	92.3	6.2	7.2
- 재산수입	39.5	33.7	37.9	4.2	12.4
- 경상이전수입	32.2	36.4	39.6	3.3	9.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	9.4	10.3	0.9	10.0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0.0	0.0
- 관유물매각대	2.3	2.7	2.8	0.2	5.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24.3	32.0	33.8	1.8	5.5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수입의 성질별로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사회보장기여금[6] 예산안은 92.3조원으로 전년 예산(86.1조원) 대비 6.2조원(7.2%)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소득 증가와 반·추납[7]보험료 수입 예산 증액,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요건 완화[8]에 따른 월별보험료 수입 예산 증액으로 인한 것이다.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9] 예산안은 8.0조원으로 전년 예산(6.9조원) 대비 1.1조원(15.5%) 증가하였다. 이는 예금 잔액 증가와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라 우정사업수입 중 우체국예금의 운용 수입 예산이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재산수입[10] 예산안은 41.6조원으로 전년 예산(36.6조원) 대비 5.1조원(13.8%)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채권 및 주식 운용에 따른 수입, 대체투자에 따른 이자수입, 유가증권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예산안이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경상이전수입[11] 예산안은 51.0조원으로 전년 예산(46.3조원) 대비 4.7조원(10.1%) 증가하였다. 이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청산을 앞두고 잉여금 등 잔여재산의 일부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2024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 증가로 인해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방자치

6)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성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수입으로 구성된다.

7) 국민연금의 반·추납제도는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연금을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매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반납)하는 것을 허용하고, ②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미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추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으나, 2023년 7월부터 해당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9)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과 책임운영기관(총 13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을 말한다.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정사업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양곡사업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조달사업수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사업수입으로 구성된다.

10)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으로 구성된다.

11) 국가가 경상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수취하는 수입으로, 연금수입(공무원연금·군인연금기여금), 벌금,몰수금및과태료,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연금수입)이 증가한 점 등에 기인한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12] 예산안은 13.2조원으로 전년 예산(12.3조원) 대비 0.9조원(7.6%) 증가하였다. 이는 복권 판매와 토토·프로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잡수입 예산이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관유물매각대[13] 예산안은 3.8조원으로 전년 예산(3.9조원) 대비 0.2조원(△3.9%) 감소하였다. 이는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반환된 토지의 매각 대금 수입 감소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토지매각대가 감소한 점 등에 기인한다.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14]는 34.6조원으로 전년 예산(32.9조원) 대비 1.7조원(5.2%)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건설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주택구입·전세자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융자한 자금의 원금·이자 상환액이 증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정책자금의 회수 예정액이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12) 국가의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으로, 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입학금및수업료, 항공항만및용수수입, 실습수입, 잡수입으로 구성된다.

13)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고정자산매각대,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로 구성된다.

14) 국가로부터 자금을 융자·전대받은 차주 및 전대차주(차관사업수행자)에 대한 원금 회수 및 정부출자주식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융자원금회수, 전대차관원금회수, 정부출자주식매각대로 구성된다.

나. 2024년도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2024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604.6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612.1조원)을 7.5조원 하회하는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1조원(6.2%) 증가한 361.4조원으로 전망되며, 예산안을 6.0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2조원(5.3%) 증가한 243.2조원으로 전망되며, 예산안을 1.6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3		2024				
	본예산	NABO 전망(A)	예산안(B)	NABO 전망(C)	전년 대비(C-A)		예산안 대비 차이(C-B)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625.7	571.2	612.1	604.6	33.4	5.9	△7.5
국세수입	400.5	340.3	367.4	361.4	21.1	6.2	△6.0
국세외수입	225.2	230.9	244.7	243.2	12.2	5.3	△1.6

(2) 국세수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국세수입을 2023년 전망 대비 21.1조원(6.2%) 증가한 361.4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367.4조원)을 6.0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4년 국세수입은 361.4조원으로, 2023년 전망(340.3조원) 대비 21.1조원(6.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3년 세계경제 및 교역량의 둔화, 주요국의 긴축 통화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부진한 흐름이 2024년 대내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과 투자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세입여건이 개선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2023년 세수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367.4조원) 대비 6.0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3년 및 2024년의 경제지표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 국세수입을 정부보다 1.1조원 낮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4.8조원으로, 전년 대비 10.7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증가는 주로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사업소득의 완만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75.0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원(△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의 감소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법인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법인세 신고분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의 경우 법인 금융자산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81.1조원으로 전년 대비 6.7조원(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개선과 함께 2023년까지의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기저효과[15]도 일부 작용하여 2023년의 세수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세목은 대부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증권거래세율 인하(0.02%p)가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0.7조원(△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수납될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조원(△18.4%) 감소할 전망이다.

15) 2021년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21년 21%에서 '22년 23.7%, '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21.9.13.가결)과 「부가가치세법」개정안('21.12.2.가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4년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예산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증감액	전년 대비 (C-A) 증감률	예산안 대비 차이 (C-B)
국세수입	400.5	340.3	367.4	361.4	21.1	6.2	**△6.0**
일반회계	390.3	330.3	356.2	350.5	20.2	6.1	**△5.6**
내국세	358.0	302.3	321.7	316.7	14.4	4.8	**△5.0**
1. 소득세	131.9	114.2	125.8	124.8	10.7	9.3	**△1.0**
2. 법인세	105.0	79.1	77.7	75.0	△4.1	△5.2	**△2.7**
3. 상속증여세	17.1	13.7	14.7	14.0	0.3	2.2	**△0.6**
4. 부가가치세	83.2	74.4	81.4	81.1	6.7	9.1	**△0.3**
5. 개별소비세	10.2	8.9	10.2	10.1	1.2	12.9	**△0.1**
6. 증권거래세	5.0	5.8	5.4	5.2	△0.7	△11.7	**△0.2**
7. 인 지 세	0.8	0.8	0.9	0.9	0.1	11.8	**0.01**
8. 과년도수입	4.8	5.4	5.7	5.6	0.3	5.3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5.3	15.3	4.2	38.4	**△0.02**
관 세	10.7	7.1	8.9	8.7	1.6	22.1	**△0.2**
교 육 세	4.7	4.9	6.2	5.8	0.9	18.1	**△0.4**
종합부동산세	5.7	4.9	4.1	4.0	△0.9	△18.4	**△0.1**
특별회계	10.2	10.0	11.2	10.8	0.9	8.6	**△0.3**
주 세	3.2	3.4	3.6	3.5	0.1	2.6	**△0.1**
농 특 세	7.0	6.6	7.6	7.3	0.8	11.7	**△0.3**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3) 국세외수입

2024년도 국세외수입은 2023년 전망 대비 12.2조원(5.3%) 증가한 243.2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국세외수입(244.7조원)을 1.6조원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국세외수입은 243.2조원으로, 2023년 전망(230.9조원) 대비 12.2조원(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244.7조원) 대비로는 1.6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세외수입 변화는 세외수입의 감소에도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입, 기금의 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

회계 및 기금의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24년 27.1조원으로 정

부출자수입의 감소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토지매각대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0.3조원(△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안 대비로는 거시경제전망 등의 차이로 0.8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입,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216.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원(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차이 등으로 기금수입은 정부 예산안을 0.8조원 하회할 전망이다.

기금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2024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91.0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은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이전수입에 수납되는 2024년 공무원과 군인연금수입은 20.2조원으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증가와 퇴직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 2023년 전망 대비 1.7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타 기금수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귀속분 증가와 전기요금 판매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증가 등이 예상되어 2023년 전망 대비 7.2조원(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 국세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3		2024				
	본예산	NABO 전망(A)	예산안(B)	NABO 전망(C)	전년 대비(C-A) 증감액	전년 대비(C-A) 증감률	**예산안 대비 차이 (C-B)**
국세외수입	225.2	230.9	244.7	243.2	12.2	5.3	**△1.6**
세외수입	25.0	27.5	27.9	27.1	△0.3	△1.1	**△0.8**
기금수입	200.3	203.5	216.8	216.0	12.6	6.2	**△0.8**
사회보장기여금	86.1	87.4	92.3	91.0	3.7	4.2	**△1.3**
연금수입	18.5	18.5	20.3	20.2	1.7	9.3	**△0.1**
기 타	95.7	97.6	104.2	104.8	7.2	7.3	**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다. 분석의견

(1) 국세수입

최근 국세수입의 세수오차 확대가 재정운용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예산 편성에 있어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을 367.4조원으로 편성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국세수입을 이보다 낮은 361.4조원으로 전망하여 2024년에도 부족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전망오차(이하 '세수오차')가 예년대비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운용상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본예산 대비 각각 61.3조원, 52.6조원을 초과하는 전망오차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022년 법인 영업실적의 부진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전년에 높은 실적을 보였던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족세수가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 추이]

(단위: 조원, %)

세수오차 방향	연도	본예산 (A)	실적 (B)	세수오차(B-A)	
				오차액	오차율[1]
초과세수	2018	268.1	293.6	25.4	9.5
부족세수	2019	294.8	293.5	△1.3	△0.5
	2020	292.0	285.5	△6.5	△2.2
초과세수	2021	282.7	344.1	61.3	21.7
	2022	343.4	395.9	52.6	15.3
부족세수(예상)	2023	400.5	341.4[2]	△59.1	△14.7

주: 1) 세수오차율 = (오차액/예산)×100으로 계산
2) 2023년은 정부 재추계 결과(2023.9.)를 바탕으로 세수오차 규모를 산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금년 대규모 결손 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대규모 세수오차 반복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국세수입 실적 추이와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2023년 국세수입을 340.3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재추계치인 341.4조원 보다는 1.1조원 낮은 수준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경기하방요인이 확대될 경우 국세수입은 정부재추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대부분의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금년보다는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보다 정부의 전망이 높은 상황이다.

2024년 국세수입 세목별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비교하면, 법인세(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대비 +2.7조원) 와 소득세(+1.0조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에서 주로 전망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2023년 정부 전망(79.6조원) 대비 2.0조원 감소한 77.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전망[16](79.1조원) 대비 4.1조원 감소한 75.0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정부 예산안 대비로는 2.7조원(△3.5%)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3년 법인영업실적 전망에 대한 차이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상반기의 유가증권 상장법인 기준 세전순이익 감소세(전년동기 대비 △56.5%)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으나 상반기 법인영업실적의 부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2023년 영업이익 증감율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2023.10.12. 기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금년 주요 대기업 실적에 대한 증권사 컨센서스는 △14.8% 수준으로, 업종별로 전기전자(△86.4%[17]), 화학(△17.4%), 철강금속(△8.0%) 등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법인세 신고분이 2023년 전망 대비 5.6조원(△9.4%)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2023년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인세 신고분

16) 이하 '2023년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전망치를 의미한다.

17)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은 2.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9% 감소하였다.

을 2023년 정부 전망 대비 3.0조원(△5.1%)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2023년 정부 전망(114.2조원) 대비 11.6조원 증가한 125.8조원을 편성하였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전망(114.2조원) 대비 10.7조원 증가한 124.8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을 1.0조원(△0.8%)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득세에서의 전망 차이는 주로 양도소득세의 전망 차이(1.3조원)에서 기인한다.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월별 누적 거래량 추이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완화[18]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보다 2024년 소득여건 등 경제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산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회복세도 높게 전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전망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차이로 인하여 정부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 증권거래세(0.2조원), 종합부동산세(0.1조원) 등 자산관련 세목의 세수를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판단시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인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세수입의 실적이 예산안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요인이 발생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뿐만 아니라 기타 소비세수 및 자산세수에서도 정부의 전망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높은 국세수입 전망은 전제가 되는 2023년 및 2024년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정부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및 2024년 명목GDP 성장률을 각각 2.2%, 4.2%로 전망한데 반해, 정부는 각각 3.4%, 4.9%로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하였다. 양 기관의 명목GDP 성장률의 전망 차이는 교역조건의 변동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인다.[19]

18) 누적거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3.1.) 주택 △33.9, 토지 △48.8, ('23.8.) 주택 0.9, 토지 △23.2

19)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지출부문)」(2023.10.) 보고서의 p.43-44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의 안정세에도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로 2023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내수의 디플레이터 상승률보다 1%p 정도 낮게 전망하였다. 반면, 2024년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세를 반영하여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내수와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2024년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2 실적	2023 전망		2024 전망	
		정부	NABO	정부	NABO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3.9 (2.6)	3.4 (1.4)	2.2 (1.1)	4.9 (2.4)	4.2 (2.0)
민간소비증가율	4.1	2.5	2.4	2.2	2.2
설비투자증가율	△0.9	△1.2	0.6	2.5	4.5
건설투자증가율	△2.8	0.6	1.0	0.2	0.2
경상수지	298	230	280	450	360
통관수출증가율	6.1	△6.6	△9.6	8.8	7.2
통관수입증가율	18.9	△8.6	△10.5	3.0	5.7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3	3.4	2.3	2.4
취업자증감	82	32	33	18	24
명목임금상승률	4.9	2.9	2.9	3.8	3.0

주: GDP 구성요소의 증가율은 실질기준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4년 국세수입이 경기 하방요인의 확대로 인하여 금년에 이어 대규모 부족세수가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고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했던 부족세수가 나타날 경우 재정당국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보류, 불용 또는 차년도 이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출을 감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를 추가발행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주도하는 세출의 감액은 정부의 재량행위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정책이 경기진폭을 완화하여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경기대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지출은 경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거나 최소한 경기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로 발생한 부족세수가 재정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 재정지출이 경기동행적(pro-cyclical)인 경향을 갖게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정확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국세수입의 세목별 전망모형이 대부분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의 전망치를 변수로 활용함에 따라, 거시지표의 전망오차는 세수오차로 직결된다. 특히 세수는 경상가격에 기반하여 전망하므로 세수오차 감소를 위해서는 실질변수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나 GDP디플레이터 등 물가지표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외에도 개별 세목의 설명변수로 이용되는 민간소비, 수출입 등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국면이 전환되는 경우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시지표의 정확성과 함께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기변동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지 세입예산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구조적 경기변동이 발생할 경우 세입예산 확정 전까지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2022년간 정부 거시경제 전망 및 실적]

(단위: %)

	2020		2021		2022	
	편성시 (2019.10)	실적 (2020.12)	편성시 (2020.10)	실적 (2021.12)	편성시 (2021.10)	실적 (2022.12)
명목GDP 성장률	3.8	0.8	4.8	7.2	4.2	3.9
실질GDP 성장률	2.6	△0.7	3.6	4.3	3.0	2.6
GDP디플레이터	1.2	1.6	1.2	2.8	1.2	1.3
민간소비 증가율	2.5	△4.8	4.5	3.6	3.5	4.1
통관수출	2.1	△5.5	8.5	25.7	3.8	6.1
통관수입	2.0	△7.1	9.2	31.5	3.0	18.9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정부는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성과 함께 세입전망 모형의 방법론을 개선하고,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경기상황 및 정책변화에 따른 행태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망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세목별 시계열 회귀 전망모형 및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등은 과세자료의 평균 또는 합산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수입의 장기적인 균형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전환되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상황과 제도변화에 따라 개별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일 수 있음에 따라 단순히 평균이나 총량적인 지표가 아닌 개별 소득·소비주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전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현행 전망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통계 내 미시자료인 표본자료의 제공범위를 현행 소득세 미시자료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다른 세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20]

② 조세지출 관리 강화 필요

첫째, 조세지출로 인한 2024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국세감면율 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제88조[21]에 따른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감면액을 총량으로 합산하여 국세의 일정비율로 국세 조세지출의 한도를 정하고, 국세감면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20) 2020년「국세기본법」개정으로 소득세 관련 과세자료 원자료 중 일부를 미시자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법정한도)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을 바탕으로 2024년의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0%를 2.3%p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22)]

[최근 5년 국세감면율 실적 및 향후 전망치: 2018~2024년]

(단위: %, %p)

연도	법정한도(A)	국세감면율(B)	A-B
2018	13.6	12.6	1.3
2019	13.3	13.9	△0.3
2020	13.6	14.8	△1.0
2021	14.3	13.5	0.9
2022	14.6	13.0	1.6
2023[e]	14.3	13.9	0.4
2024[e]	14.0	16.3	△2.3

주: 1.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는 국세수입총액(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 이체액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조세지출예산서상 동 기준이 반영되기 이전인 2018년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별도로 산출

2. 2023년 국세감면율, 2024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는 잠정치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그러나 이와 같이 2024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지출의 조정 등 개선방안을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세감면율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조세지출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2023년 일몰기한 도래 예정 항목 대부분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조세지출 항목을 확대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미흡한 태도는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른 국세감면율 관리규정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동 법 제88조제1항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감면율 관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적 내용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을

22) 2023년의 경우에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국세감면율이 13.9%이나, 정부가 재추계('23.9.)한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초과할 전망이다.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이 부재하여 국세감면율 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감면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감면율 하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23].

또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세지출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세감면율 지표를 관리하는 목적은 재정확보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세수입 대비 조세지출예산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세수입 전망에 맞춰 조세지출예산을 조정하여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치 실적 평균에 0.5%p를 더하는데, 법정한도를 초과한 실적이 포함되면 법정한도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상한선이나 증가율 한도 설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4].

둘째, 조세지출 중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하여 단순 일몰연장 항목의 연례적 기한연장을 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에 대한 일몰제도는 개별 조세지출에 적용기한을 명시한 후 적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 및 시행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의무적으로 조세지출평가서(자체평가)를 작성하고, 이 중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및 기타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까지 거쳐 일몰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여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3년에도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부처에서 자체평가 결과로 소관 항목에 대해 일몰연장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비판적

23)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국세감면율 관리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류성걸의원안·추경호의원안) 발의되어 있다.

24)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2007.12. 및 KDI,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2012.5. 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일몰도래 항목 71개 중 58개[25]의 항목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단순히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안으로 포함되었으며, 일몰을 종료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항목은 6건에 불과하다. 이를 감면액 규모로 살펴보면, 일몰연장 항목의 2024년 전망치는 3조 3,917억원[26]에 달한다.

[2023년 일몰도래 항목의 단순 일몰기한 연장 항목 평가 현황 종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자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	2024년 감면액 규모
- 58개 항목 모두 일몰연장 의견 제시 - 11개에 대해 감면율 상향 등 제도확대개선도 함께 제시	- 총 13개 항목 평가 - 2개 항목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그 외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몰연장의견 제시	33,917

자료: 각 부처 조세감면평가서 및 기획재정부 심층평가결과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 결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항목의 경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으나, 모두 제도 재설계 없이 일몰기한만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가 자체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지출의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 시기,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감소효과의 보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일몰기한의 연장이 연례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평가 결과 제도개선 또는 일몰종료가 권장된 경우 이를 반영한 제도

2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단순 일몰기한 연장 항목을 60개로 보았으나,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구분한 단순 일몰기한 연장 항목 58개에 대해 분석하였다.

26) 전망치에는 규모에 대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중 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 항목 3개)를 포함하지 않아 이를 감안할 때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재설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적시하여 국회에서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행 심층평가 대상을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되는 항목 등에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현행 조세지출 항목 중 조세지출의 대체가능성과 폐지가능성을 모두 갖춘 적극적 관리대상[27]에 대하여 일몰기한이 연례적으로 연장되는 경우[28]에 대한 일몰기한 관리를 강화하여 조세특례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구분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일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전망 및 실적 간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 항목별로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직전연도 조세지출 실적은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집계하여 작성하며, 해당연도 조세지출 금액은 해당연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에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조세지출의 규모는 해당연도 조세지출 추정금액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상성장률 등 경제지표 전망,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전망과 실적을 살펴보면, 오차율의 크기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들어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조세지출을 과소추계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특정성(조세지출이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부여), 대체가능성(조세지출이 지닌 특정 정책목표를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 가능), 폐지가능성(조세지출의 폐지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 등의 특성을 지닌다.

28)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 182개 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4회 이상 연장된 항목은 78개(적극적 관리대상의 42.9%)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체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현황]

(단위: 조원, %)

	직전연도 전망(A)	실적(B)	차이(C=B-A)
2018년 조세지출	37.2	40.8	3.65 (8.9)
2019년 조세지출	45.3	47.8	2.48 (5.2)
2020년 조세지출	50.0	51.0	0.99 (1.9)
2021년 조세지출	54.9	54.6	△0.38 (△0.7)
2022년 조세지출	58.9	61.9	3.01 (4.9)

주: 1. 2022년 실적이 집계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오차율 분석(경과규정 및 개별세법상 비과세감면 중 항목재분류로 추가된 항목 등 제외)
2. ()는 실적 대비 전망 오차율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2년 기준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를 조세지출의 금액구간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조세지출을 과소추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액 3.01조원의 대부분이 1,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 차이(2.87조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출 금액이 큰 구간의 전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금액 구간별 전망-실적 간 차이 현황: 2022년 실적 기준]

(단위: 조원, %)

조세지출 금액	건수[1]	실적[2] (A)	2021년 전망	
			전망 (B)	차이[3] (C=A-B)
100억원 이하	93 (47.4)	0.1 (0.2)	0.2	△0.015 (△10.4)
500억원 이하	33 (16.8)	0.8 (1.3)	0.8	0.007 (0.8)
1,000억원 이하	12 (6.1)	0.8 (1.3)	0.7	0.15 (18.1)
1,000억원 초과	58 (29.6)	60.1 (97.1)	57.2	2.87 (4.8)
계	196	61.9	58.9	3.01 (4.9)

주: 1. 2022년 실적이 집계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오차율 분석(경과규정 및 개별세법상 비과세감면 중 항목재분류로 추가된 항목 등을 제외한 전체 231개 조세지출 중 196개 항목)

1) ()는 전체 건수 대비 해당 조세지출 금액 구간의 건수 비중

2) ()는 전체 실적 대비 해당 조세지출 금액 구간의 지출액 비중

3) ()는 실적 대비 전망 오차율

자료: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1.9.;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의 항목별로 실적 등 정보제공을 통해 국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조세지출의 전망이 과소추계되어 실제로 전망보다 더 큰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차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부정확한 정보 생성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지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시점에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 외에 결산 시점에 조세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망과 실적의 차이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결산보고서를 통해 세목별·지출금액 규모별·전망 유형별 등 조세지출 항목을 구분하여 전망과 실적간 차이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조세지출 전망방식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의 산정방법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전망의 산출과정과 차이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을 중심으로 현행 전망에 활용되는 변수 및 전망 방법을 공개하여 외부 전문

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국세외수입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서 국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 항목별 최근실적 및 증감추이, 제도·경제여건 변화, 특이소요 등을 감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의 추이 또는 특이소요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수입을 적정하지 않은 과목에 계상했거나, 예측되는 수납액보다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계상하는 등 국세외수입을 엄밀하게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는 ①수납이 예측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 ②적정하지 않은 세입과목에 예산을 계상한 사례, ③수납실적 또는 예측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 ④그 밖에 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특별회계의 사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① 수납이 예측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

「국가재정법」 제17조[29]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며, 세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세입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입예산안(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지 않았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30]에 따라

29)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02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세출사업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각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 146개[31]의 세출사업 중 36개(24.7%)의 사업에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8,592억원으로 기후대응기금 총지출(2조 2,869억원)의 37.6%를 차지한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세부사업 수	예산액
국고보조	36 (24.7%)	8,592 (37.6%)
기후대응기금 전체	146 (100.0%)	22,869 (100.0%)

주: 1.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관련 세출사업은 제외
2. '세부사업 수'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세부사업 중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또는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의 수를 의미
3. 예산액은 기후대응기금 소관 세부사업의 예산액 중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및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에 편성된 예산액을 합한 금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보조사업자가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자는 정산 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납받아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

31)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관련 세출사업은 제외

3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 이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인 2023년도 수입 예산에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수입 예산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기후대응기금이 2022년도부터 운영된 신설 기금으로 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도에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소관 36개 세부사업 중 상당수[33]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다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추정하여 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4]. 또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2023년도 집행잔액 반납액 수납 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69억원 중 14억원을 수납받아 실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대응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수납 실적(2023년 8월 기준)]

(단위: 억원)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7,950	69	14	55

주: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된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및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지출액을 합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후대응기금은 지출 사업의 규모에 비해 수입 기반이 부족하여 일반회계(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 외에도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및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복권기금)으로부터 매년 필요한 금액을 전입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고 있다. 이에 예산 편성 시 수입 항목의 누락 없이 예산을 엄밀하게 추계하여 계상하는 것은 기금 전입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예산의 편성 규모를 줄여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을 적정 수준으로 추정하여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에 반영

33) 생태산업개발을통한미세먼지및온실가스감축(6131-301/산업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6131-600/환경부),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6132-300/국토부) 등 19개 세부사업

34) 참고로, 2017년도부터 운영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계상한 바 있다.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편성 구조]

(단위: 억원)

구분	수입			지출	
항목	기타재산이자외수입		4,009	주요 사업비	22,842
	전입금	일반회계	10,728		
		특별회계	3,000		
		기금	3,100	기금운영비	2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00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3,19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286
합계	수입 계		24,158	지출 계	24,158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둘째,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전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교부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입예산안(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지 않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관련 사업을 제외한 세출사업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35] 1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매년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이 집행한 후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반납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3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구조]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항목	일반회계 전입금	32,10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
	전년도세계잉여금	2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1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4		
합계	세입 계	32,322	세출 계	32,322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해당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해당 집행잔액 반납액과 이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다가 국회 지적[36] 이후 2020년도 예산부터 이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반영 방식을 보면, t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를 t+1년도에 반납받음에도 해당 금액을 t+1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경상이전수입 목에 수납 반영만 하고 있으며, t+2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목에 이를 편성하여 수납처리하고 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 방식]

t년도~t+1년도 2월	→	t+1년도	→	t+2년도
집행잔액 발생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납에만 반영 (기타경상이전수입)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예산에 계상 * 세입예산에 편성·수납처리 (전년도세계잉여금)

2023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2022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을 반영은 하였으나, 실제로 수납 처리하여야 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집행잔액 반납액)과 기타재산이자수입(집행잔액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아닌 전년도세계잉여금에 이를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해당 방식을 철회하고 종전과 같이 전전년도의 집행잔액만 전년도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다.

36) 예결위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수입도 반납하도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집행 내역: 2017~2023년]

(단위: 억원)

연도	예산 (A)	집행 (B)	실집행 (C)	이월·불용 (A-B)	집행잔액 (A-C)	집행잔액 세입예산 편성
2017	39,409	39,409	38,528	-	881	2020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2018	38,927	38,927	37,908	-	1,019	2021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2019	38,153	38,153	37,082	-	1,042	2021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2020	39,900	39,900	38,144	-	1,756	2022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2021	39,168	39,168	38,511	-	656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2022	38,290	38,920	37,620	-	670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2023	34,700	34,700	-	-	-	미편성

주: 표의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즉, 현재의 세입예산 반영 방식은 당해연도(t년도)의 집행잔액 반납액이 실제로는 차년도(t+1년도)에 수납됨에도 차차년도(t+2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방식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매년 세출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충당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반납 예상액을 집행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면 그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집행잔액 반납액은 집행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산정할 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고려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실소요보다 많은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매년 시·도교육청의 집행결과보고를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산금액이 연말까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납액이 불확정적인 항목을 예산에 편성할 때 최근의 수납실적이나 증감추이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성 방식임을 고려하면, 수납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특별회계의 사례를 보더라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진흥사업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은 최근 5년간 평균 결산액을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추정하여 세입예산(기타경상이전수입)에 편성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의 집행잔액 반납액을 적정 수준으로 추정하여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에 이를 계상함으로써 예산 반영 시차를 단축하고, 일반회계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전입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적정하지 않은 세입과목에 예산을 계상한 사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수입의 성격과 발생원인 등을 기준으로 국세외수입을 목 단위로 세분하고, 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수입의 구분 내역을 제시하여 각 내역에 대응되는 목에 수입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 구분 기준에 따라 수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하지 않은 세입과목에 예산을 계상한 사례가 존재한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담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정부담금으로 계상하였다.

주파수할당 대가는 「전파법」[37]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업자가 그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38]에 따

37)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배분비율)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 100분의 45
2.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분의 55

라 그 수입금의 45%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5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된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주파수할당 대가로 9,15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으로 4,118억원(45%),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으로 5,033억원(55%)이 배분되었다.

[2024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파수할당 대가(법정부담금)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주파수할당 대가(법정부담금)	10,120	17,863	9,151	△8,712	△48.8
- 방송통신발전기금	4,554	8,038	4,118	△3,920	△48.8
- 정보통신진흥기금	5,566	9,825	5,033	△4,792	△48.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부담금관리 기본법」[39]은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부담금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법정부담금 세입과목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할당 대가는 통신사업자가 국가로부터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데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가격경쟁 등 수요를 바탕으로 그 금액이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법정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40]. 또한, 주파수할당 대가에 대한 근거 법률인 「전파법」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따

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40) 타 법률의 주요 부담금과 비교하면 부과 목적과 대가성, 근거 법률의 규정 방식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라 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주파수할당 대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정부담금 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과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41].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예산을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태료 목에 통합하여 계상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42]에 따라 사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한 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수입

부담금명	근거법률	개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개비 또는 무게당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리터당 또는 이윤 차액당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

41)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유상할당대가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권리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주파수할당 대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수입 예산은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7목)에 편성되어 있다.

4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이다. 한편, 과징금 수입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징수되는 과징금 수입 등이 포함된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총 1.1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0.8	1.1	1.1	0	△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수납되는 주요 과태료 및 과징금]

근거 법률		제재처분	요건	부과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지역별·수급자별 석유 배정, 석유정제시설의 조업 등)을 위반한 경우 등	20억원 이하
	제35조	과징금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등	5억원 이하
	제49조	과태료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	3천만원 이하
도시가스 사업법	제10조의 8	과징금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요건 부적합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 수출입금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 3	과징금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수송용연료 중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부족분 ×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과징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등	20억원 이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항)'으로 분류하면서, 과태료(563목)와 과징금(565목) 예산의 세입과목을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항) 세입과목 구분]

관		항		목		내역
12	경상 이전수입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561	벌금및과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62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563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564	징계부과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565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자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을 과태료 목에 통합 계상하여 수납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9월까지 징수된 금액(10억원)의 99.7%가 과징금 수입에 해당한다.

[2018~2023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
과태료	건수	9	15	15	17	8	1
	금액	11	49	29	91	25	4
과징금	건수	1	2	3	3	1	2
	금액	9	48	50	70	50	1,002
합 계		20	97	79	161	75	1,0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을 아울러 가진다는 점에서 부과·징수의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과징금의 건별 부과·징수 금액이 과태료보다 큰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과태료와 과징금은 부과 건수 및 건별 수납 금액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한 과년도 수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③ 수납실적 또는 예측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서 개별 항목별 최근실적 및 증감추이, 제도·경제여건 변화, 특이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세외수입을 추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수납 실적이나 수납 예측액을 고려하지 않고 과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사례가 존재한다.

첫째,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다.

전자여행허가제(이하 “K-ETA”)는 과거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여행 허가 제도로, 한국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당 수수료 수입은 법무부 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되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K-ETA 수수료를 포함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47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일반회계 K-ETA 수수료 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K-ETA 수수료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194	447	447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예산에 대하여, 법무부는 전년도 예산 수준을 반영하여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입국 인원수가 많고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43] 국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가 면제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 입국한 외래객 총 319.8만명 중 K-ETA가 면제되는 22개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래객(이하 "K-ETA 면제자")은 총 159.5만명으로 49.9%를 차지한다. 코로나의 영향이 전면 해제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입국 외래객 총 443.1만명 중 K-ETA 면제자는 총 259.1만명으로 58.5%를 차지하고 있다.

43) 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023년 4월 1일 부)

아시아(5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2개)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13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2개)	뉴질랜드, 호주

자료: 법무부

[2022~2023년 한국 입국 외래객 현황]

(단위: 만명)

구분	2022	2023.1.~6.
K-ETA 면제 국가(22개국) 국적 보유	159.5 (49.9%)	259.1 (58.5%)
한국 입국 전체	319.8 (100.0%)	443.1 (100.0%)

주: 2022년도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처럼 입국 인원수가 많은 주요 방한 국가의 K-ETA를 면제함에 따라, 2023년 9월까지의 K-ETA 수수료 수입은 195.8억원으로 예산의 43.8%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1~2023년 K-ETA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9.
수수료 납부 인원		57,037	1,941,711	1,957,739
납부액	예산(A)	-	128.0	446.6
	결산(수납, B)	5.7	194.2	195.8
	수납률(B/A)	순증	151.7	43.8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도 K-ETA 수수료 수입의 진도율 부진을 볼 때 K-ETA 면제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는 당초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해당 면제 조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것임을 고려하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여 K-ETA 수수료 수입 예산을 일정 수준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44].

따라서 K-ETA 면제 등 제도 변화와 관광객 입국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 수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수입

44)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중 K-ETA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및 동남아국가의 관광객 증가로 전자사증수수료 수입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예산을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과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매각 계획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45]상 일반재산은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매각대금은 각 재산의 유형(토지·건물 등)별로 해당되는 세입 목에 계상된다. 국유재산 중 국방부 소관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및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토지매각대 5,975억원 및 건물매각대 35억원 등 총 6,010억원이 편성되었다.

45)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2024년도 국방부 소관 토지매각대 및 건물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토지 매각대	일반회계	13	-	25	25	순증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71	3,619	4,396	777	21.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305	5,764	1,554	△4,211	△73.0
	토지매각대 계	3,890	9,383	5,975	△3,408	△36.3
건물 매각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0	52	35	△17	△32.7
합 계		3,930	9,435	6,010	△3,426	△36.3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액과 달리, 「국유재산법」 제9조[46]에 따른 「2024년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과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보면 국방부 일반회계에만 토지 매각액 2,699억원, 건물 매각액 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2024년도 국방부 소관 토지·건물 처분 계획 및 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국유재산 계획(A)			세입예산안(B)			차이(B-A)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토지매각대	2,699	-	2,699	25	5,950	5,975	△2,674	5,950	3,276
건물매각대	2	-	2	-	35	35	△2	35	33
합 계	2,701	-	2,701	25	5,985	6,010	△2,676	5,985	3,309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방부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과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회계별로 매각 계획을 나누어 산출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만 처분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회계별 매각 수입 예상액에 있어 세입예산안과 차이가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처분

46)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과 세입예산안 간 매각 소요를 반영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은 부처별·재산유형별·회계별·처분행위별로 차년도의 매각 건수와 면적,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각 회계별로 실제 매각 예정된 금액을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부 소관 건물매각대와 일부 토지매각대 예산안의 경우 과년도의 평균 수납액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각 건수가 많지 않고 건별 금액이 큰 관유물로 매각 발생 여부에 따라 매년 수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매각 소요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계획 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사례를 보면,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세입예산안에 따른 매각 계획 규모가 상당 부분 일치하여 계획액 대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건물 처분 계획 및 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국유재산 계획(A)	세입예산안(B)	차이(B-A)
기획재정부	토지매각대	17,559	17,346	△213
	건물매각대	393	393	-
	합계	17,952	17,739	△213
국토교통부	토지매각대	1,174	1,158	△16
	건물매각대	12	8	△4
	합계	1,186	1,166	△20

자료: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따라서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매각 계획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매각대 및 건물매각대를 계상하여 실제 매각 소요에 따른 수입 예측액을 세입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년도의 수납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타 잡수입 예산안으로 연례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타 잡수입은 가공양곡이 생산책임량에 미달하거나 사고로 유실되는 등의 경우 이를 벌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양곡가공 청산금[47], 양곡변상금[48] 및 기타 수입[49]으로 구성된다. 202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97.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기타 잡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 잡수입	8.3	97.5	97.5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타 잡수입 예산으로는 2016년도부터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2014회계연도의 기타 잡수입 수납실적(9,754백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수납실적을 보면 2016년, 2018년에 발생한 초과수납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납액이 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2022년 양곡관리특별회계 기타 잡수입 예산 및 결산(수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2024
예산(A)	97.5	97.5	97.5	97.5	97.5	97.5	97.5	97.5	97.5
결산(수납, B)	106.4	13.7	112.2	47.8	11.3	42.4	8.3	4.1	-
과부족(B-A)	8.9	△83.8	14.7	△49.7	△86.2	△55.1	△89.2	△93.4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7) 양곡가공 청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지시한 양곡에 대하여 가공업자가 생산책임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는 변상금 수입을 말한다.

48) 양곡변상금은 화재 및 운반 중 사고 등으로 양곡이 멸실되는 경우 납부하는 변상금이나 책임보험금 수입 등을 말한다.

49) 기타 수입은 헌포장재 판매수입과, 양곡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생산책임량 대비 부족량에 대한 변상액 등이다.

이 중 양곡 유실 사고 등으로 변상금을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초과수납이 발생한 2018년을 제외하고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이후부터는 수납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2017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대금의 정산금을 기타 잡수입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처리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공공비축미곡 매입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받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집행잔액 반납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금액이 공공비축미곡 매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납금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 수입목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매입대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은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납처리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조정하지 않아 편성 및 수납 목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202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타 잡수입 예산안은 최근의 수납액 세부 내역과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0~2022년 양곡관리특별회계 기타 잡수입 수납액 세부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양곡가공 청산금	8.9	6.6	7.8
양곡변상금	1.6	33.1	0.2
기타 수입	0.8	2.8	0.3
합 계	11.3	42.4	8.3

주: 1. 기타 수입에는 헌포장재 판매수입 및 부산물 현금변상액 등이 포함
2. 2021회계연도의 양곡변상금(33.1억원)은 수입 쌀 도착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액 등이 수입으로 반영된 것에 기인
3.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④ 그 밖에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특별회계의 사례

특별회계 중 자체 세입 기반이 부족한 회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충당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 자금의 통합 운용 관점에서 볼

때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이자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특별회계의 경우 예수 규모의 확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회계 간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세입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을 실제 소요만큼만 계상하거나, 전입금이나 예수금 외의 수입 요인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특별회계의 사례를 보면, 실제 소요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2024회계연도에 수납처리할 수 있는 수입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일부만 예산에 계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를 제외한 세출사업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50] 1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2024년도의 예산안 편성 구조를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금액(3조 2,106억원)을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년도세계잉여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5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구조]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항목	일반회계 전입금	32,10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
	전년도세계잉여금	2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1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4		
합계	세입 계	32,322	세출 계	32,322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과년도(2021~2023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만큼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여 여유자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2021~2023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구조]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세입		세출	
2021	항목	일반회계 전입금	37,07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168
		전년도세계잉여금	2,092		
	합계	세입 계	39,168	세출 계	39,168
2022	항목	일반회계 전입금	36,534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290
		전년도세계잉여금	1,756		
	합계	세입 계	38,290	세출 계	38,290
2023	항목	일반회계 전입금	33,583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
		전년도세계잉여금	1,118		
	합계	세입 계	34,700	세출 계	34,700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계 및 재원 부담 일원화(유보통합)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여유자금을 보유·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낮다. 또한 앞서 검토하였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은 집행잔액 반납액을 차차년도에 계상하여 수납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세출사업 예산에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불필요한 잉여금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과년도처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고려하여 2024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과다한 여유자금의 운용 여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을 실제 수납 가능한 금액보다 적게 계상하였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방(혁신도시)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 거점도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에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예산안으로는 5,58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종전부동산[51] 매각에 따라 발생한 이익 정산금이다.

[2024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종전부동산 매각 이익(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종전부동산 매각 이익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5,582	5,582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종전부동산 매각 이익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매각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을 정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52]에 따라 혁신

51) 종전부동산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존 청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5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시건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최종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이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회 지적[53]에 따라 최초로 종전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예비정산[54]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다. 금번 편성된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일부 종전부동산에 대한 이익 정산금으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매각에 따른 수익 2조 4,699억원과 비용 1조 9,117억원을 정산하여 총 5,582억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53) 예결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는 매입공공기관의 재매각이익에 대한 정산 등 상환 재원 방안을 마련할 것"

54)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익 정산 시점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매각이 완료된 이후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화성시에 걸친 종전부동산(5지구)이 개발 중인 상황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 시점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재 매각이 완료된 종전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예비정산하여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다.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1조(정산손익의 산정 등) ① 매입공공기관 등의 정산손익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 및 수익금과 제4조의 매입대금 및 비용을 기초로 산정(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한다.
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단위: 만m^2, 억원)

구분	이전공공기관	소재지	면적	수익(A)	비용(B)	손익(A-B)
1지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40	12,264	4,050	8,214
2지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28	1,641	5,102	△3,461
3지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수원	15	1,122	1,484	△362
4지구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45	3,776	2,927	849
5지구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화성	126	55	3,155	△3,100
6지구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수원	19	5,841	2,399	3,442
합 계	-	-	273	24,699	19,117	5,582

주: 2022년 12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농어촌공사의 매각 경과를 보면 2015년 7월 3지구를 시작으로 5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구의 종전부동산 일부는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예비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 매각 경과]

일시	경과
2013.12.30.	수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완료
2015.07.17.	화성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완료
2015.07.03.	3지구(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매각 착수
2016.10.20.	4지구 매각 착수
2018.12.10.	2지구 매각 착수
2020.11.23.	5지구 매장문화재 유적보전방안 결정
2019.10.20.	6지구 매각 착수
2020.12.07.	1지구 매각 착수
2022.07.28.	5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2022.08.09.	5지구 개발계획 수립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으로 예비정산을 통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부지 등을 매각하여 2023년 1월 기준 수익 4,185억원과 비용 3,90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산 이익은 총 277억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단위: m^2, 억원)

이전공공기관	소재지	면적	수익(A)	비용(B)	손익(A-B)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경기 수원	40,396	694	852	△158
우정사업정보센터	서울 광진	29,026	2,558	2,177	3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안양	6,612	280	275	5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 안양	6,078	251	256	△5
국립종자원	경기 안양	5,424	220	219	1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서울 마포	1,799	182	129	53
국방대학교	경기 고양	296,507	-	-	-
합 계	-	385,842	4,185	3,908	277

주: 1. 2023년 1월 기준
2. 국방대학교 부지의 경우 현재 개발사업 중으로 이익 미정산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 매각 경과]

일시	경과
2015.01.0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활용계획 수립
2015.07.17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방대학교 활용계획 수립
2015.11.23	국립종자원 매각완료
2015.11.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각완료
2016.01.05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매각완료
2016.09.27	농림축산검역본부 매각완료
2020.06.29	우정사업정보센터 매각완료
2021.11.0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매각완료
2023.01.12	국방대학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출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는 예비정산을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55]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전부동산 손익산정 결과를 검사·검토할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을 지정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5월에 정산손익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정산 내역을 2024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정부안)에 반영할 것임을 회신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종전부동산의 매각이익 중 예비정산이 종료된 일부 금액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며, 현재 예수원금과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추가 예수하여 차환하고 사업비는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해 충당하는 등

55)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4조(정산내역의 검토)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각대금, 수익금, 매입대금, 비용 및 정산손익 등 정산내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내역의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입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정산내역 검토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12조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이익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즉시 전입하여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손실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산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세입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한국농어촌관리공사의 종전부동산 예비정산 이익이 반영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추가 예수액은 없으나, 세출예산 5,840억원 중 5,750억원(98.5%)가 기존의 예수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이와 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매각이익 중 예비정산이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되도록 이를 수입으로 계상함으로써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재정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구조]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항목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58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5,635
	전년도세계잉여금	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115
	일반회계 전입금	226	혁신도시 사업(3개 세부사업)	90
	기타	3		
합계	세입 계	5,859	세출 계	5,840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내부거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안)
세입	일반회계전입금	258	370	187	805	240	161	226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479	1,490	3,198	2,714	80	179	-
세출	예수원금상환	2,000	2,000	3,000	2,680	-	-	5,635
	예수이자상환	289	253	200	192	158	165	115
예수잔액		8,859	8,349	8,547	8,581	8,661	-	-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23년도는 예산, 2024년도는 예산안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예산총칙안 분석

가. 현황

예산총칙은 예산의 구성요소[1] 중 하나이며,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국가재정법」 제20조[2]에서는 예산총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②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③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④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총칙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87)

1)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24년도 예산총칙안]

조문	내용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제2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2024년도 계속비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 체결시 연부액 초과 집행 근거
제5조	2024년도 명시이월비
제6조	202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제7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제8조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연도 중 최고한도액
제9조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
제10조	예산의 이용 범위
제11조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제12조	목적예비비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용도 제한 제외
제14조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제15조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 합계 한도액
제17조	재해대책비 비목 설치·운영
제18조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초과 집행 근거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총칙안 주요내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5,252,322	5,489,048	236,726	4.5
- 일반회계	4,463,993	4,495,822	31,829	0.7
- 특별회계	788,329	993,225	204,896	26.0
제3조 계속비	-	-	-	-
제5조 명시이월비	-	-	-	-
제6조 국고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1,496 (1.16억달러)	-	△1,496 △(1.16억달러)	순감
- 특별회계	0	0	0	0
제7조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5,000	15,000	0	0
제8조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연도 중 최고한도액				
- 통합계정	400,000	400,000	0	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0	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80,000	0	0
-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	2,000	0	0
제9조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				
- 주택도시기금	190,000	190,000	0	0
-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	1,600,000	△90,000	△5.3
-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13억달러	△17억달러	△56.7
- 외국환평형기금(원화)	-	180,000	180,000	순증
제12조 목적예비비	28,000	30,000	2,000	7.1
제14조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9,794	10,267	473	4.8
- 우체국예금특별회계→공적자금상환기금	810	830	20	2.5
- 조달특별회계→일반회계	475	2,009	1,534	322.9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일반회계	1,513	1,166	△347	△22.9
제15조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일반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18,925	22,838	3,913	20.7
-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977	3,126	149	5.0
- 일반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153	140	△13	△8.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4,913	5,060	147	3.0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9,794	10,267	473	4.8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681	704	23	3.4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합계 한도액	31,159	31,033	△126	△0.4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각 연도 예산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내용 분석

(1) 계속비(예산총칙안 제3조)

① 현 황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속비 사업을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칙안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나,[3]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3개 사업이 종료연도로서 마지막으로 편성된 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편성되지 않고 있다.

② 분석의견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계속비 제도를 우회하여 사실상 형해화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비 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55조[4]에서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3조[5]에서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3)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4~2024년 계속비 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의 총액은 2014~2017년간 20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계속비 사업이 없어 2018년 17.9조원(11개 사업) → 2019년 4.8조원(5개 사업) → 2020년 2.7조원(4개 사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 기존 사업 3개가 종료연도로서 편성된 이후 2022년 예산부터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2014~2024년 계속비 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안)
계속비 사업 수	15	17	15	14	11	5	4	3	-	-	-
계속비 총액	251,813	279,523	257,404	246,190	179,229	48,361	26,739	24,833	-	-	-

자료: 각 연도 예산총칙(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이처럼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해 대규모 공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되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6]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7]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7)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은 다년도 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① 계속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둔 예산제도인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한 계약제도인 점, ② 계속비는 총사업비 및 연부액을 의결하여 총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1차년도의 예산만이 확보될 뿐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③ 계속비는 총공사금액의 확정에 따라 사업자와 1회만 계약하는 일괄계약방식이지만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만 정해져 있을 뿐, 매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점, ④ 계속비 사업기간은 5년 이내(예외적으로 연장 시 10년 이내)인데 비해 장기계속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제한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8][9]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구분	계속비	장기계속계약
대상사업	다년도 사업	
근거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55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23조,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 등	「국가계약법」 제22조제1항 등
국회의결	총사업비 및 연부액 의결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매년 의결 (국회의결없이 총사업비 변경 가능)
총예산 확보	확보	미확보(당해연도분만 확보)
입찰	총공사금액	
계약체결 방법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연부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연차별 계약, 총공사금액 부기)
사업기간	5년(단, 국회 의결로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자료: 홍성진,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및 근거 법률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계속비 사업이 아닌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해 대규모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8) 김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1호, 2020.5. p.90.

9) 홍성진,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87집, 2019.8. pp.238~239

공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계속비 사업은 헌법상 재정 제도이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계속비 사업은 헌법상 재정 제도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법 제39조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등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0)]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는 계약제도의 일종인바, 「국가계약법」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대상 사업을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불명확함에도, 같은 법 시행령[11)]을 근거로 이를 공사계약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법률 제11377호, 2012.3.21. 개정) 개정 시 부대의견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헌법」 제55조제1

10)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항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2013년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장기계속공사의 헌법 합치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공사계약에 대한 계속비 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비 사업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장기계속공사만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둘째, 계속비 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국회 의결로 관리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과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회 승인 없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계속비 제도는 도로·철도 등 다년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회가 총 규모 및 이를 위한 재정소요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계속비 의결 시 국회가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 총사업비 및 연부액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별 투자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사업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매년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총사업비나 연차별 투자액에 대해 국회가 의결할 수 없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기는 하나,[12] 총사업비나 연부액이 국회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은 계속비 사업과 달리 국회 승인 없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여 사업비가 빈번하게 증액될 수 있고,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므로 전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안 심의를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재정운

12)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 사업에 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국회 의결로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수년간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총사업비 변경이 용이하므로, 진행 중인 공사의 연차별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분산투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소관[13] 2019년 및 2020년 준공 건설공사 5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사비 증액분 중 공사기간 지연 정도와 비례해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의 비율이 장기계속공사는 47.9%, 계속비는 16.4%로 장기계속공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4]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당초공사비 (A)	변경공사비 (B)	증액된 공사비 (C=B-A)	추가지급된 물가상승액(D)	물가상승액 비율 (D/C)
계속비	4,040	5,473	1,433	234	16.4
장기계속	29,081	33,807	4,727	2,262	47.9
합 계	33,121	39,280	6,160	2,497	40.5

주: 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 및 2020년 준공 건설공사 57건(계속비 8건, 장기계속 4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기계속공사 계약 및 예산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020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21.3.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15]

13) 국토부가 직접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 대상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기계속공사 계약 및 예산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020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21.3.

15)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예산안 편성지침」을 근거로 계속비 편성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계속비 제도를 우회하여 사실상 형해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비 제도의 규정취지 및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16]하는 등 계속비 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으로 구분되는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
 나.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다. 낙찰차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앞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재조사나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단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6) ① 기능적·경제적차원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업, ② 턴키사업, ③ 실시설계 확정 등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적은 사업, ④ 다년도 계약으로 진행 시 공급수량이 적거나 초기 비용이 커져 경쟁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등에는 계속비 제도의 확대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기계속계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2011.6.30.)

(2) 명시이월비 (예산총칙안 제5조)

① 현 황

명시이월비는「국가재정법」제24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17]

명시이월을 위해서는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그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칙안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나,[18] 2014년도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개 사업이 편성된 것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편성되지 않고 있다.

② 분석의견

명시이월비가 2015년 이후 편성되지 않고 있는바, 과거 명시이월비를 편성하였던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최근에도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비 요건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동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7)「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8)「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명시이월비는 법률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9]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동 원칙상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을 단년도로 종료하게 하는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되,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명시이월제도의 남용을 막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2010~2024년 명시이월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743억원의 명시이월비를 승인받았고, 이후 2012년까지 명시이월비 총액은 늘어났으나 대상 사업수는 9개에서 3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후 명시이월비 금액과 대상 사업수가 급격히 감소세를 보여 2014년 국방부 소관 군사시설개선(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사업에 285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에 120억원이 반영된 이후 2015년부터 2024년 예산총칙안까지 명시이월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0~2024년 명시이월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2023	2024(안)
국방부	금 액	284	484	323	285	285	-	-
	사업수	2	2	1	1	1	-	-
방위사업청	금 액	459	413	763	-	120	-	-
	사업수	7	5	2	-	1	-	-
합 계	금 액	743	897	1,086	285	385	-	-
	사업수	9	7	3	1	2	-	-

자료: 각 연도 예산총칙(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방부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20]의 2015~2022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523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이월률은 평균 13.3%

1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 코드: 일반회계 5131-302

에 달한다. 이는 동 사업이 사업선정·설계·부지확보 등과 관련한 주한미군측과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2015년부터는 동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비를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사전 승인 없는 이월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5~2022년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 결산내역]

(단위: 억원, %)

연 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본예산	추경 (A)				
2015	3,373	3,373	3,142	341	92	10.1
2016	3,918	3,918	3,445	765	48	19.5
2017	4,097	4,097	4,030	739	93	18.0
2018	4,442	4,442	4,455	548	179	12.3
2019	4,527	4,527	3,979	93	59	2.1
2020	3,710	3,710	3,307	242	255	6.5
2021	3,710	3,710	2,895	869	63	23.4
2022	4,454	3,724	3,296	587	40	15.8
평균	4,029	3,938	3,569	523	104	13.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지출원인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절차 등의 특성상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함에도, 정부는 최근 10년간 명시이월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가재정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명시이월비 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명시이월비 요건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동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총칙안 제6조 및 제7조)

① 현 황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21] 이에 따라 예산총칙안에 포함되어 국회 의결을 받고 있다.[22] 2024년도 예산총칙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2023 예산			2024 예산안			증감 (B-A)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액 (A)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액 (B)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국제금융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116,000) 149,640	-	-	-	(△$116,000) △149,640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

이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의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전년과 동

21)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22)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3)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일하게 1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단위: 억원)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5,000	15,000	0	0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석의견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헌법 및 「국가재정법」상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58조에서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24]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국회의 사전의결 없이 국가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25]은 양곡수급조절 및 시장격리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91억원 증액된 1조 2,266억원을 편성하였다

24) 「대한민국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5)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0의 내역사업

[2024년도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양곡매입비	13,964	14,077	17,124	3,047	21.6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10,174	10,375	12,266	1,891	18.2

정부는 2005년부터 쌀 풍작시 쌀값 폭락 완화를 위하여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발표하면 농협이 민간의 쌀을 매입·판매하고, 추후에 정부가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을 통해 농협의 결손액(매입비용-판매이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시장격리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국가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농협에 시장격리를 대행시키는 것은 국가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정부는 시장격리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격리는 「양곡관리법」 제16조[26]를 근거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라 국회 의결 대상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6)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16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에 시장격리를 위한 양곡 매입·판매를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채무 발생과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격리에 따른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27]

둘째,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건설지원 사업[28] 건설보상비에는 선투입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 상환을 위한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도 건설보상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04억원 감액된 5,867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보상자금 선투입 이자 사업은 전년 대비 810억원 증액된 1,131억원을 편성하였다.[29]

[2024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사업 건설보상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민자도로건설지원	7,370	9,650	9,031	△619	△6.4
건설보상비	2,030	6,971	5,867	△1,104	△15.8
· 포천-화도	2,200	4,791	6	△4,785	△99.9
· 광명-서울	981	1,502	1,208	△294	△19.6
· 평택-부여-익산	873	357	3,518	3,161	885.4
· 보상자금 선투입 이자	289	321	1,131	810	252.6
· 도로및접도구역매수	31	-	4	4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설보상비에 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출 등을 통해 보상자금을 선투입한 경우 그 원금 및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30]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법률상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이다.[31]

27) 오히려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농협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반대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28)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1831-303

29) 각 사업구간의 건설보상비에는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상환을 위한 비용이, 보상자금 선투입 이자 사업에는 선투입 보상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환 및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0)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57조(보상자금 선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

그런데 선투입한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은 결국 국가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보상자금 선투입은 국가(주무관청)가 사업시행자와 확인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지 않다.[32]

셋째, 공공청사 위탁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자금으로 공공청사를 신축한 후 이를 정부가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바, 위탁개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33]

금을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이하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하여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대출약정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관련 계약을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이라 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인수한 사채인수인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선투입한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정부는 원금 및 조달비용의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동 제도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기금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32) 이에 대해 정부는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에 따르면 도로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실시협약은 별도로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결의를 얻어야 하는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판단대상인 '이 사건 실시협약'은 보상자금을 선투입하기 위한 협약서 체결이 아니라,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실시협약은 2004년에 체결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2009년에 선고된바, 이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시행(2014년) 이전이므로, 해당 판례가 보상자금 선투입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해당 판례는 보상자금 선투입 없이 미리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설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수행하는 민간투자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보상자금 선투입 행위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33) 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이후 수행한 공공청사 위탁개발의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 설치 이전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취득한 공공청사(나라키움 대전센터)의 경우 개별 부처 예산(통계청, 국가보훈부, 중앙선관위)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위탁개발 공공청사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탁운영 기간	총 사용료	연간 사용료	2022 결산	2023 계획액	2024 계획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2043 (25년)	283,309	11,332	19,903	9,890	9,419
수원고지검청사		2019~2044 (25년)	256,387	10,255	18,718	9,429	9,435
중부세무서		2021~2046 (25년)	68,893	2,755	12,136	3,028	3,028
서대문세무서		2021~2046 (25년)	42,362	1,694	12,275	3,095	3,039
남양주 복합청사	통계청	2023~2056 (33년)	15,531	485	-	346	655
	선관위				-	225	333
영등포 복합청사		2023~2053 (30년)	10,042	837	-	457	770
광주동구 복합청사		2021~2051 (30년)	5,382	196	1,168	230	198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청사의 위탁개발 비용은 결국 임차료 형태로 국고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공공청사의 위탁개발은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 후 임차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 있으며, 한도액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나,[34]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은 이러한 심의 과정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35]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가 국회의 사전의결 없이 국가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약정을 한 후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다수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해당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소요 총액 및 향후 재정투입 소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고, 매년 이미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지불하여야만 하는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약정들로 인하여 국가가 사실상 채무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국가채무로 관리되지 않아 국가채무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와 같은 사업들에 대하여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 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5)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위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심의·의결 대상은 아니라는 점,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임차료 지급에 따른 상환계획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의 경우 1차 재원보충을 위한 약속어음 1억 1,600만 달러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액이 실제 공여협정상 약정액에 비해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고채무부담행위 산정·제출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반영은 공여협정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가 공여규모 및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계획 중인 2차 재원보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금·약속어음 공여규모 및 출연 스케줄을 논의한 후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36] 및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37]은 대한민국 정부와 녹색기후기금[38] 간 협정에 근거하여 녹색기후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정부는 GCF 유치국으로서 기여하기 위해 2014년 초기재원 1억 달러 공여를 약정한 후 2022년까지 출연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UN기후정상회의에서는 1차 재원보충에 2억 달러 출연을 약정한 후 GCF와 2020~2023년 동안 현금공여 8,400만 달러 및 2024~2027년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 1억 1,600만 달러 발행에 합의하였다. 또한, 2023년 8월말 정부는 제2차 재원보충으로 GCF에 2024~2027년 간 3억 달러를 공여할 것을 선언하고 10월 5일 공여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는 녹색기후기금의 1차 재원보충을 위한 출연금 중 약속어음으로 출연한 1억 1,600만 달러를 연도별로 현금 지급하기 위한 예산 353억원과 올해 하반기 공여협정 체결 예정인 2차 재원보충에 대한 출연금 3억 달러 중 연도별 현금공여 3,326만불에 대한 예산액 455억원이 편성되었다.

36) 코드: 일반회계 3133-330

37) 코드: 일반회계 3133-331

38)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Operation Entity)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으로, 2010년 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어 설립·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GCF 사무국을 유치(인천 송도)하였으며, 현재 제4기 이사진으로서 활동 중이다.

[2024년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10,161	-	35,293	35,293	순증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33,069	42,905	45,500	2,595	6.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초기 재원 보충을 위한 약속어음 출연금 4,200만달러와 1차 재원보충을 위한 약속어음 출연금 1억 1,600만달러는 각각 2018년도 및 2023년도 예산총칙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며, 2차 재원보충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예산총칙안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되지 않았다.

[GCF 출연 관련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단위: 백만원)

차입 연도	국고 채액	구분	연도별 상환액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2018	47,414	원금	12,418	12,418	12,418	10,160	-	-		47,414
2023	149,640	원금	-	-	-	-	-	35,293	114,347	149,64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4년 각 연도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차 재원보충을 위한 약속어음 출연금 1억 1,600만 달러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국고채액으로 1,496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약속어음 발행액은 공여협정 상 약정액인 1,411억 7,200만원이다.

2020년 기획재정부 - GCF - 세계은행(WB)[39] 간 공여협정 체결 당시 GCF 1차 재원보충 공여액 2억 달러 중 8,400만 달러는 현금으로, 1억 1,600만 달러는 약속

39) 세계은행(WB)는 녹색기후기금의 수탁기관(Trustee)로, GCF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관련 보고서 작성·제출 등을 수행 중임.

어음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속어음은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환율 1,217원을 적용하여 1,411억 7,200만원을 4년(2024~2027년)에 걸쳐 현금화 하기로 하였다.

GCF에 현금화 조건 약속어음으로 출연하게 되면 차후 재정에서 약정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발행시기에 향후 실제 부담액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안 중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1억 1,600만 달러와 함께 실제 부담액인 1,411억 7,200만원이 아닌 1,496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실제 채무부담액과 다르게 기재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 제출 당시 약속어음 발행 1억 1,600만 달러에 예산 편성 기준환율인 1,290원을 적용하여 1,496억 4,000만원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약속어음 발행은 공여협정 상 약정액인 1,411억 7,200만원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채무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고채무부담행위 산정 및 제출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공여협정 체결 이후 약속어음 발행 시 그 발행액에 대해서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고 있어 협정 체결 시 국회가 공여규모 및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의 초기 재원 및 1차 재원보충 출연에 대한 공여협정의 시기·규모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반영 시기·규모를 살펴보면, 공여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속어음 발행 시점에 어음발행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사업 공여협정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반영 내역]

(단위: 만달러)

구 분	공여협정				국고채무부담행위	
	협정시기	규모			반영연도	국고채액
		합 계	현금	약속어음		
초기 재원	2015.6.	10,000	5,800	4,200	2018년도 예산	4,200
1차 재원보충	2020.9.	20,000	8,400	11,600	2023년도 예산	11,600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정부가 2023년에 약속한 2차 재원보충의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2024년도 예산안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2024년도분의 현금 공여를 위하여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ODA) 사업 예산안에 455억원을 편성하였을 뿐이다.[40] 이전의 사례와 같다면 2차 재원보충 또한 공여협정 체결(2024년 예정) 후 약속어음 발행 시점(2028년 예정)에서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출 시점에는 국회가 현금·약속어음 간 배분과 상환(현금화) 기간에 관해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58조에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공여 협정 체결 이전에 국회 심의를 통해 3억 달러 중 현금 및 약속어음의 배분 비율과 공여 일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차 재원보충에 대한 현금·약속어음 공여 규모 및 출연 스케줄을 논의한 후 그에 따라 내년에 공여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41]

40)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은 2023년 429억 500만원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455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2차 재원보충액(2024~2027) 총 3억 달러 중 4년간 총 1.4억 달러(3,500억 달러 × 4년)를 현금 공여할 것으로 전제했음을 의미한다. 1차 재원보충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1.6억 달러는 약속어음을 통해 출연하고 2024년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2028년부터 520억원씩 4년에 걸쳐 총 2,08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41) 2020년 1차 재원보충 당시 공여협정은 2020년 9월에 체결되었는데, 협정 체결 전 2020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2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22만 달러(174억 4,000만원)으로 감액되고 공여협정에 동 예산액을 반영한 바 있다.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예산총칙안 제8조)

① 현 황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의 연중 최고한도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통합계정,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42]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8조에 따른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2024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통합계정	400,000	400,000	0	0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0	0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80,000	0	0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	2,000	0	0

주: 통합계정은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9. 및 각 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재작성

42)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② 분석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설치 이후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하고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하므로,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일시차입 등 한도액의 설정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 신설 이후 2012년도 예산총칙부터 매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바, 2012년 및 2013년은 3,000억원, 2014년 이후로는 매년 2,000억원의 한도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최고액]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상 한도액	3,000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연중 차입·발행액	0	0	0	0	0	0	0	0	0	0	0	0

주: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각 연도「국가결산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최고한도는 2013년 이후 설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 최고한도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이 낮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말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연중운용평잔은 1조 2,116억원, 연도말 잔액은 1조 4,191억원으로 예산총칙상 일시차입한도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지출(1조 367억원)보다도 많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규모 역시 2019년 3,000억원에서 2023년 9,6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양호한 상황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유자금	연중운용평잔[1]	6,294	8,446	11,120	11,016	13,029	9,337	8,948	9,239	12,116	16,097
	연도말잔액	5,397	7,711	10,497	14,585	9,386	7,402	6,583	9,877	14,191	17,485
공자기금예탁[2]		-	-	-	-	3,000	4,516	4,750	8,609	9,600	12,500

주: 1) 2023년은 8월말 기준이며, 2024년은 전망치
2)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 및 2024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상황은 2024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유자금의 연중 운용평잔은 1조 6,097억원, 연도말 잔액은 1조 7,485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도 전년대비 2,900억원 증가한 1조 2,5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2024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30.1%)과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94.9%)이 가장 높으며, 절대적인 규모도 9,839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계	총지출	여유자금	여유자금 비중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 (총지출 대비)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1,036,609**	**983,894**	**30.1**	**94.9**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181	1,162,238	283,159	17.5	24.4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31	3,614,398	253,692	5.6	7.0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15	1,676,469	983,957	28.9	58.7
기후대응기금	2,415,844	2,286,923	100,293	4.2	4.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140,414	238,426	10.0	11.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019,399	2,909,217	110,182	3.7	3.8
농지관리기금	4,006,330	2,021,720	812,813	20.3	40.2
대외경제협력기금	2,208,746	2,093,789	58,416	2.6	2.8
전력산업기반기금	4,501,041	2,057,146	836,519	18.6	40.7
주택도시기금	105,395,180	37,281,327	28,779,151	27.3	77.2

주: 여유자금 운용이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제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이 낮으며,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총칙에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일시차입 등 한도액의 설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 (예산총칙안 제9조)

① 현 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으며,[43] 이 경우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44]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9조에 따른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9조원 감액된 160조원이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표시 외평채는 전년 대비 17억달러 감액된 13억달러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가 신규로 18조원 반영되었다.

[2024년도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주택도시기금	190,000	190,000	0	0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	1,600,000	△90,000	△5.3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13억달러	△17억달러	△56.7
외국환평형기금(원화)	-	180,000	180,000	순증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43)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44)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②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2003년부터 발행하지 않았던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2024년도에 18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인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관련 시장 신규 조성에 대한 부담, 국고채 발행량 감소 착시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45]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당초 외평기금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과 원화표시 외평채를 모두 발행하여 자체적으로 외화 및 원화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화표시 외평채는 발행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원화를 외평기금이 예수받는 것으로 원화재원 조달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2024년에 21년만에 다시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예정인바,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짧은 만기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축할 계획으로, 이는 현재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을 예수함에 있어 예수금리가 높게 책정되면서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이다.[46]

그러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없이도 현행 규정을 통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기간 및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서는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예수 시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와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

45)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46)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리는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 및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로 볼 수 있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외평기금의 예수금리도 2021년 1분기 1.55%에서 2023년 1분기 4.04%까지 상승한 수 4분기에 3.71%로 소폭 하락하였다.

으로 결정하되, 회계·기금의 성격, 공자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47] 이를 근거로 외평기금의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평기금에 대해서는 보유자산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환율 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수금리를 다른 회계·기금 대비 낮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화표시 외평채는 주로 1년물로 발행될 예정[48]인데, 통화안정증권 등 만기가 유사한 채권의 수요를 구축하거나 외평채의 만기가 단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은 주로 91일물, 1년물, 2년물로 발행되고 있는데, 1년물의 경우 2022년에는 36회 중 17회가, 2023년(9월 말기준)에는 25회 중 6회가 낙찰률 100% 미만이었던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인데, 유사한 만기를 지닌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될 경우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원화표시 외평채를 1년물로 발행하게 되면 외평채의 만기가 단기화되면서 외평기금의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차환발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환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면 만기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 만기 채권의 경우 단계적인 조기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원화표시 외평채를 단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4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공자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48)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2027년에 매년 19조원 수준의 외평채를 발행하고, 2025~2027년 동안 매년 유사한 규모의 외평채 상환을 계획하공 있어 1년물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감소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국고채 발행량은 158.8조원으로 전년(167.8조원) 대비 약 9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2024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액 18조원은 제외한 것인데, 원화표시 외평채는 일반적인 국고채와 만기만 다를 뿐 중앙정부가 사용할 원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합하여 발행액을 계산할 경우 2024년 발행액은 전년 대비 9조원 증가한 176.8조원이다.

셋째,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고채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바, 추가적인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경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고채 시장을 활용하는바, 국고채 통합 발행으로 발행·유통을 일괄하여 운영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원화표시 외평채를 별도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과 유사하게 관련 시스템 구축, 전문딜러 지정[49] 등을 통해 시장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50]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단기로 발행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나, 현행 규정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도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및 국고채 발행량 감소 착시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별도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51]

49) 국고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채전문딜러를 지정하여 이들에게 국고채 발행 시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대신 국고채의 인수·유통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여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50)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24년 2분기 이후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1) 이에 따라 원화표시 외평채 18조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①공자기금 예수규모를 확대하거나 ②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6) 목적예비비 및 재해대책비 비목 설치·운영 (예산총칙안 제12조 및 제17조)

① 현 황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반예비비와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목적예비비로 구성된다.[52]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12조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3조원으로,[53] 2023년 2조 8,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액되었다.

목적예비비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총칙과 동일하게 ① 재해대책비, ② 인건비, ③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④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⑤ 국제부담금, ⑥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에 지출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 용도 중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되었다.

5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53)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4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024년도 목적예비비 규모 및 목적]

구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비비 중 2조 8,0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조원
목적	- 재해대책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 (전년 동일)
	-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 (전년 동일)
	-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 (전년 동일)
	-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 (전년 동일)
	-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 (삭 제)
	- 국제부담금	- (전년 동일)
	-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 (전년 동일)
	-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 (삭 제)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5년 이후 목적예비비 편성액을 살펴보면, 2015~2019년까지는 1.8조원~2.2조원으로 2조원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4.2조원, 2021년에는 8.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다시 3.7조원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지출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조원 미만으로 편성액 대비 실제 지출액은 13.2~36.7%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부터 지출 금액 및 편성액 대비 비중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편성액의 97.9%인 4.1조원, 2021년에는 편성액의 97.2%인 7.9조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출규모가 다시 감소하여 편성액 대비 36.7%인 1.4조원을 지출하였다.

[2015~2022년도 목적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편성액(A)	19,564	21,780	18,000	18,500	18,000	42,100	81,000	37,000
지출결정액	7,348	6,172	2,741	11,909	15,925	42,056	81,000	15,527
지출액(B)	7,173	6,095	2,380	11,236	15,887	41,228	78,713	13,575
편성액 대비 지출액(B/A)	36.7	28.0	13.2	60.7	88.3	97.9	97.2	36.7

주: 편성액은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예산총칙안 제17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54]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재해·재난대책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9,987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55]의 내역사업인 '재난복구 지원'은 전년 대비 4,500억원 증액된 6,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56]는 전년대비 1,000억원 증액된 3,00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57]는 전년 대비 8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58] 및 '재해복구비'[59]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지원시기 지연을 방지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에 각각 2,500억원, 5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54)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5) 코드: 일반회계 2734-300

56)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3-302

57) 코드: 일반회계 2331-300

58) 코드: 일반회계 5340-300

59)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7140-300

[2024년도 재해·재난대책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6,321	1,500	6,000	4,500	299.0
	재난복구 지원	6,321	1,500	6,000	4,500	300.0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지원	6,321	1,500	6,000	4,500	3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650	2,000	3,000	1,000	50.0
해양수산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154	163	850	687	42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79	200	1,000	800	400.0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	2,500	2,500	순증
	재해복구비	-	-	500	500	순증
합 계		7,404	3,863	13,850	9,987	258.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석의견

2024년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 및 재해대책비 비목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4년도 부처별 재해대책비 예산안이 2023년 피해에 대해 2024년에 지출할 예정인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집행방식의 변경에는 2023년 세수결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편성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재해·재난대책비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9,987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각 부처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배정 또는 이·전용 등 재원 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원시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해·재난대책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은 각 부처 불용액 및 이·전용을 통해 조달하고 향후 국비 소

요액은 2024년도 각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로 편성하여 지출함에 따라 동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입장이다.

2023년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르면, 호우·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중 국비 소요액은 총 1조 2,169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에서 이·전용 등을 통해 3,216억원(26.4%)을 확보하고 8,953억원(73.6%)은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피해복구비 8,953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차년도에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방식의 변경은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60]에서 올해 예비비 등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결손과 무관하게 재해·재난대책비의 과도한 이월 방지를 위하여 실집행 소요를 기반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3년도 예산에는 목적예비비 2.8조원 외에도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 1.5조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2023년 9월말 기준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재난대책 관련 지출은 그 소요액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신속한 집행을 요하므로, 발생 당해연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용도에 재해대책비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61]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금 조달 문제로 예비비를 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 2023년 확정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 내에서 재해·재난대책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차년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60) 기획재정부는 2023. 9. 11. 2023년말까지 약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61)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2024년도 예산총칙」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둘째, 2024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이 2024년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목적으로 증액 편성된 점 및 최근 재해대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예비비를 적정 규모로 편상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목적예비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한 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규모(2020년 4.2조원, 2021년 8.1조원, 2022년 3.7조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4~2019년(1.8~2.2조원)에 비해서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가 추후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재확산될 경우 대응이 필요하고 최근 물가 상승 등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의무지출 규모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목적예비비를 전년 대비 증액시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종료되었음에도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정병상 및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 등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이 마련된바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분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정부가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23년 3.3%보다 1%p 낮은 2.3%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급여지급 등 물가에 연동되는 의무지출의 추가 소요를 대비해 예비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2023년 발생한 재해·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에 복구비용을 반영하고 2024년에 발생할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비용만 계상하는 방식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인바, 이 경우 재해·재난 발생 당해연도에 목적예비비를 배정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소요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의 증액분

9,987억원 중 2023년 국비소요분 8,953억원을 제외한 1,034억원은 2024년에 발생하는 재해·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목적 집행액의 추이에 따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1조원 미만으로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재해대책비 목적의 목적예비비 증액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목적 집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일반회계 예비비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1]
2018	예산	30,500	18,500	-
	지출결정액	21,214	11,909	2,703
	지출액	20,333	11,236	2,703
2019	예산	30,000	18,000	-
	지출결정액	27,230	15,925	6,692
	지출액	26,901	15,887	6,654
2020	예산	56,100	42,100	-
	지출결정액	55,992	42,056	40,994 (11,743)
	지출액	54,467	41,228	40,167 (11,152)
2021	예산	97,000	81,000	-
	지출결정액	96,996	81,000	58,420 (2,154)
	지출액	92,721	78,713	58,330 (2,150)
2022	예산	55,000	37,000	-
	지출결정액	49,415	15,527	5,437
	지출액	47,049	13,575	5,437

주: 1) 2020·2021년 괄호 안 수치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규모임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각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비비는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더 커 필요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2024년에는 2020~2022년 대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및 피해보상 등 예측치 못한 재정지출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2024년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에 2023년 확정된 피해복구비용 외 2024년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용도로 증액 편성된 점, 향후 동 예산 편성방식의 유지 여부 및 최근 재해대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예비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7) 정부기업특별회계 전입·전출금 (예산총칙안 제14조·제15조)

① 현 황

기업특별회계는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정부기업예산법」[62]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63]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하는바,[64] 예산총칙에는 「정부기업예산법」상 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전입·전출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024년도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살펴보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473억원(4.8%) 증액된 1조 267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년 대비 20억원(2.5%) 증액된 8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1,534억원(322.9%) 증액된 2,00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347억원(△22.9%)이 감액된 1,166억원이 편성되었다.

6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64)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4년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단위: 억원, %)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9,794	10,267	473	4.8
우체국예금특별회계→공적자금상환기금	810	830	20	2.5
조달특별회계→일반회계	475	2,009	1,534	322.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일반회계	1,513	1,166	△347	△22.9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살펴보면,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3,913억원(20.7%) 증액된 2조 2,83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49억원(5.0%) 증액된 3,12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또한,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년 대비 13억원(△8.5%) 감액된 140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 전년 대비 147억원(3.0%) 증액된 5,060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 전년 대비 473억원(4.8%) 증액된 1조 267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 대비 23억원(3.4%) 증액된 70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단위: 억원, %)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18,925	22,838	3,913	20.7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977	3,126	149	5.0
일반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153	140	△13	△8.5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4,913	5,060	147	3.0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9,794	10,267	473	4.8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681	704	23	3.4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석의견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전출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달청이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세입예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의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회전자금 평균 예치액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입(회전자금 예치이자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해당 세입 증액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조달특별회계의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65]은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의 일시적 여유자금을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 이자 수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6억원이 증액된 299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조달청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의 최근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수납률이 363.9%에 달하였고, 2023년에도 7월말 기준 이미 수납률 178.4%를 달성한 상태로, 연례적인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최근 4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12,655	12,655	12,655	12,877	12,877	101.8	100
2021	12,655	12,655	12,655	15,845	15,845	125.2	100
2022	11,875	11,875	11,875	43,218	43,218	363.9	100
2023	13,284	13,284	13,284	23,694	23,694	178.4	100
2024(안)	29,930		-	-	-	-	-

주: 2023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이는 동 세입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예치액 및 수익률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회전자금 여유자금 예치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평균예치액 기준 2018년 7,160억원→2022년 1조 9,713억원), 금리도 인상되고 있는 점[66]을

65) 코드: 조달특별회계 69-697

감안할 때 이러한 편성 방식이 실제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발생 소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달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67]은 2023년도 추정수입 총액에서 추정지출 총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예상액을 2024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 8,500만원이 증액된 79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전년도세계잉여금	104,836	50,816	79,531	20,085	39.5

자료: 조달청

그런데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에 따르면, 2023년도 추정세입액에 2023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수납예산액 2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달청이 2023년도에 수입으로 잡은 회전자금 예치이자는 예산상 133억원인 반면, 「2023년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는 586억원의 예치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조달청의 자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23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은 약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23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수납 예상액 24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2024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은 약 210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자금 예치이자가 연례적으로 초과수납되고 있음에도 세입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2024년도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입 예산이 과소계상될 경우 당해연도에 예산보다 초과 수납된 금액은

66) 회전자금 여유자금은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이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 금리도 2023년 9월 기준 3.7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달청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회전자금 예치액의 예상 수익률을 2.41%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7) 코드: 조달특별회계 89-893

세출사업 재원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하고 자본계정 전출을 통해 회전자금이나 일반회계로도 전출하지 못하므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달특별회계의 2024년도 세입 예산 중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규모를 적정 규모로 증액하고, 증액분은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곡관리특별회계는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으로 사료용 쌀 40만톤 판매에 관한 가공임을 반영하였으나, 판매에 따른 수입을 미곡판매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규모 추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2024년도 예산안 세입은 미곡판매수입, 부산물기타판매수입 등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대비 3,911억원 증액된 2조 2,838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자체수입 중 미곡판매수입[68]은 군수용·관수용·해외원조용 등으로 양곡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원 증액된 4,135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따르면, 군수용, 관수용 등으로 78만 9,700톤을 처분할 계획인바 이에 따른 판매 대금 수입으로 4,13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다.

[202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자체수입	1,046,749	432,108	461,696	29,588	6.8
미곡판매수입	424,315	411,356	413,505	2,149	0.5
일반회계 전입금	1,180,247	1,892,740	2,283,793	391,053	20.7
총계	2,226,996	2,324,848	2,745,489	420,641	1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8)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41-411

그런데 정부양곡의 보관 및 판매 비용으로 집행되는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총 매출 120만톤을 기준으로 사료용 40만톤, 기타 80만톤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미곡판매수입에는 78만 9,700톤에 대한 판매 수입만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사료용 40만톤 매출에 대한 판매 수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69]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이 과소하게 계상[70]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매출계획은 2023년산 쌀 수급상황을 판단한 이후 12월말 확정 예정으로서 2023년 8월말 기준 사료용 쌀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예산안은 사료용 판매를 포함하여 120만톤을 매출할 것을 기반으로 계상한 반면, 미곡판매수입 사업 예산안은 사료용 판매를 반영하지 않아 세입·세출 간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사료용 쌀 판매를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입·세출 규모를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69) 미곡판매수입에는 군수용, 관수용, 학교급식용, 기초수급자용, 차상위계층용, 기초보장시설용, 무료급식단체용, 경로당용, 가공용, 주정용, 원조용 양곡판매에 따른 대금 수입만이 반영되어 있으며, 사료용에 대한 판매 수입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70)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료용 미곡 40만톤 판매 가정 시 1,200억원 판매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산출) 40만톤×300천원/톤 = 120,000백만원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가. 현 황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한도액안의 개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은 기존에 국가재정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철도·항만 및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종류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면,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주무관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학교·병원·군생활관 등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주로 활용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들 시설의 경우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 중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준공된 후 운영이 개시된 때로부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는다.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대가,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의 특성상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연도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소관 부처를 살펴보면, 교육부와 국방부는 매년 한도액을 신청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이 제출되었다.

[연도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소관 부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부	○	○	○	○	○	○	○	○
국방부	○	○	○	○	○	○	○	○
환경부	○	○	○			○	○	○
고용노동부	○	○		○	○			
경찰청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자료: 각 연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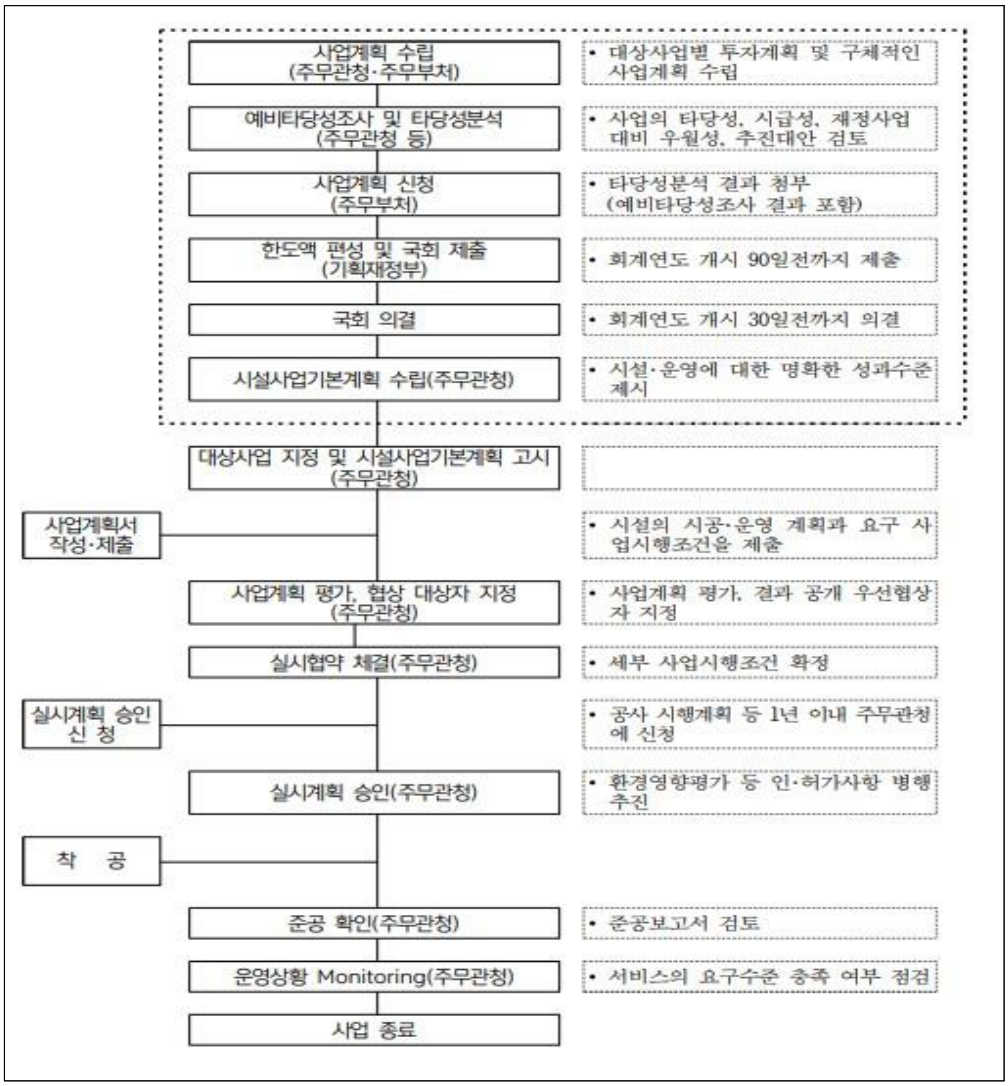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사업계획 수립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되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타당성분석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평가 및 협상 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다.

[BTL 정부고시사업의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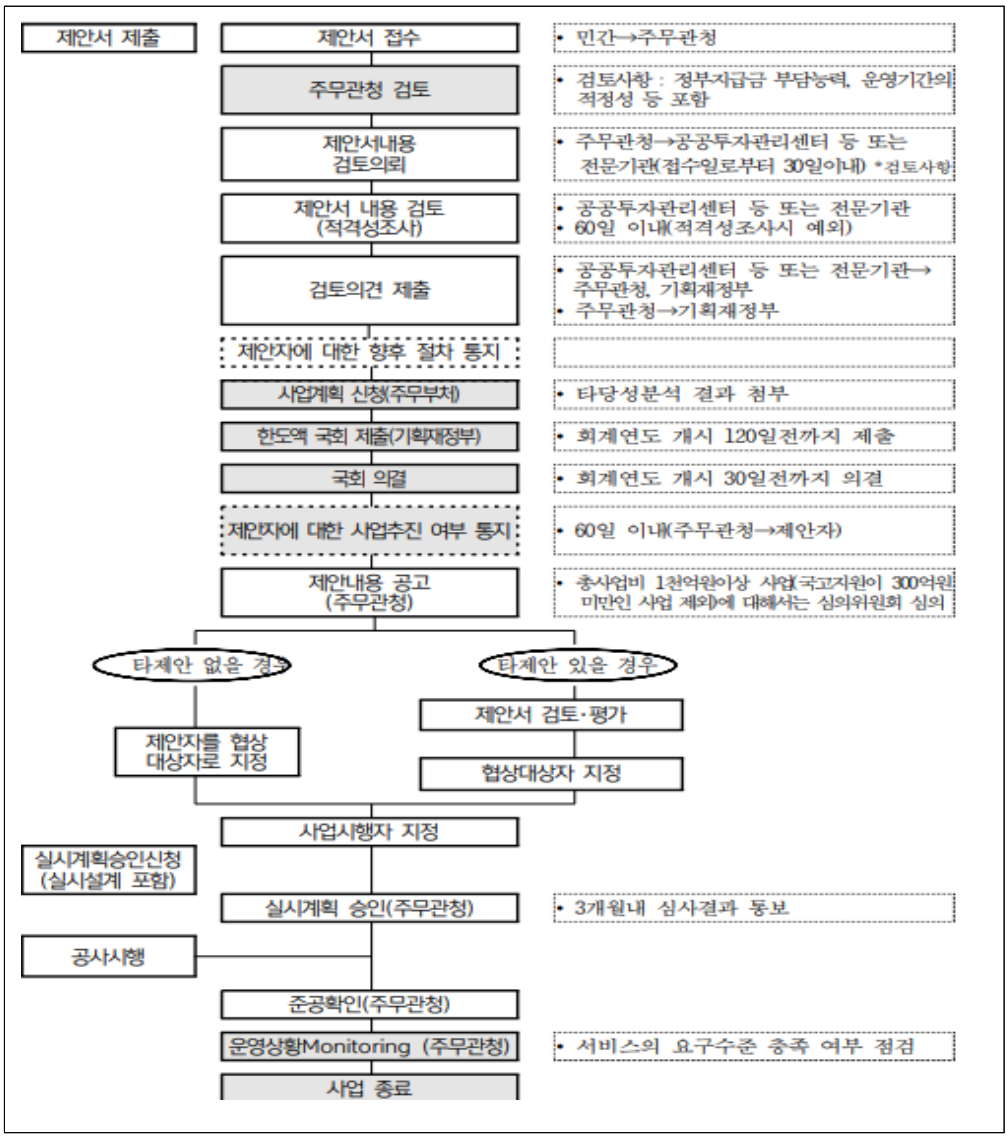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의 제안서 제출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주무관청의 검토의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절차를 거치게 되며, 주무관청은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주무관청은 제안내용을 공고하게 되는데,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게 되며,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평가를 거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다.

[BTL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

「국가재정법」 제9조의2[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3]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2023년 제출한 「2023~203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중 2023년 5월 31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2023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는 18조 1,507억원으로 전망된다.[4]

2)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 중 2023년 및 2024년 정부지급금은 2023년 예산 및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정부지급금은 추계한 전망치이다.

[2023~203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81,507	15,728	16,954	19,335	19,427	19,478
국가사업	145,151	12,083	13,106	15,350	15,412	15,463
- 임대료	119,178	10,146	10,987	12,733	12,732	12,721
- 운영비	25,973	1,937	2,119	2,617	2,681	2,742
국고보조	36,356	3,645	3,848	3,985	4,015	4,015
- 임대료	36,356	3,645	3,848	3,985	4,015	4,015
- 운영비	-	-	-	-	-	-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합계	19,473	19,242	18,669	17,403	15,797
국가사업	15,460	15,254	15,062	14,480	13,480
- 임대료	12,669	12,399	12,211	11,708	10,872
- 운영비	2,791	2,855	2,851	2,772	2,609
국고보조	4,013	3,988	3,607	2,923	2,317
- 임대료	4,013	3,988	3,607	2,923	2,317
- 운영비	-	-	-	-	-

주: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집계(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지급금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32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22, p.3.

2023~2032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는 「2022~203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서 제시한 2022~2031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 16조 5,680억원 대비 1,57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철도, 군거주시설, 학교, 정보통신 등에서 신규 사업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5)]

5) 철도 신규 운영 사업: 2024년도 1개, 군거주시설 신규 운영 사업: 2024년도 4개
학교 신규 운영 사업: 2024년도 5개 2025년도 1개, 정보통신 신규 운영 사업: 2025년도 1개

(4) 202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BTL 한도액은 BTL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7,826억원(69.5%) 감소한 7,82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3,044억원(33.1%)이 감소한 6,157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3,932억원(91.5%) 감소한 1,297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6]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한도액 합계의 20% 이내 범위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한도액 감소에 따라 2024년 예비한도액도 전년 대비 849억원(69.5%) 감소한 37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단위: 억원, %)

구분	2023(A)	2024(B)	증감(B-A)	(B-A)/A
총한도액	25,652	7,826	△17,826	△69.5
국가사업	9,201	6,157	△3,044	△33.1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15,229	1,297	△13,932	△91.5
예비한도액	1,222	373	△849	△69.5

자료: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년도 한도액안을 부처별·대상시설별로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대학시설의 한도액이 총 5,226억원으로 편성액이 가장 크고, 국방부 소관 국방시설에 931억원, 환경부 소관 완충저류시설과 하수관로시설에 각각 487억원과 81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교육시설과 국방시설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그 총액은 6,157억원이고, 완충저류시설과 하수관로시설은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으로 그 총액은 1,297억원이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024년도 부처별·대상시설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단위: 억원)

구분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한도액안
국가 사업	교육부	대학시설	국립대 기숙사 2개	596
			국립대 시설개선 13개	4,630
	국방부	국방시설	간부숙소 1개	475
			교육시설 1개	456
	소 계		17개 사업	6,157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서산시 1개	487
		하수관거시설	포천시 1개	810
	소 계		2개 사업	1,297

자료: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나. 분석의견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총괄적 검토사항

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의 국회 심사 강화를 위한 제출서류 보완 필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한도액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나, 예산안과 달리 국회 심사를 위한 첨부서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도액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그 한도액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하여도 당장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후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간의 재정지출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2032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18조 1,500억원의 정부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되며,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지출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더 큰 상황이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검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국회 심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7]은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제출하도록 할 뿐,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서·타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성 분석보고서·KDI 검토보고서 등 심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의 제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비롯하여 예산안의 국회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첨부서류 등 비교]

구분	예산안	BTL 한도액안
제출서류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	없음

구분	예산안	BTL 한도액안
	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통해서는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는 한도액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내용도 알 수 없다.

또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KDI의 적격성 조사 보고서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서류들도 별도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2021~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있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한도액안에 편성된 사업의 한도액이 감액되거나 사업이 제외되는 사례는 없었는데,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안에 대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서, 타당성 분석 결과, 적격성 조사 결과 등 주요 서류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검토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정부고시사업) 또는 제안서 접수(민간제안사업)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KDI 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의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이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받아야 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BTL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VfM 분석은 BTL 한도액 편성의 타당성·적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VfM 분석은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으로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정부가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으로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 중 어떤 경우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량적 VfM 분석은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더 낮은 비용의 대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정량적 VfM 분석의 경우 PSC와 PFI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각각에 대한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낙찰률, 각종 이자율 등 주요 변수에 관한 가정이 포함되며, 이를 다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할인율이 각 방식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중요 요소가 된다.

[BTL 적격성검토 기본가정 적용기준]

구분	적용
명목할인율	2.5%(실질)+물가상승률(3년 평균)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최근 3년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평균값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5년 만기 국고채 가중평균금리	VfM 분석의 가격기준시점 직전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어 기준비율을 적용한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가중평균치를 사용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금리(AA-)	분석기준일 직전 240일간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평균금리
가산율	매해 공표되는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의 제시값
가산금리	
PFI 사업수익률	지표금리+가산율
건설이자율	기준금리+가산금리
PSC 공사비 낙찰률	제시안 적용
PFI 공사비 적용률	
자기자본비율	5%
타인자본비율	9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제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VfM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재무적 가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하에서는 주요 재무적 가정인 할인율,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VfM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재정지출의 현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분석의 신뢰도·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할인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무적 할인율은 VfM 분석에서 PSC와 PFI 방식 각각에 대한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것이다. PSC와 PFI 간 비교는 생애주기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재무적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은 VfM 분석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적 할인율은 투자대상의 위험과 투자주체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현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불변기준 2.5%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경상기준 재무적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율은 PSC와 PFI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PSC의 경우 초반에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면 PFI는 임대료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BTL에 대한 VfM 분석에서는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PFI 방식 총사업비 재정지출의 현재가치가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VfM 금액도 상승하게 된다. 한편, 운영비의 경우 PSC와 PFI 모두 대상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할인율 적용이 두 방식 간 비교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PSC, PFI의 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영향]

구분		PSC	PFI
총사업비	지출시기	건설기간(초기) 집중	협약기간에 걸쳐 발생
	할인율 영향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큼 - 할인율 상승시 비용의 현재가치 감소
운영비	지출시기	운영기간 동안 지속 발생	
	할인율 영향	두 방식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받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현재 BTL 사업에 대한 VfM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2.5%+물가상승률)의 경우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VfM 분석에서 PFI 방식의 비용부담 현재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그 적정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국방부 서화천 간부숙소 사업의 경우 재무적 할인율은 5.03%로 설정되어 5년 만기 국고채 가중평균금리 3.54%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금리(AA-) 4.70%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었다.

[서화천 간부숙소 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등]

(단위: %)

구분	재무적 할인율	5년 만기 국고채 가중평균금리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금리(AA-)
금리	5.03	3.54	4.70

자료:「서화천 간부숙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그런데 할인율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게 되면 원금상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채권 조달비용의 현재가는 작아지므로, 정량적 VfM 분석과 같이 높은 할인율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 사업의 재원은 당장의 재정지출이 아닌 국고채 혹은 민간투자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서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임대료가 중후반에 발생하는 PFI 재정지출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감소하게 되며, VfM 금액이 상승하여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량적 VfM 분석 등과 관련하여 국고채 수익률보다 상당 수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재무적 할인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VfM 분석에서는 PSC 재원을 5년 만기 국고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장기 국고채 발행의 증가 등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다양화되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재원조달 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VfM 분석기준에서는 PSC의 총사업비나 PFI의 건설보조금은 5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 따르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정부의 재원부족 또는 투자우선순위에서 재정사업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므로, 재정을 즉시 투입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VfM 분석에서 PSC는 사업 초기 집중된 총사업비를 5년 만기 국고채를 통해 조달하고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PFI의 경우 총민간투자비를 임대료를 통해 20년 이상 장기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때 PFI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가 PSC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고채 발행 현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5년 만기 국고채 조달 가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012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5.96년이었으므로, 5년 만기 국고채로 PSC 자금을 조달한다는 가정은 타당할 수 있었다.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기말기준)]

(단위: 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96	6.5	7.11	7.62	8.3	9.06	10.03	10.64	11.31	11.67	12.00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국채」

그러나 장기 국고채 발행에 따라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0년에 이르고 있다. 국고채 발행 잔액 현황을 만기별로 살펴보더라도, 2022년 기준 5년 만기 국고채의 잔액 비중은 13.1%로, 5년 만기 국고채가 정부의 재원조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고채 발행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년물 (비중)	-	-	-	-	-	-	12.5 (1.5)	27.2 (2.9)
3년물 (비중)	64.1 (13.2)	62.1 (12.0)	51.1 (9.3)	47.2 (8.3)	47.4 (7.8)	62.7 (8.6)	82.3 (9.8)	82.0 (8.7)
5년물 (비중)	110.7 (22.8)	108.0 (20.9)	109.5 (20.0)	104.2 (18.4)	99.3 (16.2)	109.1 (15.0)	117.7 (14.0)	122.9 (13.1)
10년물 (비중)	179.9 (37.1)	189.0 (36.6)	198.5 (36.3)	195.1 (34.4)	208.4 (34.1)	240.9 (33.1)	257.9 (30.6)	272.1 (29.0)
물가 (비중)	9.1 (1.9)	11.0 (2.1)	10.5 (1.9)	9.4 (1.7)	9.2 (1.5)	8.5 (1.2)	6.7 (0.8)	6.4 (0.7)
20년물 (비중)	88.1 (18.2)	98.2 (19.0)	108.3 (19.8)	117.5 (20.7)	124.8 (20.4)	136.7 (18.8)	145.3 (17.2)	154.1 (16.4)
30년물 (비중)	12.1 (11.1)	47.5 (9.2)	67.6 (12.4)	90.2 (15.9)	115.8 (18.9)	158.1 (21.8)	205.9 (24.4)	253.0 (27.0)
50년물 (비중)	-	1.1 (0.2)	1.3 (0.2)	3.4 (0.6)	6.7 (1.1)	10.8 (1.5)	15.4 (1.8)	19.7 (2.1)
계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843.7	937.5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국채」

또한, 5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5년 이후 정부가 일시상환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5년 만기 시점에서 국고채를 재발행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국고채별 연간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금리	3.86	3.84	3.88	3.95	3.85	3.80

주: 2023년 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의 경우 만기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고 만기에 따라 상환시점이 달라져 할인율이 적용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국고채 재원조달 가정을 설정하는 것은 VfM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국고채의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국고채 재원조달 가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재원조달 가정을 설정하여 민간투자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개선 필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예산 중 운영비의 경우 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규모별·유형별·항목별 운영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격성 검토에서의 운영비 비교가 면밀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운영비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부는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게 된다. 그 중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운영기간 중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인건비, 제경비, 외주용역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안전진단비, 유지보수비, 시설대체비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비의 주요 구성항목]

구분	구성항목	내용
운영 관리비	인건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직접 인건비
	제경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회계, 세무 등),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여비 등
	외주용역비	청소, 경비 등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
	수도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보험료	운영기간 동안 가입이 필요한 보험비용
유지 관리비	안전진단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시특법 안전진단비와 기타 안전진단비(전기/가스/소방) 등
	유지보수비	시설물 및 설비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시설대체비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내구연한 종료로 인한 대체 또는 장기수선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운영비의 산정절차는 ①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를 설정하여 주무관청 및 민간사업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② 준거사업의 운영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여 대상시설의 운영서비스 시설을 설정하며, ③ 사업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 운영비를 산출하고, ④ 물가산정 기준연도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운영기간 동안의 경상운영비를 산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운영비의 산정절차]

구분	주요 내용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설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설정 주무관청 및 민간사업자 업무분장
운영서비스 수준 설정	준거사업의 운영서비스 수준 확인 청소, 경비 등 항목별 서비스 수준 설정
항목별 운영비 산출	사업특성에 맞는 운영비 항목 설정 항목별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비 산출
경상운영비 산출	물가산정 기준연도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운영기간의 연간 경상운영비 산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운영비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운영범위와 서비스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합리적인 운영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히 산정되는 것에 비하여, 운영비의 경우 시설의 규모별·유형별·항목별 운영비 산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운영비 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적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을 보면, 총사업비의 경우 조사비, 설계비 등 각 항목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총사업비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일부)]

구분	산정기준
조사비	• 측량비: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지반조사비:'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협회) •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설계비	• '건축공사'가 주 사업인 경우:「건축사법」제19조3에 따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라 산정 • '토목공사 등 건설부문'이 주 사업인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요율에 따라 산정
공사비	• 설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 • 사전 설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적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반면, 세부요령은 운영비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와 달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 항목별로 비용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세부기준 등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운영비의 경우 세부요령에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만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시설유형별로도 어떤 세부항목이 운영비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일부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비용산정에 필요한 기준인원, 요율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시)군주거시설 인건비 산정기준]

군주거시설의 운영인원은 사업계획에서 기 설정된 유지관리 및 운영범위와 운영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산출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유사시설의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도 있다. 특히 군주거시설의 운영인원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각 군부대의 현황 및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PSC와 PFI의 운영인원을 각각 산출한다.

자료:「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또한, 세부요령에서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각 주무관청이 소관 분야에 대한 시설유형별 운영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각 사업의 적격성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할 때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이러한 기준 없이 신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23~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군주거시설 사업을 살펴보면, 2023년 제출된 육군 논산 관사 사업에서의 운영비 산정은 '군에서 병영시설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구성 및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추진되었던 사업자료를 기준으로 운영비가 산정되었다.

[육군 논산 관사 사업 운영비 관련 KDI 검토의견]

- PSC 운영비는 기존 군 병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출실적을 검토하여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 군에서는 병영시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설관리운영 조직구성 및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고 있는 특성상 PSC/PFI 비율로 비교하는 적격성조사방법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제시안은 2010~2021년 국방부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24개 병영시설 BTL사업의 제한금액(상한금액)인 4,448원/3.3㎡을 PSC 기준금액, 협약된 평균금액인 4,212원/3.3㎡(부가세 제외)을 PFI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자료: 「육군 논산 관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물론 과거 추진되었던 사업자료도 운영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 사업의 운영비도 별도의 세부기준 없이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운영비 산정방식은 그 정확성·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8)]

한편, 국방부는 2024년 제출한 서화천 간부숙소 사업에 대하여는 각 구성요소별로 보다 면밀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① 인건비의 경우 각 부대 시설물 관리조직의 편제구성과 계급별 급여에 기초해서 산정하고 ② 유지보수비는 국방부 차원에서 실시한 '군 시설물 유지보수비 적정 투자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8)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감사원 및 국방부(감사관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운영실태 감사에서도 시설유형별(관사, 간부숙소, 병영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과거 사례의 평균금액이 아닌 각 운영비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적정운영비를 산정·고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화천 간부숙소 사업의 연간 운영비 산정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SPC 운영비	인건비	제경비	유지 보수비	검사비	보험료	계	1평당 운영비
PSC	-	237	4	130	9	10	390	8,786원
PFI	21	102	16	130	13	16	300	6,753원

자료: 「서화천 간부숙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그러나 PSC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각 부대의 시설물 관리조직이 담당하는 시설 및 업무의 범위가 사업을 통해 준공되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보다 넓음에 따라 인건비의 과다산정 우려가 있고,[9] 유지보수비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 연구결과는 2015년 실시된 것으로 보다 현행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FI 운영비의 경우 유사시설의 사례 등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운영비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시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변경이 어려워 사업준비 및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이를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각 시설유형·규모·구성요소별 운영비 산정과 관련하여 물량·단가·적용요율 등을 포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이후 운영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설유형·규모·구성요소별 운영비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실제로, 국방부에서 제시한 서화천 간부숙소 사업의 운영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PSC 인건비가 PFI 인건비의 2.3배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PSC 운영비 산정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민간투자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임대형 민자사업의 연도별 운영비용은 불변운영비(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지급되고 있는데, 운영비 지출액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각 구성요소별로 서로 다른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 때 실제 물가변동분의 반영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운영비용의 산정기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①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경상운영비} = \text{불변운영비} \times \left[\frac{\text{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해당분기의 직전분기 마지막 달의 소비자물가지수}}{\text{협약상의 가격산출기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right]$$

자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그런데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유지보수비, 수도광열비 등 서로 그 성격이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연도별 운영비용을 산정할 때 일괄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물가상승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운영비의 주요 구성항목]

구분	구성항목	내용
운영 관리비	인건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직접 인건비
	제경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회계, 세무 등),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여비 등
	외주용역비	청소, 경비 등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
	수도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보험료	운영기간 동안 가입이 필요한 보험비용
유지 관리비	안전진단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시특법 안전진단비와 기타 안전진단비(전기/가스/소방) 등
	유지보수비	시설물 및 설비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시설대체비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내구연한 종료로 인한 대체 또는 장기수선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예를 들어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등과 관련된 유지보수비 및 시설대체비의 경우, 연도별 운영비용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지수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운영비 구성요소별 물가상승률 반영 관련 지표 대안(예시)]

구분	인건비	유지보수비	시설대체비	보험료	수도광열비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대안	명목 임금지수	건설공사지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보험요율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상승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연도별 운영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그 특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운영비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형 민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시설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조치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행 성과평가제도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인의 평가 참여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10]는 주무관청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주무관청이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관련 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3조(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①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이러한 성과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지급분의 경우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차감지급 관련 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감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사업시행자측 위원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하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성과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군 주거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측 직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2명(주무관청 1명, 사업시행자 1명 임명), 시설이용자 2명으로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사업시행자측 직원 2명과 사업시행자가 임명한 전문가 1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시행자 측 직원이 성과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성과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이 불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나, 이는 사업시행자 측 인원이 참관·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평가위원별 실제 평가점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이러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1]

다음으로, 성과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무관청 측 공무원과 관련하여서도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그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 시설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평가는 하루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문성 부족 및 성과평가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시협약 체결 시 차감지급의 조건 설정 자체가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어렵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성과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이 부여되더라도, 차감지급 조건상 전체 운영비 규모 대비 차감지급의 비율이 매우 낮게 설정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운영비 규모 대비 차감지급액 등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제 시설의 운영이 대부분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지, 혹은 성과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실시협약에서 규정된 차감지급의 조건이 적정하게 설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종합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의 전문성, 차감지급의 조건 등에 대한 점검·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내실화하여 시설운영과 운영비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1)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분석은 존재하지 않으나, KDI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인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그룹군에서 다른 그룹군에 비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2)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분석

① 국방부 소관 2개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미확보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 중 국방부 소관 2개 사업은 VfM 분석 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사업으로, 민간투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없이 이들 사업을 한도액안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24년도 한도액안을 부처별·대상시설별로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대학시설의 한도액이 15개 사업 총 5,226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며, 국방부 소관 국방시설 2개 사업에 931억원, 환경부 소관 1개 완충저류시설 사업과 1개 하수관로시설 사업에 각각 487억원과 8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부처별·대상시설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단위: 억원)

구분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한도액안
국가 사업	교육부	대학시설	국립대 기숙사 2개	596
			국립대 시설개선 13개	4,630
	국방부	국방시설	간부숙소 1개	475
			교육시설 1개	456
	소 계		17개 사업	6,157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서산시 1개	487
		하수관거시설	포천시 1개	810
	소 계		2개 사업	1,297

자료: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그런데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국방부 소관 2개 사업은 VfM 분석에 따라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민간투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이들 사업을 한도액안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주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VfM이 △3억원으로 분석되

었고, 서화천 간부숙소 사업도 VfM이 △3.7억으로 산출됨에 따라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방부 소관 2개 사업의 정량적 VfM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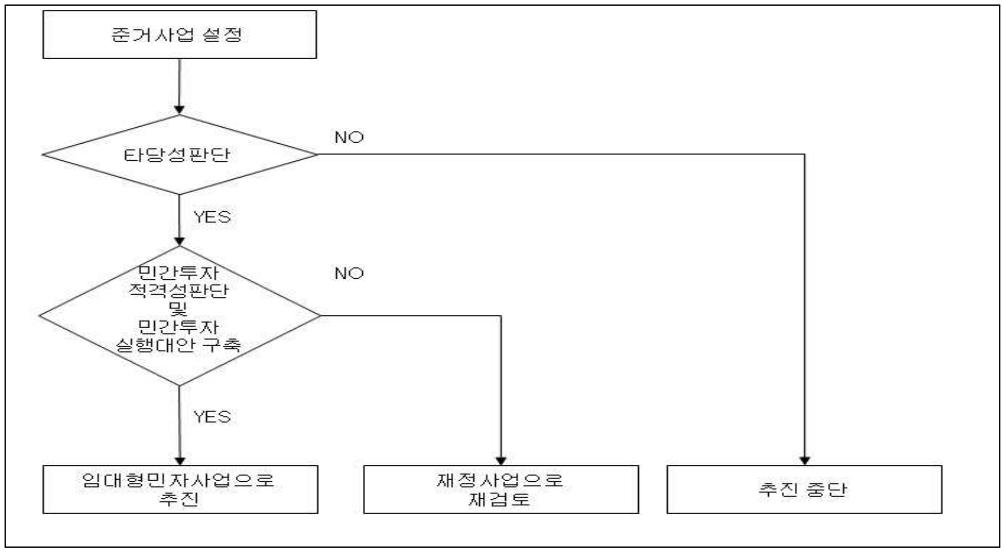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총현금지출액		VfM (A-B)	VfM 비율 ((A-B)/A)	민간투자 적격성
		PSC (A)	PFI (B)			
국방부	청주 교육시설	49,062	49,362	△300	△0.61	×
	서화천 간부숙소	50,722	51,086	△365	△0.72	×

자료: 각 사업별 KDI 검토의견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특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 그 검토결과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이들 사업을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의 수행절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물론, 특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VfM 분석 결과 외에도 사업의 추진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법령 등에서 VfM 분석 결과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도출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2개 사업의 경우 정량적 VfM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보고서 중 정성적 VfM 분석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인 국방부는 본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된 정성적 측면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분석 또한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소관 2개 사업의 정성적 VfM 분석에 대한 KDI 검토의견]

□ 정성적 VfM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정성적 VfM 분석은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를 정성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절차이며, 정량적 VfM 분석을 보완함.

◦주무관청은 보고서상 종합평가에 관련 내용을 일부 수록은 하였지만, 별도로 본 사업의 정성적 VfM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요령에서 제시하는 정성적 VfM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세부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주무관청은 보다 면밀한 정성적 VfM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 각 사업별 KDI 검토의견서

또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적격성 조사 등 전문기관의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적·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법령에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 하여 검토결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도액안에 포함하여 추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2024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국방부 소관 2개 사업과 관련하여 KDI 공공투자센터의 검토의견이 제시된 것은 2023년 8월으로, 그 시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부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재검토 또는 정량적 VfM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및 방안마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4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국방부 소관 2개 사업의 경우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민간투자방식 추진 여부 및 한도액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교육부 소관 9개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미확보 및 임의적 계수조정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교육부 사업 중 상당수는 최초 VfM 분석 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교육부는 일부 계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다는 결과를 유도하였는데, 최초 분석 결과를 확인한 후 특정 계수를 조정하여 분석 결과를 변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도액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24년도 한도액안에 포함된 교육부 소관 대학시설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최초 VfM 분석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육부 소관 15개 사업에 대한 KDI의 정량적 VfM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현금지출액		VfM (B-A)	VfM 비율 ((B-A)/A)	민간투자 적격성
	PSC (A)	PFI (B)			
부산대 생활관 개축	46,259	46,425	△166	△0.36	×
금오공과대 생활관 신축	38,628	38,555	73	0.19	○
전남대 공학융합관 개축	56,335	56,575	△240	△0.43	×
전북대 공대1호관 개축	61,391	61,656	△265	△0.43	×
부산대 시설개선	36,573	36,043	530	1.45	○
서울과기대 시설개선	38,862	38,930	473	1.22	○
전북대 시설개선	37,316	36,715	601	1.61	○
군산대 시설개선	53,404	53,688	284	0.53	○
서울과기대 스마트기술동 신축	61,861	62,138	△278	△0.45	×
경북대 시설개선	57,975	57,959	16	0.03	○
경상국립대 시설개선	47,236	47,294	△57	△0.12	×
충남대 동물응급의료센터 신축	48,644	48,689	△45	△0.09	×
서울교대 인문관 개축	39,122	39,254	△132	△0.34	×
제주대 교육대학 개축	57,555	57,955	△400	△0.70	×
한국교통대 등 시설개선	57,289	57,478	△189	△0.33	×

자료: 각 사업별 KDI 검토의견서

그런데 이러한 검토결과가 도출된 이후 교육부는 정량적 VfM 분석에 적용되는 계수 중 PFI 적용률과 관련하여, '대체시설비'에 대한 PFI 적용률만 변경하여 적용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였다.[12)]

12) 2024년 국립대 생활관 및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관련 변경사항 제출(교육부 교육시설과, 2023.8.22.)

[교육부의 정량적 VfM 분석 관련 계수 변경 요청 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체시설비(교체비) PFI적용률	공사비 PFI적용률	유사사례 대체시설비 PFI적용률	2022년 실시협약 체결한 「경상국립대 외 3교」 실적 요율 적용

자료: 각 사업별 KDI 검토의견서

[교육부의 대체시설비 PFI적용률 변경 요청에 따른 변화]

(단위: %)

구분	기존 적용값	변경 적용값
PFI적용률	97.36	83.90

자료: 각 사업별 KDI 검토의견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최초 검토에 따르면 유지보수비 및 교체비는 'PSC 또는 PFI 공사비'에 '공사비 대비 유지보수비 또는 교체비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데, 교육부는 PFI 운영비 중 교체비에 대해 2022년 실시협약을 완료한 경상대 외 3교의 실적요율 83.90%를 PFI 적용률로 적용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최초 적격성 조사 결과와 별개로 참고자료로서 '교육부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첨부하였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결과를 적용할 경우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9개 사업이 모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변경된다.

[대체시설비 PFI적용률 변경에 따른 정량적 VfM 분석 결과 변화]

(단위: %)

사업명	당초 적격성 분석 결과			교육부 변경요청 적용시		
	VfM	VfM 비율	민간투자 적격성	VfM	VfM 비율	민간투자 적격성
부산대 생활관 개축	△166	△0.36	×	1,094	2.35	○
전남대 공학융합관 개축	△240	△0.43	×	1,030	1.83	○
전북대 공대1호관 개축	△265	△0.43	×	1,199	1.95	○
서울과기대 스마트기술동 신축	△278	△0.45	×	1,266	2.05	○
경상국립대 시설개선	△57	△0.12	×	945	2.00	○
충남대 동물응급의료센터 신축	△45	△0.09	×	991	2.04	○
서울교대 인문관 개축	△132	△0.34	×	821	2.09	○
제주대 교육대학 개축	△400	△0.70	×	913	1.58	○
한국교통대 등 시설개선	△189	△0.33	×	1,306	2.27	○

자료: 각 사업별 KDI 검토의견서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대체시설비 PFI적용률 변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교육부는 당초 제출한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KDI 검토결과를 확인한 후 특정 계수에 대한 변경과 그에 대한 재추정 결과를 KDI에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적격성 조사 결과를 주무관청이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도출되도록 변경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토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가 2024년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PFI적용률을 변경한 추가 검토 요청을 한 것은 2023년 8월 22일로, 당초 교육부 제출 보고서에 기초한 KDI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시점에서 교육부의 추가 검토 요청이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변경요청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9개 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결과가 '적격성 없음'에서 '적격성 있음'으로 변경되는데, 사업조건 등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계수 조정을 통해 변경된 검토결과를 인정한다면 주무관청이 적격성 조사 결과가 정책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일부 계수를 조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KDI 검토의견을 받은 후 추가적인 변경요청을 통해 재산정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교육부의 변경요청은 분석의 일관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교육부는 대체시설비에 대하여만 세부항목별 PFI 적용률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정량적 VfM 분석 시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 전체의 PFI 적용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경요청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적격성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항목별 PFI 적용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세부항목에 대하여 각 세부항목별 PFI 적용률을 반영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만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분석결과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비의 PFI적용률은 2018년 이후 사업, 운영비의 PFI적용률은 2017년 이후 사업의 평균 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교육부의 대체시설비 PFI적용률 변경요청은 2022년 실시협약을 완료한 3개교의 실적요율을 기준으로만 산정하여 PFI 적용률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PFI 대체시설비는 'PSC 공사비'에 'PFI 적용률'과 '교체비 요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교체비 요율에 이미 대체시설비의 낮은 낙찰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PFI 적용률'을 대체시설비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중복 산정에 따라 PFI 대체시설비가 과소평가되는 측면도 있다.[13)]

종합하면, 교육부의 추가요청에 따른 적격성 조사 검토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13) 교체비 요율은 실제 공사비와 실제 대체시설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대체시설비의 낮은 낙찰률로 인한 효과는 이미 교체비 요율에 반영되어 있어, PFI 적용률을 공사비 기준이 아닌 대체시설비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그 효과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적격성 검토의 신뢰성·일관성·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KDI 검토결과가 나온 후 주무관청이 특정 계수의 조정을 요청하여 검토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교육부 사업 9건의 경우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초 검토결과를 존중하여 그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부 및 국방부 소관 사업: 정성적 VfM 분석 실시 및 강화 필요

2024년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 중 상당수는 정성적 VfM 분석과 관련된 검토가 사전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성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적격성 조사 및 국회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은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량적 VFM 분석이 정부 입장에서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하는 것이라면, 정성적 VFM 분석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성적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이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를 정성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게 되며, 이러한 분석은 정량적 VfM 분석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정성적 분석의 경우 그 특성상 평가항목을 정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세부요령은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으로 민자적합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공공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사업의 위험분담효과·파급효과·특수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성적 VfM 분석의 주요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내용
민자적합성	민간투자법 제2조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해당 여부
	사업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요구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서비스 질 향상: 재정시설보다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지 여부
	계약 체결 및 관리의 용이성: 건설·운영 관련 제반 규정이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 계약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사업추진 효율성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기존 사업과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에게 다른 대안의 선택이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지 여부
사업추진 용이성	사업시행의 환경적(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등) 제약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 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편익이나 피해를 받는 이해당사자가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세부 내용
위험분담효과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위험의 민간 분담이 가능한지 여부
	민간이 분담하는 기타 위험요소의 파악
파급효과	민간사업자 참여로 인해 공공부문으로의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고도의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사업 특수성	보안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국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그런데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 중 교육부 및 국방부 소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검토단계에서 이러한 정성적 측면의 검토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적격성 조사에서도 주무관청의 제출자료 미비로 정성적 VfM 분석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및 국방부 소관사업에 대한 정성적 VfM 분석 검토의견(일부)]

사업명(주무관청)	KDI 검토의견
전북대 시설개선(교육부)	◦ 주무부처는 보고서상 종합평가에 관련 내용을 일부 수록하고, 별도로 본 사업의 정성적 VfM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요령에서 제시하는 정성적 VfM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세부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보다 면밀한 정성적 VfM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바람
서화천 간부숙소(국방부)	◦ 주무관청은 보고서상 종합평가에 관련 내용을 일부 수록은 하였지만, 별도로 본 사업의 정성적 VfM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요령에서 제시하는 정성적 VfM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세부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주무관청은 보다 면밀한 정성적 VfM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정성적 VfM 분석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한 가능성 측면의 분석이라는 점에서는 정량적 VfM 분석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량적 VfM 분석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정성적 측면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정성적 VfM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국회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할 경우 주무관청 등으로 제출받은 적격성 분석 보고서 및 KDI 검토보고서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정성적 VfM 분석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도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정성적 VfM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분석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시 정성적 VfM 분석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종합의견

임대형 민자사업은 그 한도액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하여도 당장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후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간의 재정지출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한도액안 편성 및 국회 심사 단계에서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검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국회 심의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 중 다수는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들로, 적격성 미확보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행대안을 바탕으로 이들 사업이 한도액안에 편성되어 추진됨에 따라 적격성 조사 등 사전검토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관련하여서는 국회 제출 서류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심사·통제를 강화하여, 장기간에 걸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1개) 및 기금(6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재정구조]

<table>
<tr><th>일반회계(1개)</th><th colspan="2">특별회계(21개)</th><th>기금(68개)</th></tr>
<tr><th>세입</th><th>기업특별회계(5개)</th><th>기타특별회계(16개)</th><th>사회보험성기금(6개)</th></tr>
<tr><td>•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부족시 국채발행</td><td rowspan="2">•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td><td rowspan="2">• 교도작업
• 지역균형발전
• 농어촌구조개선
• 등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에너지및자원사업
• 우체국보험
• 주한미군기지이전
• 환경개선
• 국방·군사시설이전
• 혁신도시건설
• 교통시설
• 유아교육지원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 고등·평생교육지원</td><td>• 국민연금기금
• 고용보험기금 등</td></tr>
<tr><th>세출</th><th>금융성기금(8개)</th></tr>
<tr><td>• 보건/복지/고용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환경
• R&D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OC
• 농림/수산/식품
• 국방
• 외교/통일
• 공공질서/안정
• 일반/지방행정 등</td><td></td><td></td><td>• 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기금 등</td></tr>
<tr><td></td><td></td><td></td><td>계정성기금(5개)</td></tr>
<tr><td></td><td></td><td></td><td>•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등</td></tr>
<tr><td></td><td></td><td></td><td>사업성기금(49개)</td></tr>
<tr><td></td><td></td><td></td><td>• 주택도시기금
• 남북협력기금 등</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을 토대로 재작성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4-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가. 법적 근거

특별회계 및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1]에 따라 특정 사업 및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기금 간 지나치게 제한적인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13조[2]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3]는 기업특별회계의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4], 「복권 및 복권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기금법」[5]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회계·기금 간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내부거래 의의

회계·기금 간 거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부족한 자금의 보전이나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 예탁·예수 등 재원 이전을 "내부거래"라고 하는데, 내부거래는 단순히 회계·기금 간 재원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고 회계·기금 간 거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실제 수입과 지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표되는 총수입·총지출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8개 금융성기금[6]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총지출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하 분석에서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보증·보험 등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그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인 재정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수입·총지출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내부거래 관련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

세 입			세 출	
관	항	목	목	세목
(34) 세계잉여금	(89) 세계잉여금이입액	(892)세계잉여금이입액		
		(893)전년도세계잉여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전입금	(911)일반회계전입금	(610) 전출금등	(610-01)일반회계전출금
		(912)특별회계전입금		(610-02)특별회계전출금
		(913)기금전입금		(610-03)기금전출금
				(610-04)계정간전출금
		(915)계정간전입금	(710) 예비비및기타	(710-03)반환금및손실금
		(916)기타전입금		
	(92) 예탁원금회수	(921)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510) 상환지출	(510-04)예수금원금상환
		(922)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923)기금예탁원금회수		
		(924)계정간예탁원금회수		(510-05)예수금이자
		(926)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927)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94) 예수금	(941)일반회계예수금	(480) 예탁금	(480-01)일반회계예탁금
		(942)특별회계예수금		(480-02)특별회계예탁금
		(943)기금예수금		(480-03)기금예탁금
		(945)계정간예수금		
		(946기타민간예수금		(480-04)계정간예탁금
	(95) 예탁이자수입	(951)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510) 상환지출	(510-05)예수금이자
		(952)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953)기금예탁이자수입		
		(955)계정간예탁이자수입		(510-07)전대차관 이자
		(956)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		
		(957)기금전대차관이자수입		
	(96) 기타	(961)당기순이익전입금	(610) 전출금등	(610-07)당기순이익
		(962)감가상각비전입금		(610-06)감가상각비
		(963)제충당금전입금		

주: 목별 일반적인 분류를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4-2.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

가. 전체 현황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계 규모는 전년대비 144조 9,403억원(10.2%) 증가한 1,572조 387억원이고, 정부내부거래는 전년대비 92조 445억원(26.3%) 증가한 442조 4,151억원으로, 총계의 2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계의 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p)

구 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A)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B)	증 감	
			(B-A)	(B-A)/A
예산 및 기금 총계(a)	14,270,984	15,720,387	1,449,403	10.2
일반지출[1)]	6,524,521	6,723,003	198,482	3.0
정부내부거래(b)	3,503,706	4,424,151(100.0)	920,445	26.3
회계기금 간	1,007,818	1,403,467(31.7)	395,649	39.3
회계 간	457,660	562,119(12.7)	104,459	22.8
기금 간	1,975,616	2,411,673(54.5)	436,057	22.1
계정 간	62,612	46,892(1.1)	△15,720	△5.1
보전거래	4,242,757	4,573,234	330,477	7.8
차입금원금상환	1,391,123	1,433,476	42,353	3.0
여유자금운용 등 기타	2,851,634	3,139,757	288,123	10.1
비율(b/a)	24.6	28.1	3.6	-

주: 1. 일반지출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총지출 규모와 차이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91조 5,88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총계) 449조 5,822억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2%p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51조 1,703억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및 상환지출은 40조 4,179억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412,001	511,703	99,702	24.2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211,235	221,520	10,285	4.9
	상환지출	144,843	182,659	37,816	26.1
	소계	356,079	404,179	48,100	13.5
합계(a)		768,079	915,882	147,803	19.2
일반회계 예산 규모(b)		4,462,422	4,495,822	33,400	0.7
비율(a/b)		17.2	20.4	3.2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기준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18조 4,320억원으로 특별회계 총계(99조 3,225억원)의 18.6% 수준이다. 특별회계 간 전출금 8조 9,643억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4조 86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예산안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금	3,700	4,414(2.4)	714	19.3
특별회계→특별회계	전출금	80,235	89,643(48.6)	9,408	11.7
특별회계→기금	전출금	36,381	40,864(22.2)	4,483	12.3
	예탁금	29,297	35,552(19.3)	6,255	21.4
	상환지출	9,281	13,847(7.5)	4,566	49.2
	소계	74,959	90,263(49.0)	15,304	20.4
합계(a)		158,895	184,320(100.0)	25,425	16.0
특별회계 예산 규모(b)		877,266	993,225	115,959	13.2
비율(a/b)		18.1	18.6	0.4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기금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332조 3,948억원으로 기금 총계 1,023조 1,339억원의 32.5% 수준이다. 기금 간 상환지출 143조 2,070억원, 기금 간 예탁금 91조 136억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81조 8,39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일반회계	전출금	524	524	796(0.02)	272	51.8
	예탁금	458,486	458,486	818,396(24.6)	359,910	78.5
	상환지출	-	-	-(-)	-	-
	소계	459,010	459,010	819,192(24.6)	360,181	78.5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311	15,311	15,129(0.5)	△182	△1.2
	예탁금	21,149	21,149	42,137(1.3)	20,988	99.2
	상환지출	81,310	81,310	32,567(1.0)	△48,743	△59.9
	소계	117,770	117,770	89,834(2.7)	△27,936	△23.7
기금→기금	전출금	66,360	66,407	72,717(2.2)	6,309	9.5
	예탁금	934,428	936,028	910,136(27.4)	△25,892	△2.8
	상환지출	999,164	979,124	1,432,070(43.1)	452,947	46.3
	소계	1,999,952	1,981,559	2,414,923(72.7)	433,364	21.9
합계(a)		2,576,732	2,558,339	3,323,948(100.0)	765,609	29.9
기금운용계획 규모(b)		8,931,295	8,915,321	10,231,339	1,316,018	14.8
비율(a/b)		28.9	28.7	32.5	58.2	-

자료: 기획재정부

동일 회계·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지출은 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금 4조 3,641억원, 기금 계정 간 내부거래 3,250억원이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회계 · 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본예산 (A)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B)	증 감	
				(B-A)	(B-A)/A
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금	38,276	43,641	5,365	14.0
기금 계정 간	전출금	17,921	3,180	△14,741	△82.3
	상환지출	6,415	70	△6,345	△98.9
	소계	24,336	3,250	△21,086	△86.6
합계		62,612	46,892	△15,720	△25.1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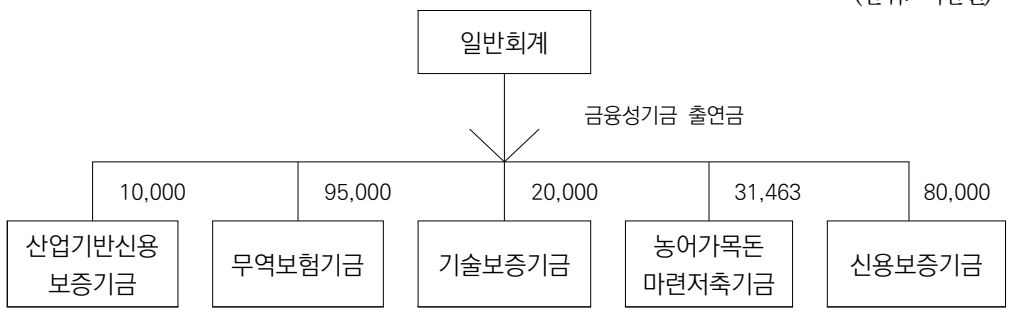
한편, 8개 금융성기금[7]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보증·보험 등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그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인 재정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 기금 자체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정부 총수입·총지출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이들 기금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실질적 지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재원 이전에 해당하므로 민간에 재원을 이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고, 기금전출금(610-03)목이 아닌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으로 편성하여 해당 재원은 정부 총지출에 포함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금융성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기금전입금(91-913)목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목에 계상한다.

2024년 일반회계로부터 금융성기금으로 지출되는 출연금은 총 2,364억 6,300만원이고, 금융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없다.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금융성기금과의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7)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나.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 출자기업의 배당·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8]이다.

2024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는 15개 특별회계 및 21개 기금과 내부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3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고, 13개 특별회계와 21개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고 있다.

일반회계는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 회계 및 기금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탁금과 구분된다.

먼저, 일반회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특허청 계정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전출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의 특정 세입재원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출하거나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외에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73조 3,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9,988억원(17.6%)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구분	회계/기금명	2020	2021	2022	2023	2024(안)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31,265	39,304	41,939	50,700	56,350
	교통시설	136,868	132,847	115,748	94,549	130,421
	농어촌구조개선	53,847	19,382	19,084	32,799	32,52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20,353	25,141	23,493	22,530	19,6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010	1,384	1,294	1,290	956
	양곡관리	15,810	16,154	11,802	18,927	22,838
	우편사업	108	115	123	136	140
	유아교육지원	39,019	37,076	36,534	33,583	32,106

8)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단위: 억원, %)

회계구분	회계/기금명	2020	2021	2022	2023	2024(안)
	고등·평생교육지원	-	-	-	97,427	155,557
	책임운영기관(특허청계정 제외)	3,087	2,904	2,784	3,003	3,1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3,088	4,317	3,915	2,202	1,320
	혁신도시건설	187	805	240	161	226
	환경개선	50,899	53,449	55,738	54,694	56,487
기금	고용보험	11,502	10,654	13,000	3,000	4,000
	공공자금관리	152	213	284	192	52
	공무원연금	32,992	38,068	43,139	52,078	58,912
	공적자금상환	21,000	26,000	26,000	21,600	25,000
	관광진흥개발	304	378	110	174	244
	국민연금	102	102	103	105	111
	군인연금	27,826	28,182	29,220	31,017	34,170
	남북협력	1,500	1,000	1,000	1,000	1,000
	기후대응	-	-	7,632	12,223	10,728
	대외경제협력	5,881	7,529	6,623	8,873	12,187
	문화예술진흥	210	204	300	300	300
	범죄피해자보호	824	1,061	942	942	8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8,959	9,407	9,877	10,900	10,112
	사학진흥	-	-	-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230	223	219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155	163	183	200	213
	소상공인시장진흥	50,997	155,177	411,597	5,700	13,38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767	808	888	927	927
	양곡증권정리	1,946	1,955	1,915	1,609	1,609
	정보통신진흥	-	-	1,958	-	-
	응급의료	1,807	1,994	2,295	2,339	2,542
	임금채권보장	1	1	-	1	1
	주택도시	24,240	35,936	42,781	45,589	33,06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14,178	17,361	11,820	11,642	12,111
	지역신문발전	80	87	83	25	-
	영화발전	-	-	-	800	-
합 계		561,194	669,381	924,663	623,237	733,225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예산, 2024년은 예산안 기준
2. 8개 금융성기금에 대한 전출금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등기특별회계에서 1,240억원, 조달특별회계에서 2,009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에서 1,16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각각 422억원, 374억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타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기금명	2020	2021	2022	2023	2024(안)
등기특별회계	-	292	-	1,702	1,240
조달특별회계	-	700	616	474	2,0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732	566	1,060	1,525	1,16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22	625	486	461	422
군인복지기금	620	450	-	-	-
공무원연금기금	651	696	669	63	37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000	2,000	2,320	-	-
합 계	10,525	5,329	5,151	4,225	5,211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예산,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① 총괄계정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의 관리,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② 융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을 관리[9]하기 위한 것이며, ③ 차관계정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322.8조원으로, 총괄계정의 운용규모가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관계정의 계획안은 0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별 운용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2024(안)
총괄계정	250.0	283.7	322.6
(비중)	(99.7)	(99.6)	(99.9)
융자계정	0.4	0.7	0.2
(비중)	(0.2)	(0.3)	(0.1)
차관계정	0.4	0.3	-
(비중)	(0.1)	(0.1)	(-)
계	250.8	284.7	322.8

주: 1. () 안은 해당연도의 계정별 운용규모 비중을 나타냄
2. 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 2024년은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9) 2006년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하여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을 신설하였다.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41개 기금과 예수·예탁 방식의 내부거래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재원의 재배분 기능은 총괄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총괄계정은 정부 내 타 회계·기금으로부터 잉여재원을 예수하여 재원이 부족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공공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잔액은 30조 331억원, 예탁잔액은 1,022조 97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예탁 잔액(예상)]

구분	회계/기금명(계정)	잔액(억원)	구분	회계/기금명(계정)	잔액(억원)
예수잔액	교도작업특별회계	626	예탁잔액	일반회계	7,334,777
	우체국예금특별회계(손익)	40,41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8,448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	9,20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20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15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	14,0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1,23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65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	37,999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	9,600		고용보험기금	93,049
	국유재산관리기금	30,709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	1,718
	국제교류기금	420		공적자금상환기금	222,218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 · 실업)	500		관광진흥개발기금	23,807
	기술보증기금	1,950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	53,813
	농지관리기금	13,000		국제질병퇴치기금	1,10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2,470		군인복지기금(주거지원)	550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	1,200		기후대응기금	10,526
	복권기금	700		남북협력기금	31,36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9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특물)	110		대외경제협력기금	23,27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3,000		문화재보호기금	916
	임금채권보장기금	1,000		방송통신발전기금	15,72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500		사학진흥기금	3,509
	전력산업기반기금	1,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혁신)	1,767
	주택도시기금(주택)	105,17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4,057
				수산발전기금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37,949
				외국환평형기금	2,015,035
				원자력기금(연구개발)	120
				응급의료기금	3,084
				정보통신진흥기금	27,82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00
				청소년육성기금	229
				축산발전기금	11,319
합 계		**300,331**	**합 계**		**10,220,975**

주: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때의 예상 잔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일반회계가 세출 규모 대비 국세 수입 등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신규로 예수하는 소위 "일반회계 적자국채" 금액은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102조 8,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였다가 2023년에는 45조 8,486억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대비 큰 폭 감액(△49.7%)되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 다시 전년 대비 35조 9,910억원이 증액(78.5%)된 81조 8,396억원의 신규 예수가 편성되었다.

[연도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신규예수 현황]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	2회추경		
343,000	1,028,000	882,000	761,759	911,917	458,486	818,396

주: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은 예산,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3. 분석의견

가.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2023년도 400.5조원 대비 33.1조원 감소한 367.4조원으로 편성된 반면,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3.3조원 증액된 449.6조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그 결과 2024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81.8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수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바, 세입 증액분이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타 회계·기금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회계·기금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분석

① 과소계상된 특별회계 세입분 및 기금 자체수입 등을 고려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필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으로 사료용 쌀 40만톤 판매에 관한 가공임을 반영하였으나, 판매에 따른 수입을 미곡판매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규모 추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10]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미곡판매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며, 세출은 정부양곡매입, 수입양곡대, 정부양곡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11]

10)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 pp.31~34 참조

11)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쌀 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및 정부의 쌀 공공비축 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매입비 및 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세출이 증가한 결과 자체수입 규모에 비해 세출 규모가 확대되어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2024년도 정부양곡 판매에 따른 미곡판매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군수용, 관수용 등으로 78만 9,700톤을 처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판매 대금 수입으로 4,135억 5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4년 미곡판매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톤, 백만원/톤, 백만원)

구분	물량	단가	금액
군수용	28,000	2,608	73,024
관수용	7,000	2,608	18,256
학교급식용	200	2,608	522
기초수급자용	110,000	261	28,710
차상위계층용	31,000	1,043	32,333
기초보장시설용	1,000	1,304	1,304
무료급식단체용	500	313	157
경로당용	10,000	2,608	26,080
가공용	360,000	404	145,440
주정용	140,000	364	50,960
원조용	102,000	360	36,720
합 계	789,700	-	413,5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정부양곡의 보관 및 판매 비용으로 집행되는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총 매출 120만톤을 기준으로 이 중 사료용 40만톤, 기타 80만톤으로 처리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2024년 정부양곡관리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정부양곡 관리비(정부)	• 수입쌀 관세 : 30,813백만원 • 훈증제 구입비 : 1,408백만원 • 보관·가공 등 조작관리비 : 328,916백만원 - 가공임 : (사료용) 40만톤×가공요율(벼→현미)×1.1 = 27,307 (기타) 80만톤×가공요율(벼→쌀)×1.1 = 98,529 - 운송료 : 58,712 (공공비축 45만톤, TRQ수입 41만톤, 매출 120만톤 기준) - 상하차료, 보험료 등 : 60,673 (공공비축 45만톤, 매출 120만톤 기준) • 양특 자문관 운영 : 30백만원 • 정부양곡 매입·관리 교육비 : 150백만원 • 과오납 반환금 : 95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에서 양곡 판매 120만톤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곡판매수입 사업에는 78만 9,700톤 판매대금만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사료용 40만톤 매출에 대한 판매 수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어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이 과소하게 계상[12]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 세입·세출 규모를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인 이자수입 및 보증수수료 수입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체수입 계획액 산출산식을 재검토하여 자체수입을 적정규모로 증액하고 수입 증액 규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상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13]

일반회계전입금은 기금이 민간투자사업 대출보증·유동화회사보증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고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원으로, 정부는 기금의 보증공급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운용배수 관리를 위해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12)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료용 미곡 40만톤 판매 가정 시 1,200억원 판매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산출) 40만톤×300천원/톤 = 120,000백만원

13)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168~175 참조

운용배수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의미하며,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외에 보증료·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을 포함한다.[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년도 운용배수(14.7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00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산출 근거]

(단위: 억원, 배)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A)	기본재산(B)	출연금	운용배수(A/B)
'22년 (실적)	23,106	128,873	8,789	150	14.66
'23년 (계획)	23,000	134,644	9,192	100	14.65
'24년 (계획)	24,000	140,916	9,592	100	14.69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그러나 2024년도 자체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면허료및수수료 계획액이 보수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최근 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 보증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방향과 달리 2024년에 수익률 하락을 예상하여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다.

2024년도 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입계획안 산출내역을 보면, 2023년 대비 여유자금운용규모는 증가하나 목표수익률을 2023년 계획 2.13%보다 낮은 1.56%로 설정하였다.

14) 보증기금 운용배수 산정 산식

$$\text{운용 배수} = \frac{\text{보증잔액}}{\text{기본재산(보증료 등 자체 수입 + 정부 출연금)}}$$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23 ·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액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19,690	여유자금운용규모(924,413백만원) × 목표수익률(2.13%)
2024계획안	15,740	여유자금운용규모(1,008,974백만원) × 목표수익률(1.56%)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2년 대비 2023년 연기금투자풀 수익률[15], MMF · CMA[16]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였고, 실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도 2022년 총 수익률이 △0.75%에서 2023년 7월 기준으로 5.80%로 상승하였다.

특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및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인다.[17]

15) 연기금투자풀 금리 추이

(단위: 연 %)

구 분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MMF	1.49	1.69	2.46	3.63	3.96	3.77
채권형	-4.99	-6.51	-2.02	5.76	10.41	0.30
혼합형	-1.91	-4.95	-1.45	1.47	4.71	1.81
국내주식형	-6.59	-15.53	-7.54	4.95	10.52	4.64
해외주식형	-2.47	-9.60	2.61	-2.22	7.63	6.66

자료: 연기금투자풀 누리집(http://investpool.go.kr)

16) 2022~2023 2분기 MMF 및 CMA 금리 추이

(단위: 연 %)

구 분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MMF(7일형)	1.39	1.60	2.34	3.47	3.89	3.70
CMA(수시형)	0.93	1.23	1.91	2.67	3.08	3.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7) 이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당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3년 상반기 고점 도달 후 인상이 종료되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신흥국 부채위험 등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상 수익률을 2023년 보다 낮게 계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3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상 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익률		기타재산이자수입			
	2022	2023. 7.	2023계획	산출근거	2024계획안	산출근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75	5.80	19,690	여유자금(924,413백만원) × 목표수익률(2.13%)	15,740	여유자금(1,008,974백만원) × 목표수익률(1.56%)
신용보증기금	△0.63	5.60	121,017	정기예금: 예상금리 3.0%, 확정금리 1.92% 유가증권 이자 등	218,939	정기예금: 예상금리 4.01%, 확정금리 4.53% 유가증권 및 요구불예금 이자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예상 보증평균잔액이 감소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가 202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간 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보증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왔으며 기획재정부가 2024년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보증 목표를 상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2024년도 228억 9,900만원으로 2023년 240억 6,400만원 대비 11억 6,500만원 감액한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2024년 예상 보증평균잔액이 2023년 대비 88.2% 수준인 915억 9,600만원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2023 ·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24,064	예상 보증평균잔액(96,257억원) × 평균보증료율(0.25%)
2024계획안	22,899	예상 보증평균잔액(91,596억원) × 평균보증료율(0.25%)

자료: 기획재정부

보증료수입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0.05~1.5% 수준의 보증료를 수수하여 얻는 수입으로, 신규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이 증가하면 보증료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 및 보증수수료 추이를 보면, 신규보증공급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도말 보증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기금 수입항목인 면허료 및 수수료의 수납액도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 및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추이]

(단위: 억원, 건,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	2024 계획
신규보증공급액	20,832	18,102	20,513	25,642	23,106	9,288	24,000
신규보증건수	16	12	14	16	13	2	-
연도말보증건수	121	124	126	127	125	126	-
연도말보증잔액	105,539	111,559	114,001	127,402	128,873	133,848	140,916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17,269	18,170	19,771	21,009	21,806	12,484 (계획액 24,064)	22,899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와 규모를 확대[18]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바, 이에 따라 목표 신규보증공급액도 2023년 2.3조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즉,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과 보증수수료 수입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2024년도 예상 평균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오히려 감액 편성된 것이다.[19]

18) 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선보상 제외)를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고, 보증공급 규모도 2022.7.~2023.6. 동안 2.3조원에서 2023.7.~2024.6. 동안 3.0조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19) 이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는 보증승인 이후 실제 PF대출 실행시 보증금액에 대해 부과(은행 한도 대출 이자 부과와 유사) 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공사 진행율 등에 따라 PF대출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보증승인 시점과 PF대출 실행 시점 간에 일정 기간 차이가 발생하

따라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인 이자수입과 보증수수료 수입이 제반 여건 및 과거 실적 등에 대비하여 과소하게 산정된바,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액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체수입 계획액 산출산식을 재검토하고 자체수입을 적정 규모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 규모를 감안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기금 여유자금을 고려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첫째, 공공임대주택 출자의 경우 사업승인 및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출자 소요가 계획 대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달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20)]

주택도시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출자 등 회수가 어려운 지출을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보전하려는 것인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시차로 보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절차별로 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 지원금을 사업승인 시 20%, 사업승인 익년도 25%, 착공 시 25%, 준공 시 30%로 나누어 출자하는데,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출자 소요가 예상 대비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이 연말에 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평균 하반기 사업승인 비중은 67.7% 수준인 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 진도율은 7.3%에 그치고 있어, 평균적인 하반기 사업승인실적을 고려할 때 일부 물량의 경우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 연말기준 증가된 보증승인금액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3.10. pp.33~37 참조

[2018~2023년 건설형 공적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단위: 만 호, %)

연도	사업승인		상반기 사업승인	하반기 사업승인 (B)	하반기 사업승인 비중(B/A)
	계획물량 (A)	실제물량			
2018	6.17	6.41	1.46	4.95	80.2
2019	5.91	5.67	1.24	4.43	75.0
2020	5.85	4.87	0.81	4.06	69.4
2021	0.40	0.41	-	0.41	102.5
2022	7.12	0.81	0.10	0.71	11.3
평균	5.09	3.63	0.72	2.91	67.7

주: 2018~2020년은 기존 건설형 공적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등), 2021~2022년은 신규 건설형 공적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사업승인이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2024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사업승인 익년도 출자분(25%)의 집행 역시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출자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실제 소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업승인 이후 토지보상,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착공이 연기될 경우 출자 소요가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의 실제 소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사업승인 또는 착공이 지연되어 실제 출자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재원 보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으로 일반회계 재원을 전입시키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달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데 국고채 금리 측면에서 조달여건을 검토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고채 금리는 2018년 2% 대에서 2022년 3% 대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3.52%이다.

[2018~2023년 국고채 조달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
국고채 조달금리(평균)	2.43	1.68	1.38	1.79	3.17	3.5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3년 9월 FOMC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에 추가적으로 인상되거나 2024~2025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1] 국고채 금리가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높은 금리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37.6%에서 2022년 49.4%(1,067.7조원)로 증가한 상황이며, 2023년 50.4%(1,134.4조원)[22]에 달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재원 보전이 실제 출자 소요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달여건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23]

21) 국제금융센터의 「9월 FOMC 회의결과 및 평가」에 따르면 2023년 9월 미국 FOMC는 기준금리는 5.25~5.50%로 동결하였으나 2023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5.625%로 0.25%p 추가인상을 전망하였으며, 2024년말과 2025년말 전망치는 5.125%, 3.875%로 과거 대비 0.50%p 상향되었다.

22) 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3) 참고로 감사원 역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여유재원이 과다함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기금으로 분석하며,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도시기금에 향후 지원될 일반회계 재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입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신규 예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남북협력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연례적으로 4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자기금 이자상환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24]

남북협력기금의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 중 762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용도이며, 나머지 238억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계획안]

구 성	계획안	산출 내역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762억원	· 경수로계정 및 남북협력계정 예수이자 상환	
	550억원	경수로	· 경수로 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당해연도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212억원	남북협력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당해연도 공자기금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사업비 충당	238억원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 예비재원	

자료: 통일부

2024년도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212억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발생가능한 사업비 부족분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인데, 개성공단 중단(2016. 2.) 및 UN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협력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신규 예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례적으로 4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고 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중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기금 수입으로 귀속되는데, 2019년 이후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출잔액이 계획 대비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4)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3.10. pp.124~126 참조

[계정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총 계획현액 (A)	경수로 계정		남북협력 계정		지출잔액 (A-B-C)
		계획현액	지출액(B)	계획현액	지출액(C)	
2018	96,841	63,598	63,598	-	-	33,243
2019	100,873	100,873	58,013	-주)	-	42,860
2020	98,898	63,238	57,032	35,660	-	41,866
2021	88,256	57,640	46,074	30,616	-	42,182
2022	90,000	46,213	43,087	43,787	-	46,913
2023.8	73,914	45,054	21,541	28,860		

주: 2020년 계획 수립부터 계정에 따른 추계금액 분리 산정
자료: 통일부

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출잔액이 큰 폭으로 발생하여 일반회계전입금 중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적립된 지출잔액은 2018년 1억 1,300만원이었으나, 2021년 539억 2,600만원에서 2022년 569억 1,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도 8월 현재 신규예수가 발생하지 않아 남북협력계정의 이자상환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연도말까지 이자상환이 없을 경우,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 중에서 예비재원 260억원과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 용도의 289억원을 더한 약 549억원의 지출잔액이 여유자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일반회계 →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지출잔액 (사업비 충당) (A-B)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A)	계획현액	지출액(B)	
2018	80,000	80,000	63,711	96,841	63,598	113
2019	100,000	100,000	100,000	100,873	58,013	41,987
2020	150,000	150,000	150,000	98,898	57,032	92,968
2021	100,000	100,000	100,000	88,256	46,074	53,926
2022	100,000	100,000	100,000	90,000	43,087	56,913
2023(예상)	100,000	100,000	100,000	73,914	45,054	54,946[1)]

주: 1) 2023년 여유자금 적립액은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이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입되고,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289억원이 지출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금액임.
자료: 통일부

또한,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말 1,419억원, 2021년말 1,763억원, 2022년 말 1,625억원, 2023년 8월 현재 1,833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여유자금회수 (연초)	278,879	84,568	62,407	141,903	176,342	162,545
일반회계전입금 (사업비 충당)	-	43,280	92,960	53,926	56,913	28,526
사업비 및 운영비	214,493	77,369	46,559	33,517	80,201	16,634
여유자금운용 (연말)	84,568	62,407	141,903	176,342	162,545	**183,285**

주: 2022년도는 일회성 사업비(경협·교역·금강산 및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출 실시)
자료: 통일부

2022년 여유자금 1,625억원은 2020~2022년 주요 지출 평균 534억원의 약 3.0배 규모로 남북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신규 예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남북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사업비를 조속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출되지 않는 남북협력계정 이자 상환 사업비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자기금 이자상환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회계·기금별 일반회계 전출 확대 필요성 분석

첫째,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세입예산액이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되어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초과수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세입 규모를 재추계하고 증액분만큼 일반회계 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25)]

조달청은 「2023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 2022년 회전자금 운용결과 및 2023년 조달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일시적 여유자금 예상 평균 예치액을 1조 6,206억 원, 관련 이자수익을 586억원으로 전망하였다.

25)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258~263 참조

[2023년 회전자금 여유자금 예치액 및 이자수익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예치액		이자수익
정기예금	12,965	80%	492
MMDA(수시입출금)	3,241	20%	94
계	16,206	100%	586

주 1. 정기예금과 MMDA 비율 : 2022년 정기예금 예치 비율 확대(70% → 80%)로 8:2 운영하고, 한은기준금리 인상('22.10월 2.5% ⇒ 3.0% / '22.11월 3.25% / '23.1월 3.5%)
2. 이자율 : 2023년 1월 금리(정기예금 연 4.33%, MMDA 연 3.32%) × 0.9 기준 → 정기예금 연 3.8%, MMDA 연 2.9% 적용

자료: 조달청, 「2023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그러나 2023년 예산에서는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이 13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2023년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 예상한 회전자금 예치이자수익과 약 453억원의 차이가 있다.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3,284	■ 예상 평균예치액(10,141억원) × 예상수익률(1.31%) = 13,284백만원 * 최근 5년 평균 예치액 및 수익률 감안
2024예산안	29,930	■ 예상 평균예치액(12,419억원) × 예상수익률(2.41%) = 29,930백만원 * 최근 5년 평균 예치액 및 수익률 감안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이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왔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세입예산 편성시 회전자금의 예상 평균예치액을 5년 평균치로 산출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예치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26]해왔고 2022년 이후

26) 2018년 7,160억원 → 2022년 1조 9,713억원

시중금리도 급격히 상승[27]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이자수익 산출 방식을 유지할 경우 실제 회전자금 예치이자 발생액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달청은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79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023년도의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예상액 약 24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달청이 2023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회전자금 예치이자가 예산상 133억원인 반면, 실제 운용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 586억원의 예치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므로, 조달청의 자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23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만 약 45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24년 세계잉여금에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예상액"으로 기반영된 240억원을 제외한 약 210억원의 회전자금 예치이자도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4년 예산안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조달청은 2024년 예산안에 과소계상된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분은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8]

2023년 8월말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연중운용평잔은 1조 2,116억원으로 예산총칙상 일시차입한도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지출(1조 366억 900만원)보다도 많은 실정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규모 역시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2024년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유자금 연중운용평잔이 1조 6,09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도 1조 2,5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27)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이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금리도 3.75%임(2023년 9월 기준)

28)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165~167 참조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유자금	연중운용평잔[1]	6,294	8,446	11,120	11,016	13,029	9,337	8,948	9,239	12,116	16,097
	연도말잔액	5,397	7,711	10,497	14,585	9,386	7,402	6,583	9,877	-	-
공자기금예탁[2]		-	-	-	-	3,000	4,516	4,750	8,609	9,600	12,500

주: 1) 2023년은 8월말 기준이며, 2024년은 전망치
2)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 및 2024년은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2024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30.08%)과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94.91%)이 가장 높으며, 여유자금운용의 규모도 9,838억 9,400만원으로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계	총지출	여유자금	여유자금 비중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 (총지출 대비)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1,036,609**	**983,894**	**30.08**	**94.91**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181	1,162,238	283,159	17.46	24.36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31	3,614,398	253,692	5.57	7.02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15	1,676,469	983,957	28.90	58.69
기후대응기금	2,415,844	2,286,923	100,293	4.15	4.3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140,414	238,426	9.96	11.1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019,399	2,909,217	110,182	3.65	3.79
농지관리기금	4,006,330	2,021,720	812,813	20.29	40.20
대외경제협력기금	2,208,746	2,093,789	58,416	2.64	2.79
전력산업기반기금	4,501,041	2,057,146	836,519	18.59	40.66
주택도시기금	105,395,180	37,281,327	28,779,151	27.31	77.19

주: 여유자금 운용이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제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국가재정법」 제18조[29]에서는 세출재원을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으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공자기금에서 예탁하고 있으며,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및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탁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만큼을 예탁하고 있다.

한편, 특별회계와 기금은 자체수입으로 고유한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특정 회계 또는 기금의 재원이 반복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 대상이 된다면 수입이 지출에 비해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탁을 받는다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자기금을 통한 예수 및 예탁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2023년 하반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 및 과거 불용률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규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0]

2024년도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은 기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분과 신규예수에 대한 금리 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 18.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8.3조원을 산출하였으며, 2023년에 납입해야 할 이자 13.74조원, 2023년 7월말 이후 신규 예수금 7.8조원 및 만

29)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30)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90~94 참조

기가 도래한 차환 물량 34.1조원에 대한 예수이자 1.68조원, 2024년 신규 예수 81.8조에 대한 이자 1.93조원(7개월분) 및 2024년 차환예수 45.6조원(6개월분)에 대한 이자 0.91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예수금리는 2023 · 2024년 모두 4.0%로 가정하였다.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내역	규모	기간	금리	예산
□ 총계(❶+❷+❸)				**18.3조원**
❶ 旣 예수금 확정이자 ('23.7월 기준)	643.8조원	잔여	확정	**13.74조원**
❷ '23년 신규 발행(7월말 이후)	41.9조원	1년	4.0%	**1.68조원**
- 신규분	7.8조원	1년	4.0%	0.31조원
- 차환분	34.1조원	1년	4.0%	1.36조원
❸ '24년 신규 발행	127.4조원	6~7개월	4.0%	**2.85조원**
- 신규분	81.8조원	7개월	4.0%	1.93조원
- 차환분	45.6조원	6개월	4.0%	0.91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❷ 2023년 신규발행 41.9조원에 대해 4.0%의 예수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 및 예탁금리 공고" 내용을 보면 2023년 3분기 일반회계의 예수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는 3.474%, 4분기는 3.813%로, 정부가 적용한 금리 4.0%보다 낮아[31] 2023년 신규 발행분에 대한 상환이자 규모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리]

31)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023년 8월 4조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공자기금 예수금 예산(45.8조원) 대비 3.85조원이 남은 상황이다.

(단위: %)

구 분	예수금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	4.043	3.569	3.474	3.813

자료: 기획재정부 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지출 및 불용 현황을 보면,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예산의 불용규모가 2019년 이후 최종 예산 대비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분기 예수금리가 예산편성 기준금리인 4%를 초과한 4.043%인 상황에서 신규 예수분 45.8조원 중 22조원[32]이 예수되는 등 다소 높은 금리에서 예수가 발생했음에도 2023년 7월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수이자상환을 13.74조원으로 추산하였는바, 기획재정부 추산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불용이 0.74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최종예산(A)	지출금액	불용금액(B)	불용률(B/A)
2018	8,073,022	8,073,022	7,482,137	590,885	7.3
2019	8,561,943	8,583,981	7,529,708	1,054,273	12.3
2020	9,436,932	9,796,372	8,293,138	1,503,234	15.3
2021	10,897,448	10,802,320	9,004,870	1,797,450	16.6
2022	12,248,385	12,545,392	10,455,761	2,089,631	16.7
2023 (안)	14,484,321	14,484,321	13,740,000	744,321	5.1

자료: 열린재정 누리집(http://www.openfiscaldata.go.kr)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2023년 7월말 이후 신규 발행분에 대해서는 예상금리 4.0%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최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예산 집행 추이 및 2023년 이자

32) 2023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신규 예수

(단위: 조원)

구 분	신규 예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2023	4.0	6.0	12.0	4.0	4.0	4.0	4.0	4.0	3.8	45.8

자료: 열린재정 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환 실적·추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예수이자상환 예산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공자기금 예수 증대에 따른 특별회계·기금의 재정여건 개선 노력 필요

첫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매각이 완료된 종전부동산 관련 이익 중 일부는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이익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 차질이 발생하면 매입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도록 하였고,[34] 매입공공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와의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고, 손익이 발생하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을 하도록 하였다.[35]

매입공공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현상태 매각, 용도변경 후 매각, 도시개발 후 매각이라는 3가지 방식으로 처분하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1조[36]는 매입공공기관의 정산손익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

33)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3.10. pp.102~109 참조

3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36)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1조(정산손익의 산정 등) ① 매입공공기관 등의 정산손익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 및 수익금과 제4조의 매입대금 및 비용을 기초로 산정(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한다.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매각대금 및 수익금과 매입대금 및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종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 중 상당 부분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종전부동산 중 일부는 매각이 완료되어 2023년 8월 기준 한국농어촌공사는 5,582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7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상태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수익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사업에 반영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의 중간 정산분 5,582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익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의 개발 및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까지 매각한 이후 정산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개발이 지연되는 지구는 제외하고 중간 정산분을 수입에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익 역시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37]

특히 혁특회계의 경우 2019년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특회계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등 자체세입이 급감하였으며, 청사 신축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2%에서 2023년 95.2%까지 증가하였다.

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37)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산결과를 2024년도 혁특회계 세입(정부안)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2018~2024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 총계	274,965	278,330	391,058	376,675	44,139	35,666	585,906
관유물대여료	95	80	10	46	65	12	2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	27	55	26	51	10	558,194
변상금	14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	1,632	2,008	151	226	52	302
고정자산매각대	3,817	4,756	234	-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3,003	68,959	4,510	1,209	2,320	-	-
전년도이월금	14,261	16,871	-	-	117	-	-
전년도세계잉여금	-	-	45,713	23,373	9,345	1,642	4,801
내부거래(A+B)	173,757 (63.2)	186,005 (66.8)	338,529 (86.6)	351,870 (93.4)	32,015 (72.5)	33,950 (95.2)	22,607 (3.9)
일반회계전입금(A)	25,854 (9.4)	36,976 (13.3)	18,729 (4.8)	80,470 (21.4)	24,015 (54.4)	16,090 (45.1)	22,607 (3.9)
공자기금예수금(B)	147,903 (53.8)	149,029 (53.5)	319,800 (81.8)	271,400 (72.1)	8,000 (18.2)	17,860 (50.1)	- (-)

주: 1. ()의 수는 세입 총계 대비 비중을 의미
2.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예산, 2024년은 예산안 기준임
3.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뿐 아니라 타 부처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도 포함한 총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혁특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의 경우 다시 해당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여 상환하고 사업비는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해 주로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혁특회계에 누적된 공자기금 예수잔액은 2023년 기준 8,661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공공기관의 중간 정산분을 포함한 2024년도 혁특회계 세입 5,859억 600만원 중 98.1%에 해당하는 5,749억 7,800만원을 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용도로 집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4년 공자기금 예수잔액은 3,026억 7,4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 총계	258,094	232,617	367,684	367,212	37,303	35,666	585,906
사업비	29,244 (11.3)	7,277 (3.1)	47,910 (13.0)	80,048 (21.8)	21,491 (57.6)	19,134 (53.6)	10,928 (1.9)
공자기금과의 거래(A+B)	228,850 (88.7)	225,340 (96.9)	319,775 (87.0)	287,164 (78.2)	15,812 (42.4)	16,532 (46.4)	574,978 (98.1)
예수원금상환(A)	200,000 (77.5)	200,000 (86.0)	300,000 (81.6)	268,000 (73.0)	-	-	563,458 (96.2)
예수이자상환(B)	28,850 (11.2)	25,340 (10.9)	19,775 (5.4)	19,164 (5.2)	15,812 (42.4)	16,532 (46.4)	11,520 (2.0)

주: 1. ()의 수는 세출 총계 대비 비중을 의미
2. 2022년까지는 결산, 2023, 2024년은 예산 기준임
3.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뿐 아니라 타 부처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도 포함한 총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자기금 예수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공자기금 예수잔액	866,132	302,674

주: 2023년은 예산,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익 중 중간 정산이 가능한 부분은 혁특회계의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을 상환할 경우 공자기금 예수잔액의 추가적인 감축을 통해 혁특회계의 재정여건을 보다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3년 주파수 재할당 및 신규 할당 취소로 향후 2~3년간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 확대로 인해 공자기금 예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수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38)]

주파수할당대가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 매년 주파수할당대가의 45%는 방송통신발

38)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 pp.114~121 참조

전기금, 5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으로 배분된다.

주파수할당대가는 납부방식[39]의 특성 상 신규할당과 재할당이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수입 변동폭이 큰 편이다. 그런데 2023년 계획과 달리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초에 걸쳐 이동통신 3사가 2018년 28㎓대역 신규할당 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 의무 구축수량을 미이행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취소[40]되었고, 회수된 28㎓대역의 주파수 재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28㎓ 및 3.7㎓의 신규할당 시기 및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3년 계획했던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1조 7,863억원 대비 약 7,000억원 가량 감소한 1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2023년 기금 수입뿐만 아니라 3G · LTE 재할당이 예정되어 있는 2026년 이전까지 기금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출사업 확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 두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 합계는 1.7조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2.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9조원으로 증가하여 5년 동안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2023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계획	연평균 증가율
방송통신발전기금	840,994	1,186,011	1,251,754	1,231,047	1,123,927	7.5
정보통신진흥기금	889,912	1,329,747	1,464,114	1,732,236	1,298,630	9.9
합계	1,730,906	2,515,758	2,715,868	2,963,283	2,422,557	8.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은 급격한 사업비 지출 증가로 인해 두 기금은 2020년부터 공공자금관

39) 주파수를 할당받은 경우, 할당 시 할당대가의 25%를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를 차년도부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납부한다.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LGU+와 KT의 28㎓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였고, 2023년 6월 SKT에 대해서도 할당을 취소하였다.

리기금 예수금을 편성하기 시작하였고, 예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까지 누적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5,727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2조 7,8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누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방송통신발전기금	2,074	4,901	9,993	13,094	15,727
정보통신진흥기금	4,261	9,646	18,538	21,796	27,823
합계	6,335	14,547	28,531	34,890	43,5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2023년 주파수 재할당 및 신규할당 취소로 당해연도 및 향후 2~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세출 확대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세출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수지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간 거래 분석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41]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①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분석

4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42]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20조원 내외로 활용하고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겠다고 밝혔는데, 2023년의 경우 정확한 조기상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2024년의 경우 43.5조원을 조기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을 조기상환할 경우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재원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예수 등[43]을 통해 확보한 원화재원과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화재원의 감소가 해당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시 적용되는 예수금리는 공자기금의 자금조달금리인 국고채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외평기금에 적용되는 예수금리 역시 상승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예수금리는 2021년 1분기 1.55%였으나, 2023년 4분기 3.71%까지 상승하였다.

[2021~2023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수금리	1.55	1.10	1.28	1.57	1.96	2.18	3.15	3.31	4.04	3.54	3.31	3.71
한도	-	3조원	3조원	4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주: 1. 자금을 예수받는 회계·기금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예수금리라고 기재하며, 자금을 예탁하는 공자기금 기준으로는 예탁금리임
2. 한도는 외평기금이 다른 회계·기금과 별도의 예수금리를 적용받을 때 해당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수금의 규모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예수금리가 높게 책정된 공자기금

42)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33~42 참조

43) 2024년부터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p로, 동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 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p, 선진국 0.65%p, 신흥국 0.58%p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화 자산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의 원화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화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유재원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MMF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수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평기금은 2024년 역시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을 예수받을 계획이나 2024년 예수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과 공자기금 신규예수에 따른 이자비용을 면밀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중 예수금리가 높은 것을 조기상환하는 것과 별개로 2024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56.6조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당초 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규모가 51.1조원임을 감안할 때, 조기상환과 별도로 공자기금 신규예수(예수-상환)규모는 5.5조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3년 9월 FOMC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에 추가적으로 인상되거나 2024~2025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44] 국고채금리 역시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외평기금이 조기상환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의 예수금리보다 2024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신

44) 국제금융센터의 「9월 FOMC 회의결과 및 평가」에 따르면 2023년 9월 미국 FOMC는 기준금리는 5.25~5.50%로 동결하였으나 2023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5.625%로 0.25%p 추가인상을 전망하였으며, 2024년말과 2025년말 전망치는 5.125%, 3.875%로 과거 대비 0.50%p 상향되었다.

규로 예수 시 적용되는 예수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평기금의 이자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것보다 공자기금 신규예수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45]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목적인 원활한 외국환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율·금리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②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인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46]

첫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없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은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예수 시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와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회계·기금의 성격, 공자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금리 책정 시 해당 회계·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45) 예를 들어 2022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시 적용받은 최고금리는 3.53%였으며 2023 최고금리는 4.04%인데, 2024년 공자기금 예수금리가 그보다 높을 경우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분보다 2024년 공자기금 신규예수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클 수 있다.

46)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43~51 참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공자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주: 상기 규정은 공자기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예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금을 빌리는 외평기금 기준으로는 예수에 해당함
자료: 법제처

실제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수금리를 다른 회계·기금 대비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인하 수준(최대 기준)은 2021년 0.63%p, 2022년 0.37%p, 2023년 0.16%p로[47], 이는 외평기금이 보유자산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환율의 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행 규정을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 별도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발행 시 금리가 공자기금 예수금리보다 낮아야 외평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이 가능한데, 원화표시 외평채와 유사한 규모로 발행되는 국고채 2년물의 경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48][49]

둘째, 원화표시 외평채가 통화안정증권 등 만기가 유사한 채권의 수요를 구축하거나 외평채의 만기가 단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외평채의 발행

47) 인하 수준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점의 국고채 조달금리, 발행규모와 같은 공자기금 운용상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8) 2022년 국고채 2년물의 금리는 3.16%(발행규모 15.2조원),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3.17%

49)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원화표시 외평채의 금리를 3.45%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고채금리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원화표시 외평채의 금리 역시 당초 예상 대비 높아질 수 있다.

및 상환계획에 따르면 원화표시 외평채는 주로 1년물로 발행될 예정인데, 유사한 만기를 지닌 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존재한다.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경우 91일물, 2년물 대비 발행액은 크지 않으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인데, 유사한 만기를 지닌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될 경우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50]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 금융채 역시 유사한 만기를 지닌 국고채 대비 금리가 높게 선정되고 있는 상황[51]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이 발행될 경우 금융채 시장의 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원화표시 외평채를 1년물로 발행할 경우 외평채의 만기 단기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특정시점에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더라도 만기가 장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조기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예수할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장기화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원화표시 외평채를 단기로 발행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수금리를 낮게 설정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고채 시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과 유사하게 관련 시스템 구축, 전문딜러 지정 등을 통해 시장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52] 반면 외평기금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50)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시 통화안정증권의 만기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논의를 통해 발행물량, 시기, 만기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51) 2023년 9월말 기준 금융채 1년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4.03%, 4.37%, 국고채 1년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3.66%, 3.89%이다. 이때 국고채 1년물은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52)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24년 2분기 이후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수금리를 낮게 설정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고채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53]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단기로 발행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계획이나, 현행 규정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도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우려,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54]

③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한 외평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과도하게 보유해왔던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조정함에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외평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화재원의 적정 규모, 운용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55]

기획재정부가 2023~2024년 2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40조원 수준인데[56], 이는 그동안 외평기금이 달러 매도 위주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재원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외에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환당국이 546.5억 달러를 순매도하며 원화재원을 확보하는 동안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신규예수한 원화재원은 15조원에 달하고 있다.

53)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및 고금리 지속기간 등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내에서 국고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고국과 국제금융국으로 이원화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관련 규정에서 '외화국채의 발행'을 담당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채권'을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원화표시 외평채가 외화채권에 포함되는지 일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54) 이에 따라 원화표시 외평채 18조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①공자기금 예수규모를 확대하거나 ②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55)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52~53 참조

56) 2023년 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분 20조원 + 2024년 원화재원 감소분 20조원

[2018~2022회계연도 공자기금 · 외평기금의 예수 ·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공자기금 예수금(A)	42,271,320	39,685,926	27,967,051	109,924,297
공자기금 상환	39,710,237	38,771,079	31,349,242	109,830,558
원금(B)	34,308,200	33,893,026	26,681,460	94,882,686
이자	5,402,037	4,878,053	4,667,782	14,947,872
공자기금 신규예수 (A-B)	7,963,120	5,792,900	1,285,591	15,041,611

자료: 기획재정부

즉, 외평기금은 달러 매도 위주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원화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였는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외평기금으로의 예수를 위해 공자기금이 국고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는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37.6%에서 49.4%[57]까지 증가한 시기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조정 등을 통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기간 기획재정부가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조정한 규모는 8.8조원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제2회 및 제3회 추경 시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각각 2.8조원, 1.2조원 감축하고 2022년의 경우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32.7조원에서 27.9조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023~2024년 2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과거 3년 대비 4~5배에 달하는 40조원대로, 단기간 내에 원화재원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

57)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37.6%에서 2022년 49.4%까지 증가하였다.

편,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외평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화재원의 적정규모, 운용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분석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지방자치단체 융자금으로 동 분석에서 정의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수입·지출의 확대라기보다는 지방재정수지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원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가 수요 예측에 기반하지 않았는바 인수 대상 지방채, 자치단체의 재정여력 및 지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인수 수요를 재예측하고, 지방재정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여력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58)]

지방채 인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5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하는 사업으로, 인수 시 해당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적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한다. 총 인수한도는 총괄계정 기금운용계획상 계상된 규모로, 통상적으로 인수기간은 거치 5년, 원금상환 10년으로 설정한다.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방채에 대해 2020년(1조 5,566억원), 2021년(1조 9,956억원)에 대규모로 인수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100억원을 계획하여 8월말 기준 43억원을 인수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순채무 증가 수준(2021년 31.5조원 → 2023년 전망치 34.2조, +2.7조원) 및 2024년도 국세수입 감소 예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를 2023년 100억원에서 2024년 2조 6,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추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인수 대상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58)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95~97 참조

5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한 것은 2024년도 국세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보통교부세 예산안이 2023년 대비 대폭 감액(66.6조원 → 59.9조원)되는 등 지방이전재원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총대응지방비 추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	대응지방비 추계
2022년도 예산안	78,235,722	36,793,951
2023년도 예산안	82,303,626	37,738,676
2024년도 예산안	88,299,014	38,015,275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예산안 첨부서류」

그러나 최근 대규모로 지방채를 인수하였던 2021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인수 비중이 전체의 19.1%에 머무는 등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2024년에도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위주로 인수될 경우 지방이전재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동 사업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2021년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자치단체	2021년	비중
광역	16,142.5	80.9
강원	1,000.0	5.0
경남	1,882.0	9.4
경북	850.0	4.3
광주	1,300.0	6.5
대구	3,624.0	18.2
대전	576.0	2.9
부산	1,813.0	9.1
세종	609.5	3.1
울산	400.0	2.0
인천	2,238.0	11.2
전남	1,000.0	5.0
제주	850.0	4.3
기초	3,813.9	19.1
계	19,956.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지방채 인수 결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여력 및 지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인수 규모를 산정하고, 특히 지방재정 지원 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여력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내부거래 관련 분석

첫째,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의 28.0%인 349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복권수익금의 효율적인 배분·운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축소 등을 위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0]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250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복권수익금(2조 9,573억 8,400만원)의 법정배분액 외에 가감조정 및 2022년 법정배분액 정산금을 반영한 것이다.

복권기금 전출금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61]에 해당하는 18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액 900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금의 28.0%인 349억 7,000만원

60)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98~104 참조

6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이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획되었다.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021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소요 대비 전출금이 많아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계상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이를 지적함에 따라 2021 · 2022년에는 여유자금운용으로 편성된 금액을 복권기금에서 미전출하여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여유자금 운용 중 208억 7,400만원을 감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용 및 감액이 있었음에도 2024년에 여유자금 운용금액 349억 7,000만원이 재차 계상된 것이다.

[2024년도 복권기금 전출을 활용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안(B)	증감(B-A)
	당초(A)	수정		
합 계	109,957	109,957	125,055	15,098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09,957	109,957	125,055	15,098
①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4,781	4,781	3,711	△1,070
② 과학영재양성	14,363	14,363	14,463	100
③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R&D)	14,000	14,000	12,664	△1,336
④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3,996	3,996	3,876	△120
⑤ 스페이스이노베이션	4,000	4,000	776	△3,224
⑥ 온라인 수학 · 과학 가상실험 환경 구축	1,380	1,380	-	△1,380
⑦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1,501	1,501	-	△1,501
⑧ 연구산업기반조성	1,460	1,460	1,460	-
⑨ 과학문화확산사업	15,538	15,538	14,767	△771
⑩ 과학문화육성	2,500	2,500	-	△2,500
⑪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1,530	1,530	-	△1,530
⑫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18,934	18,934	18,844	△90
⑬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678	5,678	5,024	△654
⑭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7,000	7,000	6,500	△500
⑮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4,760	4,760	-	△4,760
⑯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	1,500	1,500	1,500	-
⑰ 뉴스페이스 투자지원사업	5,000	5,000	5,000	-
⑱ 뉴미디어활용과학문화디지털콘텐츠제작확산	-	-	1,500	1,500
⑲ 여유자금운용	**2,036**	**2,036**	**34,970**	**32,934**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을 지출하는 것은 복권수익금 사용 취지 및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해당하

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는 2020년 327.3억원, 2021년 480.4억원, 2022년 616.9억원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3년 558.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62] 2024년에는 358.1억원 증가한 916.7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0 계획	2021 계획	2022 계획	2023 계획(A)	2023 계획안(B)	증감(B-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728	48,041	61,692	55,861	91,671	35,810

주: 각 연도 최종계획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63]으로 심의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64]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였으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을 종료하고 1개 사업을 신설하는 데 그쳐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지는 않았다. 또한, 202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계획이 없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은 비통화금융기관예치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세수여건 악화로 국세수입이 2023년도 국세수입(400.5조원) 대비 △8.3%인 367.4조원으로 예상되고 2024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88.1조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와 같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법정한도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내 여유자금운용액을 감액하여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5]

중장기적으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본 배분비율이

62)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지적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208억 7,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비통화금융기관예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다.

63)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25~29

64) 코드: 과학기술진흥기금 1744-402

65)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유지되고 있으나[66] 각 기금 및 기관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이 복권기금 공익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계획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초과 전출금에 대해 감액할 필요가 있다.[67]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 중 35%는 법정배분하고, 그 외 복권기금 중 복권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문화 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68]

복권기금은 2023년부터 공익사업인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전출[69] 사업 계획안은 2023년도 수정계획액 956억 4,600만원 대비 143억 9,700만원 증액된 1,10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66) 2004년 법 시행 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 추가에 따른 변경 외에 동일한 상황이다.

67)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105~106 참조

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9) 코드: 복권기금8924-889

[2024년도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후대응기금 전출	-	90,975	95,646	110,043	14,397	15.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2023년도 수정계획액 995억 9,900만원 대비 87억 3,400만원 증액된 1,08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70,121	90,975	99,599	108,333	8,734	8.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복권기금이 기후대응기금에 지출계획안 대비 17억 1,000만원 과다 전출하게 되는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용도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 예산 규모만큼 기금 재원을 전출 또는 보조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전출금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동 초과 재원은 복권기금의 용도가 아닌 기후대응기금 내 타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중 과다 편성된 초과 전출금 계획액 17억 1,0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에 대한 내역 관리 및 법률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전입금 내역을 세목별로 파악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전

입액의 정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70]

일반회계전입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에는 전체 세입의 78.9%에 해당하는 11조 5,03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예산안
세입(A)	143,341	143,450	143,772	144,022	194,115	192,793	152,530	154,610	140,238	145,783
일반회계 전입금(B)	126,040	126,359	123,402	123,601	117,896	117,896	101,920	101,919	80,893	115,034
B/A	87.9	88.1	85.8	85.8	60.7	61.2	66.8	65.9	57.7	78.9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중에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주요 재원인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합하여 배정받고 있을 뿐,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을 비롯한 일반회계전입금의 세목별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계정을 포함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전출금 예산만 파악하고 있을 뿐, 전출금 결산 내역이나 소관별·계정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0)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3.10. pp.194~198 참조

[2019~2024년도 일반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예산안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A+B+C)	138,112	133,668	132,847	122,169	94,519	130,421
교통·에너지·환경세 (A)	118,213	114,809	114,539	104,587	75,800	104,215
개별소비세 승용차분 (B)	16,027	15,388	14,316	12,880	12,947	21,411
관세 수입차분 (C)	3,872	3,471	3,992	4,702	5,773	4,794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일반회계전입금의 내역 및 결산에 대한 정보 관리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전입금의 내역,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 및 정산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71] ② 친환경차 보급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액 감소가 예상되며, ③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세로서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④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부터는 예수로 전환되는 등 재원 마련방안 검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1) 2019년까지는 80%, 2020년 및 2021년에는 73%, 2022년부터는 68%로 변경되었다.

[2019~2024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안
공자기금 예탁금	3,129,572	2,676,782	5,224,901	47,480	-	-
공자기금 예수금	-	-	-	-	-	1,401,803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183,304	801,922	6,745,229	4,605,539	5,563,934	873,116
원금		600,690	6,578,804	4,486,481	5,485,818	840,636
이자	183,304	201,232	166,425	119,058	78,116	32,480
공자기금 예탁잔액	10,043,266	12,119,358	10,765,455	6,326,454	840,636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의 내역을 세목별로 관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정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유사·중복 사업 분석

가. 현 황

(1) 유사·중복 사업의 정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법령상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미국 감사원(GAO)은 법률[1]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유사·중복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유사·중복을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절, 유사 및 중복으로 유형화하고 있다.[2]

[중복적인 정부활동의 유형(GAO)]

유형	정 의	
분절 (Fragmentation)	동일한 영역의 국가적 목적 달성에 다수의 기관 혹은 조직이 관련되어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상황	
유사 (Overlap)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비슷한 목표를 갖거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실행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	
중복 (Duplication)	두 개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수혜자에게 제공할 때 발생	

자료: GAO, GAO-22-105301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jmh@assembly.go.kr, 6788-4632)

1) 「공공부채의 법정상한 인상(Increasing the statutory limit on the public debt)」, PUBLIC LAW 111-139—FEB. 12, 2010. 이 법은 공공부채의 법정상한을 인상하면서, PAYGO 원칙의 복원(TITLE Ⅰ) 및 중복으로 낭비되는 정부지출을 제거하기 위해 감사원(GAO)으로 하여금 정부지출의 중복성을 조사하고 사업 통폐합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TITLE Ⅱ)하도록 하고 있다.

2) GAO,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Annual Report), 2022. 5.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감사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에서 공공 부문의 '유사'와 '중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발생원인을 환경적·행태적·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감사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이 "대부분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유사'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3)]

공공 부문에서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①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의 과잉 대응이나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 등에 따른 '환경적 요인', ② 공공기관 자체의 조직 개인주의나 부처 할거주의 등에 따른 예산 극대화 및 조직 늘리기 등으로 인한 '행태적 요인', ③ 부처 간 기능 중첩, 임무 분절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 부문 유사·중복 발생 원인(감사연구원)]

구분	내용
환경적 요인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부처가 과잉 대응하거나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도 잘 조율되지 못할 경우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아짐
행태적 요인	공공기관 자체의 조직 개인주의나 부처할거주의 등 행태적 요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복이나 사각지대, 조직 간 갈등 야기 등의 현상 발생 가능
구조적 요인	부처 간 기능 중첩, 또는 임무 분절 등 공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로 유사·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동일 기능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여러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유사·중복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자료: 감사연구원,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2013, pp.25~2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조직이 정책 대상과 수단에 따라 병렬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경제·사회·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으며, 한 부처 내에서도 정책 대상별 부서와 정책 수단별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 간·부처 내 유사·중복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감사연구원,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2013, p.22

(2)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

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R&D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방안',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등을 두어 사업유형별·지원대상별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예시)]

제도	대상사업	평가주체	내용	근거
신규사업 유사·중복 사전점검	신규	기재부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점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체	기재부	집행 시 유사·중복 사업 심층평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사회보장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R&D	과기부	예산안 편성 시 유사·중복 사업 조정 내역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과기부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일자리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설·변경 시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중소기업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중소기업기본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평가주체를 통해 사업유형별·지원대상별 유사·중복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결과 일부 사업들의 경우 부처 내·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16개 부처의 총 26개 세부(내역)사업(1,637억 600만원)이 부처 내·부처 간[4]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사·중복성 비교대상 사업이 동일 부처 내 존재하는 경우(부처 내)는 총 26건 중 14건(713억 4,400만원)이었으며, 비교대상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인 경우(부처 간)는 9건(871억 1,300만원)이며, 비교대상 사업이 부처 내 사업과 타 부처 사업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3건(52억 4,900만원)이었다.

[2024년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합계	14	71,344	9	87,113	3	5,249	26	163,7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건, 문화체육관광부 3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 등 3개 부처에 각 2건씩 6건,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외교부·재외동포청·조달청·통일부·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에 각 1건씩 11건이다.

유사·중복 사업의 예산안 규모 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80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재외동포청 237억 5,400만원, 국토교통부 217억 1,300만원 순이다.

4) 이 보고서는 부처 소관 사업과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 등 소관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2024년도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경찰청	1	1,092	0	0	0	0	1	1,092
고용부	1	1,912	0	0	0	0	1	1,912
공정위	0	0	1	334	0	0	1	334
과기부	3	30,000	3	50,000	0	0	6	80,000
관세청	1	113	0	0	0	0	1	113
국토부	1	10,013	1	11,700	0	0	2	21,713
농림부	2	9,375	0	0	0	0	2	9,375
농진청	0	0	0	0	1	400	1	400
문체부	2	7,911	0	0	1	1,900	3	9,811
법무부	0	0	2	325	0	0	2	325
복지부	1	475	0	0	0	0	1	475
외교부	1	1,633	0	0	0	0	1	1,633
재외동포청	0	0	1	23,754	0	0	1	23,754
조달청	0	0	1	1,000	0	0	1	1,000
통일부	0	0	0	0	1	2,949	1	2,949
해수부	1	8,820	0	0	0	0	1	8,820
합계	14	71,344	9	87,113	3	5,249	26	163,7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4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② 중복 지원 배제, ③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 ④ 사업 간 연계 추진, ③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규 추진 재검토	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수	2	6	5	5	8	26
예산안	30,000	23,338	33,773	22,634	53,961	163,7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먼저, ① 기존 사업 등과 중복성이 높아 **신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SaaS 혁신펀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안	분석내용
신규 추진 재검토	과기부	SaaS 혁신펀드	20,000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투자분야에 SaaS가 이미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신규출자 신중 검토
	과기부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	10,000	'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에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규추진 필요성 낮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aaS 혁신펀드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내 '성장지원펀드'의 일부 주요 투자 분야에 SaaS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aaS 분야에 투자 재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SaaS 혁신펀드의 신규출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 사업은 동 사업과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물 등이 유사한 '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사이버보안펀드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로 사회연대(문화체육관광부)' 등 6건이 있다.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안	분석내용
중복 지원 배제	과기부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20,000	중기부의 '초격차 펀드' 등과 지원대상 및 투자분야 중복되므로, 신규 조성 규모를 조정
	문체부	문화로 사회연대	1,900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등과 지원대상 등이 중복되므로, 중복 최소화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부터 지원 중인 '초격차 펀드', 2024년 예산안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초격차 분야와 지원대상 및 투자분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조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정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나,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등과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재외동포청)’ 등 5건으로 나타났다.

[사업 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안	분석내용
통합 추진 필요	문체부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7,600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에서도 유사한 홍보 사업을 수행하므로 통합운영 필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출연사업 내 일부사업은 재외동포청 고유 업무와 유사하므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문화체육관광부의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확대를 위한 권역별 핵심 도시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나,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에서도 유사한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 중 ‘차세대육성사업’ 사업과 재외동포청의 사업인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 등일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과 방식이 유사하므로, 재외동포재단출연 사업에 적합한 사업과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국토교통부)' 등 5건으로 나타났다.

[사업 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안	분석내용
연계 추진 필요	과기부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10,000	과기협력센터 등 해외거점에서 이미 과학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존 해외거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국토부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10,013	'스마트철도역사' 사업에서 철도역사에 AI CCTV 설치를 추진중이므로, 연계방안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은 이미 미국, 일본, EU 등에 과기협력센터 등 해외거점을 두고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ICT 기술사업화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추진 시 기존 해외거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의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은 스마트철도역사 사업에서 철도역사에 AI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과 스마트철도역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CCTV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유사·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한계도전R&D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촌활력증진(해양수산부)' 등 8건이다.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안	분석내용
차별성 강화 필요	과기부	한계도전R&D프로젝트	10,000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보건복지부의 'ARPA-H'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과제 기획 필요
	해수부	어촌활력증진	8,820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과 그 목적·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이 유사하므로 차별성 확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사업은 국가 현안, 경제·산업 이슈와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책임PM을 선정하여 문제의 정의~과제수행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보건복지부의 'ARPA-H' 등 타 부처 사업도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 등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과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과 그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 양 사업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양 사업 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후 기술되는 '(2)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3)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및 '(4)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들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중복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신규 추진 재검토 (2건)	과기	SaaS 혁신펀드	금융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펀드 등
				KDBC-K2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펀드
	과기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	과기	지능정보서비스확산
중복 지원 배제 필요 (6건)	과기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중기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관세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등	관세	관세청(본부, 정보데이터정책관) 기본경비 포상금
	문체	문화로 사회연대	문체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복지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여가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법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여가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법무	배심제 관련 홍보비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조달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중기	정부수출바우처 사업
통합 추진 필요 (5건)	문체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문체	국립중앙박물관 운영(한국실 지원)
	문체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문체	한국문화관광대전
	복지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복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
	외교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외교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
				우리기업 브라질 진출 센터 운영
	재외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재외센터	재외동포차세대 사업
				정체성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간 연계 필요 (5건)	고용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고용	고용평등상담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중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과기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과기	과기협력센터
				KIC
				해외IT지원센터
	국토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국토	스마트철도역사
	농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차별성 강화 필요 (8건)	과기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과기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과기	한계도전R&D프로젝트	산업	알키미스트
			복지	ARPA-H
	국토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환경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경찰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경찰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R&D)
	농림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농림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농진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고도화	농진	농림위성정보활용센터
			농경원	농업관측
	통일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통일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해수	어촌활력증진	해수	어촌신활력증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2) 부처 내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 ·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14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건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2건씩이고,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외교부 · 경찰청 · 국토교통부 · 관세청은 각 1건씩이다.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과기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10,000	과기협력센터	3,414	사업간 연계 필요
			KIC	4,570	
			해외IT지원센터	6,905	
과기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	10,000	지능정보서비스확산	12,000	신규 추진 재검토
과기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10,000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10,000	차별성 강화 필요
농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9,000	저탄소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2,632	차별성 강화 필요
농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7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6,650	사업간 연계 필요
해수	어촌활력증진	8,820	어촌신활력증진	85,460	차별성 강화 필요
문체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한국실 지원)	311	국립중앙박물관 운영(한국실 지원)	2,772	통합추진 필요
문체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7,600	한국문화관광대전	600	통합추진 필요
고용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912	고용평등상담지원	551	사업간 연계 필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700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000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복지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475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	652	통합추진 필요
외교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1,633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	125	통합추진 필요
			우리기업 브라질 진출 센터 운영	57	
경찰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1,092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R&D)	5,393	차별성 강화 필요
국토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10,013	스마트철도역사	3,546	사업간 연계 필요
관세[1)]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12	관세청(본부, 정보데이터정책관) 기본경비 포상금	661	중복 배제
	세관정보화 지원	101			
합계		71,344	합계	168,688	-

주: 1) 관세청의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및 '세관정보화 지원' 사업은 모두 기본경비 포상금과 통합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1건으로 간주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5](100억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Top-tier급 연구집단 간 연합을 형성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통한 연구기관 매칭, 연구개발 장비·시설의 공동활용, 현지기관 관계자와의 포럼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미국, 일본, EU 등에 과기협력센터, KIC(Korea Innovation Center), 해외IT지원센터 등을 두고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 · ICT 기술사업화 및 스타트업 지원, ICT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시 기존 해외거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거점 현황]

구분	기관명(소재지)	설치연도	인력	관리기관	주요업무
과기협력센터 (6)	한-중(베이징)	1993	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협력〉 ·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상대 연구계와의 협력 수요 발굴 · 현지 과학기술 정책동향, 기술수준 등 조사
	한-인도(델리)	2020	3		
	한-아세안(자카르타)	2019	3		
	한-러(모스크바)	2007	2		
	한-EU(브뤼셀)	2013	5		
	북유럽(스톡홀름)	2020	2		
KIC (4)	워싱턴	2014	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ICT기술사업화·스타트업 지원〉 ·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지원 · 현지 투자 유치 · 현지 창업·진출 지원
	유럽(베를린)	2017	7		
	중국(베이징)	2016	5		
	실리콘밸리	2014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IT 지원센터 (6)	실리콘밸리	1998	8	KOTRA	〈ICT 중소기업 지원〉 · 현지 진출 관련 법률 상담 · 회계 서비스 제공 · 마케팅 지원 · 현지 사무공간 제공
	베이징	2000	4		
	도쿄	2001	5		
	싱가포르	2014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노이	2017	5		
	호치민	2019	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2022.10.)을 바탕으로 재작성

5) 코드: 일반회계 4733-301의 내역사업

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3.10, pp.52~57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 사업[7](100억원)은 현실세계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하는 가상의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국민 체감형 융복합 서비스를 구현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을 조성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과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물 등이 유사한 '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이나 제조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8]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 디지털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사업 비교]

구분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신규)	지능정보서비스확산(기존)
사업내용	서비스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을 연계, 해외진출 모델로 활용	주요 시설물(공공시설, 제조시설) 대상 디지털 트윈 서비스 실증,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 지원, 디지털트윈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2024~2026년	2017~2026년
지원대상	공모(컨소시엄)	공모(컨소시엄)
지원규모('24)	100억원	120억원
전담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ICT 중소기업	ICT 중소기업 및 실증기업
사업결과물	대상 지역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및 서비스	대상 시설물 디지털 트윈 플랫폼, 대상 분야 국산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SW 및 클라우드 SaaS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2033-304

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3.10, pp.148~151 참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9](100억원)은 첨단바이오 중점기술 및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유럽이나 미주, 아시아 주요국가들과 공동연구센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과 추진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분야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과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사업 비교]

구분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신규)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신규)
사업내용	①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유럽, 미주, 아시아 주요국과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 구축 ② 글로벌 바이오기술 협력 플랫폼 활동, 고위급 협의체 및 합의사항, 연구기관 간 협력활동 등을 지원	① Top-tier급 연구기관과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플랫폼 기반 연합(alliance) 형성 ② 사업 기획·관리, 네트워크 형성, 표준 선점, 실증·창업,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지원
사업기간	2024~2029년	2024년~
지원분야	첨단바이오, 디지털바이오 분야	핵심 신흥기술 분야
협력대상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원대상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 출연연 등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 출연연 등
지원규모('24)	5개 과제, 100억원	3개 과제, 100억원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코드: 일반회계 1138-401의 내역사업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3.10, pp.58~61 참조.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11](90억원)은 농업인의 저탄소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자치단체 경상보조) 81억 7,400만원 외에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민간경상보조) 8억 2,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12]에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민간경상보조)를 운영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양 사업 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운영비 절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13]

[2024년도 탄소중립프로그램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비교]

구 분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탄소중립프로그램)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관리주체	[경종] 농어촌공사 [축산] 축산환경관리원	[경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 축산물품질평가원(총괄), 축산환경관리원
점검 내용	[공통]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 급이 등 활동 이행 여부	[경종] 저탄소 농업 기술 적용 여부 [축산] 탄소 감축기술 적용 여부, 개체별 탄소 배출량 등
점검방식(안)	[공통] 서면점검, 조사원 판견을 통한 현장 점검(표본조사)	[경종] 조사원 파견을 통한 품목 재배 여부 확인, 영농자재 사용량 증빙 취합(전수) [축산] 농장단계 검증 및 최종 도축 정보 확인 후 심사(전수)
2024년 예산안	·활동비 지원: 8,174백만원 - 농지 10,530ha, 가축 58.5만 두 ·운영비 지원 826백만원 - 농어촌공사 및 축산환경관리원 보조	·인증 지원: 2,632백만원 - 농산물 448건×3.9백만원=1,747백만원 - 축산물 150건×5.9백만원=885백만원

주: 경종이란 축산과 대비되는 용어로 논밭에 농사를 짓는 양식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코드: 농업농촌공익직불기금 1071-302의 내내역사업

1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40-312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 pp.21~26 참조.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14](3억 7,500만원)은 산·관·학 협력을 통한 푸드테크 신기술 개발 지원과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신기술 실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관 산업군 및 기관이 집적된 R&D 및 네트워크 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15] 예산안에 운영비 등 26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시 식품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집적된 식품 R&D 단지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개념 정의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법적 기반을 마련을 통해 사업의 차별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6]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요]

- 사업지: 전라북도 익산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 사업규모: 산업단지 232만m^2(70만평),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 사업비: 5,535억원(국고 2,026억원, 지방비 743억원, 민자 2,766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401

15)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6-355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 pp.43~46 참조.

⑥ **해양수산부**의 **'어촌활력증진'** 사업[17](88억 2,000만원)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및 안전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어촌의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같은 세부사업(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18]) 내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과 그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 양 사업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활력증진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19]

[어촌활력증진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비교]

구 분	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
목적	다양한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관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의 활력 제고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신규·생활인구 증대
주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 앵커조직	지방자치단체 + 앵커조직, 민간투자자
규모	6개소('22~'25) *시범사업	300개소('23~'30)
예산(안)	2022년 예산(신규): 5,880백만원 2023년 예산: 5,880백만원 2024년 예산안: 8,820백만원	2023년 예산(신규): 44,390백만원 2024년 예산안: 85,460백만원
보조율	70%	유형1 : 50% / 유형2, 유형3 : 70%
사업범위	어항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생활권	
사업 구성	·어촌스테이션 조성: 생활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마련 ·안전시설(빈집, 어항 등) 개보수 등	(유형1) 거점지역/생활서비스 거점, 창업 인큐베이팅, 로컬센터 등 (유형2) 마을연계/마을간 생활서비스 연계, 지역 특화사업등 (유형3) 정주개선/안전시설, 정주여건 개선, 환경개선 등
수혜자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자료: 해양수산부

17)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01-303의 내역사업

18)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01-303

1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 pp.171~174 참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20](21억 5,900만원)은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한국민속문화 전시, 우리민속한마당 상설공연 등을 통해 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안 중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이다.

그런데 동 사업의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관련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사업[21]의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사업과 수행기관 및 사업대상이 동일하므로,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대한 전체 사업 규모를 파악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양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2]

[2024년도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관련 사업 내역]

구분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회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반회계
수행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사업대상	외국박물관 한국실	외국박물관 한국실
2024년 예산안 (계획안)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311백만원 - 기반 구축 77백만원 · 한국실 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1명) 37백만원 · 한국실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보존처리 지원 34백만원 · 한국실 지원 관련 공공요금, 여비, 간담회비 등 6백만원 - 외국박물관 한국실 개선 지원 235백만원 · 한국실 사업 지원금(전시장 환경 개선, 도록 발간, 교육프로그램, 학술자문, 보존처리, 온라인 공개서비스) 219백만원 · 조사 및 준비 등 16백만원	·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2,772백만원 -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 운영 74백만원 - 해외박물관 한국실 점검 및 업무협의 10백만원 - 해외박물관 한국실 실태조사 10백만원 - 실감콘텐츠 제작 278백만원 - 해외박물관 한국실 사업 지원 2,4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2-306

21) 코드: 일반회계 2831-300의 내역사업

2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0, pp.114~119 참조.

⑧ **문화체육관광부**의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사업[23](76억원)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확대를 위한 권역별 핵심 도시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24] 또한 주요 계기(수교, 상호방문의 해 등)를 활용하여 한국문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사업과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은 모두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사업 내용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체험하는 B2C와 현지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회를 진행하는 B2B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두 사업을 통합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5]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사업과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 비교]

구분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한국문화관광대전
사업목적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확대를 위한 권역별 핵심 도시 대상 홍보	주요 계기(수교, 상호방문의 해 등) 활용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홍보대상물	주요 관광지 및 관광상품	한국 문화 및 한국 대표상품
시작연도	2023년(한시)	2013년(단년도 계속)
사업수행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2023년 사업내용	· (B2C) 현지 소비자 참여형 한국관광 홍보 페스티벌 개최 - 한국문화 체험행사 - 현지 인기 한국드라마 및 한류스타 연계 행사 - 관광명소 홍보 및 방한상품 추천 등	· (B2C) 일반 소비자 대상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 홍보 - K-콘텐츠(팝, 뷰티, 푸드, 컬처, 트래블 등) 홍보관 운영 - K-콘텐츠 무대공연, 이벤트(K-토크쇼, K-푸드챌린지) 등
	· (B2B) 현지 여행업계 및 유력 미디어 대상 한국관광 설명회 개최	· (B2B) 현지 여행업계 및 미디어 대상 한국관광 홍보 및 네트워킹
2023년 계획액	· 45억 5,500만원 (3억 400만원×15개도시)	· 6억원 (3억원×2개국)
2024년 계획안	· 76억원 (3억 400만원×25개도시)	· 6억원 (3억원×2개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1-300의 내역사업

24)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1-300의 내역사업

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0, pp.127~130 참조.

⑨ **고용노동부**의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26](19억 1,200만원)은 지역별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공인노무사 등이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노동관련 법률상담 및 노동의제 발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등에서도 공인노무사 등이 근로자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 사업의 내용과 중첩되므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7]

[근로자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사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사업예산 (관련 예산)	지원내용
상생협력 확산지원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83억원 (19.12억원)	지역 내 근로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 근로자 상담을 통해 노동의제 발굴 등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고용평등상담지원)	17.9억원 (5.51억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모성보호·일 가정 양립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2,480억원 (17억원)	인권침해·장애차별·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 전문고충상담 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19억원 (10억원)	청(소)년 근로자 대상 기초상담, 진정 대리 등 무료 권리구제 지원, 교육 및 홍보

자료: 고용노동부

26) 코드: 일반회계 2031-301의 내역사업

2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3.10, pp.149~151 참조.

⑩ **보건복지부**의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사업[28](4억 7,500만원)은 고립은둔위험이 높거나 고립은둔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발굴 및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등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사업의 대상인 탈 고립은둔 청년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인 고립은둔 청년에 포함되어 관련 인력의 인건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고,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등 관련 사업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바, 해당 인력 배치 조정 및 사업통합, 이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29]

[2024년 고립·은둔 청년지원 인건비 관련 예산 산출내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산출내역)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인건비 산출내역)
◦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475백만원) - 10명×396만원×12개월×100% = 475백만원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652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 (5명*33,200천원+3명*28,300천원)*50%*1개소+(5명*33,200천원+3명*28,300천원)*70%*3개소=652,340천원 - 단수조정 : △34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28) 코드: 일반회계 1331-304

2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3.10, pp.22~24 참조.

⑪ **외교부**의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사업[30](16억 3,300만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애로사항 해소, 자료수집, 현지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개최의 형태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 사업'과 '우리기업 브리질 진출 센터 운영 사업'도 남미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공관에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직접 집행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사업의 목적, 형태 및 지원방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분리편성하기보다는 이들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31]

[남미 지역 대상 기업지원활동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	우리기업 브라질 진출 센터 운영
세부사업명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3032-402)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431-401)	
운영실국	양자경제외교국	중남미국	
목적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책사업 수주 및 애로사항 해소	주요 지방정부 내 경제협력 참석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 지원	브라질 행정절차로 애로사항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 지원
형태	자료수집, 설명회, 포럼, 간담회, 면담 등	자료조사,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및 참석, 면담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세미나 등
지원방식	해당 국가 재외공관 집행		
지원국가	108개국 (멕시코 9건, 브라질 7건, 아르헨티나 6건, 페루 27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2024년 예산안	16억 3,300만원	1억 2,500만원	5,7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0) 코드: 2438-402의 내역사업

3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3.10, pp.32~34 참조.

⑫ **경찰청**의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사업[32](10억 9,200만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밀집도를 계산·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상황 분석과 경찰력 지원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솔루션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경찰청의 다른 사업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2.0)(R&D)’ 사업 내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개발 내역사업과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3]

[군중밀집 관련 연구개발 사업 비교]

구분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R&D)
사업목표	군중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밀집도를 계산·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상황 분석과 경찰력 지원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솔루션 개발	旣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 시의성 높은 치안 현장의 문제 해결 및 경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 - 2023년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개발 과제 선정
지원대상	현장 경찰관, 대학, 기업 등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지원방식	출연	출연
2024년 예산안	10억 9,200만원	53억 9,300만원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코드: 일반회계 7134-311

3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3.10, pp.153~156 참조.

⑬ **국토교통부**의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34](100억 1,300만원)은 범죄·테러 해결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철도역사에 지능형 영상감시설비(AI CCTV) 및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철도역사 사업에서 철도역사에 AI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20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24년 6월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스마트철도역사 사업을 통해서는 수서·오송·익산·부산역에 AI CCTV가 설치될 예정인데,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 또한 1단계 구축을 통해 2023년까지 해당 역사들에 AI CCTV를 구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AI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과 스마트철도역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CCTV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5]

[스마트철도역사 사업 대상 역사에 대한 AI CCTV 구축 대수]

(단위: 대)

구 분	스마트철도역사 사업	AI CCTV 구축 사업 (1단계 계획)	합 계
수서역	18	26	44
오송역	45	12	57
익산역	51	12	63
부산역	17	30	47
합계	131	80	21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4) 코드: 일반회계 2731-341의 내역사업

3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3.10, pp.153~158 참조.

⑭ **관세청**의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36](1,200만원)은 위험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우수부서 포상, 업무매뉴얼·적발사례집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세관정보화 지원’** 사업[37](1억 100만원)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세청·산하 세관에 네트워크 공사, 전산소모품 등 최적의 정보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 및 세관정보화 지원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위험관리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정보화 업무수행 우수자 및 기관 등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700만원,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주요사업비 중 성과우수자 및 기관 포상금 예산안]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안	산출내역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7,000	
	1.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6,000	2회 × 3,000천원
	2.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	1,000	4회 × 250천원
세관정보화 지원		26,000	
	1. 정보화 업무수행 우수자 및 기관 포상	13,000	50개 팀 및 기관 × 260천원
	2. 정보화 발전 기여 우수자 및 기관 포상	13,000	50개 팀 및 기관 × 260천원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관세청의 본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기본경비에 업무 성과 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우수 직원 포상금 예산은 감액하고, 성과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은 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있었다.[38]

36) 코드: 일반회계 1333-304의 내역사업

37) 코드: 일반회계 1441-500의 내역사업

3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241~248 참조.

[2024년도 기본경비에 편성된 주요 포상금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포상내역	금액
본 부	〈기관운영 포상〉	
	- 기관평가 유공자 및 우수기관 포상	24,270
	- 위험관리 우수부서 등 포상	5,000
	〈관세행정발전 유공자 포상〉	
	- 규제개혁 유공자 및 유공기관	20,000
	- 관세행정제도개선 우수자 포상	10,000
	- 이달의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포상	37,800
	- 관세행정발전 유공 포상	71,400
	〈기타 본부 포상〉	489,644
정보데이터정책관	- 정보, 데이터 업무 발전 유공자 포상	3,000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9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건이고, 법무부 2건, 공정거래위원회·재외동포청·국토교통부·조달청 각 1건씩 4건이다.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과기	SaaS 혁신펀드	20,000	금융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펀드	800,000	신규 추진 재검토
				KDBC-K2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펀드	55,000	
과기	한계도전R&D프로젝트	10,000	산업	알키미스트	28,200	차별성 강화 필요
			복지	ARPA-H	49,500	
과기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20,000	중기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150,000	중복 배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334	중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2,270	사업간 연계 필요
법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265	여가	가족센터 운영	34,125	중복 배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73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87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703	
법무	배심제 관련 홍보비	60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186	중복 배제
재외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차세대 사업	8,020	통합추진 필요
				정체성함양 콘텐츠 개발	3,000	
국토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11,700	환경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81,720	차별성 강화 필요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조달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1,000	중기	정부수출바우처 사업	119,538	중복 배제
합계		87,113	합계		1,467,8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aaS 혁신펀드'** 사업[39](200억원)은 전세계적인 SW의 서비스형 SW(SaaS) 전환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SaaS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40] 내 성장지원펀드에서 2023년 하반기에 출자사업을 조성한 결과,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KDBC-K2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등 일부 자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에 SaaS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aaS 혁신펀드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로 결성된 자펀드를 통해 SaaS 분야에 투자 재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펀드의 신규출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1]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 중 SaaS 분야 지원 자펀드 결성 사례]

구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KDBC-K2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운용기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지원대상	창업 3년 이상, 투자 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의 초기·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분야 글로벌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투자분야	딥테크, 소프트웨어 ·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콘텐츠 · 게임, 바이오·헬스케어 등	로봇, 인공지능(AI),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반도체, 헬스케어,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산업 등
조성규모('23)	8,000억원	550억원

자료: 1. 이코노미스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8000억 규모 벤처펀드 결성", 2023.9.19.
2. 머니투데이, "산은캐피탈, K2인베스트먼트와 550억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 결성", 2023.9.6.

39)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2602-331

40) 코드 : 일반회계 2414-318

4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3.10, pp.145~147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사업[42](100억원)은 고위험 · 고수익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현안, 경제 · 산업 이슈와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책임PM을 선정하여 문제 정의 - 기획 - 선정 - 평가 - 과제 수행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보건복지부의 'ARPA-H' 등 타 부처 사업에서도 한계 기술 또는 난제 해결 등의 고위험 · 고수익의 R&D 과제를 프로젝트 매니저(PM)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발굴 ·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목적이나 추진 방식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내용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과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3]

[3개 부처 사업 비교]

구분	한계도전R&D(과기부)	알키미스트(산업부)	ARPA-H(복지부)
사업 목적	국가적 현안 해결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는 파괴적 혁신 기술 확보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지원	보건 · 의료 분야 난제 (암·감염병 등) 해결
지원 분야	바이오, 기후 · 에너지, 소재 포함 5개 분야	산업기술 분야	보건 · 의료 분야
지원 내용	'24~'28년 총 490억원	'22~'31년 총 4,142억원	'24~'33년 총 1조 9,314억원
추진 방식	책임PM 주도로 기획-선정-평가-관리 등 연구개발 전과정 총괄(과제추진방식 책임PM 결정)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통한 테마 발굴 → 산기평 PD[44] 관리(경쟁형 연구수행)	PM 주도로 기획하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된 과제나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확정
지원 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과제당 지원 규모	과제당 10억원 내외 (3~5년)	(1단계) 연간 2억원 내외(1년) (2단계) 연간 5억원 내외(1년) (3단계) 연간 40억원 내외(5년)	과제당 평균 40억원 규모(5년 수행)
2024년 예산안	100억원	282억원	495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 코드: 일반회계 1158-450

4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3.10, pp.85~93 참조.

44) PD(Program Director)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과 과제의 기획 · 점검 · 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45](200억원)은 유망 보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이버보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부터 지원 중인 '초격차 펀드', 2024년 예산안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초격차 분야와 지원대상 및 투자분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조성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6]

[사이버보안펀드와 초격차 스타트업 펀드 비교]

구분	사이버보안펀드(신규)	스타트업코리아 펀드(기존)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사업기간	2024~2028년	2023년 (초격차 펀드) 2024년~(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지원대상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분야	① 스타트업 : 유망신기술(AI, ZT, 양자 등) 및 원천분야(네트워크, 5G, 암호 등) ② 스케일업 : 중소·중견 사이버보안 기업 간 인수합병	〈10대 초격차 분야〉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 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⑥ 빅데이터·AI,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 우주항공·해양, ⑨ 차세대원전, ⑩ 양자기술(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조성규모 ('24)	400억원 (정부 200억원, 민간 200억원)	3,000억원 (정부 1,500억원, 민간 1,50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5)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2333-306

4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3.10, pp.139~144 참조.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47](3억 3,400만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연동제와 관련한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교육, 컨설팅 및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예산 등을 편성하여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각 사업 주체는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사업의 공동·연계 시행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8]

[2024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및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구 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예산안		3억 3,400만원	22억 7,000만원
사업내역	기업 대상 교육 및 법률자문 지원	-	• 기업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 및 분쟁 발생시 법률자문 비용 지원
	원가분석 지원 및 연동약정 컨설팅	-	• 수탁기업 원가분석 지원 및 연동약정 컨설팅
	연동지원본부 운영	• 연동제 실적 점검 및 물가지수 개발 •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상담·교육 및 컨설팅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교육 및 컨설팅
	연동우수기업 지정 및 제도 홍보	• 연동 우수기업 사례 발표 • 이해관계자 간담회 • 연동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 연동 우수기업 사례 발표 • 연동우수기업 선정 관련 비용 •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제도개선 연구용역	-	•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보완 • 주요 쟁점 검토 등 연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7) 코드: 일반회계 1331-400의 내내역사업

4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3.10, pp.77~84 참조.

⑤ **법무부**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49](2억 6,500만원)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등을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사업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운영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직법」[50]을 보면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 등은 여성가족부의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도록 통폐합하고, 동 사업은 예산안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51]

[2024년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안]

◦가족센터 운영 : 34,125백만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733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33,873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우리사회 미재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 학습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 703백만원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입국 전 한국생활 정보 사전제공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권익 보호 지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

49) 코드: 일반회계 1233-304의 내역사업

50)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2023.10, pp.109~113 참조.

⑥ **법무부**의 **'배심제 관련 홍보비'** 사업[52](6,000만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법원으로, 대법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 1억 8,600만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및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동 제도의 홍보활동을 전담하도록 일원화하여 동 사업의 주 대상인 배심원 후보자 선정 이후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에 편성된 배심제 관련 홍보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53]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사업 2024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요구 내용
- ㅇ 국민참여재판제도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필요 경비

□ 2024년도 예산안: 186백만원
- ㅇ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지원 : 15백만원
- ㅇ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심원안내서, 홍보만화, 배심원 등 기념패) 배부 : 58백만원
- ㅇ 국민참여재판 홍보(TV 등 각종 매체 등) : 113백만원

자료: 대법원

52) 사업코드: 일반회계 1337-300의 내역사업

5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2023.10, pp.74~78 참조.

⑦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54](237억 5,400만원)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차세대육성사업’과 재외동포청의 사업인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과 방식이 유사하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 사업과 재외동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대상 및 방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사업의 대상, 범위, 목적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사업에 적합한 사업과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55]

[재외동포협력센터 및 재외동포청 간 유사·중복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청
사업명	차세대육성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대상	차세대 재외동포	차세대 재외동포
사업방식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입양동포 모국방문지원 사업
2024년 예산안	8,020	1,353
사업명	한인 정체성함양 콘텐츠 개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
대상	재외동포	재외동포
사업방식	한국의 역사 및 정체성 관련 SNS, 동영상(온라인) 콘텐츠 제작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성 등 한국의 우수성 교재(오프라인) 등 개발
2024년 예산안	3,000	31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4) 코드: 2438-402의 내역사업

5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3.10, pp.67~70 참조.

⑧ **국토교통부**의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56](117억원)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및 부대시설을 갖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환경부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57]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는데, 대용량 수소충전소 96개 사업지 중에도 절반 가량인 47개가 버스차고지(40개) 또는 화물 차고지(7개)이다.

그런데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입지 역시 버스 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다수인데, 2024년도 사업예정지인 포항·보령의 경우에도 버스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환경부의 대용량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지 선정 시 환승센터·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거점 또는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8]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대상지 현황]

구 분		사업대상입지의 특징	부대시설	비 고
2021년	평택	항만(평택항)	차량정비소, 쉼터 등	2023. 11. 상업운전 개시 예정
2022년	안산	공영주차장 (반월국가산단)	대형주차장, 휴게시설 등	2024. 6. 상업운전 개시 예정
	춘천	화물차 공영차고지	차량정비소, 세차장 등	2024. 6. 상업운전 개시 예정
	통영	버스 공영차고지	차량정비소, 휴게시설 등	2024. 3. 상업운전 개시 예정
2023년	인천	공항 (인천공항 T2차고지)	차고지내 부대시설 활용	2023. 10. 위탁협약 체결 예정
2024년 (안)	포항	버스 공영차고지	차량정비소, 휴게시설 등	2023. 1. 대상지 선정
	보령	버스 공영차고지	차고지내 부대시설 활용	2023. 1. 대상지 선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6)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4931-344

57)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2

5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3.10, pp.140~144 참조.

⑨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59](10억원)은 해외조달시장의 복잡성, 진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단계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은 초기 시장 조사에서 최종 영문 계약서 작성까지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업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수출바우처 사업[60]에서도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61]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과 정부수출바우처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	정부수출바우처 사업
소관부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해외입찰 지원(제안서 작성 등) - 해외조달벤더등록 지원 - 해외전시회 파견 지원 - 전시모형 제작지원 - 현지 딜러발굴	- 통번역 - 서류대행/현지등록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 · 세무 · 회계 컨설팅
2024년 예산안	1,000	119,538

자료: 조달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59)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의 내내역사업

60) 코드: 일반회계 3131-301의 내내역사업

6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10, pp.279~286 참조.

(4)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과 동시에 유사·중복인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3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농촌진흥청 각 1건씩이다.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4 예산안	
문체	문화로 사회연대	1,900	문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3,604	중복 배제
			복지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1,309	
			여가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089	
통일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949	통일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1,006	차별성 강화 필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550	
농진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고도화(통합관제시스템)	400	농진	농림위성정보활용센터	5,496	차별성 강화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15,422	
합계		5,249	합계		33,4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 10.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62](19억원)은 정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부사업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에서도 수행되고 있는데, 양 사업 간 지원대상(정서적 취약계층)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2024년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유사 사업 비교]

구분	문화로 사회연대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소관부서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세부사업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목적	· 은둔·고립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활용 심리지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통합 및 안정에 기여	· 학교폭력 피·가해자, 정신건강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에 기여
수행방식	· 민간위탁	· 민간경상보조
수행기관	· 인문전담기관 공모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프로그램	· 문화·인문자원 활용 문화케어 프로그램	· 문화예술치유 체험 프로그램
지원대상	· 은둔, 사회적 단절 위기에 처한 정서적 취약계층 *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 읍면동단위) 및 지역 협업 기관과 협력하여 발굴,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활용한 발굴	·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가해자, 정신건강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일반 국민 등
운영장소	· 지역거점문화시설 * 문화복지기관, 문화시설 등	·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 기타 온·오프라인 공간
2024년 예산안	· 1,900백만원(신규) : 30개 프로그램×6.67백만원×9개지역 +실태조사 등 100백만원	· 3,604백만원(전년동) : 250개 프로그램×14.4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2) 코드: 일반회계 1531-306

또한 동 사업은 은둔·고립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심리지원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면에서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과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2024년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타부처 유사 사업 비교]

구분	문화로 사회연대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세부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목적	은둔·고립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 활용 심리지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통합 및 안정에 기여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및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우리사회 은둔·고립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수행방식	민간위탁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수행기관	인문전담기관 공모	지자체	지자체
사업내용	문화·인문자원 활용 문화케어 프로그램 운영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사례관리 제공·연계, 사후관리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은둔·고립형 청소년의 선제적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대상	은둔, 사회적 단절 위기에 처한 정서적 취약계층	고립·은둔 청년(19~34세) 및 그 가족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및 가족
2024년 예산안	1,900백만원(신규)	1,309백만원(신규)	1,089백만원(신규)

자료: 각 부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3. 9.)을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특화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63]

6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0, pp.108~112 참조.

② **통일부**의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64](29억 4,900만원)은 북한인권 실상의 대내외 확산, 통일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내 북한인권 증진활동지원 사업은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확산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65]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지원 활동 등 추진 사업 개요]

구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소관 부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내역 사업	북한인권 증진활동지원(민간단체 지원 등),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확산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해외평화통일 정책강연회, 우리고장평화통일 시민대화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 목적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사업(인력양성·행사·공론화 등) 지원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과 여론수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인권문제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및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방식	민간경상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사업 내용	• 북한인권 증진활동 민간단체 지원 • 민간단체 자유민주평화통일 활동 지원	• 지역 포럼개최,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역협의회 회의, 통일 관련 행사	• 정책 추진체계 운영 및 정책개발 자문 • 민관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 협력 • 콘텐츠, 참고자료 개발 등
2024년 예산안	29억 4,900만원(신규)	55억 5,000만원	10억 600만원

자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4) 코드: 일반회계 2135-306

6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3.10, pp.105~107 참조.

③ **농촌진흥청**의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고도화'** 사업[66](15억원)은 하는 선제적인 쌀 생산량 예측과 이에 따른 생산량 조절을 위해 벼 작황정보(벼 재배면적, 생산량 등)를 제공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 한국형 벼 작황예측 정책지원 통합관제시스템(이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농림업관측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및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농림위성정보활용센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통합관제시스템을 벼 작황 관측 측면에서 기능 간 유사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을 통해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67]

[통합관제시스템과 유사 사업 간 비교]

구분	통합관제시스템	농업관측	농림위성정보활용센터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근거법률	「농촌진흥법」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 농림업 관측	「우주개발진흥법」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기간	2024년~계속	1999년~계속	2021~2025년
기능	- 위성·드론 영상정보 활용 벼 재배면적 및 생산성 모니터링 - 비파괴 디지털 벼 작황 관제 시스템 구축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기상·재배면적·해외시장정보 기반 가격 및 수급 전망	-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를 활용한 작황 모니터링
2024년 예산안	4억원	154억 2,200만원	54억 9,60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6) 코드: 일반회계 2334-307의 내역사업

6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 pp.222~227 참조

6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가. 신규사업 현황

신규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1]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는 세부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 사업,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등이 신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사업의 실질적 의미를 고려하여 통계조사 사업 등과 같이 일정주기로 반복되는 사업, 회계·기금 간 이관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예산안이 처음 편성되었다고 해도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기로 한다.[2]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사업 수(세부사업 기준)는 전년 대비 6개가 증가한 369개이고, 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4,429억원 감소한 2조 7,965억원으로, 2024년 총지출 656.9조원의 0.4% 수준이다.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A)	2024(안) (B)	증감 (B-A)
신규사업 수	495	481	490	619	363	369	6
신규사업 규모	35,340	41,773	41,188	129,390	32,394	27,965	△4,42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신규사업의 정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2)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 · 기금 간 거래, 금융성기금 사업 등도 신규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2024년도 369개의 신규사업은 총 41개 부처에 반영되었다.[3)]

사업 수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51개), 기획재정부(36개), 국토교통부(35개), 방위사업청(31개) 등의 순이다.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방위사업청이 해성2차성능개량(1,830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6,723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4,367억원), 환경부(3,99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744억원) 등의 순이다.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사업규모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수	2024 예산안
방위사업청	31	672,253
산업통상자원부	51	436,664
환경부	12	399,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	374,411
금융위원회	6	240,671
보건복지부	14	154,944
국토교통부	35	140,906
외교부	5	45,734
기획재정부	36	37,608
행정안전부	9	37,207
국가보훈부	5	25,174
질병관리청	2	23,333
해양수산부	9	20,101
농림축산식품부	7	18,576
고용노동부	1	18,310
문화체육관광부	6	18,097
농촌진흥청	4	15,398
식품의약품안전처	4	14,769
중소벤처기업부	2	14,500
국세청	3	12,476
해양경찰청	3	10,704
소방청	3	10,036
관세청	4	7,990
산림청	3	7,475
재외동포청	4	5,05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4,390

3) 총 59개 기관 중 여성가족부,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기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없다(신규 사업으로 제출하여도 성격상 신규로 볼 수 없는 사업 제외).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수	2024 예산안
교육부	6	3,955
법무부	5	3,450
새만금개발청	2	3,200
통일부	2	3,043
국회	1	2,947
국방부	2	2,675
원자력안전위원회	3	2,490
통계청	1	2,464
기상청	1	2,000
문화재청	2	1,714
경찰청	2	1,592
대통령경호처	1	500
특허청	1	224
방송통신위원회	1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00
총 계	369	2,796,52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회계·기금별 신규사업 현황

2024년도 신규사업의 회계·기금별 현황[4]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36개 사업에 2조 452억원이, 특별회계는 68개 사업에 3,588억원이, 기금은 65개 사업에 3,9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가 7개 사업에 1,26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929억 1,1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558억 1,200만원) 등의 순이다.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433억원이 편성되어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1,00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905억 8,600만원), 국유재산관리기금(239억 3,200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164억 9,000만원) 등의 순이다.

4) 2024년도 전체 특별회계는 10개, 기금은 12개이다.

[회계 · 기금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수	2024 예산안
일반회계		236	2,045,236
특별회계		68	358,833
	환경개선특별회계	7	126,117
	교통시설특별회계	15	92,9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	55,8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	41,8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29,4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9,57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	2,5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35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2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100
기금		65	392,459
	전력산업기반기금	10	143,31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	1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1	90,586
	국유재산관리기금	26	23,932
	방송통신발전기금	5	16,490
	기후대응기금	5	8,43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	3,600
	보훈기금	2	2,727
	과학기술진흥기금	1	1,5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1,121
	국민건강증진기금	1	557
	문화재보호기금	1	200
총 계			2,796,52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4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4년도 신규사업 중 예산안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업의 규모는 총 1조 1,843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2조 7,965억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2,500억원)이며, 다음으로 방위사업청의 해성2차성능개량 사업(1,831억원)과 230mm급 무유도탄 사업(1,825억원) 등의 순이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4 예산안
1	환경부	일반회계	하천재해대책비	250,000
2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해성2차성능개량	183,079
3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230mm급 무유도탄	182,462
4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00,000
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100,000
7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출연(햇살론15)	90,000
8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산고도화지원	64,789
9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60,000
1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3,949
합 계				1,184,27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①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준비 여부, ②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③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여부 검토

신규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사전 준비가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근거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5](1,000억원)은 원전 기자재 기업 육성을 위하여 원전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설자금·운전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지원대상을 원전 관련 기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원전 산업과 관련이 적은 기업까지 지원하게 되어 원전 산업에 특화된 자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중소·중견기업 융자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6](1,000억원)은 민간자본과 민간의 사업성 평가기법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금을 5년 동안 1조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연간 1,000억원(총 3,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사 등을 거친 경우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의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운용 상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대상에서 경기·인천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부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7](600억원)**'** 은 녹색산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출자를 통해 신규로 펀드를 조성[PIS(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펀드 내 녹색산업 수출지원 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국토부 소관 PIS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새로운 펀드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신규 조성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PIS펀드는 정부출자금 외에 공공분야 출자금 비중이 높으며, 민간투자자금과의 매칭 비율이 2:3인데, 동 펀드는 정부출자금 외 공공분야 출자금 조성 계획이 미흡하며, 민

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41~45.

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3.10., pp.115~125.

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3.10., pp.54~59.

간투자자금과의 매칭 비율이 3:1로, 정부 출자금 비중이 높으므로 공공부문 및 민간투자금 매칭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8](516억 4,100만원)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 월 최대 60회)을 마일리지로 환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마일리지 환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도한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회당 또는 월별 적립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9](495억원)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과제를 추진하여 팬데믹,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분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보다 구체적인 과제 추진계획, 사업 운영방식, 각 단계별·절차별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사항 및 결과가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고용노동부의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10](183억 1,000만원)은 노-사 및 노-노 간의 상생연대 및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은 참여 원청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기업의 규모, 업종, 협력사 근로자 수, 출연 규모 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다.

8) 국회예산정책처, 「2024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3.10., pp.176~181.

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10., pp.125~136.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3.10., pp.144~148.

7.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11](135억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민간과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해 타 사업과 차별화할 계획이나, 민간의 참여를 현 단계에서 담보하기 어렵고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민간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민간의 참여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초기부터 민간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8.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 사업[12](57억 8,500만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보조기기 발주 계약 체결시 선급금 지급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납품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특례를 통한 예외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기기 납품업체의 선금 지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추가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맞춤형바이오원부자재 제조경쟁력강화' 사업[13](54억 9,500만원)'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계획과 연계하여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한 핵심 원부자재 자립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글로벌진출형 원부자재 제조 및 검증 내역사업은 글로벌기업의 국제공동연구 수요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글로벌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10.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아카데미구축' 사업[14](37억 1,000만원)은 배터

11) 국회예산정책처, 「2024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3.10., pp.110~114.

1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34~40.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57~59.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리 산업계 재직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배터리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실습용 장비는 유사한 사업목적 및 방식으로 추진된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에서 2차년도부터 실습용 장비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점검한 이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15] (35억 900만원)'은 「청년기본법」제24조의5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관련 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예산 요구 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 정보보호 대책 및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이행했어어야 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2.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사업[16](15억원)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2021년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2023년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사업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변경 범위, 기본계획 변경시 하위 계획 변경 필요성 및 2023년 수립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13.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17](2억 5,700만원)'은 세계 각지 우수한 재외동포 청년의 재외공관 단기 현장 실습 활동을 통해 국정참여기회를 확대

pp.48~52.

1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3.10., pp.9~15.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3.10., pp.227~23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3.10., pp.59~60.

하고 차세대 재외동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층의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재외동포대상 현지 영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청년인턴에 대한 재외공관 측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특성 상 국정참여 기회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의 수요파악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4. 산업통상자원부의 'SMR제작지원센터구축' 사업[18](1억원)은 세계 각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SMR 제작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기자재 업체의 수요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장비구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예산안 산출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고 있는 등 예산 절감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정부에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연차별 재정 소요 및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19](1,000억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 분야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필요한 R&D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R&D 목적의 융자사업이지만, 기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자금 수요와 예산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46~47.

1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117~121.

2.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20](539억 4,900만원)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해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편성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계획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집행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며,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중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보증' 사업[21](250억원)은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여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입찰·이행·선급금·하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의 旣수주 사업 계약체결 가능액 및 독자적인 원전설비 수출 예상액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된 측면이 있으므로 원전 기자재 업체의 수출계약 가능액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가보훈부의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22](218억 8,900만원)은 2024년 월남전파병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익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파병용사에게 제복을 증정하여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모든 생존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024년 내 제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대상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특성과 2023년도에 진행 중인 유사사업의 실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 사업[23](150억원)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 100억원, 서산공항 건설 사업 10억원, 백령도 소형공항 사업은 40억원이 각각 편성되

2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10., pp.98~106.

2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28~33.

2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3.10., pp.36~39.

23) 국회예산정책처, 「2024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3.10., pp.162~166.

었는데,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안이 대규모로 증액 편성된 바,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 지출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사업[24](30억원)은 전기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미래차 부품기업의 시제품 제작, 협의체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기차 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미래차풍동실험실 장비에 내연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차 부품개발에 특화된 장비로 장비구축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사업[25](20억원)은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 연구 및 양산 단계에서의 실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가 2025년 착공 후 2026년 이후 준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 건축 일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장비구축비는 센터 건축 일정에 맞추어 2025년 이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관세청의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사업[26](3억 400만원)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창출 등 사업의 全 단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관세청의 기존 R&D 사업 수행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 바가 없고, 과제별 소요 예산도 당초 정확한 근거로 산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기획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예산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2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84~89.

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3.10., pp.53~56.

2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10., pp.224~233.

(3)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연계 필요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누수 방지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사업 등과의 사업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타 기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한 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27] **(35억 900만원)'** 은 「청년기본법」제24조의5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다룰 수 있는 확장성이 확보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24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통일부의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28]**(29억 4,900만원)'** 은 북한인권 실상의 대내외 확산, 민간 통일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확산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행정안전부의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사업[29](10억

2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3.10., pp.9~15.

2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3.10., pp.105~107.

2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10., pp.77~80.

4,000만원)’ 과 **경찰청의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사업**[30](10억 9,200만원)’ 은 군중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밀집도를 계산·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상황 분석과 경찰력 지원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폴리스랩 2.0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군중관리 관련 기술은 민간에서 개발한 실용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31](3억 7,500만원)은 산·관·학 협력을 통한 푸드테크 신기술 개발 지원과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신기술 실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식품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집적된 식품 R&D 단지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개념 정의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의 차별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3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10., pp.153~156.

3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10., pp.43~46.

7 인건비 분석

가. 현 황

(1) 인건비와 총액인건비 제도 개요

① 인건비

인건비(110목)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을 의미한다. 인건비는 보수(01), 기타직보수(02), 상용임금(03), 일용임금(04), 연가보상비(05) 등 5가지 세목으로 구분된다.

[2024년 인건비 세목구분]

세 목	적용 대상
보수 (01)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
	* 각종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
	* 기타직: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생, 임용전수습,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제), 청원경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경찰·소방 간부후보생, 청원산림보호직, 위원회 상근직(상임위원및간사) 등
상용임금 (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4)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연가보상비(0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인건비는 기관의 조직 규모와 인적 구성 등 인력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공무원 등 지급대상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반영하고, 고정비적 성격이 강한 비용으로, 보수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각 중앙관서별 「인건비 지출한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요구하되 추후 부처별 기준단가 재산정, 처우개선율 및 소요정원 책정결과 등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하고, 기타직보수와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의 경우 그 인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는 등[1]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규모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2],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등[3]으로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부처 기정예산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1)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한다.

3)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대행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관리용역비(210-15목),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등 위탁·대행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고용부담금(320-09목)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기타 채무상환·재해대책비·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4) 기타직보수의 경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한 결과 증원 등 인건비 증액요인 발생 시 기타직보수의 자체충당 여부와 상관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용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없이 인력을 증원하거나 별도 수당 등을 신설할 수 없고, 인원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일용임금의 경우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하면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일용임금 근로자를 상용임금 근로자(기간제 및 무기계약직)로 전환함에 따라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총액인건비제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5]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6]이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에 있어서는 직제에 규정된 현 정원의 일정범위 내 운영[7]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수에 있어서는 자율항목[8]의 지급액·대상·방법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직·정원의 측면에서 행정안전부는 각 시행기관의 직제상 총정원과 4급(상당) 이상의 정원을 관리하고, 시행기관에서는 직제시행규칙 등으로 총 정원의 10% 이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등 실제 운영정원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장급 한시적 보조·보좌기관(팀)을 설치할 수 있어, 기구 설치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또한 총액인건비(인건비·운영경비) 간 자체전용은 허용되지만, 기타 사업비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경비로 추진하던 사업 또는 지출항목을 총액인건비 이외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6) 단, 중앙행정기관 예산에 편성되는 대통령소속위원회(대통령소속 국무총리실 주관 규제개혁위원회 등)는 제외된다.

7) 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는 인력증원을 보류해야 한다.

8)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의 경비로 우회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구분되며 각각 인건비 세부사업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부 비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 분		세부내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목)
	책임운영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전 비목

주: 1.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의 운영경비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적용
2. 기본경비를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와 비대상 기본경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국방부 등)에는 총액인건비 대상비목에서 운영경비를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023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원의 자율성 부문이 확대되었는데, 2022년도까지는 직제에 규정된 총 정원의 7% 이내에서 자율성이 부여되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총 정원의 10% 이내로 변경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2) 중앙행정기관 정원관리와 인건비 현황

① 정원 관리 현황

「정부조직법」 제8조[9]는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별 직제(대통령령)를 통해 기관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별 정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되나,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는 각 기관별로 직제에서 규정된 총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제 시행규칙" 등으로 실제 운영정원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직제에서 정한 정원과 실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직제에 규정해야 하는 정원을 '기준정원',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의 정원을 '운영정원'이라 한다.

다만, 「검사정원법」 등의 법률에 정원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대상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10]

한편, '별도정원'이란 각 기관의 파견근무·교육훈련 중인 자와 관련하여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별도정원은 각 기관에서 파견근무·교육훈련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정원의 규모가 변화하여도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9)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0) 특정직 공무원 중 법관의 경우에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의해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총액인건비제도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애초에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2023년 8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의 기준정원은 75만 3,970명이고, 운영정원은 75만 5,257명으로 운영정원이 1,287명 더 많다. 기준정원보다 운영정원의 수가 많은 것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자율적인 인력증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총 기준정원 대비 0.2%의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 8월			
	기준정원(A)	운영정원(B)	B-A	(B-A)/A*100
합 계	753,970	755,257	1,287	0.2
기획재정부	1,120	1,120	-	-
교육부	372,513	372,51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263	35,145	△118	△0.3
외교부	2,855	2,857	2	0.1
통일부	617	617	-	-
법무부	23,720	23,720	-	-
국방부	1,010	1,012	2	0.2
행정안전부	3,929	3,934	5	0.1
국가보훈부	1,441	1,444	3	0.2
문화체육관광부	3,062	3,069	7	0.2
농림축산식품부	3,679	3,682	3	0.1
산업통상자원부	1,400	1,399	△1	△0.1
보건복지부	2,537	2,539	2	0.1
환경부	2,731	2,736	5	0.2
고용노동부	8,472	8,488	16	0.2
여성가족부	281	283	2	0.7
국토교통부	4,119	4,125	6	0.1
해양수산부	4,282	4,294	12	0.3
중소벤처기업부	1,420	1,420	-	-
인사혁신처	596	593	△3	△0.5
법제처	237	237	-	-
식품의약품안전처	1,996	2,012	16	0.8
국세청	21,449	21,598	149	0.7
관세청	5,329	5,348	19	0.4
조달청	1,113	1,119	6	0.5
통계청	2,189	2,190	1	0.0
재외동포청	151	151	-	-
검찰청	10,749	10,749	-	-
병무청	1,951	1,956	5	0.3
방위사업청	1,137	1,139	2	0.2

(단위: 명, %)

구 분	2023. 8월			
	기준정원(A)	운영정원(B)	B-A	(B-A)/A*100
경찰청	136,797	137,858	1,061	0.8
소방청	66,931	66,931	-	-
문화재청	1,030	1,040	10	1.0
농촌진흥청	1,907	1,915	8	0.4
산림청	1,795	1,822	27	1.5
특허청	1,806	1,807	1	0.1
질병관리청	1,621	1,625	4	0.2
기상청	1,351	1,357	6	0.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47	147	-	-
새만금개발청	139	140	1	0.7
해양경찰청	13,287	13,310	23	0.2
방송통신위원회	279	279	-	-
공정거래위원회	653	653	-	-
국민권익위원회	565	569	4	0.7
금융위원회	333	333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1	171	-	-
원자력안전위원회	167	167	-	-
국가인권위원회	249	250	1	0.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77	77	-	-
국무조정실	496	496	-	-
국무총리비서실	97	97	-	-
감사원	1,080	1,080	총액인건비 비시행기관	
대통령비서실	443	443	-	-
국가안보실	43	43	-	-
대통령경호처	738	738	-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4	4	-	-
특별감찰관	8	8	-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85	85	-	-
국가교육위원회	31	31	-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84	84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72	72	-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36	136	-	-

주: 각 중앙행정기관별 소속기관의 정원을 합산한 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2023년 6월 기준 행정부를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은 2만 5,588명이고, 총액인건비 적용대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운영정원 또한 같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 8월			
	기준정원(A)	운영정원(B)	B-A	(B-A)/A*100
합 계	25,588	25,588	-	-
국회	4,188	4,188	총액인건비 비시행기관	
대법원	18,075	18,075		
헌법재판소	348	3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77	2,977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시스템(https://www.org.go.kr)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인건비 예산 현황

2024년 인건비 비목(110목)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9,027억원(4.0%) 증액된 49조 4,345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보수(110-01목)가 전년 대비 1조 6,965억원(3.9%) 증액된 45조 1,704억원, 기타직 보수(110-02목)가 전년 대비 379억원(6.7%)이 증액된 6,037억원, 상용임금(110-03목)이 전년 대비 1,040억원(3.6%) 증액된 3조 221억원, 일용임금(110-04목)이 전년 대비 544억원(26.87%) 증액된 2,578억원, 연가보상비(110-05목)가 전년 대비 98억원(2.6%) 증액된 3,80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인건비 비목(110목)의 2024년도 세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수 (110-01목)	기타직보수 (110-02목)	상용임금 (110-03목)	일용임금 (110-04목)	연가보상비 (110-05목)	합계
2023예산(A)	43,473,948	565,755	2,918,071	203,355	370,686	47,531,815
2024예산안(B)	45,170,449	603,700	3,022,106	257,789	380,451	49,434,495
증감(B-A)	1,696,501	37,945	104,035	54,434	9,765	1,902,680
증감률 [(B-A)/A*100]	3.9	6.7	3.6	26.8	2.6	4.0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이 18조 454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찰청 10조 1,861억원, 법무부 2조 7,75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 5,356억원 순이었다.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1조 5,101억원으로 가장 인건비 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2024년도 인건비(110목)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수 (110-01목)	기타직보수 (110-02목)	상용임금 (110-03목)	일용임금 (110-04목)	연가보상비 (110-05목)	합계
합 계	45,170,449	603,700	3,022,106	257,789	380,451	49,434,495
국방부	17,319,507	9,054	510,235	9,098	197,540	18,045,434
경찰청	9,914,246	52,016	146,951	3,542	69,308	10,186,062
법무부	2,554,861	47,718	148,276	5,806	18,460	2,775,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93,584	12,624	399,649	12,376	17,337	2,535,570
교육부	2,077,561	1,536	182,940	2,695	5,067	2,269,798
국세청	1,361,035	9,597	32,353	7,373	10,712	1,421,071
해양경찰청	935,598	9,243	11,461	1,858	6,063	964,223
보건복지부	626,512	119,621	84,111	5,089	1,503	836,837
고용노동부	518,032	4,136	127,864	12,585	3,949	666,565
외교부	395,389	2,392	208,921	5,466	885	613,053
문화체육관광부	268,206	11,570	191,359	5,562	1,998	478,696
행정안전부	317,480	43,393	109,257	2,490	2,483	475,102
중소벤처기업부	428,373	911	19,609	745	648	450,285
금융위원회	403,056	771	13,464	2,679	298	420,267
해양수산부	314,897	47,305	30,282	2,323	2,207	397,014
국토교통부	304,799	15,995	61,148	1,372	2,323	385,637
관세청	342,276	1,496	13,494	1,482	2,572	361,320
농림축산식품부	263,229	19,108	49,924	16,581	2,009	350,851
환경부	200,753	1,120	69,549	6,130	1,605	279,1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6,915	2,956	9,745	42,899	1,701	274,216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수 (110-01목)	기타직보수 (110-02목)	상용임금 (110-03목)	일용임금 (110-04목)	연가보상비 (110-05목)	합계
산림청	123,083	38,259	44,919	57,040	961	264,262
농촌진흥청	149,330	15,743	89,315	97	1,202	255,687
산업통상자원부	210,231	13,073	9,913	584	964	234,765
통계청	153,170	558	38,356	24,022	1,230	217,336
식품의약품안전처	154,858	4,278	41,653	712	1,216	202,717
특허청	151,680	12,977	5,423	592	1,161	171,833
국가보훈부	94,877	2,618	60,281	2,415	759	160,950
병무청	126,055	10,806	8,218	399	1,012	146,490
질병관리청	109,700	1,497	33,192	713	881	145,982
문화재청	76,833	4,002	57,370	1,989	578	140,772
기상청	101,424	6,865	23,935	494	791	133,509
인사혁신처	119,650	4,102	7,468	1,783	389	133,392
기획재정부	106,702	855	5,713	1,927	815	116,012
조달청	82,285	2,645	14,423	515	645	100,513
감사원	93,453	-	4,231	64	729	98,477
방위사업청	87,800	2,563	1,815	406	689	93,273
소방청	69,155	1,653	4,912	202	509	76,431
대통령경호처	61,259	-	3,712	63	459	65,49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6,845	2,508	4,927	345	446	65,071
통일부	53,189	623	10,464	308	419	65,001
국민권익위원회	48,025	410	9,131	132	382	58,079
공정거래위원회	52,820	431	1,582	283	399	55,51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3,000	-	3,367	341	328	47,037
여성가족부	23,746	503	1,069	170	181	25,668
방송통신위원회	23,700	532	523	163	184	25,102
법제처	22,209	292	1,248	114	176	24,039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수 (110-01목)	기타직보수 (110-02목)	상용임금 (110-03목)	일용임금 (110-04목)	연가보상비 (110-05목)	합계
국가인권위원회	20,052	589	1,233	47	158	22,08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967	468	782	64	109	15,3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759	271	8,030	91	53	15,203
원자력안전위원회	14,557	50	310	78	112	15,107
재외동포청	12,622	-	783	231	99	13,73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2,561	120	251	44	99	13,075
새만금개발청	11,325	253	527	44	90	12,2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8,317	-	1,155	28	64	9,56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797	1,687	750	-	36	7,270
국가교육위원회	2,888	65	246	11	17	3,22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200	-	316	-	31	2,547
대법원	1,381,184	47,698	69,553	1,240	10,384	1,510,057
국회	396,075	10,606	28,290	11,848	2,793	449,6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6,915	2,956	9,745	42,899	1,701	274,216
헌법재판소	31,760	1,539	2,130	41	234	35,703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임시조직을 포함한 운영정원 관리체계 정비 및 상시화된 임시조직 개선 필요

정규 직제에 의한 조직이 아닌 '기간을 정하여 운용하는 한시(임시)조직'과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정원의 신설·조정'은 직제(대통령령) 또는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적인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유형을 나눠보면, 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와 같이 '직제(대통령령)'에 기한을 정한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있으며, ②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조직(이하 "총액인건비팀"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정원 변동이 없어 '직제 시행규칙'에 조직의 신설만 반영하는 유형[11], ③ 총액인건비팀을 신설하고 정원 변동이 있어 '직제 시행규칙'에 조직 및 정원을 신설·조정하는 유형[12], ④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조직 신설 없이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에 정원만을 신설·조정하는 유형[13], 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정원 등의 인정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적인 훈령을 통해 운영하는 임시조직이 있다.

[한시(임시)조직 설치 및 정원운용 체계 예시]

직제(대통령령) 상 한시조직	직제 시행규칙(총액인건비제)			개별 중앙행정기관 훈령을 통한 임시조직
	보조기관 설치(총액인건비팀)		정원 조정 ○	
	정원 조정 x	정원 조정 ○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소통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5급 1명 증원, 6급 1명 감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과장급 기구 신설 / 4.5급 팀장 및 5급 이하 팀원 : 모두 기존정원 재배치 활용

12) 과장급 기구 신설 / 4.5급 팀장 : 기존정원 재배치 활용 / 5급 이하 팀원 : 2명 증원 및 2명 직급 상향 활용

13) (예) 6급 5명을 5급 5명으로 직급상향 활용

① 임시조직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운영정원 관리체계 정비 필요

첫째,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효율화하는 방향의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운영정원에는 임시조직 운영으로 인한 별도 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준이 되는 공무원 인력 규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시조직의 정원을 포함한 운영정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건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등 국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14]에 따라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통해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상 조직·정원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관리할 때, 대통령령인 「각 중앙행정기관 직제」에 따라 '기준정원'을 관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준정원은 75만 3,970명이고, 운영정원은 0.2% 증가한 75만 5,257명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 8월			
	기준정원(A)	운영정원(B)	B-A	(B-A)/A*100
합 계	753,970	755,257	1,287	0.2
기획재정부	1,120	1,120	-	-
교육부	372,513	372,51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263	35,145	△118	△0.3
…	…	…	…	…

자료: 행정안전부

14)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각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훈령을 통해 별도정원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이 포함된 실제 운영정원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경제 자문회의지원단이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등의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이 10명을 상회함에도 공무원 정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이 있는 임시조직 예시]

주관부처	임시조직	운영		별도정원
		시기	기간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사무처	1999년	24년	5명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2013년	10년	14명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2023년	1년	13명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2023년	1년	13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지원단	2013년	10년	7명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2013년	10년	9명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2016년	7년	4명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사무처	2017년	6년	13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기획단	2017년	6년	17명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로 인해 각 중앙행정기관별 공무원의 조직·정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며,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도 어렵게 한다. 또한 행정부의 공무원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정보의 불투명성은 행정부의 적정규모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효율화하는 방향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운영정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이와 같이 공무원 정원 관리에서 집계되지 않는 임시조직의 정원이 증가

한다면, 실제 공무원 인력이 축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운영정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시조직 및 정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보조기관별 공무원 정원표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기관별 정원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은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 공개의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단위) 정원에 대한 정보는 법률에서 비공개한 정보이거나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기본권 침해, 범죄 수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국회사무처 등의 입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은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보조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의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기관의 정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별 직급을 파악할 수 있는 정원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임시조직의 상시화를 통한 직제 외 인력 운용 개선 필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임시조직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폐지하지 않고 과도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임시조직 유지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장기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직이란,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 조직으로서, 일시적 과제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관운영의 자율권 내에서 설치·운영이 일정 부분 허용되는 조직이다.[15] 임시조직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보조·보좌기관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16],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임시조직들이 있는데, 정규조직과는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임시'조직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임시조직 예시]

소속	임시조직	운영		인원
		시기	기간	
고용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	1999년	24년	5명
기재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2013년	10년	14명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2013년	10년	7명
행안부	부마민주항쟁보상 지원단	2013년	10년	9명
국조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2016년	7년	4명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사무처	2017년	6년	13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7년	6년	17명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2017년~	6년	9명

자료: 행정안전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15) 행정안전부, 「20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p.89

16) 단,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

정원은 각 중앙행정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직제 외로 팀·단 등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상시조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직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등의 상시화된 임시조직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임시조직 형태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임시조직의 별도정원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직의 상시화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임시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폐지하지 않고 과도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된다.[18]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운용 중인 임시조직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장기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제에 반영하고, 임시조직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임시조직의 상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활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8) 인건비의 추가 소요는 별도정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직급 상향 등을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운용 및 임시조직 유지 개선 필요

총액인건비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부처는 직급상향을 위해 정원 자율 변경의 최대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 3월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정원 자율범위가 확대(7→10%)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별도정원을 통한 임시조직을 설치하여서도 직급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다한 인건비 지출액이 우려되므로 총액인건비제의 직급 상향 자율성 확대 조치 및 임시조직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직제상 총정원과 4급(상당) 이상의 정원을 관리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에서는 직제 시행규칙 등으로 총 정원의 일정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등 실제 운영정원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장급 한시적 보조·보좌기관(팀)을 설치할 수 있어, 기구 설치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2023년 3월부터는 각 시행기관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범위가 7%에서 10%로 상향되었다.[19] 2020년 3월에도 5%에서 7%로 상향되었는데 3년 만에 자율범위가 추가 확대되었다.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기관의 정원 자율 범위 변경 현황]

구분	2005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자율범위	5%	7%	10%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자율범위의 확대는 직급 상향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급조정으로 "증감"할 수 있는 정원 조정은 공무원의 "계급별 기준정원"의 10%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즉, 5급 정원이 500명이고, 6급 정원이 100명이면, 6급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기 위해서는 6급 정원의 감원 규모가 10%를 넘을 수 없으므로 10명을 감원하고, 5급 정원을 10명 증원할 수 있다.[20]

19)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2023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12

20) 다만, 동 규정의 해석에 있어 기획재정부는 5급 정원의 "증원" 부문만을 보아 50명의 증원을 통해 5급을 550명으로 운용할 수 있고, 6급은 50명 감원하여 5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023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① 실용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상위직 증설과 관련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 특정직에 한해 5급(상당)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다.

※ 직급상향 조정시, 상향될 직급의 하위직급(5급은 6급, 6급은 7급, 7급은 8급과 9급)에서만 직급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i) 직급조정으로 증감할 운영정원은 공무원 종류별 · 계급별 기준정원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p.14~15

즉, 2023년 2월까지는 7%까지만 직급조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10%까지 가능하게 되면 5급 상향을 위해 동 제도가 활용될 우려가 있다.[21]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6급 정원의 7%에 해당하는 15명의 최대인원을 활용하여 5급으로 상향 운영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이 직급 상향을 위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이번 제도 변경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22]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제도 하 정원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총계	고공	과장	4.5급	5급	6급	7급	8급이하	정무별정
2022	기준정원(a)	1,115	40	114	115	483	212	83	57	11
	운영정원(b)	1,116	40	114	115	498	197	84	57	11
	증감(b-a)	+1	-	-	-	+15	△15	+1	-	-
2023	기준정원(a)	1,120	40	115	115	486	213	83	57	11
	운영정원(b)	1,120	40	115	115	501	198	83	57	11
	증감(b-a)	-	-	-	-	+15	△15	-	-	-

자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편, 별도정원을 이용한 임시조직을 설치를 활용한 직급 상향도 일부 이루어지

21) 직급 상향은 5급까지만 가능하다.

22) 이러한 변경으로 현 직급상 정원의 10%인 최대 21명까지 6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방식의 직급조정이 가능해진다.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말 현재,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총 5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별도정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별도정원 임시조직 운영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혁신성장추진기획단	○	○	○/폐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	○	○/폐지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	○	○/폐지	
보조시스템관리단	○	○	○/폐지	
ADB연차총회준비기획단			○	○/폐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
조세개혁추진단				○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각각의 임시조직은 긴급현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임시조직의 설치가 인사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시조직을 설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직들을 보면, 혁신성장추진기획단(2020~2022)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2023~), 보조시스템관리단(2020~2022)과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2023~)의 경우에는 업무의 최종적인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개혁추진단과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경우, 조세제도 개혁 관련 업무와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

칙 상 기획재정부의 고유한 상시 업무이므로 임시조직 설립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기존 임시조직의 존속 기한이 끝나 폐지되면, 다른 목적의 임시조직이 설치되면서 임시조직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임시조직이 축소되지 않는 경우 별도정원을 통해 직급 상향된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임시조직 운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등 고위공무원의 정원도 늘어난 상태이다. 2023년 8월말 현재 기획재정부는 고위공무원단 4인, 과장급 6인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5급 6인, 6급 1인을 기준정원 외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임시조직이 폐지되면 이러한 정원 운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 임시조직 별도정원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고공	과장	4.5급	5급	6급	7급	8급이하	정무·별정	계
2014	-	1	-	2	-	-	-	-	3
2015	1	4	1	4	-	-	-	-	10
2016	1	4	1	4	-	-	-	-	10
2017	2	5	2	4	-	-	-	-	13
2018	2	4	1	4	-	-	-	-	11
2019	2	4	-	6	-	-	-	-	12
2020	4	6	3	8	-	-	-	-	21
2021	4	6	4	5	-	-	-	-	19
2022	3	6	3	5	1	-	-	-	18
2023	4	6	-	6	1	-	-	-	17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한 직급상향이 확대되거나 임시조직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보수(110-01) 집행률이 낮은 소속기관 예산 규모 조정 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 소속기관의 경우 2019년 이후 평균 공무원 보수집행률이 90% 미만이므로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수(110-10목)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수당을 지급하는 세목으로 2024년도 전체 보수 예산은 45조 1,704억으로 전년대비 1조 6,965억원 증가하였다.

2021년도 보수(110-01) 예산의 집행률은 97.9%, 2022년은 98.1%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23)]

[2021~2024년 보수(110-01)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예산(안)
40,419,340	39,556,846	97.9	41,693,455	40,910,956	98.1	43,473,948	45,170,449

주: 각 회계연도 예산은 마지막 추경예산 기준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일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보수집행률이 90% 미만인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연간 보수 예산 규모가 10억 이상이면서 2024년 예산이 1% 이상 감액되거나 2022년 집행률이 크게 개선[24)]된 기관을 제외하더라도 2019~2022년 동안 평균 보수집행률이 90% 미만인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정신건강센터, 군산무역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총 5개 기관이었다.

23) 2022년 집행률 기준으로 2023년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제외한 60개 중앙행정기관 중 17개 기관만이 95% 미만이었고, 90% 미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공무원 보수 집행에 일부 특수성이 있는 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24)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어 95% 이상이 된 기관을 제외하였다.

[2019~2022년 보수 집행률이 90% 미만인 주요 소속기관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국가기술표준원	86.6	93.4	87.5	85.5	88.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5.2	83.9	85.1	82.3	81.6
국립정신건강센터	90.1	90.0	89.3	87.7	89.3
군산무역원	94.9	92.0	77.9	84.6	87.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3.4	91.9	83.8	92.7	88.0

주: 1. 집행률이 90% 미만이더라도 연간 보수 예산 규모가 10억 미만인 기관은 제외함
2. 2024년 예산이 감액되거나 2022년 집행률이 크게 개선된 기관은 제외함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간 보수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들로서 10%만 불용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16억~22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25)]

[2019~2022년 보수 집행률이 90% 미만인 주요 소속기관의 보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안)
국가기술표준원	14,344	15,199	15,001	15,418	16,18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74	2,153	7,619	7,873	7,930
국립정신건강센터	21,860	21,977	21,870	22,200	22,152
군산무역원	1,074	1,241	1,117	1,146	1,1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546	3,669	3,407	3,474	3,820

주: 1. 각 연도 최종 추경예산 기준임
2. 집행률이 90% 미만이더라도 연간 보수 예산 규모가 10억 미만인 기관은 제외함
3. 2024년 예산이 감액되거나 2022년 집행률이 크게 개선된 기관은 제외함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 지속적인 인건비 불용 발생 원인을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5)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의사 공무원에 대한 연봉 현실화 등이 논의되고 있어, 연봉이 현실화 되는 경우 2024년 중 일부 결원이 감소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연가사용 촉진 정책을 고려한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 조정 필요

정형화된 현업 근무의 비중이 높은 집행조직의 특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가 사용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연가 사용이 발생하여 연가보상비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권장연가일수 도입, 연가저축제도 등 지속적인 연가 사용 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가보상비의 집행률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개별 소속기관별로 차등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가보상비목(110-05)로 편성된 총예산은 전년 대비 97억 6,500만원이 증액된 3,80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 예산안의 연가보상비(110-05)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가보상비 (110-05)	294,701	370,686	380,451	9,765	2.6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2년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집행 현황을 보면[26], 2021년의 경우에는 4,125억 3,000만원 중 3,286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79.7%의 집행률[27]을 보였고, 2022년의 경우에는 3,386억 7,000만원 중 2,947억 100만원이 집행되어 87%의 집행률이 나타났다.

26)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가보상비 예산의 99.9%를 감액하여 제외하였다.

27)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연가보상비 예산을 연가보상비로만 집행한 집행률로 이·전용을 통해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021~2022 연가보상비 집행액 및 2023~2024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집행(B)	집행률 (B/A*100)	예산(A)	집행(B)	집행률 (B/A*100)	예산	예산(안)
연가보상비 (110-05)	412,530	328,643	79.7	338,670	294,701	87.0	370,686	380,451

주: 각 회계연도 예산은 마지막 추경예산 기준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연가보상비 집행 현황을 각 부처별로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년 연속 집행률이 60% 미만인 중앙행정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관세청,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이다. 2년 연속 집행률이 60% 미만인 15개 기관의 불용액의 합계는 2021년에는 120억원, 2022년에는 34억원이었다.

[2년 연속 연가보상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중앙행정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안)
관세청	3,348	1,849	1,499	2,473	1,137	1,335	2,474	2,572
국토교통부	3,104	1,672	1,392	2,300	1,222	418	2,275	2,323
기상청	1,075	392	682	781	386	394	783	791
농촌진흥청	1,642	729	522	1,185	542	643	1,184	1,202
대통령경호처	511	142	369	373	200	173	367	459
문화재청	766	305	462	562	294	269	546	578
문화체육관광부	2,441	806	1,636	1,955	916	1,039	1,937	1,998
병무청	1,384	689	695	998	482	516	972	1,012
산림청	1,239	381	855	917	380	395	929	961
식품의약품안전처	1,504	600	905	1,127	630	497	1,155	1,216
외교부	1,088	382	706	827	367	460	839	885
원자력안전위원회	141	77	64	103	45	12	108	112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안)
해양경찰청	7,303	1,088	6,215	5,566	12	0	5,923	6,06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5	69	56	92	31	9	100	99
환경부	1,933	676	1,076	1,387	516	838	1,510	1,605
계	**16,502**	**4,539**	**11,963**	**12,520**	**3,357**	**3,370**	**12,876**	**13,383**

주: 각 회계연도 예산은 마지막 추경예산 기준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집행률이 낮은 행정기관은 주로 “청” 단위 행정기관의 비율이 높고, 부 단위 기관 중에서는 집행적인 성격을 가지는 소속기관이 많은 국토교통부[28]나 환경부[2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형화된 현업 근무의 비중이 높은 집행조직의 특성을 보이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가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연가 사용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으로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여 자율항목[30]의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과상여금 등의 자율항목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한 금액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 예산의 불용액 규모를 보면, 2021년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이 30% 이상의 연가보상비 불용률을 보였고, 2022년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이 30% 이상의 연가보상비 불용률을 보였다.

28) 지역별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 등의 소속기관이 있다.

29) 지역별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등의 소속기관이 있다.

30)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연가보상비 불용률이 30%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현황]

(단위: %)

연번	2021년도		2022년도	
	구분	불용률	구분	불용률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45.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8.9
2	해양경찰청	85.1	환경부	60.4
3	여성가족부	76.8	외교부	55.6
4	대통령경호처	72.2	농촌진흥청	54.3
5	산림청	69.0	관세청	54.0
6	문화체육관광부	67.0	문화체육관광부	53.1
7	외교부	64.9	병무청	51.7
8	기상청	63.5	기상청	50.5
9	새만금개발청	62.0	문화재청	47.8
10	문화재청	60.2	대통령경호처	46.3
11	식품의약품안전처	60.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5.1
12	소방청	59.5	식품의약품안전처	44.1
13	환경부	55.7	산림청	43.0
14	통일부	54.7	고용노동부	39.1
15	방위사업청	53.2	방위사업청	38.8
16	방송통신위원회	53.0	방송통신위원회	37.1
17	인사혁신처	52.8	인사혁신처	36.6
18	병무청	5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6.6
19	국민권익위원회	49.6	새만금개발청	35.3
20	통계청	46.7	국민권익위원회	31.8
21	원자력안전위원회	45.4	기획재정부	31.0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4.8	여성가족부	30.2
23	국토교통부	44.8		
24	관세청	44.8		
25	법제처	44.4		
26	기획재정부	44.3		
27	법무부	44.1		

(단위: %)

연번	2021년도		2022년도	
	구분	불용률	구분	불용률
28	농림축산식품부	43.5		
29	국가보훈처	41.1		
30	조달청	38.2		
31	특허청	37.4		
32	교육부	33.3		
33	농촌진흥청	31.8		
34	국세청	31.3		
35	행정안전부	31.1		
36	경찰청	30.1		

주: 불용률은 각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예산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로 이·전용을 통해 확정 예산액보다 높은 연가보상비를 확보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한 경우 불용액이 100%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연가보상비 불용액의 총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800억원, 2022년도에는 366억원으로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으로서 성과상여금 등의 다른 부분에 사용이 가능함에도 연가보상비의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2022년 연가보상비 불용액 및 2023~2024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예산(안)
412,530	328,643	79,988	19.4	338,670	294,701	36,595	10.8	370,686	380,451

주: 각 회계연도 예산은 마지막 추경예산 기준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인사혁신처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연간 최소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2018년부터 추진하면서, 정부는 한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연가일수를 규정한 '권장연가일수'를 도입하여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 「국가공

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 제1항[31]에 따라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가 사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32]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는 제도와 그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연가보상비 지출의 증가가 억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하게 5일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가 사용이 비교적 용이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각급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각급 소속기관별로 연가보상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5) 정원 대비 과다 현원을 유지하는 기관의 인력 재배치로 인한 효율성 증진 필요

경찰청은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증원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비 현장 인력인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는 오히려 정원 대비 과다한 현원을 유지하여 현장 인력 중심의 경찰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원 대비 과다 현원을 유지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해당 인건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33]

경찰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급격하게 정원을 늘려왔다. 2019년 12만 8,205명이었던 정원이 2023년에는 13만 7,805명까지 증가시켰고, 지속적인 신규 채용을 통해 경찰 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전체 경찰공무원의 충원율은 96.5%를 보이고 있다.

[2019~2023년 경찰청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정원	128,205	132,196	135,375	137,799	137,805
현원	124,303	128,295	129,855	132,595	132,940
충원율	97.0	97.0	95.9	96.2	96.5

주: 경찰간부 후보생 등 교육생 제외
자료: 경찰청

그러나, 현장 인력이 아닌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는 정원 대비 과다한 현원을 운영하여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는 최근 5년간 현원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연수원도 10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33)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3. 10. pp.163~167

[2019~2023년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찰인재개발원	정원	156	156	158	154	158
	현원	158	159	162	154	154
	충원율	**101.3**	**101.9**	**102.5**	**100.0**	**97.5**
중앙경찰학교	정원	181	181	181	182	182
	현원	249	240	235	231	226
	충원율	**137.6**	**132.6**	**129.8**	**126.9**	**124.2**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58	62	67	67	74
	현원	58	63	66	68	69
	충원율	**100.0**	**101.6**	98.5	**101.5**	93.2

주: 경찰간부 후보생 등 교육생 제외
자료: 경찰청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34]에서 비 현장 인력에 정원 대비 과다한 인력 운용을 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는 정·현원에 대한 관리 및 현장 인력 중심의 경찰 인력배치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2024년도 예산안 중 소속기관 인건비를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특히 중앙경찰학교의 경우에는 2024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97억 2,300만원이 증액된 58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소속기관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찰인재개발원인건비	10,214	10,547	11,202	655	6.2
중앙학교인건비	48,975	48,452	58,175	9,723	20.1
수사연구원인건비	4,740	4,233	4,817	584	13.8
합계	87,762	88,124	101,269	13,145	14.9

자료: 경찰청

34)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2022년 67.7일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경찰청은 과원 상태인 현장 인력을 재배치하여 현장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이에 맞추어 소속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적정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문제 분석

가. 2023년 세수결손 현황 및 대응

2023년도 예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625.7조원으로, 이 중 국세수입은 400.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자산시장 둔화,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부족한 세수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2023년말 국세수입은 341.4조원으로 전망되며 예산 대비 △59.1조원(△14.8%)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실적(A)	2023년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B)	전망(C)	(C-A)	비율	(C-B)	비율
○ 총 국 세	395.9	400.5	341.4	△54.5	△13.8	△59.1	△14.8
- 일반회계	385.2	390.3	331.1	△54.0	△14.0	△59.1	△15.2
(소득세)	128.7	131.9	114.2	△14.5	△11.3	△17.7	△13.4
(법인세)	103.6	105.0	79.6	△24.0	△23.1	△25.4	△24.2
(부가세)	81.6	83.2	73.9	△7.7	△9.5	△9.3	△11.2
- 특별회계	10.8	10.2	10.3	△0.5	△4.6	0.1	0.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편, 정부는 2023년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원 내외, ②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 내외 및 ③ 세계잉여금 4조원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며 ④ 통상적 불용(2021년 3.7조원. 2022년 7.9조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나.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상 문제

(1) 외국환평형기금 원화재원 활용[1]의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사유로 달러 강세에 따라 외평기금의 수지가 개선되었다는 점, 예수금리가 높게 책정[2]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여 외평기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는 외환시장 여건, 외평기금의 시장안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발표 시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22년 수립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은 51조 1,475억 5,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수립한 2023~2026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은 과거 계획 대비 43조 5,000억원 증액한 94조 6,475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초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규모 대비 확대된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조기상환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3]

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33~42

2) 공자기금 예수금은 예수 시 국고채금리와 일정한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국고채금리가 상승하여 공자기금 예수금리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3)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는 외환시장 여건, 외평기금의 시장안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조기상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관련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수립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2~2026 (2022)	26,681,460	49,801,850	51,147,550	35,926,251	40,103,549	-
2023~2027 (2023)	-	49,801,850	94,647,550	35,926,251	40,103,549	10,000,000
조기상환분	-	-	43,500,000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조기상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 부족에 대해 외평기금 여유재원 20조원 내외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을 뿐, 여유재원의 사용방식,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0년 제2회·제3회 추경 시 정부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축소[4]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5]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55.3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 원화재원 활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선진국 및 신흥국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p로, 동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 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p, 선진국 0.65%p, 신흥국 0.58%p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2020년 제2회 추경 시 2.8조원, 제3회 추경 시 1.2조원

5) 외평기금 외에 다른 기금·회계로 해당 재원을 예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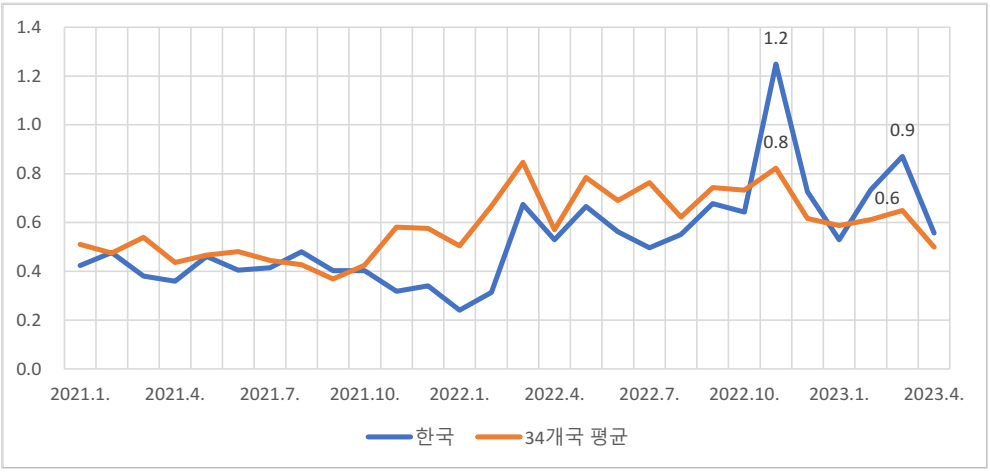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p)

구 분	2020~2021	2022	2023.1~4.
전체(평균)	0.58	0.74	0.60
선진국(평균)	0.56	0.74	0.65
신흥국(평균)	0.59	0.75	0.58
한국	0.51	0.67	0.70

자료: 한국은행

(단위: %p)



자료: 한국은행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 2008년 2월 937.5원까지 하락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월 1,475원까지 상승하였다가 12월에는 1,246원으로 하락하여, 한 달만에 환율이 200원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2년 9월 1,430.5원을 기록한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통화긴축 속도 완화 등으로 인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2023년 1월 1,270원까지 하락하는 등 환율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등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하여 외화 및 원화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6]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7]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의 개방성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차원에서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화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유재원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MMF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수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보유재원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민간부문[8]에서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 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MMF의 환매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유동성 위축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외평기금의 설치 목적이 '외국환거래의 원활화'[9]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바 환율·금리 전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참고로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전망(2023년 10월)을 살펴보면 2024년 환율을 1,315원으로 전망하는 기관(Barclays)도 있는 반면, 1230원(Credit Agricole), 1,180원(ING Financial Markets)도 있는 등 기관별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7) 15시 30분까지인 개장시간을 익일 02시까지 연장

8) 「BondView – 남은 약세 재료와 내년 인하 가능성 점검」, 하나증권리서치센터, 2023.9.7. 등

9)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2)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 문제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미교부와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는 재정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용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 감소에 대해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중심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3년 지방교부세 미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상 차차년도까지 정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미교부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소수의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59.1조원 수준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였는바,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불용하여 미교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9.18., 정부합동), 내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각 약 10조 6,000억원 수준의 미교부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액 추정 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3예산 (A)	연말실적(안) (B)	미교부예상액(안) (B-A)	2024예산안
내국세	358.0	303.1	△54.8	321.7
지방교부세 (정률분)	68.7	58.1	△10.6	6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73.5	63.0	△10.6	66.9

자료: 각 부처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당해연도에 세입 경정 없이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을 때 교부세도

함께 조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10][11]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12] 또한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정 혹은 중지해야 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3]

2013년에도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 경정에 따라 감액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감액하지 않고 차차년도로 유보하여 감액하였다. 그리고 이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이 개정되어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문화하였으며, 이러한 교부세 조절은 세입 경정을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안정화계정의 적립액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약 22.7조원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최대 50~7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상하면 약 13조원 이상의 여유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31곳(12.7%)은 적립액이 없거나 20억원 미만이

10) 「지방교부세법」
제5조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나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11) 동 조항의 신설 당시 개정이유로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의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되,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 12~18

13)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① 국가재정법 제43조에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례적이기는 하나 실제 연도 중 미교부가 사례가 있으며, ②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 2조 6,000만원을 인수할 계획이고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액을 감안하면 약 13조원의 여유재원이 있어 이를 활용해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곳이 12곳,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 72곳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적립금 총액	적립금 없음	20 미만	21~100	101-500	501 ~ 1,000	1,000 초과	합계
지자체 수	19	12	12	72	61	67	243
비율	7.8	4.9	4.9	29.6	25.1	27.6	100
평균 여유재원	0	1.2	20.4	89.4	212.7	722.4	-

주: 1. 평균 여유재원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을 가용한 여유재원으로 보았으며 구간별 평균 여유재원액을 계상함
2.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적립금의 60% 정도를 가용한 여유재원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를 약 13조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적립액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인천광역시 등 상위 10개 자치단체의 적립액이 총 6.3조원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의 적립금이 3.3조원으로 243개 자치단체 적립액의 14.4%를 차지한다. 즉, 동 기금의 여유재원은 소수의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적립액에 의한 착시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도 국세수입 규모가 이전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 중심으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 2.6조원을 인수할 계획이나 과거 사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위주로 인수될 경우 지방이전재원 감소 보전 효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이어 2024년에도 국세수입을 367.4조원으로 전망함에 따라 12대 분야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중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전년 대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조 3,443억원 감액된 71조 2,49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부문 내 다른 프로그램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2조 1,729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 대비 8조 5,172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다.

2024년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예산이 전년 대비 6조 9.992억원(10.2%) 감소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원의 가치하락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조 6,035억원(28.1%) 감소한 4조 1,098억원이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 관련 주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지방교부세	75,288,266	66,771,060	△8,517,206	△11.3
- 보통교부세	66,644,552	59,855,301	△6,789,251	△10.2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824,469	740,478	△83,991	△10.2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30,586	925,597	△104,989	△10.2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6,117	185,119	△20,998	△10.2
- 소방안전교부세	869,242	954,765	85,523	9.8
- 부동산교부세	5,713,300	4,109,800	△1,603,500	△28.1
공공자금관리	10,000	2,600,000	2,590,000	25,9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023년 교부세도 세수 부족에 의해 감정산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년도 교부세 총액 역시 8.5조원 이상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1개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며, 14개 자치단체는 그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별 기초자치단체 수]

(단위: 개, %)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지자체 수	78 (34.4)	30 (13.2)	28 (12.3)	77 (33.9)	14 (6.2)	227 (100)

주: 괄호 안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지방재정365 공시자료를 토대로 작성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과세대상 자산가치의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세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부담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의 대응지방비 추계서를 보면 추계액이 2023년 추계액보다 2,766억원 증가한 38조 153억원으로 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증가액이 높은 사업이 기초연금사업(1.67조원, 9.0% 증가)과 생계급여사업(1.53조원, 25.4% 증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지방비 증가분 역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사업 지방분담액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총대응지방비 추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	대응지방비 추계
2022년도 예산안	78,235,722	36,793,951
2023년도 예산안	82,303,626	37,738,676
2024년도 예산안	88,299,014	38,015,275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예산안 첨부서류」

한편, 정부는 2023년 교부세 미교부, 2024년 교부세 8.5조원 감소 등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안에 공자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2.6조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로 지방채를 인수하였던 2021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인수 비중이 전체의 19.1%에 머무는 등 최근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바, 2024년에도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위주로 인수될 경우 지방이전재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동 사업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2021년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자치단체	2021년	비중
광역	16,142.5	80.9
강원	1,000.0	5.0
경남	1,882.0	9.4
경북	850.0	4.3
광주	1,300.0	6.5
대구	3,624.0	18.2
대전	576.0	2.9
부산	1,813.0	9.1
세종	609.5	3.1
울산	400.0	2.0
인천	2,238.0	11.2
전남	1,000.0	5.0
제주	850.0	4.3
기초	3,813.9	19.1
계	19,956.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적으로,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감정산과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는 재정여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재정운용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이 역시 과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재정 지원이라는 효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예산과 차차년도 예산에 미교부분을 반영하여 감액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감소에 대해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중심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재해·재난대책비 편성방식 변경에 따른 2023년 예비비 지출 감소

정부는 2023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 중 2024년에 집행될 예정인 8,953억원을 2024년도 각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예비비 배정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는 올해 세수결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재해·재난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9,987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14]의 내역사업인 '재난복구 지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1,500억원) 대비 4,500억원 증액된 6,0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15]는 전년(2,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된 3,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16]는 전년(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17] 및 '재해복구비'[18]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지원시기 지연을 방지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각각 2,500억원, 5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14) 코드: 일반회계 2734-300

15)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3-302

16) 코드: 일반회계 2331-300

17) 코드: 일반회계 5340-300

18)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7140-300

[2024년도 재해·재난대책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632,152	150,035	600,040	450,005	299.0
	재난복구 지원	632,117	150,000	600,000	450,000	3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65,039	200,000	300,000	100,000	50.0
해양수산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15,396	16,346	85,000	68,654	42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7,934	20,000	100,000	80,000	400.0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	250,000	250,000	순증
	재해복구비	-	-	50,000	50,000	순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에 재해·재난대책사업비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배정 또는 이·전용 등 재원 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원시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해·재난대책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은 각 부처 불용액 및 이·전용을 통해 조달하고 향후 국비 소요액은 2024년도 각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로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비를 배정받아야 하나, 당해연도 발생한 재해 피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이·전용을 통해 소규모 공사비 및 설계비를 배정하고, 차년도에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2023년의 경우 8,953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게 된다. 즉, 2024년도부터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 편성방식의 변경은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결손과 무관하게 재해·재난대책비의 과도한 이월 방지를 위하여 실집행 소요를 기반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 편성방식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재해·

재난대책 관련 지출은 그 소요액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신속한 집행을 요하므로, 발생 당해연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용도에 재해대책비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19)]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금 조달 문제로 예비비를 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 2023년 확정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 내에서 재해·재난대책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차년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4) 예수이자상환 스케줄 유예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 확대 효과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지출이 6월·9월에 유예되었는데, 2023년 이자상환이 2024년으로 유예될 경우 공자기금에 손실을 유발하고 향후 추가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는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자금을 통해 자금을 예수받고 그에 대한 예수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 기준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으로부터 45.8조원을 예수받고 공자기금 예수에 대한 이자 14.5조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8월말 현재 신규예수 계획액 45.8조원 중 42.0조원은 예수받았으나 예수이자상환은 3월에 지급한 2.8조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2023년 8월말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신규 예수 및 예수이자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예산	2023. 8월말 실적	미집행액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신규 예수	45,848,623	42,000,000	3,848,62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484,321	2,782,665	미 정

자료: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20)]에서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19)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2024년도 예산총칙」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하고 있으나,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자금상황 악화로 인해 6월분·9월분 이자상환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반회계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과 유예 여부 및 그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자상환 유예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탁을 증액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회계 예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간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적자성 채무에 포함되는데, 공자기금에의 예수이자 미지급금은 일반회계 예탁액 증가와 같은 효과인바 적자성 국가채무의 성격임에도 실제 적자성 채무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유예는 공자기금에 손실을 유발하고 이자상환 이연에 따라 향후 추가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4회계연도에도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예수이자 지급을 유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출 불용 등으로 해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②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다음 연도 3월 9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에 대한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 (총괄계정, 8711-871)	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의 2014년 예산현액 7조 6,837억원 중 3조 7,12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조 9,71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이자지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세수부족에 따라 2014년 1,2분기의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3,4분기의 이자지급은 유예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세수부족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방법은 세출 구조조정이며, 이자지출의 유예는 미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유예된 이자를 집행하는 연도에 3조 9,703억원을 과거 연도의 채무 상환을 위해 집행하게 되며, 이자상환 지연에 따라 2.548%의 연체이자를 가산할 경우 1년간 연체이자는 1,012억원에 달함.		
시정요구 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출 불용 등으로 해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자료: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 2015. 9.

(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활용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3년 법정부담금의 주 수입원인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감소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으려 하였으나,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추가 예탁하지 못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할 예정인바,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한 재정운용상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21]에 따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2조[22]에

2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따른 법정부담금[23]과 기타재산이자수입[24], 기타경상이전수입[25], 융자원금회수[26], 기금예수금[27], 정부예금회수[28]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계획안 기준 기금 수입은 기금예수금 6,027억 200만원(43.7%), 법정부담금 5,033억 3,700만원(36.5%), 정부예금회수 1,768억 4,400만원(12.8%)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주파수할당대가	556,608	982,472	503,337	△479,135	△48.8
기타재산이자수입	5,247	4,850	7,103	2,253	46.5
기타경상이전수입	62,920	79,970	62,455	△17,515	△21.9
융자원금회수	35,748	30,113	27,297	△2,816	△9.4
기금예수금	889,200	325,821	602,702	276,881	85.0
여유자금회수	248,645	139,520	176,844	37,324	26.8
일반회계전입금	195,800	-	-	-	-
합계	1,994,168	1,562,746	1,379,738	△183,008	△11.7

주: 총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법정부담금의 주 수입원인 주파수할당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가 2018년 28㎓대역 신규할당 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 의무 구축수량을 미이행함에 따라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걸쳐 주파수 할당이 취소[29]되어 회수된 28㎓대

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23)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59-593

24)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54

25)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59-596

26)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75

27)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94-943

28)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기금 85

역의 주파수 재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8㎓ 대역에 대한 신규할당을 추진 중이나 신규사업자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5G 신규 할당의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할당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 증가로 인해 2020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을 편성하기 시작하였고, 예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까지 누적 공자기금 예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 2조 1,7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누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4,261	9,646	18,538	21,7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2023년 주파수 재할당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약 7,5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여유자금 2,000억원을 수입 부족분에 활용하여도 세출예산을 충당하지 못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추가로 2,500억원을 차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결손으로 인해 공자기금 여유재원 부족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추가로 예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 시행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을 위해 2024년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사업[30]에 1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LGU+와 KT의 28㎓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였고, 2023년 6월 SKT에 대해서도 할당을 취소하였다.

30)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8802-90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2023년 자체수입 부족분 해소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수입 부족분	부족분 해소 방안
정보통신진흥기금	1,097,405	약 450,000	여유자금(2,000억원)에서 충당,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2,500억원) 시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	-	12,500	12,500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자기금이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재원이 부족한 회계·기금에 공급하는 등 정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에도 공자기금으로부터 부족재원을 예탁하지 않고 보험가입자들의 자산인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8호[31]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재정자금에의 예탁'을 규정하고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재정자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

3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관리기금법」제6조제1항[32]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처럼 향후 국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우체국보험적립금 예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 재원을 개별 수입 부족 회계·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제1항의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른 기금

9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가. 현 황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1]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시 1,356건에서 2019회계연도와 2020회계연도에 각각 1,667건과 1,8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1회계연도 결산 시 1,416건으로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비심사보고서 상의 시정요구건수는 총 1,63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 10월 기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 건수가 더 추가될 수 있다.[2]

국회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편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결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 내용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사업의 문제점이 적기에 개선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651)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023년 10월 기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정요구	1,356	1,667	1,881	1,274	1,631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함
2. 2022회계연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 건수는 제외되었음

자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하 분석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분석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39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①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 ② 예산 추계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요구한 경우, ③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④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을 요구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1) 집행 지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시정요구한 경우

예산 편성 이후 사업 계획의 부실한 수립,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한 지연, 중복·유사 사업과의 충돌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과다한 이월, 불용 및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27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통일부]						
국내통일 기반조성	통일+센터 설치사업 추진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할 것	10,019	8,365	8,735	10,543	20.7
[국방부]						
관사 및 간부숙소	세심한 계획에 기반한 예산집행 필요	451,364	342,598	478,535	525,977	9.9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지원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18,800	216,075	533,930	2,494	△995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 소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통일 관련 서비스를 종합지원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관련 예산 실집행률은 10% 미만

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럼에도 2024년 예산안은 당초 계획대로 충청·경기센터에 3차년도 사업비로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이 편성되었다. 충청·경기센터는 모두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지자체 단계에서 국고보조금이 재차 이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3)]

국방부 소관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군 숙소의 신축 및 개선을 통해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21년도 83.8%, 22년도 86.8%의 집행률로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군 주거시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고 세심한 계획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 증액되었는데, 2023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기준 48.0%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지연 및 예산 이월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4)]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사업 부지 변경 및 대체부지 확보 등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2023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 예산현액 71억 9,3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이 실집행된 상황이며,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예산안에는 설계비 등이 반영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실집행 부진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안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5)]

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pp.95~97

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pp.154~156

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pp.118~124

(2) 예산 추계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시정요구한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거 실적 변화, 사업소요 증감, 외부 환경 변화 등 사전에 예상 가능하였던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결과 부정확한 추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6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병무청]						
병역의무자 지원	적금 가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61,340	40,462	120,480	206,187	71.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고율 예측에 따른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면밀히 예측하고 기금 운용배수 변동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할 필요	91,200	91,200	50,000	95,000	90.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물량 수요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195,236	166,257	144,629	176,400	22.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입금 적정 규모 재검토 필요	427,837	427,837	455,870	330,582	△27.5

주: 1.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은 2023년부터 과목이 개편되어, 2023년 예산부터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으로 기입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병무청 소관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이 74.7% 수준으로 일반병 가입률 98.0%에 비해 낮으나 현역병과 동일한 가입률 기준(95%)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사전에 적금 가입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2023년 7월말 기준 가입률이 83.6%인데 2024년 지급 대상자의 2023년 3분기 이후 가입률을 90%, 2024년 가입률을 95%로 예측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가입률 및 평균납입금액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무역보험공급을 위한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통해 기금으로 전입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무역보험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기금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기금운용배수가 2021년(26.5)에 비해 2022년(25.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적정 규모 이상의 출연금이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는 사고율 예측에 따른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기금운용배수 변동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지원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당시 기준으로 무역보험공급 확대 및 보험금 지급액 확대로 기금운용배수가 2023년 27.3배에서 2024년 28.5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기금운용배수는 23.7배로 나타났고, 유효계약액 및 사고율을 고려할 때 2024년 기금운용배수가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7]

환경부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부터 과목을 개편하여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동 사업 예산 중 환경부가 지자체에 교부하지 아니한 미배정 예산이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여 과다하

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pp.353~356

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112~116

게 사업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물량 수요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계획물량이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상향 편성되었는데, 2023년 9월말 기준 전기승용차 보급실적은 계획대비 36.9%, 전기이륜차의 보급실적은 계획 대비 10.7%로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수요를 감안하여 목표 물량을 조정하고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8)]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입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연평균 42.5%)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동 사업은 2023년 대비 27.5% 감소한 3조 3,06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또는 착공 지연으로 출자 소요가 예상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②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높은 국고채 금리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달하게 되어 조달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9)]

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pp.80~85

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pp.33~37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

예산 사용 규모에 비해 저조한 사업성과가 문제되어,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32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신약개발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개발 지원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관리 강화 필요	46,118	46,118	37,085	38,784	4.6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아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가입 사유를 살펴 실집행률 제고 필요	55,445	55,445	49,900	126,733	154.0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사업 대상자의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110,000	110,000	2,400	2,400	0.0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R&D와 사업화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130개 신규과제 선정계획 중 13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예산현액 중 14.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임상개발 지원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2023년 총 11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0월 기준 1차 신규 선정과제 47개 중 4개 과제가 미선정되었고, 2차에는 1차 미선정분을 포함한 41개 과제 중 33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8개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였다. 3차 공고 시에는 2차 미선정분

8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3개 과제를 공고하여 4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0월 기준 협약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차수별 일부 과제의 미선정 및 선정 지연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신규과제의 선정 지연 및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10)]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만 18세 이후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74.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저축이 강제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는 취약계층 아동의 가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가입 사유를 살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024년 예산안에는 기초수급가구 아동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 72,685명 대비 3배 증가한 205,678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이 2020년 89.6%에서 2022년 80.5%로 하락하였으며, 계좌 개설 후 6개월 이상 미적립한 아동의 97.7%가 기초생활수급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11)]

환경부 소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은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는 융자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였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실제 융자액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6.6%에 불과하여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는 사업 대상자의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024년 예산안에는 2023년도 계속 융자액 규모 800억원의 이자비용 및 신규 융자 800억원 이자비용이 반영되었는데, 2023년 9월말 기준 실제 대출 실행액은 220억원에 불과하여 800억원 규모의 대출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의 대출 수요 및 실제 대출실행 규모를 고려하여 이차보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pp.27~32

1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pp.25~28

있다.[12]

(4)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 또는 부족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발생하였거나,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 또는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24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방부]						
무관부 활동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용 차량 제공여부 적절성 검토 및 운영계획 마련 필요	14,728	15,605	16,598	17,068	2.8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 소관 무관부 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무관부 차량 및 비품구입과 차량 유지비** 사업은 외교활동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재무관의 차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주재관에게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으나 국방무관에게 차량이 제공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회는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용 차량 제공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024년 예산안에는 차량 구매·교체를 위한 예산 1억 5,600만원과 유지관리 예산 4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기준환율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편성된 상황으로, 국가별 전용 차량 제공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13]

1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pp.28~31

참고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 중 예산조정 관련 유형별 건수(395건)

(1)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시정요구한 경우(273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원관리에 유의하고 불용 최소화 노력 필요	42,068	35,515	42,428	43,328	2.1
[국회]						
주재관 운영	주재관 업무 실소요에 맞는 적정 예산 편성 방안 검토 필요	1,348	1,431	1,360	1,368	0.6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연례적 이월 문제 개선 및 부적절한 이전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42,520	39,191	42,731	50,323	17.8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 집행 개선 필요	11,360	747	3,022	-	-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구상금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0,553	10,015	4,929	10,015	103.2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수와 필요 인건비·운영비를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의 반복적 불용 방지 필요	36,172	35,511	37,537	37,354	△0.5
외국인사회통합지원	난민신청자 및 난민교육비 수요 및 집행실적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 편성	14,158	14,746	14,026	15,427	10.0
검찰청사 설운영	과거 집행실적 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	74,095	81,894	36,535	82,077	124.7
[법제처]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 수립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 인건비 편성	26,209	26,536	15,003	27,709	84.7
[감사원]						
기본경비	강사료 예산편성 관련 과거 집행상황 고려하여 적정 수준 편성 필요	13,197	12,713	13,450	13,502	0.4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pp.241~24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감사기구 역량강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197	54	297	297	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을 기한 내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	3,337	2,313	1,170	2,330	99.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	2,363	1,181	1,970	1,797	△8.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불용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비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	2,553	1,711	2,697	2,551	△5.4
공수처 운영 인건비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인건비 불용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816	6,384	8,161	8,381	2.7
[헌법재판소]						
인건비	인건비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1,280	29,813	31,860	33,533	5.3
재판자료 확충	과거 연도 간행물 발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과다 산정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406	367	420	470	11.9
[대법원]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국내여비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해소 필요	3,949	3,120	3,156	2,440	△22.7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 유의 필요	252,556	249,484	267,441	256,315	△4.2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 부진 없도록 노력 필요	185	47	2,515	-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관리 필요	10,082	8,788	10,262	9,815	△4.4
[금융위원회]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2,374	2,374	2,220	1,998	△10.0
정책연구개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700	601	700	665	△5.0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과다한 예산 전용 및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789	2,534	2,936	2,996	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 필요	15,532	14,576	14,821	18,686	26.1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필요 이상의 예산 조정 및 전용 지양	1,533	1,260	1,793	969	△46.0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필요 이상의 예산 조정 및 전용 지양	170	108	161	161	0.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세목별 적정수준 예산 편성 및 불용 세목에 대한 점검 필요	18,425	18,259	20,832	17,964	△13.8
역내 금융협력 사업	사업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 철저	4,065	3,659	5,182	6,010	16.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대외경제 협력강화 사업	과다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소요조사 단가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711	492	778	1,160	49.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임차료 등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290	2,383	3,061	2,732	△10.7
[국세청]						
납세자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500	1,225	1,103	1,324	20.0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불용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36,701	34,705	35,088	15,843	△54.8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지속적인 불용 및 세목조정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	9,608	9,023	9,833	9,642	△1.9
청사 이전 지원	변수 예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예산 불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2,317	-	3,523	-	-
원자재 및 긴급수급 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 조속히 추진 및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077	621	9,221	8,619	△6.5
[교육부]						
한국장학 재단 출연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액 반영하여 예산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201,457	231,337	321,741	360,747	12.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연내 집행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업비 교부	18,153	18,153	17,403	2,300	△86.8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21,000	8,640	-	-	-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이월 최소화 노력	3,408	3,408	2,411	4,030	6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신약 개발	적정 규모의 사업단 운영비 계상 필요	46,118	46,118	37,085	38,784	4.6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	체계종합·위성체 및 활용시스템·지상시스템 개발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7,237	7,237	12,793	24,000	87.6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및 3호 위성 발사 및 활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강화	33,149	33,149	31,420	19,126	△39.1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저조한 실집행 개선을 위해 구축사업 관리 철저	41,000	41,000	60,000	42,000	△30.0
수출용 신형원자로 개발 및 실증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 철저	30,712	37,561	50,200	52,234	4.1
연구개발특구육성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분할 지급 필요	136,839	136,839	128,309	100,082	△22.0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선금 과다 지급 않도록 주의	14,015	11,627	20,314	11,659	△4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피출연기관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교부	40,769	88,779	52,132	33,375	△36.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타 부처협업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3,200	3,200	8,000	24,000	200.0
물류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 철저	3,427	3,296	7,340	12,474	69.9
변상금	서울특별시의 점유 관련 법적 분쟁 해결 및 미수납액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 제고	275	176	275	275	0.0
금융투자 국사 건립	공상지연일정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9,425	7,828	7,696	26,820	248.5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위원회 운영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최 계획 면밀히 점검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집행 부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15	151	152	144	△5.3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EBS-KBS 간 디지털 송출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의 연례적 불용 발생 문제 해결 필요	2,065	1,915	1,652	1,322	△20.0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 발생 방지 필요	25,568	25,568	25,284	21,665	△14.3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18	1,318	1,078	1,148	6.5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 운영	청사운영 보안관리 용역계약 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하여 불용 최소화 필요	2,105	2,044	2,181	2,348	7.7
원자력 안전기반 조성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사업 적극 추진 및 특사경 수사업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 필요	23,366	23,177	23,285	25,089	7.7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외교부]						
민족 공동체 해외협력 사업	사업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	1,900	968	1,615	1,454	△10.0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집행률 부진 및 지속적 집행부진에 대해 사업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3,730	2,272	3,620	2,720	△24.9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 편성 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4,032	2,398	3,337	3,008	△9.9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0,351	10,165	1,511	1,691	11.9
공공외교 역량강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19,352	14,963	16,282	16,103	△1.1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필요	4,276	5,065	5,514	8,783	59.3
중동 CIS지역 비중점 국가그룹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당시 목적에 따라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집행 방안 강구 필요	26,200	30,438	60,169	88,688	47.4
[통일부]						
국내통일 기반조성	통일+센터 설치사업 추진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할 것	10,019	8,365	8,735	10,543	20.7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집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필요	460	234	323	406	25.7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필요금액을 면밀히 산정후 예산 편성 필요	1,006	970	1,007	1,147	13.9
DMZ 평화적 이용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 필요	26,698	11,694	12,027	9,608	△20.1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재단 출연	계기성 기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규모 축소 또는 타 사업과의 통합 방안 강구 필요	62,020	62,020	56,108	-	-
[국방부]						
민간조리원 운영	민간조리원 채용 인원을 고려한 예산 편성	98,087	73,621	105,437	110,028	4.4
기본피복	예산 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사례 책임 규명 및 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주의	385,824	352,381	374,810	374,184	△0.2
특수피복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 분석	223,243	192,975	245,949	194,905	△20.8
함정장비	과도한 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연부액 예산을 면밀히 산출	56,795	46,067	46,765	37,072	△20.7
통신전자장비	임차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76,178	119,916	66,383	60,788	△8.4
특수장비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 검증을 강화	22,704	935	21,845	27,832	27.4
통신전자장비유지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	205,770	167,700	214,901	233,106	8.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포장용기 및 기타	예산이 연례적으로 조정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	3,858	2,303	3,035	2,643	△12.9
전투발전 연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필요	6,583	4,562	5,934	5,907	△0.5
병영 생활관	집행률 제고 및 이·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 지양	188503	140907	355251	332921	△6.3
관사 및 간부숙소	세심한 계획에 기반한 예산집행 필요	451364	342598	478535	525977	9.9
일반지원 시설	국방홍보원 사업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개선	1,127451	885677	860551	794376	△7.7
진료지원	위탁진료비 사업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예산 편성	151,440	152943	148841	140541	△5.6
의무시설 개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집행부진 최소화되도록 노력	45,534	32,078	52,079	46,524	△10.7
상근 예비역 운영	정원 감축 계획 및 실제 운영률과 집행실적 고려하여 예산 편성	7,975	5,184	4,008	3,248	△19.0
기타이전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사용역비 집행부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5,113	3,167	3,543	2,614	△26.2
재해보상금	면밀한 소요 검토를 통해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33683	135399	131223	138294	5.4
훈련장 및 일반교육 시설	사업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46099	213401	289611	259999	△10.2
[방위사업청]						
군위성통신체계 -II	공사단계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 연기와 집행 부진 최소화	506289	460498	175984	85,969	△51.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경 항공모함	정책 결정 상황 변화로 인해 일방적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7,188	46	-	-	-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3년 연속 시설공사비 등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므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55,000	25,269	36,262	74,240	104.7
핵심기술 개발	매년 상당 규모의 반복적 이월액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766,812	750,236	376,390	297,359	△21.0
국방기술 품질원 품질경영	방산기술보호센터가 조기에 업무를 정착시키고 신규 직원 채용률을 높이도록 사업계획 수립 필요	36,051	34,93	32,336	40,253	24.0
12.7mm 저격용소총	입찰 공고 유찰 해소 및 유관기관 이견 조율 통해 집행률 제고 필요	31,735	45	-	-	-
함대함 유도탄 5차	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에 맞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924	6	5,907	17,441	195.3
신속연구 개발	실집행 가능성이 적은 출연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5,957	45,957	49,236	58,349	18.5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추진이 불필용한 과제 선정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9,110	169,110	184,507	123,269	△33.2
방위산업 수출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집행 실적 및 가용 인력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63,782	63,336	81,373	81,764	0.5
광개토-Ⅲ Batch-Ⅱ 통합 소나체계	유관 기관이 보유한 물자나 자원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정 예산 편성	10,645	10,645	9,073	28,877	218.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 지연 사전 방지 필요	98,113	102,472	91,871	88,171	△4.0
예술의 산업화 추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34,486	34,460	30,684	30,064	△2.0
해외 공공 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1,796	1,764	825	2,279	176.2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22,944	22,18	17,060	13,251	△22.3
게임산업 육성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 예산의 재이월 및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61,121	61,095	66,118	67,915	2.7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실제 소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	31,428	31,178	33,047	30,359	△8.1
지속가능 관광 발전지원 사업	수원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2,966	2,966	805	905	12.4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준비를 충실히 하고 지자체별 집행실적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할 것	35,431	35,401	-	57,558	순증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32,431	28,678	26,156	15,226	△41.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교부할 것	66,564	65,037	72,156	60,171	△16.6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 필요	51,896	50,853	85,232	120,344	41.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5,888	5,888	11,481	9,424	△17.9
[문화재청]						
매장 문화재 보존	발굴유물역사문화공간 조성 대상지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2,713	7,517	10,891	6,212	△43.0
매장 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0,110	10,110	9,214	5,524	△40.0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문화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682	2,083	2,514	2,459	△2.2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	13,558	11,371	26,808	8,555	△68.1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 관리	사업 추진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자체 선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 필요	7,115	7,023	4,856	3,294	△32.2
무형 유산원 운영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32,961	31,778	33,798	54,823	6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31,652	31,631	36,683	-	-
임대형 스마트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보조금 교부	41,000	41,000	64,500	38,400	△40.5
스마트팜 실증단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426	6,054	8,426	6,104	△27.6
농촌고용 인력지원	예산 실집행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월 문제 개선 방안 강구	11,157	11,157	12,722	21,911	72.2
공익 직불금 사업 관리비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다 이월 방지 필요	11,471	11,315	11,465	10,377	△9.5
곤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	사업 실집행률 높이기 위한 노력 제고 필요	10,887	10,765	13,822	29,682	114.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당초 계획에 따라 준공되도록 집행관리 철저	24,334	24,334	34,518	46,566	34.9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두류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이 이월 집행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일치 필요	22,314	22,258	27,233	-	-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정률이 저조한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정상 추진 방안 마련 필요	26,044	20,336	24,815	16,907	△31.9
가축사체 처리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3,955	5,933	9,769	2,930	△7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08	80	90	-	-
가축방역	ASF 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사업의 집행률 개선대책 마련 필요	37,944	38,415	36,804	32,985	△10.4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	밀산업밸리화 시범단지조성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노력 필요	48,919	48,773	55,519	64,275	15.8
[산림청]						
정원조성 관리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 추가 지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7,502	31,985	34,128	23,300	△31.7
산림생명산업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	13,000	3,000	14,525	9,925	△31.7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처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8,351	42,135	36,032	49,219	36.6
조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재원배분 계획 마련 필요	129,145	118,959	150,397	117,281	△22.0
기후영향 적응연구	산림생물반응연구시설의 완공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	11,893	6,500	4,501	4,000	△11.1
산촌 활성화 지원	유휴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4,877	13,582	13,963	-	-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조성사업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5,809	17,962	25,674	8,928	△65.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해양수산부]						
해양정원 조성	기본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 필요	3,585	-	2,150	-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지연 해소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8,000	18,000	11,918	5,445	△54.3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32,134	8,234	11,100	15,098	36.0
천일염 산업육성	지자체 실집행 관리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8,370	8,094	7,577	5,122	△32.4
내수면 자원조성	건축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통해 실집행률 제고 필요	18,799	4,756	14,084	4,667	△66.9
어촌뉴딜 300	혁신어촌조성 사업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 관리 철저 필요	523,571	483,519	-	164,363	순증
귀어귀촌 활성화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 제고 필요	4,951	4,943	5,991	-	-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수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	2,280	2,520	3,480	360	△89.7
수산물 수매지원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63,370	85,225	115,370	115,370	0.0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e-Navigation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말기 보급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3,723	3,606	3,751	3,109	△17.1
부산북항 재개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81,887	58,287	33,195	20,307	△38.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대출 수요를 활성화하고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250	1,905	1,125	-	-
[해양경찰청]						
지방관서 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의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23,264	24,938	22,167	23,123	4.3
연안안전 사고예방 활동	노후화가 심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수상오토바이를 감축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할 것	4,808	4,636	4,732	5,887	24.4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낙찰차액 등에 따른 공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 필요	299,070	308,170	302,911	321,275	6.1
산업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상반기 공고 비중을 확대하여 이월집행을 최소화할 것	1,899	1,283	1,757	879	△50.0
중고차 수출복합 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속도를 제고하고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9,540	20,140	6,360	-	-
민군기술 협력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패스트트랙 제도 적용과제 예산을 적정규모로 배정할 것	18,298	18,298	17,210	7,055	△59.0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편의시설확충 사업 지자체별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326,139	326,131	308,718	387,197	△25.4
국가신약 개발사업	신약개발 단계별 지원과제수와 재정소요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 배정 필요	46,118	42,013	41,190	38,784	△5.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본부 기본경비	관사 임차보증금 불용 과다 발생으로 배분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	5,257	5,041	4,742	6,810	43.6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4,246	4,246	1,694	14,533	757.9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복지 대상자 확대 등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138,939	230,556	190,963	685,606	259.0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하여 연내 실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과제 지연 방지 필요	8,148	8,148	4,316	2,743	△36.4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과제 연구비 예산 편성 필요	20,982	20,982	22,944	28,540	24.4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취소분에 대한 대기순번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실집행률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458	2,062	3,336	2,669	△20.0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장비구입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	1,725	1,725	2,748	-	-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석탄화력발전소 내 암모니아 발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8,378	28,378	3,940	-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연례적 이월 최소화 및 전년도 이월금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액 편성 필요	121,720	120,767	123,853	127,630	3.0
특별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이월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57,909	58,849	103,476	94,611	△8.6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위조상품 증가로 인한 실질적 단속을 위해 불용액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노력 필요	10,401	10,166	11,471	12,605	9.9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4,200	4,200	4,000	4,000	0.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 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불용 최소화할 것	15,969	15,949	16,406	14,670	△10.6
장애인 기업육성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추진 시 지자체와 적극적 협력 통해 집행률 제고할 것	12,875	12,875	10,347	10,517	1.6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41,239	41,239	15,248	-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등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000	7,000	-	-	-
기술보증 대위변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동향 등을 전망·분석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심사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129,150	66,264	105,330	133,095	26.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유동화 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계획 수립시 사고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811	2,355	11,724	3,821	△67.4
구상권 관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동향 등을 전망·분석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심사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23,230	8,349	20,307	16,688	△17.8
보증료 환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동향 등을 전망·분석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심사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29,567	22,400	26,160	24,462	△6.5
팩토링 금융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사고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9,958	18,269	39,958	99,541	149.1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의 원활한 보급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 필요	77,000	96,250	104,800	233,330	122.6
[보건복지부]						
셍계급여	예산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할 것	526,472	538,007	601,448	754,072	25.4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할 것	4,942	4,942	1,000	-	-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20,882	20,882	20,413	25,005	22.5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개시가 지연된 사유를 분석하여 기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0,579	9,105	10,021	10,017	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의료기술 시험 연수원 구축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5,579	97	4,483	13,192	194.3
첨단의료 기술개발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R&D 예산 감액 조정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 불용 최소화 필요	39,851	36,751	19,189	-	-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 구축	정보화 사업 계약기간이 연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집행률 제고 필요	3,725	3,725	3,187	3,387	6.3
국립중앙 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18,800	216,075	533,930	2,494	△99.5
중증외상 전문진료 체계 구축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	67,045	63,753	60,609	57,724	△4.8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 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현실적인 인력 충원계획에 근거하여 보조금 편성 및 연내 집행 가능한 보조금 교부 필요	28,049	27,280	25,269	16,055	△36.5
[질병관리청]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 집행잔액 전액을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363,922	780,123	1,457,999	185,345	△87.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26,604	26,604	18,697	6,388	△65.8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 및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326,422	251,789	456,465	-	-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집행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800	-	2,500	-	-
[환경부]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사업이 포함된 사업은 장기 지연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4,200	-	-	-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대상자인 중소기업의 참여 의지 및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148,519	153,216	126,042	66,591	△47.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전기굴착기 구매의 실수요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급 목표를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509,464	422,322	380,794	346,427	△9.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수행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3,304	18,104	17,893	16,999	△5.0
생활공해 관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 철저	7,576	7,449	7,198	6,839	△5.0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집행 가능한 수준의 수소차 보급 목표 물량 및 예산 편성	892,769	483,486	-	-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한국환경공단 출연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 편성·교부	177,964	178,290	188,613	195,395	3.6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	ODA 예산 편성 시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4,478	4,478	12,357	30,102	143.6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가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105,926	100,219	-	-	-
환경교육 강화	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24,770	17,775	16,892	-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1,281	-	1,325	-	-
지하수 관리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61,783	47,646	48,082	45,772	△4.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71,181	70,834	84,856	31,377	△63.0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관리 철저 및 행정절차 적기 이행으로 목표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필요	81,357	76,253	68,721	59,232	△13.8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필요	38,361	18,277	53,823	22,354	△58.5
수자원 종합연구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신규 정책연구 과제의 연말 발주를 지양할 것	10,170	33,617	6,830	3,388	△50.4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하천 수생태계 진단체계 구축	하천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이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7,500	7,186	6,000	-	-
수열 에너지 활성화 지원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공사 착공 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200	4,181	10,223	14,639	43.2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타당성재조사로 정상추진이 어려웠음에도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편성하여 미집행된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11,391	-	-	-	-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 집행관리 철저히 할 것	36,644	51,919	79,880	67,615	△15.4
국립 생태원 출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 면밀히 산정 필요	76,909	76,909	73,196	74,442	1.7
자원순환 촉진지원	석탄재 재활용 촉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23,567	16,778	21,096	18,530	△12.2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실집행 관리 철저 필요	48,096	48,096	66,199	39,686	△40.1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공공 동물대체시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47,203	46,362	56,739	61,770	8.9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61,260	56,288	63,917	34,442	△46.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기상청]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2,556	1,715	5,114	1,988	△61.1
청사시설관리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30,369	32,537	31,273	13,039	△58.3
국가기상센터 신축	협의지연으로 예산 전액 불용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45	-	3,044	1,943	△36.2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지원	직전연도에 발생한 지원금 집행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집행지연 발생	60,347	112,099	69,213	67,568	△2.4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지자체의 전년도 실집행률을 반영한 보조금 교부 결정 필요	29,131	28,940	25,696	12,654	△50.8
장애인 고용장려금	실제 지원인원의 추이 등을 검토하여 집행부진 개선 필요	262,422	269,790	297,747	323,371	8.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 저조 원인 파악하여 집행 부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768	1,557	2,301	-	-
내일배움카드	연내 집행 가능한 인원과 집행단가를 기준을 예산 편성	122,490	107,848	146,127	131,910	△6.2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기업 참여율 제고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4,228	3,340	4,288	3,358	△21.7
근로복지정보 시스템	사업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3,831	14,769	4,792	5,854	22.2
산재예방시설 건립사업	사업절차 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23,006	23,006	21,026	4,487	△78.7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토교통부]						
재정비 촉진 사업지원	지자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14,325	13,656	7,675	5,321	△30.7
정책연구 개발사업	연도 말 연구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예산 집행률 상향 방안 마련	2,647	3,051	2,515	3,515	39.8
기계설비 산업발전 지원	관계공무원이 예산 편성 시 관련 지침 등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7,700	7,009	2,910	2,250	△22.7
건설기술 제도 선진화	연례적인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집행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830	658	830	658	△20.7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8,942	28,937	30,378	45,522	49.9
국토공간 정보정책 지원	보안심사 집행 실적 제고하여 예산 집행률 높일 것	4,387	3,041	3,978	3,779	△5.0
건축문화 진흥	보조금 집행 실적 고려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6,620	6,176	4,820	2,920	△39.4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79,608	83,037	-	51,614	순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통해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방지	21,000	15,000	-	4,000	순증
국가건축 정책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의 장기간 공백 및 예산 과다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03	826	915	2,465	169.4
성장촉진 지역 개발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제고	207,679	207,679	222,402	206,381	△7.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방지	20,004	20,004	39,591	19,555	△50.6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지자체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필요	720	243	720	-	-
다가구 매입임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저	589,250	544,835	325,700	161,200	△50.2
교통사고 예방지원	업계 상황 및 예산 소요 변동을 파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	4,570	4,764	5,634	3,000	△46.8
교통정책 종합연구	정책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되도록 과제선정할 것	1,315	1,251	1,365	1,188	△13.0
택시산업 지원	택시감차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점검 후 보조금 교부	5,355	5,321	4,833	4,365	△9.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철저한 사업관리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별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도입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9,065	108,743	224,560	231,267	3.0
주차환경 개선지원	이월된 교부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조사업 완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	241,811	285,261	-	-	-
물류산업 지원	사업관리 미흡으로 정책연구과제 예산 연례적 이월 발생	4,999	4,727	3,149	3,168	0.6
스마트 공동물류 센터 건립지원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면밀히 점검	3,025	3,025	2,740	2,465	△10.0
디지털 물류실증 단지 조성	집행가능한 보조금 교부하도록 지방비 확보, 관계부서 협의 등을 고려할 것	6,000	6,000	5,000	4,400	△12.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제주공항 시설개선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1,678	6,820	7,030	5,279	△24.9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후속절차 지연과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활히 추진 필요	8,100	-	7,100	6,390	△10.0
드론 전용비행 시험장 구축 및 운영	연내 집행가능성과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7,274	14,714	13,956	7,464	△46.5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실집행실적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04	2,004	2,401	3,870	61.2
일반국도 건설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66,335	83,509	122,330	74,600	△39.0
도로유지 보수	조속한 풍수해 대비 필요성과 달리 이월액이 증가하였음을 감안하여 이월 최소화하도록 주의	773,342	747,555	778,391	837,805	7.6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할 것	532,442	532,467	409,830	210,001	△48.8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월액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155,054	144,051	159,943	158,697	△0.8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적극적인 집행 및 집행 가능성 고려하여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15,600	15,435	29,433	21,009	△28.6
철도치안 관리	연례적으로 이·전용 발생하므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066	3,496	3,116	12,407	298.2
철도산업 발전지원	이월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6,178	5,064	5,860	4,577	△21.9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영천~신경주 전철사업	이·전용 통해 사업비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이상을 이월하는 등 예산 효율성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673	17,505	-	-	-
광역교통 국제협력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연례적인 조정 또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91	89	91	91	0.0
광역교통 시설구축·운영 연구	내실 있는 연간 연구계획 수립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	890	607	750	608	△18.9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관련 용역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할 것	37,835	37,820	58,092	80,619	38.8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예산 편성할 것	17,981	12,548	13,163	16,633	26.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에코숲 벨트 조성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필요	7,037	4,069	-	-	-
간척 박물관 건립	박물관 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970	11,126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 박물관 단지 운영	사업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철저	85,482	71,995	38,760	18,260	△52.9
행복도시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 할 것	700	-	-	-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가재난 대응시설 건립	추가적인 지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5,826	5,572	5,058	1,762	△65.2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예산 추계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시정요구한 경우(66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법무부]						
소년원생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고가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의료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	23,518	22,411	25,217	26,887	6.6
[헌법재판소]						
본부 기본경비	직제 개편 또는 증원에 따른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할 것	6,435	5,680	6,506	6,991	7.5
재판자료 확충	온라인 배부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실소요에 맞게 책자 발간 예산 조정 필요	406	367	420	470	11.9
[대법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적정한 추계에 의한 수입 예산 계상 필요	145,051	106,905	110,930	106,337	△4.1
변상금	적정한 추계에 의한 수입 예산 계상 필요	247	106	247	247	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례적인 기타수입 결손 방지를 위해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5,525	14,620	16,039	16,087	0.3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당 지급 인원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42,027	49,176	55,899	82,529	47.6
보훈병원 진료	신설병원의 개원후 병상가동률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385,475	388,634	389,923	390,732	0.2
제대군인 의료지원	예산 편성 시 실소요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365	3,773	2,365	2,365	0.0
친환경 차량지원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과다 또는 과소 책정 방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	816	404	816	734	△1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출연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 규모로 예산 편성 필요	50,341	50,341	50,853	52,842	3.9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출자금 과다 유보 방지를 위해 출자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이 분할 출자되도록 하는 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50,000	159,000	166,800	-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포렌식장비 도입 시 운영인력 확보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 반영 필요	238	235	574	323	△4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기관 내 타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7,469	7,362	6,108	2,878	△52.9
[기획재정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사업 신설 시 평균대출기간 등 계획액 산정 핵심 요소를 면밀히 설정할 필요	14,250	600	24,250	18,708	△22.9
[조달청]						
시설계약 사업수입	수입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8,917	43,023	39,306	40,686	3.5
비축물자 사업수입	수입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32	17,526	7,324	9,851	34.5
기타영업외잡수익	징수결정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17,572	48,342	18,519	34,976	88.9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 편성 필요	456,663	457,365	456,486	468,703	2.7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직업계고 학생 추이 및 기업현장 교사 참여 실태에 따라 사업 규모 적정 규모 편성 필요	20,500	14,500	14,500	12,450	△14.1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운영	시험 횟수와 응시인원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5,575	12,450	5,902	6,405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수요에 맞게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검토할 것	19,364	19,364	18,934	18,844	△0.5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지원	인건비 계획액 편성 시 전담인력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 집행할 필요	25,568	25,568	25,284	21,665	△14.3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라돈측정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할 필요	5,897	5,842	6,507	5,980	△8.1
[외교부]						
협력사업 지원	관계 부처와의 사전적 협의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60,651	60,651	51,705	59,260	14.6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지원 재단 운영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재단의 결산잉여금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출연금 감액 조정 필요	36,913	36,913	37,061	35,738	△3.6
[국방부]						
부사관 인건비	부사관 명예전역수당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명예전역 신청 추계 정확성을 제고 필요	631,881	631,600	667,480	685,750	2.7
민간보상	보상금 지급 결정률, 신청자 수 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41,218	26,215	25,686	9,794	△61.9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정훈문화 활동	문체부와 동일한 취지의 독서코칭 프로그램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일원화 및 사업 수요 감소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55,584	53,405	56,315	49,070	△12.9
[병무청]						
병역 의무자 지원	적금 가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61,340	40,462	120,480	206,187	71.1
[방위사업청]						
울산급 Batch-II	예산 소요가 변경되는 경우 조속히 총사업비에 반영할 필요	255,203	198,425	173,270	8,002	△95.4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면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3,076	3,590	3,198	3,182	△0.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산업화 추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 필요	34,486	34,460	30,684	30,064	△2.0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회적 환경, 지자체 업무시스템과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716	3,352	4,212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 박물관 건립	결산잉여금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필요	31,742	31,074	-	-	-
전통발효 식품육성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한 사업비 편성 필요	11,911	11,951	17,246	18,076	4.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해양수산부]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설비 설치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추계 필요	8,730	6,490	5,864	4,004	△31.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 기금 출연	사고율 예측에 따른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면밀히 예측하고 기금 운용배수 변동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할 필요	91,200	91,200	50,000	95,000	90.0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	실질적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예산 편성 필요	63,144	90,158	175,408	39,817	△77.3
전력효율 향상	지자체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 배정 필요	41,457	37,199	51,802	163,374	215.4
녹색혁신 금융	발전사업별 추진 경과, 실질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41,820	36,526	36,802	-	-
[중소벤처기업부]						
과태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등 과태료 수입 계상 필요	-	433	-	650	순증
소상공인 지원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필요	420,000	358,193	300,000	380,000	26.7
[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26,525	13,262	38,214	39,947	4.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탁수입 규모 추계 시 지출 소요를 적절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108,298	108,288	227,646	275,780	21.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다함께 돌봄 사업	지자체 수요 대비 목표량 설정이 합리적인지 고려하여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할 것	48,782	38,224	55,373	57,664	4.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참여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116,451	116,406	113,922	99,970	△12.2
[환경부]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를 세입예산에 편성 필요	-	2,391	-	927	순증
전년도세계잉여금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	50,000	-	10,000	40,864	308.6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	사업 대상자의 현실적인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물량 설정 필요	509,464	422,322	380,794	346,427	△9.0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물량 수요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195,236	166,237	(144,629)	(176,400)	22.0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51,375	51,711	39,283	26,465	△3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국제협력및통상협상대응	예산 편성 시 각 내역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 적정 규모 반영 필요	793	755	793	755	△4.8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예산액 면밀히 추계 필요	686,888	470,280	139,504	48,277	△65.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지원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예산규모 추계 필요	1,046,394	688,184	1,076,405	837,516	△2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직업소개기관 인증기관 전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2,097	545	7,589	-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인원을 검토한 후 예산 편성	2,610	2,610	6,948	4,804	△30.9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통해 면밀히 추계 필요	542,820	233,321	889,078	649,034	△27.0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유지율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86,888	470,280	139,504	48,277	△65.4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유지율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95,210	375,605	229,358	17,071	△92.6
산재보험 급여	산재보험 급여 지급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것	7,146,284	6,866,486	7,792,517	7,876,691	1.1
[국토교통부]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연도별로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 및 비목 예산 편성·집행 필요	4,976	3,418	4,135	6,392	54.6
국토조사 및 지명	내역사업별로 적정 예산 편성 및 조정 집행 최소화	2,918	2,728	3,153	3,154	0.0
주택도시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입금 적정 규모 재검토 필요	427,837	427,837	455,870	330,582	△27.5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상품 이차보전 사업의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규모 재검토 필요	12,690	5,009	11,470	10,322	△1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예산액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비비 과도하게 배정·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2,181,925	2,253,628	2,572,466	2,742,486	6.6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32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법무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 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763	743	743	728	△2.0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	9,187	8,482	9,707	11,475	18.2
[대법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 건수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필요	3,006	3,006	3,006	3,006	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신약개발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개발 지원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관리 강화 필요	46,118	46,118	37,085	38,784	4.6
기업 멤버십 SW캠프	각 컨소시엄별 멤버십 기업이 채용 약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등 취업 성과목표 달성 노력 필요	12,400	12,400	12,400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의 수료율 및 취업률 등의 성과 제고 필요	36,913	36,913	37,061	35,738	△3.6
[국방부]						
군무원 인건비	군무원 채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71,689	2,268,842	2,500,603	2,563,118	2.5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 등급위원회 지원	영상물 시민 모니터단의 사후조치 실적이 저조한 원인 분석 및 모니터링 효과 제고	4,090	4,090	6,330	7,289	15.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국내관광 역량 강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확대 및 재참여율 제고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 마련 필요	46,736	46,588	47,693	52,879	10.9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27,521	27,254	28,058	28,575	1.8
[산림청]						
산촌 활성화 지원	교육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을 통해 산촌정착률 향상 필요	14,877	13,582	13,963	-	-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플라스틱 어상자 일괄교체 및 어상자 회수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1,073	1,080	1,198	-	-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지원	활어차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50	64	147	-	-
어선거래 제도 운영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	509	397	509	509	0.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어업인특화검진 사업의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701	2,884	2,864	2,967	3.6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조선산업 신규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6,280	16,280	-	-	-
항공우주 부품기술 개발	사업화성과 저조원인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13,059	13,059	3,388	-	-
로봇산업 기술개발	사업화성과가 개선되도록 종료과제 성과관리 강화 필요	105,478	105,478	106,948	117,442	9.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나노융합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화성과가 개선되도록 종료과제 성과관리 강화 필요	6,870	6,870	1,000	-	-
조선해양 산업기술 개발	사업화성과가 개선되도록 종료과제 성과관리 강화 필요	53,410	53,410	42,738	77,225	8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바우처 연내 사용실적을 제고할 필요	61,805	61,805	55,805	55,805	0.0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중도해지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비율 감소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	279,792	279,792	211,174	123,339	△41.6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에 취업연계율 포함 필요	9,003	8,887	8,916	4,671	△47.6
[보건복지부]						
구강건강 관리	사업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139	1,129	899	-	-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입아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가입 사유를 살펴 실집행률 제고 필요	55,445	55,445	49,900	126,733	154.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전환에 대해 점검하여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8,144	7,387	8,445	7,795	△7.7
[환경부]						
치수연구 개발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 필요	41,468	33,617	40,000	40,000	0.0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사업 대상자의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110,000	110,000	2,400	2,400	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인원을 취약 계층 중심으로 확보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실적 제고 필요	11,728	11,570	40,667	83,147	104.5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연내 사업 성과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	16,046	14,407	10,462	4,465	△57.3
통합공공임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168,866	168,482	1,190,038	1,417,137	19.1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조종인력 양성인원, 취업률 등 실적 평가하여 위탁기관당 보조금 지급액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2,614	2,614	2,614	840	△67.9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24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법무부]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아시아태평양 조정컨퍼런스'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62	108	156	158	1.3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예산 집행 문제	32,522	35,516	34,042	35,353	3.9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건립	보훈기념행사에 현충시설 공사비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	9,133	8,829	12,766	6,785	△46.9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불용	9,332	5,623	8,213	3,390	△58.7
[관세청]						
수출입 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바디캠 운용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예산 편성하여 불용	10,009	8,916	9,939	2,735	△72.5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한국유네스코 협회연맹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예산 삭감 등 조치 필요	18,124	18,085	19,999	19,821	△0.9
국가평생 교육통계 구축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편성 필요	2,381	2,381	2,031	2,956	4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 우주 청소년단 지원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획할 것	900	900	1,030	655	△36.4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2024	증감률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B-A)/A
생활밀착 분야 비대면 선도 서비스 활성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 재발을 방지할 것	8,000	8,000	7,000	-	순감
우편기본 경비	상품권 구매 등 일반수용비 용도 외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265	236	287	283	△1.4
우정사업 지원	관서운영경비를 비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13,183	14,469	13,644	13,644	0.0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	15,873	15,760	16,322	15,987	△2.1
[국방부]						
장교 인건비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특수근무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할 필요	4545279	4549711	4636212	4755600	2.6
전쟁기념 사업회	전용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9,106	19,906	18,714	17,924	△4.2
무관부 활동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용 차량 제공여부 적절성 검토 및 운영계획 마련 필요	14,728	15,605	16,598	17,068	2.8
[방위사업청]						
사격지휘 차량 (120mm 자주박격포용)	의결된 취지와 다르게 다르게 연부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615	20,035	29,702	36,321	22.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2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제방산 협력지원	방위력개선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3,206	5,590	3,189	3,307	3.7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정책 지원	타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여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053	16,644	17,551	17,411	△0.8
[문화재청]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제작비로 편성된 예산이 보급비로 사용되어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	14,552	14,326	17,032	13,777	△19.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상 대응	보조금 예산을 당초 목적에 어긋나도록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28	2,891	2,556	2,559	0.1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관리	원양어선안전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히 할 필요	15,000	15,000	9,000	7,500	△16.7
[고용노동부]						
고용 서비스 모니터링	기관운영경비성 지출에 집행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8,935	8,935	5,253	4,848	△7.7
[국토교통부]						
도심융합 특구 지원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2,500	300	-	-	-
자율 자동차 상용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기관에 예산을 출연하여 이월 발생	22,525	22,534	30,405	40,900	34.5

주: 2022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023 예산은 본예산을 의미
자료: 2022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정부는 2004년부터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이 구비되었다.

특히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게 되므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라 ① 재정성과 목표관리,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성된 재정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3)]('21년 12월)으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먼저, ① '재정성과 목표관리 제도'는 부처별 전략목표 · 프로그램목표 및 이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국가재정법」은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고,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9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기존의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3년 단위 중기적 시계에서 사업집행 과정까지 직접 점검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기존의 단위사업 중심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단위를 변경하였고, 평가단위 축소에 따른 대상 사업수 증가 등으로 고려하여, 자율평가 대상 제외인 소액사업 기준[4]을 상향 조정하였다.

게다가, 통합평가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평가 대상 제외범위를 일자리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까지 확대[5]하였고, 3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 원칙적 폐지('23년 자율평가(2022회계연도 평가) 결과부터 적용)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운용평가는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자산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제도이며,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4) 소액사업 기준 상향 조정 : 일반재정 사업은 30억원 미만, 정보화 사업은 10억원 미만

5) (기존) R&D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대상 자평 면제
(개편) 기존 +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 자평 면제

[정부 성과평가제도 개요]

평가대상	평가제도	평가 내용
재정사업 전반	재정성과 목표관리	성과목표 설정, 달성 여부 평가 및 재정운용에 활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 예산안 환류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부 사업군에 대한 정밀한 분석·평가 ·개별사업/사업군 심층평가[1], 핵심사업평가로 구분
기금	기금운용평가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위험, 성과관리 등) 평가
	기금존치평가	기금의 설치목적, 역할, 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 검토

주: 1) 기획재정부는 개별사업 심층평가와 사업군 심층평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매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4~9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를 보면, 기금운용·존치평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결과가 비공개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

평가제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
재정성과 목표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국회 제출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공개, 국회 미제출
재정사업 심층평가	평가결과 비공개, 국회 미제출
기금운용·존치평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국회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와 예산안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0-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가. 현 황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2]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2017년까지는 부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등이 평가절차와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메타평가로 이루어진 통합재정사업평가[3]로 운영되었으나, 지침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평가결과가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되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부터 기재부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폐지하는 대신 부처별로 자율적인 환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하도록 개편하고, 2020년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3)

[통합재정사업평가]

〈 자체평가 〉	〈 메타(상위)평가 〉
• 부처 자체평가 위원회 • 사업별 평가 -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선정 • 지출구조조정(안) 등 제출	• 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 과기부, 지역위) • 분야별, 부처별 평가 - 우수 및 미흡 부처 선정 • 부처별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부터는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가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2회계연도 평가)」에서는 ① 평가단위를 기존의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② 평가단위의 축소에 따른 대상사업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자율평가 제외 대상인 소액사업 기준을 일반재정사업은 30억원 미만, 정보화 사업은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4]하였다.

한편,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나, ③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기존 R&D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및 복권기금평가 대상 사업 외에 일자리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대상까지 중복평가 배제 대상으로 확대하였다.[5]

또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기존 '미흡' 등급 (단위)사업 내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도록 한 것에서, ④ '미흡' 등급 세부사업에서 10%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로 하였다.[6]

그리고 ⑤ 3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 원칙적 폐지('23년 자율평가(2022회계연도 평가)결과부터 적용)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 ⑥ 자체평가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세부사업 기준)하여 DB를 구축하고, 열린 재정을 통해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2회계연도 평가)」이 전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기존)단위사업 기준(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5억원 이상)→(신규)세부사업 기준(3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10억원 이상), 상향조정

5)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 복권기금사업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지침을 시달한다.

6) 다만, '미흡' 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가대상 사업(보통 또는 우수)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총지출구조조정 목표(△1%)를 충족한 경우로써, 세부사업별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2023년(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변경내용]

	2022년	2023년
평가 대상	◆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단위사업 기준	◆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세부사업 기준 - 3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10억원 이상 ◆ 중복평가 배제 대상에 일자리평가, 중소기업평가까지 확대
부처 자체 평가 (1~3월)	◆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지표) 사업내용 적정성(10), 집행률(30), 성과목표달성도(40), 성과우수성(10), 환류(10), 가감점(5) ◆ 3단계(우수 20%, 보통 65%, 미흡 15%) 상대평가 -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 기준 - 다만, 미흡사업은 예산규모 기준(5% 이상)도 준수 ◆ (지출구조조정 규모) n-1년 평가대상 총예산의 △1% ◆ '미흡' 사업 內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 △10% 이상 삭감 ◆ 성과개선 대책 마련(제도개선) ◆ 자율평가보고서 작성(열린재정)	◆ (좌동) ◆ (좌동) ◆ (좌동) ◆ '미흡' 등급 세부사업 △10% 이상 삭감 원칙 ◆ (좌동) ◆ (좌동)
확인 · 점검 (4~5월)	◆ 우수·보통·미흡사업 적정성 점검 ⇒ 점검 후 예산실에 의견 통보	◆ (좌동)
환류 (5월말)	◆ 지출구조조정(△1%) 예산요구, 제도개선 계획 마련 - 미흡사업 內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 △10% 이상 예산삭감요구	◆ (좌동) ◆ 3년 연속 미흡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 평가결과를 디브레인(dBrain) 입력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2회계연도 평가)」, 2023, p.2~3.

(2)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2회계연도 평가) 결과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총 52개[7] 부처의 1,749개 사업 중 342개 사업이 '우수'(19.6%), 1,135개 사업이 '보통'(64.9%), 272개 사업이 '미흡'(15.6%)으로 평가되었다.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미흡'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 수는 문화체육관광부(25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토교통부(23개), 환경부(21개), 산업통상자원부(20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3조 5,137억원)가 가장 컸으며,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1조 1,665억원), 고용노동부(1조 1,1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2023년도(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부처명	평가등급별 사업수				평가등급별 예산규모(2022회계연도)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전 체	1,749	342	1,135	272	1,409,887	386,698	879,777	143,4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	1	-	55	-	5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1	4	1	259	81	162	16
경찰청	25	5	16	4	10,512	4,585	4,909	1,018
고용노동부	47	9	30	8	93,350	2,608	79,640	11,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	2	-	52	-	52	-
공정거래위원회	6	1	4	1	210	18	147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6	21	69	16	32,831	8,392	15,978	8,461
관세청	11	2	7	2	1,405	746	531	128
교육부	54	10	35	9	36,687	17,331	12,304	7,052
국가보훈부	18	3	12	3	2,247	250	1,480	517
국민권익위원회	3	1	1	1	199	56	31	112
국방부	94	19	61	14	134,110	61,576	65,672	6,862
국세청	11	2	7	2	2,346	1,120	940	286
국토교통부	140	28	89	23	468,172	138,028	295,007	35,137
국회	15	3	10	2	1,767	354	1,307	106
금융위원회	14	2	10	2	47,905	625	46,810	470
기상청	8	2	5	1	859	455	274	130
기획재정부	15	3	9	3	14,570	13,516	708	346
농림축산식품부	112	22	73	17	83,906	16,115	57,496	10,296

7) 특허청(책임운영기관평가), 감사원(감사업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평가업무), 소방청(재난안전평가), 국가인권위원회(소액사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업종료)는 부처 특성 등에 의해 2023년도(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단위: 개, 억원)

부처명	평가등급별 사업수				평가등급별 예산규모(2022회계연도)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농촌진흥청	9	2	6	1	1,486	536	878	72
대법원	7	1	5	1	1,309	437	833	39
대통령경호처	3	1	1	1	279	168	78	3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	-	76	76	-	-
문화재청	27	5	17	5	7,362	803	5,881	678
문화체육관광부	169	34	110	25	48,683	9,479	33,173	6,0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2	-	-	96	96	-	-
방송통신위원회	16	3	11	2	1,842	460	1,081	301
방위사업청	6	1	4	1	1,274	250	934	90
법무부	35	6	24	5	6,661	1,661	4,703	297
법제처	1	-	1	-	88	-	88	-
병무청	3	1	1	1	334	178	91	65
보건복지부	123	24	80	19	97,385	14,366	77,989	5,030
산림청	32	6	21	5	11,750	3,195	6,717	1,838
산업통상자원부	127	25	82	20	51,002	9,628	29,709	11,665
새만금개발청	5	1	3	1	2,085	956	1,089	40
식품의약품안전처	9	2	6	1	737	68	533	136
여성가족부	13	2	9	2	4,295	2,887	968	440
외교부	34	6	23	5	11,120	2,564	7,734	822
원자력안전위원회	2	-	2	-	790	-	790	-
인사혁신처	14	3	9	2	19,115	427	14,110	4,578
조달청	4	1	2	1	450	96	318	36
중소벤처기업부	42	8	27	7	36,104	26,307	4,834	4,9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	4	1	3,204	69	3,021	114
질병관리청	11	2	7	2	34,048	86	33,368	594
통계청	13	2	9	2	1,312	87	1,129	96
통일부	19	3	13	3	13,858	560	5,547	7,751
해양경찰청	12	2	8	2	2,318	562	1,633	123
해양수산부	101	20	66	15	27,602	6,915	18,865	1,822
행정안전부	62	12	40	10	16,478	2,257	5,975	8,2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	2	9	2	2,117	243	1,766	108
헌법재판소	1	1	-	-	66	66	-	-
환경부	139	28	90	21	73,118	35,358	32,440	5,320

주: 평가등급 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2회계연도 평가) 대상 사업 수가 3개 미만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처(7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헌법재판소이다.

나. 분석의견

(1) 연례적 '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

2023년도(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년 이상 연례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평가 결과가 환류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개 부처(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3개 사업은 2020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연례적 '미흡' 평가 사업 현황]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2023 ('22회계연도)	2022 ('21회계연도)	2021 ('20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연안선사 유류비 지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집행률 부진	-집행률 부진	-집행률 부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집행률 부진, 성과지표 설정 미흡, 성과 미흡	-집행률 부진	-실집행률 부진, 성과지표목표치 미달
	박물관정책 활성화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실집행률 부진	-집행률 부진, 성과달성도 제고 필요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및 사업성과 제고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수산부의 **'연안선사 유류비 지원'**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고유가로 최근 3차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단가 하락 등이 집행률 부진으로 이어짐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2021년 27.4%, 2022년 57.2%, 2023년 20.0%)이 발생하였고, 2020~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0회계연도 평가에 따른 2022년도 지출구조조정계획은 687억원이었으나

2022년도 예산액은 621억 9,700만원이 편성 후, 추경으로 △280억원 감액되어 341억 9,700만원이 수정되었고, 2021회계연도 평가 결과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321억 9,700만원으로 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액은 31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계획은 277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18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3년 8월말 집행률은 20.0% 수준으로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안선사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25,190	25,190	-	25,190	17,213	68.3	68.3	-	7,977
2021	76,473	76,473	-	76,473	20,987	27.4	27.4	-	55,486
2022	62,197	34,197	-	34,197	19,554	57.2	57.2	-	14,643
2023	31,099	31,099	-	31,099	6,224	20.0	20.0	-	-
2024	18,748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2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지원'** 사업은 전국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립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통한 문화 다양성 체험의 기회 확대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22년 실집행 부진(55.3%)에 따라 지출구조조정계획을 11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수립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은 1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 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추경(A)								
2020	8,282	12,082	12,082	12,082	-	12,082	7,263	3,754	1,064	60.1
2021	31,062	31,062	25,924	25,924	-	25,924	18,035	8,801	88	69.5
2022	22,944	22,924	22,189	21,052	-	21,052	12,211	-	-	58
2023	17,060	17,060	13,348	13,648	-	13,648	6,482	-	-	39.6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2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는데도, 집행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2년 실집행 부진 원인인 스마트 박물관 · 미술관 구축지원(지자체보조 실집행률 29.3%, 57억원) 및 실감콘텐츠 제작 · 체험존 조성지원(지자체보조 실집행률 5.3%, 40억원)은 전액 삭감하여 2023년 예산 17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은 39.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회계연도에서 (가칭) 이건희기증관 국제설계공모용역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3억)되었으며, 국보 보유 사립 · 대학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사업대상관(5개관)이 사업을 포기(10억원)하면서 총 13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다.

또한, 동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계획도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규모 축소를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어 2024년도 예산 규모의 적정성 관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미흡

2023년도(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 감액되지 않거나 증액 편성된 사례가 나타났으므로,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강화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상담창구운영' 등 10개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 감액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다.

['23년 미흡 사업의 지출구조조정계획과 2024년도 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	지출구조조정계획			2024예산안		
		금액 (A)	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금액 (C)	증감액 (C-A)	증감률 (C-A)/A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상담창구운영	11,547	11,387	△160	△1.4	11,910	363	3.1
국토교통부	철도치안관리	3,166	2,804	△362	△11.4	12,407	9,241	291.9
	제주제2공항건설	17,286	15,557	△1,729	△10.0	17,286	-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관리비	348,112	347,835	△277	△0.1	409,078	60,966	17.5
	축산물수급관리	93,920	89,224	△4,696	△5.0	101,949	8,029	8.5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06	3,819	△287	△7.0	4,819	713	17.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8,154	7,441	△713	△8.7	10,885	2,731	33.5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4,000	3,600	△400	△10.0	4,000	-	-
해양수산부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0,000	19,500	△500	△2.5	100,000	80,000	400.0
행정안전부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7,484	7,224	△260	△3.5	7,720	236	3.2
합 계		517,775	508,391	△9,384	△1.8	680,054	162,279	31.3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 및 각 부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2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계획의 감액 규모와 달리 감액되지 않거나 증액되어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8]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

8)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162.를 참조

설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지연과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출구조조정계획은 2023년 예산액 81억 5,400만원 대비 7억 1,300만원 감액된 74억 4,100만원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23년 예산 편성 시 '22년 대비 30% 이미 삭감하였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 삭감은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27억 3,100만원 증액된 108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을 제고하고자 분기별로 실집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부진한 시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사업효과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하겠다고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19~2022년까지 평균 실집행률이 57.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23년 7월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 현황은 각각 23.9%, 34.7% 수준으로 성과관리 개선계획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정신요양시설	1,994	1,994	3,640	3,640	1,613	5,253	1,253	-	-	23.9
정신재활시설	4,610	4,610	2,499	2,499	5,745	8,244	2,860	-	-	34.7

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상 연계 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주체 실집행액은 7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해당 사업의 지출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 개선계획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수급관리'**는 가축질병 등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하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농가 및 유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현장 수요가 적고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성과지표(한우가격변동계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축산물수급관리는 소, 돼지, 닭, 우유 등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사업이나 성과지표의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출구조조정계획은 2023년 예산액 939억 2,000만원 대비 46억 9,600만원 감액된 892억 2,400만원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초등생) 무상우유 급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차액지원을 하고, 송아지 수급조절 기반 마련으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는 80억 2,900만원 증액된 1,01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가격변동계수는 지난 10년간의 한우 경락가격 표준편차와 해당연도의 가격 표준편차를 나눠 가격 변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1년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고, '22년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 따른 성과관리 개선계획으로 성과지표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축종별 수급조절 효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금, 한돈 지표 등을 신설하도록 하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축산물수급관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국정과제(72-4)"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감액비율(5% 수준)을 최소화하여 감액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증액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 상황에 따라 집행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감액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성과관리 개선계획 준수 및 관리·점검 필요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를 삭감토록 되어있으며, '미흡'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 초기에는 전체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에서는 전년대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무지출사업, 경직성 경비, 국정과제 사업 등을 이유로 '우수사업 증액·미흡사업 감액'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부터 사업 수행부처는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계획 또는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22회계연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각 부처는 '미흡' 사업 272개 중 248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272개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중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은 '미흡' 사업에서 지출구조조정계획이 아닌 성과관리 개선계획만을 제출하였다.[9)]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미흡 사업수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목표 금액[3)]
		지출구조조정계획			성과관리 개선계획[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5개 부처[1)]	272	248			272			1,153,339
		미흡	보통	우수	미흡	보통	우수	
		179	63	6	269	-	-	

주 1) '23년도 자율평가 대상 52개 부처 중 7개 제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헌법재판소)

2) 3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23년 사업 종료로 성과관리 개선계획 미제출함

3) 지출구조조정목표 = 평가대상사업(의무지출 등은 제외) 총예산의 △1%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9)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2회계연도 평가)」에 따르면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보통 사업 등도 포함 가능하다고 명시함

2023년(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총지출구조조정규모는 '평가대상사업[의무지출 등(25조 5,142억원)은 제외] 총예산의 1%[10]를 삭감토록 되어 있는데, 2022회계연도 평가대상 사업예산[11] 115조 3,522억원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흡'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한 문화재청의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등 14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감액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계획 제출 '미흡'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 미감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성과관리 개선계획 제출 사유
문화재청	만인의총시설관리 운영	4,052	6,918	2,866	연차건립사업으로 삭감시 사업 추진 곤란
문화재청	문화재긴급보수	3,710	3,710	-	재난대비 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삭감 시 사업추진 곤란
문화재청	문화유산방문자센터 건립	1,000	3,700	2,700	'24년 종료예정 사업으로 삭감 시 사업추진 곤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8,721	34,218	15,497	총사업비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감액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기반구축	35,620	44,109	8,489	계획 기간내 완공을 위해 감액은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3,961	64,653	692	투자 유도를 위해 전년수준 유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이차보전	11,000	13,653	2,653	기존융자 및 신규융자 규모 유지 위해 삭감 곤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15,250	18,490	3,240	'24년 착공을 위한 건축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삭감 곤란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257	24,021	764	의료인력 인건비로 삭감 시 사업추진 곤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증진	11,731	16,652	4,921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성과관리 개선계획 제출

10)「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2회계연도 평가)」, p2 참조

11) '23년도 자율평가 대상 52개 부처 중 7개 제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헌법재판소)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성과관리 개선계획 제출 사유
여성 가족부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8,096	9,745	1,649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삭감 시 사업추진 어려움
해양 수산부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3,352	19,752	6,400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부처 핵심사업으로 삭감 시 사업추진 어려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1,407	41,438	30,031	단계적 사업추진 어려움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2,400	2,400	-	'23년부터 사업방식 변경(융자→이차보전)으로 민간차입융자금 이자 지출 필요
합 계		223,557	303,459	79,902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미흡' 평가를 받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성과관리 개선계획만 제출한 사업 중에 감액되지 않거나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은[12]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문화재 관련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4년 종료예정과 연차 건립사업으로 예산 삭감시 사업추진 곤란을 이유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는 대신에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27억원이 증액된 37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주요 미흡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용역 진행 등이 순차적으로 늦어지면서 실집행이 저조(13.5%)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 따른 성과관리 개선계획으로 최소 분기별로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비 비중이 큰 본공사 착공 후 선금을 지급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문화재청은 2021~2022년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정읍시는

12)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159.를 참조

2021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50억 5,000만원의 13.5%인 6억 8,3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추진 및 계획]

내용	당초 계획	변경 추진 및 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21.9.	'21.1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1.9.	'21.10.~'22.2.
기본 및 실시설계	'21.9.~'22.3.	'22.8.~'23.9.
콘텐츠 개발 및 구축	'22.3.~'23.12.	'22.10.~'24.3.
시설 구축 공사	'22.3.~'23.12.	'23.10.~'24.11.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문화재청은 2023년 사업비 10억원을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읍시는 2,600만원만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0.6% 수준이다.

[2021~2024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안)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1	350	350	-	350	0	350	-	0
2022	4,700	4,700	350	5,050	683	4,367	-	13.5
2023	1,000	-	4,367	4,367	26	-	-	0.6
2024	3,700	-	-	-	-	-	-	-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는 대신에 성과관리 개선계획 마련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 편성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 · 제출하였으나, 그에 따른 실집행률 개선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흡' 등급을 받게 된 사유와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여 성과관리 개선계획 마련 중 환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융자)'** 사업은[13] 최신 방지시설 설치 촉진 및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를 위해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시설(시멘트 제조업, 석유정제업)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이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24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1~2022년까지는 융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업구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멘트 제조시설 및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후 금융기관(A)을 통해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기관(A)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고, 기술원이 자금차입약정을 체결한 금융공공기관(B)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입하여 금융기관(A)으로 대여하며, 금융기관(A)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출금 지급 후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아 기술원에 상환하고, 기술원은 금융공공기관(B)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민간조달금리로 원금을 대여한 금융공공기관(B)에 분기별로 2%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동 사업은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집행률 부진 및 시설개선 전후의 배출량 저감효과를 제시하지 못한 사유로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에 따른 성과관리 개선계획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설공사 기간에 따른 융자 사용기간 확대 등 운영 요강을 개정('23년 2월)하였으며, 융자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협의 추진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융자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융자 집행실적을 보면, 기술원의 실집행률이 각각 42.8%, 39.7%로 저조하고, 2023년도부터는 이차보전지원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9월말 기준으로 예산편성액 24억원 중 5억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교부한 상태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집행액은 7,400만원(3.1%)에 해당한다.

1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28.를 참조

[최근 3년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예산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1	300,000	300,000	200,000	200,000	0	200,000	85,658	28,388	85,954	42.8
2022	190,000	110,000	110,000	110,000	28,388	138,388	54,875	46,618	36,895	39.7
2023.9	2,400	2,400	500	500	46,618	47,118	16,971	-	-	36.0

주. 2023년도 실집행액 16,897억원은 전년도 융자사업 이월금액 466억 1,8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임

자료: 환경부

[2023년도 융자/이차보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전년이월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융자	-	46,618	16,897	36.2
이차보전	2,400	-	74	3.1

자료: 환경부

따라서 동 사업의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 지적사항인 집행률 부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관리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미흡' 사업에 대한 평가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2.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82조[1]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구성된 기금 평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1)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현황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2]는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사업제도 개선 및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준용하며, 평가지표를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수 기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준[3]에 따라 상대평가(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를 한다.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계획과 성과관리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2023. 5.)을 통해 2022회계연도 총 52개 기금, 447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사업운영부문을 평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대상 기금: 52개]

기금명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낙동강수계기금, 남북협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2023. 5.)

평가 결과, 77개 사업(17.2%)이 '우수', 292개 사업(65.3%)이 '보통', 78개 사업(17.4%)이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총 78개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55개, 성과관리 개선 대상 사업은 42개이고, 이 중 복수로 해당되는 사업은 21개이며, 2023년 종료 사업이 2개이다.

3) 대상 사업수가 10개 이상이면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이며, 대상사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별도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23. 1.))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

(단위: 개, %)

구분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	447	77	292	78
(비율)	(100.0)	(17.2)	(65.3)	(17.4)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2023. 5.)

(2) 기금존치평가 현황

기금존치평가는 매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수행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의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기금의 존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15조[4]에 따라 해당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68개 기금 중 24개 기금에 대해 기금존치평가가 실시되었다.

기금존치평가에서는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양곡증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설치목적이 명확하고 자금관리 이외 별도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서면평가만 실시되었고, 양곡증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실익이 없어 해당 지표 평가대상에서 서 제외되었다.

4)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 대상 기금: 24개]

기금명
양곡증권정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보훈기금, 군인복지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 5.)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결과 18개 기금의 52개 사업은 개선, 1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폐지, 4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13개 기금(중복지적 제외)의 부적정성이 지적되었다. 실질적으로 두 지표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 결과 2개 기금이 통합을 권고받았다.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 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 요약]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평가 결과 요약
개별사업의 적정성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운영의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24개 기금 평가 - 18개 기금의 52개 사업 개선 권고 - 1개 기금의 4개 사업 폐지 권고 - 4개 기금의 4개 사업 통합 권고
재원구조의 적정성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 20개 기금 평가 - 1개 기금 재원조성방법 부적정 - 8개 기금 중기가용자산 규모 여유 - 5개 기금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소
기금존치의 타당성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24개 기금 평가 - 2개 기금 통합 권고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 5.)

나. 분석의견

(1) 연례적 '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 연례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는 등 평가 조치에 따른 개선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등 9개 사업은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에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개 사업은 3년 연속(2020~2022회계연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연례적 '미흡' 평가 사업 현황]

기금명	사업명[1)]	2020	2021	2022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피해보전직불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축산발전기금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축산물수급관리	-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공무원 연금기금	주택사업관리	-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	성과관리개선	성과관리개선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정보화)	-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주: 1) 평가단위가 2021회계연도(2022년 평가) '단위사업'에서 2022회계연도(2023년 평가)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어, 2022회계연도(2023년 평가) 기준인 세부사업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1·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례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중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출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회계연도 평가에서 임대주택지원 단위사업이 성과목표 미달 및 집행률 부진을 사유로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공약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다른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지출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었고 2023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24.8%가 증액된 1.1조원이 편성되었다.

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통합공공임대출자 세부사업은 2021회계연도 평가와 같이 성과목표 미달 및 집행률 부진을 사유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성과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4.0%가 증액된 1.2조원이 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목표를 미달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하고 공정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계획하였다. 동 사업은 2022년에 성과목표 3.3만호 대비 0.8만호 지원(사업승인 기준)으로 성과 달성도가 24.2%로 저조하였음에도 2023년 및 2024년 성과목표는 2022년 성과목표 보다 높은 3.5만호로 각각 계획된 점을 고려할 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은 집행률 부진으로도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 집행률은 71.9%이나 당초 계획액 8,575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은 22.9% 수준이고 2023년 7월말 기준 집행률이 11.8%로 저조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1	88,438	88,438	88,438	88,438	88,438	88,438	0	100.0
2022	857,477	272,753	196,201	196,201	196,201	196,201	76,552	71.9
2023	1,070,374	1,070,374	125,969	125,969	125,969	125,969	0	11.8
2024	1,220,076	-	-	-	-	-	-	-

주: 2023년은 7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2)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의 예산안 연계 미흡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감액 규모가 축소되거나 증액 편성되어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진행컨설팅(ODA)' 등 6개 사업은 2024년도 계획안에 감액 규모가 축소되거나 증액 편성되었다.

[지출구조조정계획과 2024년도 계획안 비교]

(단위: 억원, %)

기금명	사업명	2023	지출구조조정계획			2024계획안		
		금액 (A)	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금액 (C)	증감액 (C-A)	증감률 (C-A)/A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진행컨설팅(ODA)	251	229	△22	△8.8	302	51	20.3
기후대응기금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300	270	△30	△10.0	285	△15	△5.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3,595	3,300	△295	△8.2	3,511	△84	△2.3
수산발전기금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00	195	△5	△2.5	1,000	800	4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556	501	△55	△10.0	556	△1	△0.1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	939	892	△47	△5.0	1,019	80	8.5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2023. 5.) 및 각 부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202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계획안에 지출구조조정계획의 감액 규모 보다 적게 감액되거나 증액되어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진행컨설팅(ODA)'**은 ODA 차관 사업의 준비, 실시, 사후관리 등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차관 지원의 경쟁력 및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수행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계획현액의 42.5%(353억원 중 150억원)로 저조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출구조조정계획은 2023년 계획액 251억원 대비 22억원 감액된 229억원이다.

그러나 2024년도 계획안에는 2022년 집행부진 사유였던 코로나19의 영향이 해소되고 있고 정부의 ODA 확대정책에 따른 대개도국차관 사업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51억원이 증액된 302억원이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도 계획안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제출한 지출구조조정계획과 달리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2024년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은 도심 역세권 등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인프라와 교통·문화 등이 결합된 그린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 그린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 평가에서 부지 및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교부현액의 6.0%(70억원[5] 중 4억원)로 저조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출구조조정계획은 2023년 계획액 300억원 대비 30억원 감액된 270억원이다.

그러나 2024년도 계획안에는 2024년도 사업 종료를 기준으로 계속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15억원 감액된 285억원이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도 계획안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제출한 지출구조조정계획 보다 감액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2024년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출구조조정계획 제출시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사업은 2024년도 계획안에서 평가에 대한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시장경영혁신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환경변화 대응전략을 구체화하는 수단과 방법이 미비하며 전통시장의 매출로 설정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부적절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출구

5) 2022년도 계획액 155억원 중 85억원은 기후대응기금 세수부족으로 미배정되었으며, 2023년으로 이월되었다.

조조정계획은 2023년 계획액 3,595억원 대비 295억원 감액된 3,300억원이다.

그러나 2024년도 계획안에는 84억원 감액된 3,511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일부 감액된 규모로 2024년도 계획안이 편성되었으나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비해 축소된 규모이며, 지출구조조정의 사유인 환경변화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액 규모를 축소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3) 기금존치평가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 미흡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사업의 조정·통합, 성과관리 개선 등을 권고받았으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은 국제금융기구에 협조융자 사업관리비 의무지출 약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에서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들(대개도국 차관사업 관련 기술전문가고용, 정책연구, 기금관련위원회개최)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대개도국차관지원 단위사업 내 개별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조정 및 신설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여 향후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2024년도 계획안에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구조 개선 미이행 사업 현황(조정)]

구분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조정	대외경제협력기금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세부사업 내 사업들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대개도국차관지원 단위사업 내 개별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 5)를 바탕으로 재작성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은 주파수 활용 여건 조성 단위사업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 고도화 및 활용기반 조성 등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파수 활용 여건 조성'**은 단위사업으로 천리안통신위성 이용기반구축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에서 두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서 각 기금의 연도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편성한 것이므로 양 기금 간의 합의에 따라 하나의 기금으로 사업을 즉시 이관하여 통합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2024년도 계획안에는 두 사업이 각 기금에 별도로 편성되어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조 개선 미이행 사업 현황(통합)]

구분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통합	방송통신 발전기금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서, 각 기금의 연도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편성한 것이므로, 양 기금간의 합의에 따라 하나의 기금으로 사업을 즉시 이관하여 통합 필요
	정보통신 진흥기금	주파수 활용 여건 조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 5)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합 권고 사업 상세 내역]

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단위사업	주파수 활용 여건 조성	**주파수 활용 여건 조성**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 고도화 및 활용기반 조성 - 주파수 대역정비 및 실행기반 구축 - 주파수 수요자기반 시장 친화적 이용환경 조성 -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평가 체계구축 -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 미중일 등 주요국 전파정책 협력체계 구축	· 천리안통신위성 이용기반 구축 - 궤도보험료 - 임무관제분담금 · 주파수 확보 및 공급 기반기술 개발(R&D) ·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R&D) - 275~450㎓ 대역 근거리 전파특성 모델링 연구 - 100㎓ 대역 광센서 기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기술 개발

주: 기금존치평가에서 통합 권고한 사업을 굵은 글씨로 표기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세부사업은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장치 제공, 주거이전 지원, 임시숙소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적은 예산 규모 등의 사유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매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예산액이 증가[6]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세부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에는 동 사업이 포함된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에 적용되는 성과지표로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지원 실적'이 신규 설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성과지표는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의 **'한반도통일 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한반도통일 미래센터의 통일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통일체험연수 인원을 반영하고 연수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2024년도 계획안에는 평화체험연수 실시 횟수만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연수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관리 개선 미이행 사업 현황]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국가에 대한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남북협력 기금	한반도통일 미래센터 운영	통일체험연수 실시 횟수 등 투입 위주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통일체험연수 인원을 반영하고 연수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하여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 5)를 바탕으로 재작성

6) (2021년) 14억 1,700만원 → (2022년) 29억 5,500만원 → (2023년) 35억 6,400만원 → (2024년안) 34억 4,600만원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결과 자체수입 비중 저조 등으로 재원조성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자체수입 비중은 23.2%로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자체수입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전입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원조성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4년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4,935억원 중 자체수입은 23.2%인 1,147억원이고 정부내부수입은 76.8%인 3,788억원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다.

2024년도 계획안에서 자체수입은 2023년도 수정계획 대비 353억원 증가(794억원→1,147억원)하여 자체수입의 비중이 5.7%p 증가(17.5%→23.2%)하였는데, 특히 기타경상이전수입이 309억원 증가(194억원→503억원)하고, 기타영업외잡수입이 52억원 증가(순증)하여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503억원은 문예기금 보조사업 반납금 66억원과 복권기금 보조사업 반납금 437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복권기금 보조사업 반납금은 복권기금에 반납해야하는 금액으로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륜·경정업의 회복으로 2021~2023년에 순감되었던 경륜·경정사업자의 수익금이 2024년도 계획안에 52억원 순증되었으나, 이는 경륜·경정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재원으로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체수입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수정(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	**379,937**	**453,339 (100.0)**	**493,523 (100.0)**	**40,184**	**8.9**
1. 자체수입 소계	**79,069**	**79,443 (17.5)**	**114,737 (23.2)**	**35,294**	**44.4**
기타경상이전수입 보조금 반납금(문예기금, 복권기금)	40,652	19,400 (4.3)	50,296 (10.2)	30,896	159.3
민간출연금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 민간 기부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출연 등	17,049	27,884 (6.2)	29,311 (5.9)	1,427	5.1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상환 원금	13,917	17,888 (3.9)	15,220 (3.1)	△2,668	△14.9
입장료수입 골프장 뉴서울CC, 아르코미술관 등 운영 수입	2,606	6,244 (1.4)	6,431 (1.3)	187	3.0
기타영업외잡수입 경륜경정 사업 발생 수익금 중 법정 비율에 따른 전입금	0	0 (0.0)	5,212 (1.1)	5,212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여유자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1,149	4,500 (1.0)	4,635 (0.9)	135	3.0
기타잡수입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등	1,235	1,470 (0.3)	1,514 (0.3)	44	3.0
건물대여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등 문예위 운영 시설 임대료	515	1,175 (0.3)	1,210 (0.2)	35	3.0
기타민간이자수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상환 이자	1,196	882 (0.2)	908 (0.2)	26	2.9
토지매각대 문예위 소유 토지 매각 수입	750	0 (0.0)	0 (0.0)	0	0.0
2. 정부내부수입 소계	**300,868**	**373,896 (82.5)**	**378,786 (76.8)**	**4,890**	**1.3**
복권기금 전입금	173,868	243,896 (53.8)	248,786 (50.4)	4,890	2.0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97,000	100,000 (22.1)	100,000 (20.3)	0	0.0
일반회계 전입금	30,000	30,000 (6.6)	30,000 (6.1)	0	0.0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괄호 안은 해당 수입이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74-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20-10
ISBN	979-11-6799-174-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